발 간 등 록 번 호

특별사법경찰

2021.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4.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5.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6.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7. 검찰사건사무규칙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3.] [법무부령 제01000호, 2021. 2. 3.,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기획과) 02 - 2110 - 35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4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4조(불이익 금지 및 기밀엄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이나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6조(관할)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구하여 미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8조(회피)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9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호인

、변호사 참여신청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여럿 있을 때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서로 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피해자 보호)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3조(수사의 협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서로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14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이 경우 이미 검찰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한 사건도 포함한다.
2.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과 그 처분을 한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3. 1건으로 함께 수사하도록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
4. 다른 기관이나 다른 관서로부터 1건으로 이송된 사건

제15조(사법경찰관리 지명서 휴대의무)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조사 등 수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16조(합동단속반의 설치·운영 등)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범죄의 태양(態樣),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범죄(사법경찰직무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는 제외한다)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사범에 대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중복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합동단속이나 실태조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지식과 인권의식 함양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파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에서의 일정기간 근무, 수사실무나 수사 관계 법률 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의 수강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수사의 개시

제17조(내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하고,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진정·탄원 및 투서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정·탄원 및 투서의 내용이 소관으로 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인·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범죄인지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 수사경력,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될 법조문을 적어야 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9조(수사의 개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신청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사건기록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수색·검증(법에 따른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은 제외한다)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또는 허가서에 의한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의 집행
2.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인수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변사자의 검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령으로 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2조(검시할 때의 주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주의하여 보존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시를 할 때에는 잠재지문과 변사자의 지문을 주의하여 채취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23조(검시의 참여)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공무원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4조(자살자의 검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살한 사람을 검시할 때에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3절 수사사무의 보고

제25조(수사개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에서 부여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개시 보고서로 보고해야 한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제5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폭발물과 방화 및 실화에 관한 죄(「형법」 제2편제6장 및 제13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5. 살인의 죄(「형법」 제2편제24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6. 상해치사·폭행치사죄(「형법」 제259조 및 제262조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형법」 제2편제7장·제8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8.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9. 「군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4조에 따른 범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중 피해규모, 광역성, 연쇄성, 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범죄
   가. 「관세법」 위반범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
   다. 「철도법」 위반범죄
   라.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마.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디자인보호법」위반범죄
   바.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및 같은 법 제102조제5항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범죄
11.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특별히 지휘한 사항

제26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제27조(범죄통계원표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를 말한다)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지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제4절 수사지휘

제28조(수사지휘의 원칙)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

제29조(수사지휘 일반) ① 검찰총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반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일반적 수사지휘 또는 세부 지침 등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30조(수사지휘 건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로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과 관련하여 지휘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일반사법경찰관리 또는 다른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업무권한의 충돌이나 분쟁이 생겨 기관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로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제31조(수사지휘의 방식)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지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 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수사지휘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모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사건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대면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대면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32조(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1.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
2.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3조(신속한 수사지휘)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수사지휘 건의나 제32조에 따른 재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휘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34조(수사지휘 기한 준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기한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지휘한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로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해야 한다.

제35조(중요범죄의 입건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제5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5.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한 사건을 입건하거나 사건을 종결하려면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절 임의수사

제36조(출석요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7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특별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38조(심야조사 제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휴식시간 부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 제2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포함하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사람과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

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을 들을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43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라.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라.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마. 변호인 참여 여부

제44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 및 직업
2.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설립목적、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3.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4.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을 받은 사실의 유무
5.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6.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 및 연금의 유무
7. 피의자의 병역관계
8. 피의자의 환경、교육、경력、가족상황、재산 정도 및 생활수준
9. 범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 및 결과
10.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 및 연령
11.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한 관계인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및 형의 가중 또는 감경에 관한 사항
12. 피의자의 처벌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3.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4. 피해의 상태 및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
15. 피의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45조(조서와 진술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항의 진술조서는 진술을 한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 진술인이 기재 내용의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④ 진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인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제22호서식(진술인이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필로 기재하게 한 후 조서에 편철하고, 간인(間印)을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⑤ 법 제243조의2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의견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을 원할 때
2.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에 동의할 때
3. 그 밖에 서면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⑧ 특별사법경찰관은 제7항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진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46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47조(사건관계인의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같은 날 여러 명에 대해 출석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관계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또는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할 수 있다.

제48조(조서 및 자료의 편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서, 수사보고서 등 수사관계 서류를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했을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적어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

할 수 있다.

제49조(영상녹화)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피조사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며, 조사를 시작한 후에 영상녹화를 할 필요가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피조사자가 서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해야 한다.

제50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51조(임상조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치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임상신문(臨床訊問)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이나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52조(실황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가서 실황을 조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실황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3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사사항조회서에 따른다.

제6절 강제수사

제54조(영장의 집행)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保全)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③ 영장은 검사의 서명·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수해야 한다.
⑨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5조(체포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영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56조(영장의 재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영장등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영장등의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1.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2. 영장을 신청하여 이미 발부받았으나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제57조(긴급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연령、경력、범죄성향, 범죄의 경중、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2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의해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기관 또는 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나목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때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 건의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을 건의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일시、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건의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에 관하여는 제5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적은 별지 제35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듣고 별지 제36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에 관하여는 제5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수한 경우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체포하거나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60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체포영장
2.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제57조제2항의 긴급체포서
3. 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4.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제58조제1항의 현행범인체포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현행범인인수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속영장신청서에 이를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법 제20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61조(체포·구속의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체포·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구속의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1.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제2호의 경우에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모사전송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체포·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⑥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체포·구속영장등본의 교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체포·구속영장의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했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63조(피의자의 접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물건의 수수(授受)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물건의 수수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접견 등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도록 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접견 등은 접견 장소 부족, 접견시설의 질서 유지, 접견 사무의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치장 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견 등의 신청을 받아 접견 등을 하도록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접견: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구속인 접견부
2. 교통: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구속인 교통부
3. 진료: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구속인 진료부

제64조(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 위험물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치인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급식상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유치인에게 자기 용도를 위한 차입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65조(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금생활에 필요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생·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제66조(구금과 건강상태)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할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7조(피의자의 석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나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52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2.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3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보고서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석방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제68조(체포·구속장소 감찰 관련 조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98조의2에 따른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과 관련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구속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고,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69조(피의자의 도주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0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일반용): 별지 제55호서식
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별지 제56호서식의 신청서
3.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후): 별지 제57호서식의 신청서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71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피압수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제72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제73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⑥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반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1. 제72조제2항에 따라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2. 제72조제3항에 따라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제74조(압수조서의 작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63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압수조서에는 압수의 일시·장소, 압수의 경위 등을, 압수목록에는 압수물건의 품종·수량 등을 각각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하여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5조(증거물 등의 보전)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보전에 유의해야 하며,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과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촬영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형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검증이나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과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촬영하는 등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제76조(수색조서의 작성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일시·장소, 참여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수색결과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77조(검증조서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장소, 검증 경위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8조(압수물의 보관·폐기·환부 및 가환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을 하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라 압수물의 보관, 폐기, 대가보관 또는 피해자환부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유형과 처분사유를 기재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2. 압수물의 대가보관: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서
3. 압수물의 폐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지휘건의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번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별지 제70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1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원형보존 또는 환전보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133조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하거나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환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해야 한다.

제79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연장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승인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에 검사에게 허가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긴급통신제한조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제80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 연장을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다른 관서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내사한 후 내사를 종결하는 경우 내사를 종결한 관서는 허가서를 청구한 검찰청에 집행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에 따라 이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제81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승인서와 함께 봉인한 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 외의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지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82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제한조

치 집행사실 통지보고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3조(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5호서식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8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85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0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다른 관서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건을 이송받아 내사한 후 내사를 종결하는 경우 내사를 종결한 관서는 허가서를 청구한 검찰청에 집행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6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87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제88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보고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9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른 감정유치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21조의4제3항에 따라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제90조(영장 등의 반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영장반환 보고서에 발행통수와 집행불능 등 영장반환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91조(증거보전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19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로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제92조(증인신문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에 따른다.

제7절 고소·고발 사건

제93조(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여부를, 친고죄의 경우에는 법 제230조에 따른 고소기간을 지났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해야 한다.

제94조(고소의 대리)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고소권자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95조(고소사건의 수사기간)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96조(고소 등의 취소)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
1. 고소인이 그 고소를 취소한 경우
2. 고발인이 그 고발을 취소한 경우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8절 소년·장애인·외국인 등 사건에 관한 특칙

제97조(소년사건수사의 기본원칙)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

제98조(소년의 특성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말투로 조사해야 하며, 그 소년의 심정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제99조(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①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 경력, 교육 정도, 가정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21호서식의 소년환경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100조(구속에 관한 주의) 소년을 구속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소년을 구속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제101조(보도상의 주의) 소년의 주거、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제102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제103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제104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통신)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절 수사서류

제105조(수사서류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
3. 사투리、약어、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5. 지명、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일 것
6.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조서 또는 진술서에 첨부하는 서류인 경우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할 것

제106조(외국어로 된 서면)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10절 범죄수익의 몰수·부대보전·추징보전 등

제107조(범죄수익 몰수、부대보전、추징보전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몰수、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검사가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한 다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요구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 취소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08조(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입국、상륙 허가의 요청 또는 체류 부적당 통보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입국、상륙허가요청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체류부적당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관 절차 특례에 대한 요청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3장 사건송치 등

제109조(사건송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해야 한다.

1.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
2.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 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3. 소속관서의 장 및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제110조(송치 전 지휘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35조에 따라 입건 지휘를 받은 사건
2.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 등의 사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3. 사건을 송치한 후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에 따라 지휘내용을 이행한 사건 및 검사가 접수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할 것을 지휘한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 중요성이나 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관세법」 위반범죄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범죄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고발을 공소제기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송치 등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사건의 증거 판단, 소추요건, 법령의 해석·적용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지휘 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의 지휘를 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서 등 수사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지휘검사의 성명 및 지휘일자를 기재하고, 수사기록에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지휘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편철해야 한다.

제111조(송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기록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ㆍ통보 내용, 사진, 별지 제132호서식의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33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135호서식의 기록 목록
4. 별지 제136호서식의 의견서
5. 그 밖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

⑤ 사건을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 직접 간인을 해야 한다.

⑥ 제4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 - 1, 1 - 2, 1 - 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⑦ 제4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이 경우 순서대로 각 장마다 2부터 시작하여 2, 3, 4 등으로 면수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2.3>

⑧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감정서 원본을 편철하여 사본 2부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표지의 증거품 관련 난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직접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압수물 송부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⑩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사건송치 전에 영장등을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등의 신청서류 및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의 편철, 간인 및 면수 표시 방법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112조(영상녹화물의 송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사건 송치 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송치서 표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해야 한다.

제113조(의견서 작성) 특별사법경찰관은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제114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5조(추가 송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추가 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16조(송치 후의 수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17조(기소중지·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검사가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2. 특정 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후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
3.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된 후 그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
2.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제118조(수사촉탁)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42호서식의 촉탁서에 수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나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한다.

② 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43호서식의 회답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전부와 함께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제119조(행정고발사건의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이 고발한 사건은 해당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지 않는다.

제120조(범죄사건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수사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121조(증언 준비)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는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와 면담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122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제22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 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른 범죄의 수사를 직무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1. 수사관계예규철
2.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3. 내사종결사건철
4. 변사사건종결철
5. 수사미제사건기록철
6. 통계철
7. 처분결과통지서철
8. 검시조서철
9. 잡서류철
10.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
11.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
12. 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13.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14.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15.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16.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구속인 접견부

17.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구속인 교통부
18.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구속인 진료부
19.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
20.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구속인명부
21.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22.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3.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4.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25.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6.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7.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8. 별지 제95호서식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9. 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30.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31. 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2.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33. 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4.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35.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6.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37.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
38.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9.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
40.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41. 별지 제144호서식의 범죄사건부
42. 별지 제145호서식의 압수부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제1항제20호의 체포·구속인명부 및 같은 항 제41호의 범죄사건부의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제123조(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①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준하는 시스템(「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준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저장 및 관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된 것으로서 시스템의 각 기능 및 운영 상황 등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점검을 받은 시스템을 말한다)을 갖춘 경우에는 제122조제1항제41호의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사건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사건부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제124조(수사관계예규철) 제122조제1항제1호의 수사관계예규철에는 검찰청이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령한 훈령、통첩、지령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제125조(수사종결사건철) 제122조제1항제2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

제126조(내사종결사건철) 제122조제1항제3호의 내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제127조(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122조제1항제5호의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제128조(통계철) 제122조제1항제6호의 통계철에는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제129조(처분결과통지서철) 제122조제1항제7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기소중지、참고인중지、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해야 한다.

제130조(잡서류철) 제122조제1항제9호의 잡서류철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철에 편철되지 않는 모든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제131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철한 후 일부를 빼낼 때에는 그 색인목록의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날인해야 한다.

제132조(임의장부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2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133조(장부 등의 갱신) ① 특별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갱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 구분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제134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122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제122조제1항제1호: 영구
2. 제12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0호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 25년
3. 제122조제1항제6호: 5년

4. 제122조제1항제22호부터 제39호까지: 3년
5. 제1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호: 2년

제135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제134조에 따른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해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995호,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0호,2021.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제 목 변호인·변호사 참여신청

아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에 대한 (신문·조사)시 변호인[변호사 또는 (피해자·참고인) ------의 변호사] ------의 (신문·조사) 참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피혐의자/ 피내사자)	사건번호 및 죄명	
	성 명	
피해자 (참고인)	성 명	(피해자/참고인 조사 참여 신청 시에만 기재)
변호인 (변호사)	의뢰인 성명	피의자/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성 명	
	사무실 주소	
	연 락 처	
	변호인선임서	이미 제출( ) 첨 부( )

20 . . .

신청인: 변호인(변호사·피의자·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 ○ ○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검 사 지 휘		
	년 월 일		
제 호 년 월 일	가	부	비 고
수 신 ○ ○ 지방검찰청			
제 목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			

다음과 같이 대표변호인의 지정(지정의 철회, 지정의 변경)을 건의합니다.

피 의 자	
죄 명	
변 호 인	
지정(지정의 철회, 지정의 변경) 건의 사유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 (기 관 명)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참 조

제 목 **범죄인지**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한자): 직업

주민등록번호: - 00세

주 거:

등록기준지:

2. 범죄경력자료

3. 범죄사실의 요지

4. 죄명 및 적용법조

5.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 경위

경 로	수사지휘 및 의견	구분	결 재	일시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검 시 조 서

년 월 일 지방검찰청 검사 의 명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는 특별사법경찰리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의 변사자(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에 대하여 이를 검시한다.

변사자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	
변 사 장 소		
검 시 장 소		
사 체 의 모 양 및 상 황		
변 사 연 월 일 시		년 월 일: 경
사 인		
발 견 일 시 및 발 견 자		년 월 일: 경
의사의 검안 및 관계인의 진술		
소지금품 및 유류품		
사체 및 휴대품의 처리		
참 여 인		
의 견		

이 검시는 년 월 일에 시작하여

년 월 일에 끝나다.

년 월 일

○ ○ 교 도 소

특별사법경찰관 ㊞

특별사법경찰리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수사개시 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개시하였으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통 반)
등록기준지	

범 죄 사 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른 수사개시 보고 사안인지 여부 기재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 사 -

수신자 **경찰청장**

참 조 **과학수사과장** 발신자

제 목 **수사자료표 송부**

① 작 성 번 호	② 작 성 연월일	③ 성 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죄 명	⑥ 입건전력 발견여부	⑦ 원(原) 지문 작성 여부		⑧ 조회일 및 처리일	⑨ 조 회 사 유
						모든 손가락	엄지 손가락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기 관 명)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제 목 **수사지휘 건의**	
아래 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건의합니다.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지휘건의 사항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기 관 명)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제 목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

다음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출국정지·입국 시 통보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건번호				
인적사항	성명			
	주거			
	등록기준지			
	직업		성별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죄명				
범죄사실				
사유				
기간				
비고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기 관 명)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제 목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

아래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합니다.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검 찰	
	특별사법경찰	
죄 명		
피 의 자		
수 사 진 행 내 역		
연 장 사 유		
연 장 기 간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 , 고발인 , 진정인)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기관명) ○○과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사실 요지: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2.

3.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전화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 . .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사건담당자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참 고 인 출 석 요 구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기관명) ○○과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1.

2.

3.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계 전화(-)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사건담당자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출 석 요 구 통 지 부

출 석 요 구 일 시	출 석 자		사건번호	출석요구통지		결과	담당자 확인
	구 분	성 명		통지일	방법		(서명 또는 날인)

297mm×210mm[백상지(80g/㎡)]

작성요령

-구분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기재

-방법란: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기재

-결과란: 출석일시 및 조사여부를 기재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동 석 신 청 서 (피의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신뢰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피의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귀 ○○○○(기관명)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한 피의자 에 대한 신문에 위와 같이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 귀하

첨부서류	소명자료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동 석 신 청 서 (피해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전화번호
신뢰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귀 ○○○○(기관명)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한 피해자 에 대한 조사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 귀하

첨부서류	소명자료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분	내용
1.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조사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3.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이유	
4.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 중단 시각: □ 재개 시각: □ 이유:
5. 조서 열람 시작 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종료시각:
6.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 .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

특별사법경찰관 :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구 분		내 용
관련 사건	피의자	
	사건번호	
	죄명	
피조사자 · 피면담자	성명(생년월일)	
	사건과의 관계	
	연락처	
수사 경과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장소 떠난 시각	
	조서 미작성 이유	
	조사 외 실시 활동	
	변호인 참여 여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위 피조사(면담)자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피조사(면담)자로부터 확인받음.

년 월 일

확인자 (인)

특별사법경찰관 (인)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갑)]

피 의 자 신 문 조 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답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휴대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e-mail) 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을)]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 (제 회)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진 술 조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 락 처	(자택 전화)		(휴대 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

/ 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답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진 술 조 서 (제 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 임의 출석하였는바,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지난 번 조사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문

답

문

답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table>
<tr><td rowspan="2">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td><td>열람하게 하였던 바</td><td rowspan="2">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td></tr>
<tr><td>읽어준 바</td></tr>
<tr><td colspan="3">·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진 술 자</td><td></td></tr>
<tr><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 colspan="3">(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특별사법경찰리 ㊞</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table>
<tr><td colspan="2" rowspan="2">통역인을 통하여 본인에게</td><td>열람하게 하였던 바</td><td rowspan="2">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td></tr>
<tr><td>읽어준 바</td></tr>
<tr><td colspan="4">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통역인과 같이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td></tr>
<tr><td></td><td>통 역 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td><td>진 술 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td></tr>
<tr><td colspan="4">년 월 일</td></tr>
<tr><td colspan="4">(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특별사법경찰리 ㊞</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진 술 서

성 명	( )			성 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통 반)	자택번호		직장번호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 .

진술자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영 상 녹 화 동 의 서

(기관명)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함에 있어 진술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1쪽)

실 황 조 사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 실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다.

1.	실황조사의 장소(대상)
2.	실황조사의 목적
3.	실황조사의 참여인
4.	실황조사의 경위 및 결과

210mm×297mm[백상지(80g/㎡)]

(마지막쪽)

이 실황조사는 년 월 일 : 에 시작하여
년 월 일 : 에 끝나다.
년 월 일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 ○ ○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발 신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제 목 **수사사항조회**

수사상 필요하여 아래사항을 조회하오니 . .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번 호		② 피 의 사 건 명	※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③ 피 의 자 명			
④조회사항	1 2 3 4 5 6 7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권 리 고 지 확 인 서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세)

주 거 :

본인은 . . . : 경 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 . .

위 확인자 ㊞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 . .

○○○(기관명)

(직급)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체 포 · 구 속 영 장 집 행 원 부

집행 번호	영장 번호	구분	피의자	죄명	집행지휘 또는 촉탁		영장 유효 기간	처 리			비고
					연 월 일	관서		집행	집행 불능	반환 일자	
					. . .		. . .	. . . 시 분		. . .	

297㎜×210㎜[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체포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려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체포영장청구**

위와 같이 체포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체 포 영 장 신 청 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 청 일 자		. . . 시 분	. . . 시 분
신청자 직급 및 성명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검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판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재신청	신 청	. . . 시 분	. . . 시 분
	검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판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유 효 기 간		. . .	. . .
집행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장 소		
	처 리 결 과		
구속 영장 신청	신 청 부 번 호		
	발 부 연 월 일	. . .	. . .
석 방	연 월 일	. . .	. . .
	사 유		
반 환		. . .	. . .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긴 급 체 포 서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호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체포한 장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별지와 같음
체포자의 직급 및 성명	
인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구금한 장소	
구금을 집행한 자의 직급 및 성명	
석 방 사 항	
석방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석방한 장소	
석방 사유	[ ] 구속영장청구 불요 [ ] 추가수사필요 [ ] 기타( )
석방한 자의 직급 및 성명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긴 급 체 포 원 부

집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긴급체포서작성연월일			. . .	. . .
긴급체포	체 포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체 포 한 장 소			
	체포자의 직급 및 성명			
	인치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구금한 장소			
	검사 지휘	승인	. . . 시 분	. . . 시 분
		불승인	. . . 시 분	. . . 시 분
석방	일 시			
	사 유			
구속영장 신청	신 청 부 번 호			
	발 부 연 월 일		. . .	. . .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기 관 명)	검사지휘		
제 호 년 월 일	년 월 일		
	가	부	비고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긴급체포승인건의**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통 반)	직 업	
	등록기준지			
긴급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한 자의 직급 및 성명				
인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구금한 장소				
범죄 사실				
소명 자료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36호서식]

현 행 범 인 체 포 서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 . .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체 포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체 포 한 장 소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 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구 금 한 장 소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36호서식]

현 행 범 인 인 수 서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 . .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체 포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체 포 한 장 소		
체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인 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인 수 한 장 소		
인 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구 금 한 장 소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기 관 명)

. . .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피의자 석방보고**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구 분	
영장발부 연월일 또는 현행범인체포(인수)서 작성 연월일	
체포·구속영장 번호 또는 현행범인체포(인수)서 작성 번호	
피체포·구속자	
죄 명	
석 방 일 시	
석 방 사 유	

특별사법경찰관 ㊞

210mm×297mm[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현 행 범 인 체 포 원 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 작성일				
현행범인체포 및 인수	체포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체포한 장소			
	체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또는 직급		
	인수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인수한 장소			
	인수한자	직 급		
		성 명		
	인치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구금한 장소			
석방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사 유			
구속영장 신청	신청부 번호			
	발부연월일		. . .	. . .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는바, 다음 사람을 에 구속하려고 하므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 범죄의 중대성 [ ] 재범의 위험성 [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는바, 다음 사람을 에 구속하려고 하므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호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 범죄의 중대성 [ ] 재범의 위험성 [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그 밖의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에 구속하려고 하므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 범죄의 중대성 [ ] 재범의 위험성 [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그 밖의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지방검찰청

제 호

수 신 **지방법원** 년 월 일

제 목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다음 사람을 에 구속하려고 하므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 범죄의 중대성 [ ] 재범의 위험성 [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그 밖의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구 속 영 장 신 청 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주 임 검 사				
신 청 관 서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체 포 일 시 및 유 형			시 분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진행번호)	시 분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진행번호)
영장신청 및 발부	검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판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재신청	신 청	. . . 시 분	. . . 시 분
		검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판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피의자심문	신청인		
		일련번호		
		검사 또는 판사 성명		
		접수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접수자 직급 성명		
		구 인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유 효 기 간			. . .	. . .
석 방	연 월 일		. . .	. . .
	사 유			
반 환			. . .	. . .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제 목 **체포·구속 통지 등**

1. 피의자

성 명:

생년월일:

2. 위 사람을 . . . :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여 에 인치구금하였음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는 00지방법원(00 지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 부 :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체 포 · 구 속 영 장 등 본 교 부 대 장

집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피의자와의관계		
피 의 자			
죄 명			
체포 · 구속일자		. . .	. . .
접수연월일		. . .	. . .
교부허가		. . .	. . .
교부불허가		. . .	. . .
수령연월일		. . .	. . .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210mm×297mm [백상지 (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체 포 · 구 속 인 접 견 부

유 치 인 성 명					
접견신청자	성 명				
	주 거				
유치인과의 관계					
접 견 일 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담 화 의 요 지					
비 고					
입 회 관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체 포 · 구 속 인 교 통 부

유 치 인 성 명					
교통 신청자	성 명				
	주 거				
유치인과의 관계					
수신과 발송의 구별					
교 통 일 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편지 내용의 요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준용하는 제43조제4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변호인과의 편지는 제외한다)					
비 고					
취 급 자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체 포 · 구 속 인 진 료 부

유 치 인 성 명				
진단의사의 성명				
진 료 의 원 인				
진 료 일 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진단의 결과				
비 고				
입 회 관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임 처 증 명 서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임치증명

다음과 같이 임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번 호	물 건	수 량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임 치 및 급 식 상 황 표

임 치 금						
임 치 물 품						
임치금품의 처리상황						
급식상황	일 자	1	2	3	4	5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6	7	8	9	10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11	12	13	14	15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16	17	18	19	20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21	22	23	24	25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26	27	28	29	30
	아 침					
	점 심					
	저 녁					
비고						31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51호서식]

물 품 차 입 부

유 치 인 성 명					
차 입 자	주 거				
	성 명				
유치인과의 관계					
구 별					
연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물 품 및 수 량					
비 고					
취 급 자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기 관 명)

. . .

수 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 목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특별사법경찰관 ㊞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첨부: 긴급체포서 사본 1부

① 긴급체포 연월일	② 피긴급 체포자	③ 죄 명	④ 석방지휘 검 사	⑤ 석 방 연월일	⑥ 석 방 사 유
. . .				. . .	긴급체포서 사본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방 검 찰 청
(○○○ - ○○○)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위와 같이 피긴급체포자를 석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기 관 명)	검 사 지 휘		
제 호 . . .	. . .		
	가	부	비 고
수 신 ○ ○ **지방검찰청**			
제 목 **피의자 석방 건의**			

다음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하오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죄 명	
체포·구속유형	체포 · 긴급체포 · 현행범인체포 · 구속
체포·구속일시	년 월 일 시 분
석 방 사 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체 포 · 구 속 인 명 부

<table>
<tr><td colspan="2">제 호</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2">체포·구속</td><td>취급자</td><td colspan="8">계장 과장 기관장</td></tr>
<tr><td>연 월 일 및 유 형</td><td colspan="8">년 월 일: 체포영장
년 월 일: 긴급체포
년 월 일: 현행범인체포(인수)
년 월 일: 구속영장</td></tr>
<tr><td rowspan="3">석방</td><td>취급자</td><td colspan="8">계장 과장 기관장</td></tr>
<tr><td>연 월 일 시</td><td colspan="8">년 월 일 시 분</td></tr>
<tr><td>사 유</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2">죄 명 및 형 명 · 형 기</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6">인상</td><td>키</td><td></td><td>몸집</td><td></td><td>머리털</td><td></td><td>눈썹</td><td></td></tr>
<tr><td>수 염</td><td></td><td>이마</td><td></td><td>귀</td><td></td><td>눈</td><td></td></tr>
<tr><td>입</td><td></td><td>이</td><td></td><td>코</td><td></td><td>용모</td><td></td></tr>
<tr><td>얼 굴</td><td></td><td>얼굴색</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기 타 특 징</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2">착 의</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3">체포·구속된 사람의 인적사항</td><td>성 명</td><td colspan="3"></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4"></td></tr>
<tr><td>주 거</td><td colspan="8"></td></tr>
<tr><td>등록기준지</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2">전과, 죄명, 범수</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2">공범 관계자 성명</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2">가 족 관 계</td><td colspan="8"></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일반용)**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고 하므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호인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대상계좌	계좌명의인	[ ]피의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개설은행·계좌번호	
	거래기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금융계좌 추적용)**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후)**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압수·수색·검증하였으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호인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자의 직급·성명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일시		
긴급수색·검증한 장소·신체 또는 물건		
긴급압수한 물건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사유		별지와 같음
체포한 일시 및 장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한 사유		
신체검사를 한 자의 성별·건강상태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58호서식]

압 수 · 수 색 · 검 증 영 장 신 청 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 청 연 월 일			
신청자 직급 및 성명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검 사 기 각		. . .	. . .
판 사 기 각		. . .	. . .
발 부		. . .	. . .
유 효 기 간		. . .	. . .
집행	일 시	. . .	. . .
	장 소		
	처 리 결 과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기관명) 형제 호 사건의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 중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하였음을 확인함

. .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 대상 전자정보

사건번호	형제 호	지원번호	지원 호
주임검사		압수일시	. . .
압수장소			
압수된 전자정보			

■ 삭제·폐기 또는 반환 대상 확인

(삭제·폐기) [ ]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
[ ]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남겨진 전자정보

(매체 반환) [ ] 반출된 정보저장매체 원본 내 전자정보
[ ] 피압수자의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

■ 삭제·폐기 확인

전자정보	
일시	. . . 00:00경
장소	
삭제·폐기 방법	

특별사법경찰관 ○○○은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삭제·폐기 대상 전자정보를 위와 같이 삭제·폐기하였음

. . .

확인자: 특별사법경찰관 ○○○

■ 반환 확인

전자정보(매체)		
일시	0000. 0. 0. 00:00경	
장소		
수령자	(성명)	(연락처)

특별사법경찰관은 ○○○은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반환 대상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복제본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반환하였음

. . .

확인자: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사건번호	*2019지원0000_1호_○○주식회사*
증거번호	*증1호 홍길동(대표이사)의 노트북*
압수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 용 자	*홍길동*
조 사 자	*조사자*
이미지 파일 생성일시	***2019. 01. 01. 00:00:00***
이미지 파일명	*증1호_홍길동(대표이사)_노트북.dd*

해시값

이미지파일	

※ 해시값(Hash Value) : 해시값은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고정 길이의 값으로 해시함수의 결과로 생성된다. 해시함수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길이를 가진 값을 출력하며, 입력이 다른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만약 원본에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계산되는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관	위와 같이 복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이미지 파일 변환·생성(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 ] 참관하겠습니다. [ ] 참관하지 않겠습니다.]	
	참관 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 (참관의 경우)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게 됩니다.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관 등 절차를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피압수자 , 임의제출자 등: (서명)

특별사법경찰관: (서명)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61호서식]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table>
<tr><td>피압수자
(임의제출자)</td><td colspan="3">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td></tr>
<tr><td>기기의 종류 등</td><td colspan="3">기기의 종류:
제조사 및 모델 (S/N):
(모바일의 경우) 전화번호:</td></tr>
<tr><td rowspan="3">참관</td><td colspan="3">위와 같이 압수 또는 임의제출 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복사, 이미지 파일 변환·생성(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 ] 참관하겠습니다. [ ] 참관하지 않겠습니다.</td></tr>
<tr><td rowspan="2">참관
희망시</td><td>참관 범위</td><td>·정보저장매체 복사 및 이미지 파일 변환·생성(이미징) [ ]
·전자정보 탐색 및 복제(출력) [ ]</td></tr>
<tr><td>참관
예정자</td><td>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td></tr>
</table>

※ (참관의 경우)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게 됩니다.

※ (모바일 기기의 경우) 유의사항

- 기기의 복사 및 이미지 파일 변환·생성(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등의 과정에서 분해, 재조립, 내부 전자회로 직접 연결(JTAG 연결), 펌웨어 체인지 등의 방법이 필요한 모델의 경우에는 기기의 손상 또는 데이터가 초기화 될 가능성이 있음
- 기기의 복사 및 이미지 파일 변환·생성(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등을 한 이후 일부 기기는 보안 솔루션 기반 앱(삼성knox, 삼성페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와 관련된 기존 데이터는 유실 될 가능성이 있음
- 애플 기기(iOS 11버전 이상)의 경우 백업 암호 분실 시 모든 설정이 재설정 될 수 있음

보안 솔루션 기반 앱의 사용 여부

보안폴더 [ ]	삼성페이 [ ]	기타 ( )

- 자동 잠금 해제, 모바일 기기 및 백업 파일(아이폰 등)의 비밀번호 등 표시(피압수자가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화면잠금번호(4자리 이상 숫자): 1234 ▣ 비밀번호(4자리 이상 문자 또는 숫자): spo1234

▣ 패턴: 0-1-2-5-8 ▣ 백업데이터 비밀번호: 123456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관 등 절차를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피압수자, 임의제출자 등: (서명)

특별사법경찰관: (서명)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압 수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와(과) 아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 수 경 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참여인				

년 월 일

특별사법경찰관 ㊞

특별사법경찰리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압 수 목 록

번호	품 종	수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소 유 자		경찰의견	비고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수 색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와(과) 아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수색하다.

수 색 장 소	
수색한 신체 개소, 물건	
수 색 결 과	
수 색 시 간	착수 년 월 일
	종료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참여인				

년 월 일

특별사법경찰관 ㊞

특별사법경찰리 ㊞

210mm×297mm [백상지 (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수 색 결 과 증 명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66호서식] (1쪽)

검 증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 임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는 특별사법경찰리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검증한다.

1.	검증의 장소(대상)
2.	검증의 목적
3.	검증의 참여인
4.	검증의 경위 및 결과

210mm×297mm[백상지(80g/㎡)]

(마지막쪽)

이 검증은 년 월 일 : 에 시작하여

년 월 일 : 에 끝나다.

년 월 일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

210㎜ × 297㎜(백상지 (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기 관 명)	검사지휘		
	. . .		
제 호 년 월 일	가	부	비고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인 바, 다음과 같이 환부(가환부)하고자 하오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품 종	수 량	피 압 수 자	환부받을 사람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기 관 명)	검사지휘		
	. . .		
제 호 년 월 일	가	부	비고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중인 바, 부패(멸실)의 우려가 있어 대가 보관의 필요가 있으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품 종	수 량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기 관 명)	검사지휘		
	년 월 일		
제 호 년 월 일	가	부	비고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압수물 폐기 지휘건의**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중인 바,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으므로, 폐기하려 하오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품 종	수 량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70호서식]

년 호(압수번호)			년 월 일	
수 신 ○○특별사법경찰관	죄명		담당자인	
제 목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	피의자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압수물건으로 보관 명령을 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할 것은 물론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 반)

번 호	품 종	수 량	보 관 장 소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기 관 명)	검사지휘		
	년 월 일		
제 호 년 월 일	요	부	비고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			

다음 유가증권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인 바, 그 원형보존 또는 환전보관 여부에 대하여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유가증권 종류	유가증권 번호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72호서식]

폐 기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특별

사법경찰관 는 특별사법경찰리 를 참여하게 하고 압수물을

다음과 같이 폐기한다.

번 호	품 종	수 량	이 유	비 고

년 월 일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특별사법경찰리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별지와 같음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와 집행장소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성명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장소	
여러 통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지방검찰청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

○○지방검찰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피 의 사 건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	. . .부터 . . .까지
연장할 기간	. . .부터 . . .까지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지방검찰청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합니다. ○○지 방 검 찰 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75호서식]

통 신 제 한 조 치 허 가 신 청 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종 류 · 방 법					
처분대상 ·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일자					
허가기간 · 집행장소					
연 장 기 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허가 신청 및 발부	구 분	허가신청	연장신청	허가신청	연장신청
	신 청				
	발 부				
	기 각				
	재 신 청				
	발 부				
	기 각				
	수 령 연 월 일				
	수령자의 직급 성명 · 날인				
검 찰 반 환 연 월 일					
비 고					

210mm×297mm [백상지 (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검사지휘		
. . .		
가	부	비고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려 하오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 .부터 . . .까지 2. 집행장소: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청이유	1. 혐의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검사지휘 . . . 가	부	비고
제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 .부터 . . .까지 2. 집행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사유	1.혐의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 2.소명자료:
사전지휘를 받지 못한 사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78호서식]

긴급검열(감청)서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함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 .부터 . . .까지 2. 집행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	별지와 같음

. . .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대 장

집행 번호	사건 번호	성명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집행 일시	사후신청 또는 통보서 발송여부
			대상	종류 · 방법	기간 · 집행장소	연월일	관서		

210㎜ × 297㎜ [백상지 (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별지와 같음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와 집행장소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직급·성명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장소	
수통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지방검찰청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

○○지방검찰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특별사법경찰관 ㊞	
아래 사람에 대한 제 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직급 · 성명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	
긴급통신제한조치 후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통 보 서 발 송 부

연 번	사건번호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작성자		통보서 송부일자
		대 상 자	기 간	직 급	성 명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 . 수 신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특별사법경찰관 ㊞		
아래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 거	
	직 업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 .부터 . . .까지	
비 고		
붙 임 : 통신제한조치허가(승인)서 사본 1통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 . 수 신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특별사법경찰관 ㊞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 .부터 . . .까지
연 장 한 기 간		. . .부터 . . .까지
붙 임 : 통신제한조치연장허가 결정문 사본 1통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85호서식]

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위 탁 허 가 신 청 부

집 행 번 호	허가서 번호	성명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집행일시	비고
			목적	대상	종류	기간	연월일	관서		

297㎜×210㎜[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86호서식]

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3.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4. 집행경위

5. 집행위탁 여부

6.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별첨

. . .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특별사법경찰리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특별사법경찰관 ㊞					
아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그 내사/수사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내사/피의 사실: 별지와 같음					
처리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 . 수 신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 특별사법경찰관 ㊞		
아래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 통지하므로, 집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제한조치 허가법원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 허가연월일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번호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89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귀하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특별사법경찰관 ㊞	
우리○○○○(기관명)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가서번호	
통신제한조치집행기관	
전기통신의 가입자 (우편물검열의 대상자)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기간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90호서식]

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사 실 통 지 부

연번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통지 일자	비고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집행자의 직급 · 성명	사건 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91호서식]

검사장 승인	
. . .	
가	부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사 건 번 호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 및 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검사의견	. . . ○○지방검찰청 검사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연번	신청일자	신청자의 직급·성명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승인일자	유예사유 해소 후 통지일자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사건 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통보받은 일자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93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지방검찰청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을 통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사 건 번 호				
통지유예 승인일자				
통 지 일 자				

붙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94호서식]

(기 관 명)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귀하 발 신:

특별사법경찰관 (인)

제 목: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영 장 번 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 기 관	
전 기 통 신 가 입 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 대 상 과 범 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 대 상 기 간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95호서식]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통지일자	비고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담당자	사건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96호서식]

○ ○ ○ (기 관 명)

(00-0000-0000)

제 0000-0000 호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기관명)

제 목: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보관 등 승인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사건번호			
	허가서번호			
	집행종료일			
통신제한조치 집행경위				
취득한 결과의 요지				
혐의사실의요지 및 승인청구이유	1.혐의사실의요지: 별지와 같음 2.소명자료: 별지와 같음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대상 및 범위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목록	별지와 같음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				
전기통신 선별자의 직급·성명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전 기 통 신 보 관 등 승 인 신 청 부

연번	신청일자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검사 결정 및 일자			법원 결정 및 일자			폐기일자	폐기결과보고서 송부일자
		사건번호	허가서번호	집행종료일	전부청구	일부청구	전부기각	전부승인	일부승인	전부기각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98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요 청 사 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붙 임 : 허가서 1부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99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

집행 번호	허가서 번호	성 명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			집행 일시	비 고
			대 상	종 류	범 위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집 행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허가서 번호

2. 집행기관

3. 전기통신가입자

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상과 종류

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별첨

. . .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특별사법경찰리 ㊞

210mm×297mm[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회 신 대 장

연 번	요청일자	요청자	대상자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	회신일자	비 고

210mm×297mm[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법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 연월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번호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지방검찰청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하고 그 수사(내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대상과 범위				
피의(내사) 사실요지: 별지와 같음				
처리내용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전 기 통 신 사 업 자				
요 청 사 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검찰청

수 신 지방법원(지원)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

기각 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5호서식(갑)]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허 가 신 청 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종 류				
죄 명				
대상 및 범위				
긴급으로 자료를 제공받은 일시				
신청 및 발부 일시	구 분	허 가	허 가	허 가
	신 청			
	발 부			
	기 각			
	재 신 청			
	발 부			
	기 각			
수령 및 반환	수 령 연 월 일			
	수령자의 직급·성 명·날 인			
	검찰반환연월일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허 가	허 가	허 가	허 가

210㎜ × 297㎜(백상지 (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

제목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요 청 사 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집행 번호	사건 번호	성명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 일시	사후청구 또는 통보서 발송 여부
			대상	종류	범위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 **지방검찰청**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사후)**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전기통신사업자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검찰청 수신 **지방법원(지원)**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사후)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				
기각 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9호서식]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수신자 귀하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우리○○○○(기관명)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집 행 기 관	
전 기 통 신 가 입 자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공요청의 대상과 종류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의 범 위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0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통지일자	비고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집행자의 직급·성명	사건 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1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검사장 승인 . . . 가 / 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수신자 **지방검찰청**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 . .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사 건 번 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종류 및 자료의 범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 및 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검 사 의 견	. . . ○○지방검찰청 검사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2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연번	신청일자	신청자의 직급·성명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승인일자	유예사유 해소 후 통지일자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사건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통보받은 일자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보고** 특별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어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을 통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사 건 번 호				
통지유예승인일자				
통 지 일 자				

붙 임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 사본 1부

210㎜×297㎜ [백상지 (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감정유치장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하려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호인		
범죄 사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의 유치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 . .부터 . . .까지(일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감정인	성명	
	직업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감정유치장청구**

위와 같이 감정유치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감정유치 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감정처분허가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감정인이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감 정 위 촉 연 월 일		
감 정 위 촉 사 항		
감 정 장 소		
범 죄 의 사 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의 허가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변 호 인		
비 고		

○ ○ 지 방 검 찰 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감정처분허가장청구**

위와 같이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감정 처분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지 방 검 찰 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기 관 명) 년 월 일 수 신 발 신 특별사법경찰관 ㊞ 제 목 **감정위촉**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사 건 번 호	년 제 호
감 정 대 상 (종 류 · 품 명)	
위 촉 사 항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7호서식]

(기 관 명)

년 월 일

수 신 발 신

특별사법경찰관 ㊞

제 목 **감정위촉**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첨부한 감정처분허가장은 감정서와 함께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년 제 호
감 정 대 상 (종 류 · 품 명)	
위 촉 사 항	
비 고	

첨 부 : 감정처분허가장 1통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영장반환 보고**

별지 영장은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신 청 자			
피 의 자			
죄 명			
집 행 불 능 등 영 장 반 환 사 유			

첨 부 : 영장 통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증거보전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건에 관하여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거의 보전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증거보전청구

위와 같이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0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증인신문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범 죄 사 실		
증 명 할 사 실		
신 문 사 항		
증 거 신 문 청 구 의 요 건 이 되 는 사 실		
변 호 인		

○ ○ 지 방 검 찰 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증인신문청구**

위와 같이 증인신문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증인신문을 청구합니다.

○ ○ 지 방 검 찰 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1호서식]

소 년 환 경 조 사 서
(소 년 카 드)

<table>
<tr><td>번호</td><td colspan="3"></td><td>구분</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8">소년</td><td>성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성별</td><td>남・여</td><td>나이</td><td>만 세</td><td>국적</td><td colspan="3">내국인,
외국인(국적: , 신분: ,
체류목적:)</td></tr>
<tr><td>직업</td><td></td><td>연락처</td><td></td><td>등록기준지</td><td colspan="3"></td></tr>
<tr><td>학력</td><td colspan="6">학교 학년 (학제: 초등[ ]・중등[ ]・고등[ ] ___학년제) (퇴학사유:)</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생활
정도</td><td colspan="3"></td></tr>
<tr><td>혼인
관계</td><td colspan="3"></td><td>종교</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5">가족
관계</td><td colspan="6"></td></tr>
<tr><td>관계</td><td>성 명</td><td>연령</td><td>직업(경제상태)</td><td>연락처</td><td colspan="2">소년에 대한 감호태도, 전과유무 등</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 rowspan="4"></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8">본건
비행</td><td>구분</td><td colspan="2"></td><td>죄명</td><td></td><td>비행
내용</td><td></td></tr>
<tr><td>공범
관계</td><td colspan="2">공범 유 무 (공범과 관계:)</td><td>여죄</td><td></td><td>비행
내용</td><td></td></tr>
<tr><td>범행
동기</td><td colspan="6"></td></tr>
<tr><td>피해자
와의
관계</td><td colspan="6"></td></tr>
<tr><td>범행후
은신처</td><td colspan="6"></td></tr>
<tr><td>마약
상용
여부</td><td colspan="6"></td></tr>
<tr><td>정신
질환
유무</td><td colspan="6"></td></tr>
<tr><td>조치</td><td colspan="6">검찰 구속 송치[ ] 검찰 불구속 송치[ ] 기타[ ]( )

- 체포・구속별(긴급체포[ ] 사전영장[ ] 체포[ ] 현행범체포[ ])
- 불구속별(검사구속취소[ ] 검사기각[ ] 불구속입건[ ] 적부심석방[ ] 판사기각[ ])</td></tr>
</table>

<table>
<tr><td rowspan="5">비행
경력</td><td>전과</td><td colspan="3"></td></tr>
<tr><td>직전
처분</td><td colspan="3">가석방[ ] 기소유예[ ] 보석·형집행정지[ ] 보호처분[ ] 선고유예[ ] 선도유예[ ] 수배중[ ]
즉결심판[ ] 집행유예[ ] 형집행종료[ ] 감호소출소[ ] 선도조건부 불입건[ ] 기타[ ] 없음[ ]</td></tr>
<tr><td>보호
처분</td><td></td><td>재범
종류</td><td></td></tr>
<tr><td>재범
기간</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경찰
선도
경력</td><td colspan="3">선도조건부 불입건[ ] 송치 후 선도[ ] 기타[ ]( ) 없음[ ]</td></tr>
<tr><td colspan="3">-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별 (청소년상담기관 인계[ ] 사람의 교실 이수[ ]
교육기관 통보[ ] 전문가 결연선도[ ] 기타[ ])
- 송치 후 선도 조치별 (청소년상담기관 인계[ ] 사람의 교실 이수[ ]
교육기관 통보[ ] 전문가 결연선도[ ] 기타[ ])</td></tr>
<tr><td rowspan="6">재비행
위험성
평가</td><td rowspan="3">비행
환경
평가</td><td colspan="3">1. 생계 담당자 ( ) 점
1) 가정의 생계담당자는 소년의
부 또는 모 (0)
기 타 (6)
2. 결손가정 ( ) 점
1) 가정 내 결손이 없다 (0)
있다 (6)
2) 있다면 부 사망 이혼 별거 장기부재
모 사망 이혼 별거 장기부재
3. 교육수준 ( ) 점
1) 중학교 혹은 고교 재학 중 (0)
중학교 이하/중퇴, 고교 중퇴 (7)
4. 무단결석 ( ) 점
1) 학교 재학 중 무단결석 없다. (0)
2) 일주일 이상 무단 결석 있다. (9)
* 최초 무단 결석시: 학교 학년
최초무단 결석시 결석 일수: 일간</td><td colspan="2">5. 교우관계 ( ) 점
* 친한 친구 중,
1) 학업 중단 후 무직인 친구가 있다 없다
2) 경찰에 단속되었던 친구가 있다 없다
"있다"가 0개 (0)
1개 (5)
2개 (8)
6. 가출 경험 ( ) 점
1) 가출경험 없다 (0)
있다 1-2회 이상 (3)
3회 이상 (8)
* 최초 가출시 연령: 만 세
* 최초 가출시 가출 기간: 일간
7. 조발(早發) 비행 ( ) 점
* 14세 미만에
1) 조발 비행이 없다 (0)
있다 우범행위 (13)
촉법행위 (16)
* 최초 조발 비행시 연령: 만 세
* 최초 조발 비행시 죄명:</td></tr>
<tr><td>계: ( ) 점</td><td>비행위험성 낮다(0-11점)</td><td>비행위험성 높다(21-29점)</td></tr>
<tr><td></td><td>비행위험성 약간 높다(12-20점)</td><td>비행위험성 아주 높다(30점 이상)</td></tr>
<tr><td rowspan="2">전문가
참여
결과</td><td>검사결과</td><td colspan="3"></td></tr>
<tr><td>종합의견</td><td colspan="3"></td></tr>
<tr><td>처우
의견</td><td colspan="4"></td></tr>
<tr><td>작성자</td><td colspan="4">. . . 작성 ○○○○경찰서 ○○과 ○○팀
계 급: ○○ 성 명: ○○○ ㊞</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 ○ ○ (기 관 명)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몰수·부대보전 신청**

다음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죄 명		
피의사실의 요지		
몰수·부대보전의 근거법령 조항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몰수보전 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주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부대보전 관계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몰수·부대보전 사유	

○○○○○○

특별사법경찰관 ○○ (인)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 ○ ○ (기 관 명)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추징보전 신청**

다음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죄 명		
피의사실의 요지		
추징보전의 근거법령 조 항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제1항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추 징 보 전 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 사유		

○○○○○○

특별사법경찰관 ○○ (인)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4호서식]

몰 수 · 부 대 보 전 신 청 부

진 행 번 호		제 호	제 호
성 명			
죄 명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년 형 제 호
사 건 명			
검 사			
신 청 관 서			
처분을금지하는재산·권리			
몰수보전사건의표시			
특별사법경찰관신청	신 청 일	. . .	. . .
	기 각 일	. . .	. . .
검사청구	청 구 일	. . .	. . .
	결 정 일	. . .	. . .
	요 지		
특별사법경찰관재신청	신 청 일	. . .	. . .
	기 각 일	. . .	. . .
검사재청구	청 구 일	. . .	. . .
	결 정 일	. . .	. . .
	요 지		
결 정 문 수 령 일		. . .	. . .
수령자의 직급·성명·날인			
항 고	제 기 일		
	결 정 일		
	요 지		
재항고	제 기 일		
	결 정 일		
	요 지		
종 국 연 월 일		. . .	. . .
몰수·부대보전부 번호		몰수 년 제 호 부대	몰수 년 제 호 부대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5호서식]

추 징 보 전 신 청 부

진 행 번 호		제 호	제 호
성 명			
죄 명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년 형 제 호
사 건 명			
검 사			
신 청 관 서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권리			
추 징 보 전 액		원	원
추징보전사건의표시			
특별사법경찰관 신청	신 청 일	. . .	. . .
	기 각 일	. . .	. . .
검사청구	청 구 일	. . .	. . .
	결 정 일	. . .	. . .
	요 지		
특별사법경찰관 재신청	신 청 일	. . .	. . .
	기 각 일	. . .	. . .
검사 재청구	청 구 일	. . .	. . .
	결 정 일	. . .	. . .
	요 지		
결 정 문 수 령 일		. . .	. . .
수령자의 직급·성명·날인			
항 고	제 기 일		
	결 정 일		
	요 지		
재항고	제 기 일		
	결 정 일		
	요 지		
종 국 연 월 일		. . .	. . .
추 징 보 전 부 번 호		추 징 년 제 호	추 징 년 제 호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6호서식]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를 합니다.

○ ○ ○ (기 관 명)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

아래와 같이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추징보전사건의 표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년 제 호)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취 소 대 상		[ ] 전부취소 [ ] 일부취소
일부취소의 범위		(기존 추징보전액: 원) 취소신청 추징보전액: 원 잔여 추징보전액: 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에 따른 취소 사유		

○○○○○○○

특별사법경찰관 ○○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7호서식]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를 합니다.

추 징 보 전 명 령 취 소 신 청 부

진 행 번 호		제 호	제 호
성 명			
죄 명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년 형 제 호
사 건 명			
검 사			
신 청 관 서			
취 소 대 상		[ ] 전부취소 [ ] 일부취소	[ ] 전부취소 [ ] 일부취소
일부취소범위	기 존 추징보전액	원	원
	취 소 신 청 추징보전액	원	원
	잔여 추징보전액	원	원
추 징 보 전 사 건 의 표 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년 제 호)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년 제 호)
특별사법경찰관 신 청	신 청 일	. . .	. . .
	기 각 일	. . .	. . .
검 사 청 구	청 구 일	. . .	. . .
	결 정 일	. . .	. . .
	요 지		
특별사법경찰관 재 신 청	신 청 일	. . .	. . .
	기 각 일	. . .	. . .
검 사 재 청 구	청 구 일	. . .	. . .
	결 정 일	. . .	. . .
	요 지		
결 정 문 수 령 일		. . .	. . .
수 령 자 의 직 급 · 성 명 · 날 인			
종 국 연 월 일		. . .	. . .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8호서식]

○ ○ ○ (기 관 명)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입국 · 상륙 허가 요청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입국 · 상륙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입국 · 상륙 허가 요청을 신청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		
	생년월일 (세)	성 별	남 · 여
	국적		
마약류의 분산 방지 및 도주 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 ○ ○ (기 관 명)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

제 목 **체류부적당 통보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통보를 신청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		
	생년월일 (세)	성별	남 · 여
	국적		
입국(상륙) 허가일자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0호서식]

○ ○ ○(기 관 명)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세관절차 특례요청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될(우리나라로 반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세관절차의 특례조치 요청을 신청합니다.	
마약류의 특정	
마약류의 분산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별지 제131호서식]

특 례 조 처 등 신 청 부 (0000-000000)

<table>
<tr><td colspan="5">입국·상륙 허가 요청 및 체류 부적당 통보 관련</td><td colspan="4">세 관 요 청 관 련</td></tr>
<tr><td rowspan="3">대상자</td><td>성 명</td><td colspan="3"></td><td rowspan="3">마 약 류</td><td colspan="2" rowspan="3"></td></tr>
<tr><td>생년월일</td><td>. . .
(세)</td><td>성 별</td><td>남·여</td></tr>
<tr><td>국 적</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8">요청
관련</td><td rowspan="2">신 청</td><td>신 청 일</td><td colspan="2">. . .</td><td rowspan="4">신 청</td><td>신 청 일</td><td>. . .</td></tr>
<tr><td>기 각 일</td><td colspan="2">. . .</td><td rowspan="3">기 각 일</td><td rowspan="3">. . .</td></tr>
<tr><td rowspan="2">검사요청·
허가</td><td>요 청 일</td><td colspan="2"></td></tr>
<tr><td>허 가 일</td><td colspan="2">※ 불허 시 불허일 기재</td></tr>
<tr><td rowspan="2">재 신 청</td><td>신 청 일</td><td colspan="2">. . .</td><td rowspan="3">재 신 청</td><td>신 청 일</td><td>. . .</td></tr>
<tr><td>기 각 일</td><td colspan="2">. . .</td><td rowspan="2">기 각 일</td><td rowspan="2">. . .</td></tr>
<tr><td rowspan="2">요청 및
허가</td><td>요 청 일</td><td colspan="2"></td></tr>
<tr><td>허 가 일</td><td colspan="2">※ 불허 시 불허일 기재</td><td>검사요청</td><td>요청일</td><td></td></tr>
<tr><td colspan="4"></td><td>세관 조치</td><td colspan="2">※ 일자 및 내용</td></tr>
<tr><td rowspan="4">통보
관련</td><td rowspan="2">신 청</td><td>신 청 일</td><td colspan="2">. . .</td><td rowspan="4">비 고</td><td colspan="2" rowspan="4"></td></tr>
<tr><td>기 각 일</td><td colspan="2">. . .</td></tr>
<tr><td rowspan="2">검사통보</td><td>통 보 일</td><td colspan="2">. . .</td></tr>
<tr><td>처리결과</td><td colspan="2">. . .</td></tr>
<tr><td colspan="2">비 고</td><td colspan="3"></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인 상 서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통 반)		
등록기준지					
신 장		얼 굴		머리모양	
머 리 색		눈 썹		귀	
눈		입		이	
음 성		수 염		몸 집	

특 징	
도주 당시의 옷	
휴 대 품	
배회 또는 잠복할만한 장소	
비 고	

년 월 일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3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장**

제 목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 의 자	지문원지작성번호	구속영장청구번호

죄 명		
발각원인	인지, 고소, 고발, 자수	수리전산입력
접 수	. . .	
구 속	. . .	
석 방	. . .	
의 견		
증 거 품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압 수 물 총 목 록

번호	품종	수량	기록정수	비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기 록 목 록

서 류 표 목	진술자	작성 연월일	정 수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 발 신

제 목 **의견서** 특별사법경찰관

피 의 자	
죄 명	
범 죄 사 실	별지와 같음
적 용 법 조	
전과 및 검찰 처분관계	
의 견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7호서식]

참 고 인 등 소 재 수 사 지 휘 부

<table>
<tr><td>사건번호</td><td></td><td>송치일자</td><td></td><td>조사담당자</td><td></td><td>과 장</td></tr>
<tr><td rowspan="2">피 의 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 rowspan="2"></td></tr>
<tr><td>죄 명</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6">참고인
(고소인,
고발인)</td><td>성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계 장</td></tr>
<tr><td>성별 및 연령</td><td>남 · 여</td><td>세</td><td>직 업</td><td colspan="2"></td><td rowspan="4"></td></tr>
<tr><td>주 거</td><td colspan="5"></td></tr>
<tr><td>등록기준지</td><td colspan="5"></td></tr>
<tr><td>기타참고사항</td><td colspan="5"></td></tr>
<tr><td>형 제 번 호</td><td colspan="3">형제 호</td><td>주임검사</td><td colspan="2"></td></tr>
<tr><td>결 정 일 자</td><td colspan="3"></td><td>공소시효</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7">소 재 수 사 지 휘</td><td></td></tr>
<tr><td>지 휘 일 자</td><td>지 휘 관 서</td><td>보 고 일 자</td><td colspan="3">보 고 내 용</td><td>확 인</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추 가 송 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송부합니다.	
피 의 자	
이 전 에 송 치 한 사 건 명	
송 치 연 월 일	년 월 일
사 건 번 호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기 관 명)	검사지휘		
	년 월 일		
제 호 년 월 일	구속	불구속	비고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귀청에서 기소중지된 아래 사람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세)		
	직 업			
	주 거	(통 반)		
죄 명				
송치연월일	년 월 일		사건번호	제 호
발 견 경 위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0호서식]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

귀청 형제 호로 참고인중지된 피의자 에 대한 사건 관련 참고인 등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통 반)	
	전 화	(자택)	(직장)
피 의 자		죄 명	
송 치 연 월 일		년 월 일	사건번호 제 호
발 견 경 위			
비 고			
첨 부	1. 소재수사보고서 부 2. 진술조서 부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1호서식]

피 의 자 등 소 재 발 견 처 리 부

순 번	1	2	3
피 의 자 또 는 참 고 인			
소재발견일자			
소재발견사유 (검거, 재기신청)			
소재발견 보고일			
죄 명			
수 배 해 제 일 자			
재기 전 사건번호			
송 치 일 (송 치 의 견)			
담 당 자			
비 고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2호서식]

촉 탁 서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촉 탁**	
다음 사항을 촉탁하오니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년 제 호
피 의 자	
죄 명	
촉 탁 사 항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3호서식]

회 답 서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회 답**
제 호(년 월 일)에 의한 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210mm×297mm [백상지 (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4호서식]

범 죄 사 건 부

사 건 번 호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수 리		. . . :	. . . :
구 분		고소・ 고발・자수・신고・현행범 기타	고소・고발・자수・신고・현행범 기타
수 사 담 당 자			
피의자	성명 및 성별	(남・여)	(남・여)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직 업		
	주 거		
조 회		컴퓨터・지문・사진・수법・지명 기타	컴퓨터・지문・사진・수법・지명 기타
죄 명	수 리		
	송 치		
범 죄	일 시	. . . :	. . . :
	장 소		
피 해 정 도			
피 해 자			
체포・구속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영장		
	인치구금		
석방일시 및 사유			
송 치	연 월 일	. . .	. . .
	번 호	제 호	제 호
	의 견		
압 수 번 호		압제 호	압제 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제 호	제 호
검 사 처 분	연 월 일	. . .	. . .
	요 지		
판 결	연 월 일	. . .	. . .
	요 지		
비 고			
범죄원표	발생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검거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피의자표	. . . 제 호	. . . 제 호

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5호서식]

압 수 부

번호		범죄 사건부 번호	압수 연월일	압수물건		소유자의 주거 성명	피압수자의 주거 성명	보관자 확인	취급자 확인	처분		비고
압수부	압수물			품종	수량					연월일	요지	

210㎜×297㎜[백상지(80g/㎡)]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법무부 (형사기획과) 02 - 2110 - 3269~70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조 삭제 <1981.12.31>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은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5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⑥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12.8>
[전문개정 2008.6.13]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광역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8.11> [전문개정 2008.6.13]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2010.5.4, 2011.7.14, 2011.7.21, 2012.1.17, 2012.6.1, 2013.3.23, 2014.12.30, 2015.8.11, 2016.1.6, 2016.5.29, 2016.12.20, 2017.7.26, 2017.12.19, 2018.12.18, 2019.12.10, 2020.12.8>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의2.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단속 사무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16.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나.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21의2.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22.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의2. 삭제 <2009.4.22>
24.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지역본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동물검역관으로 임명되거나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삭제 <2017.12.19>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9.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2의2. 「동물보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4.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6.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7.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8.6.13]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4.22, 2009.6.9, 2010.1.1, 2010.2.4, 2010.5.4, 2011.4.28, 2011.5.19, 2011.5.30, 2011.7.21, 2011.7.28, 2011.8.4, 2011.9.15, 2012.1.17, 2012.2.1, 2012.6.1, 2013.6.4, 2013.7.30, 2014.12.30, 2015.2.3, 2015.8.11, 2015.12.22, 2016.1.6, 2016.5.29, 2016.12.20, 2017.1.17, 2017.12.19, 2018.12.18, 2019.4.2, 2019.8.27, 2020.1.29, 2020.12.8>

1.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의2. 제5조제4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
5.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산림 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나.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

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11. 제5조제1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마.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약사법」 제42조, 제4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1조(「약사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제66조, 「화장품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를 위반한 범죄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어선법」에 규정된 범죄 및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제5조제21호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나. 제5조제21호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

다. 제5조제21호다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7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8조에 규정된 범죄

라. 제5조제21호라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규정된 범죄

18의2. 제5조제21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검역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범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물환경보전법」

다. 「소음·진동관리법」

라. 「화학물질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 「환경분쟁 조정법」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 「먹는물관리법」
거. 「토양환경보전법」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머. 「수도법」(제83조제1호만 해당한다)
버. 「지하수법」(제37조제3호만 해당한다)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만 해당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 「악취방지법」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 「습지보전법」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로. 「환경보건법」
모. 「석면안전관리법」
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20의2. 삭제 <2009.4.22>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40조, 제46조, 제49조, 제52조, 제61조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

22. 제5조제2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3.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저작권법」 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6.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범죄

28.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가축방역관 또는 동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식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33. 삭제 <2017.12.19>
34.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해양환경관리법」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라. 「습지보전법」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아. 「어촌·어항법」(제45조만 해당한다)
자. 「항만법」(제28조만 해당한다)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36. 제5조제3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37. 제5조제4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39. 제5조제4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
39의2. 제5조제42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41. 제5조제4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42. 제5조제45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3. 제5조제46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4. 제5조제47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5. 제5조제48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46. 제5조제49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7. 제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원자력안전법」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된 범죄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제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죄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
48. 제5조제5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117조에 규정된 범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
49. 제5조제5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50. 제5조제5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다.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전문개정 2008.6.13]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0.6.8, 2019.4.30>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4>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조(선장과 해원 등) ①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2.31, 2012.3.21, 2018.10.16>
[전문개정 2008.6.13]
[제목개정 2018.10.16]

제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 ①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4급 이상의 직원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8조 삭제 <2020.12.15>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제15호·제18호·제19호·제21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1호·제32호 및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제473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77조·제478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7.24, 2015.8.11>
[전문개정 2008.6.13]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제12조(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부칙 <제380호,1956. 1. 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4257년 총령 제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08호,1961. 5. 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1961. 12. 1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1962. 9. 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호,1963. 3. 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호,1963. 9. 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0호,1963. 11. 2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호,1964. 7. 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호,1966. 3. 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호,1968. 7. 1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호,1970. 6. 1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4호,1974.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8호,1975.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4호,1976. 12. 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호,1977.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2호,198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4.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5. 군사원호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원호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8.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사법경찰권)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 군사기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법회의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1.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제4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제4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군법회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44호,198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 관서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③내지 ⑤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3993호,1987. 1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군법회의법"을 각각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183호,1989.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4245호,1990. 8.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4호,1991. 3.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중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559호,1993. 6.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어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공무원

제6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5조제2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어선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②생략

부칙 <제4928호,1995.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9호,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부칙 <제5079호,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영림서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5429호,1997. 12.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9호,1998. 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및 제11호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28호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며, 동조제31호 및 제32호중 "통상산업부"를 각각"산업자원부"로 한다.

⑮내지 <34>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667호,1999.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81호,1999.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국가정보원직원)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21호,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5호 및 제6조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982호,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6호중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한다.

<77> 및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041호,1999. 1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7호·제33호 내지 제35호 및 제6조제22호·제28호 내지 제30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4호,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아목중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93호,2000.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 및 제6조제12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각각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6311호,2000.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6호 및 제6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9호,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각각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6517호,2001. 9.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 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부칙 <제6893호,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911호,2003. 5.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생략

부칙 <제6924호,2003. 7. 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7호,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⑦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7170호,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악취방지법

제4조 생략

부칙 <제7255호,2004.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중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을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7326호,2004. 12. 31.>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1호,2005.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655호,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7799호,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964호,2006. 7.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6호,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370호,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8466호,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728호,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형법」 제5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976호,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3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037호,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109호,2008.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9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13호,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⑩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625호,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627호,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770호,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음·진동관리법」

<21>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73호,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⑫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918호,2010.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으로 한다.

부칙 <제9932호,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2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5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01호,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276호,2010. 5.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8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6조제35호부터 제3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9호,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노동청·지방노동청 지청"을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4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61호,2010.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로복지기본법」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615호,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16호,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629호,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763호,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 중 "제37조제7호"를 "제37조제3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839호,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6호 중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를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로 한다.

부칙 <제10885호,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8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한다.

제6조제25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

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0977호,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037호,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041호,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7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1048호,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161호,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제28호나목 및 제6조제25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본다.

부칙 <제11267호,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환경분쟁 조정법」

부칙 <제11401호,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같은 법 제1조제38호 및 제39호에 규정된 범칙행위는 제외한다)"를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한다.

부칙 <제11458호,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2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하고, 제6조제39호 중 "「종자산업법」 제169조, 제171조 및 제17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74조에 규정된 범죄"를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459호,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8호다목 및 제6조제25호다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각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및 제9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1호ㆍ제32호 및 제3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2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을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34호 및 제4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29호 및 제30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37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62호,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19>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80호,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카목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943호,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부칙 <제13186호,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3426호,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자치총경"을 "자치경무관·자치총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제35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제473조"로, "같은 법 제360조·제361조"를 "같은 법 제477조·제478조"로 한다.

<26>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456호,2015. 8.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01호,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3729호,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16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83호,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6조제38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411호,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2호,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3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39호,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4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53호,2017. 12.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52호 및 제6조제49호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8일
2. 제6조제14호바목의 개정규정 중 「약사법」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2018년 10월 25일

부칙 <제15830호,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을 "국립공원공단 또는"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을 "국립공원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5976호,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5호,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6413호,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557호,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8호 중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을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6568호,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22>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768호,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6902호,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8조만 해당한다)

<24>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570호,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46호,2020.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5조 제5항、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8. 9. 21.] [예규 제1199호, 2018. 9. 21., 일부개정]

법무부(형사기획과)02 - 2110 - 354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명 제청 등) 법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 3, 제9조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소속 관서의 장(법 제7조의2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제7조의3의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관서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소속 관서 인사담당관이 기명날인한 인사기록카드
2.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지명 제청·추천 대상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무원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진 1장 (5㎝×3.5㎝)

제3조(지명기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유효기간은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지청장의 처리) ① 관할 소속 관서의 장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제청(추천)서를 접수한 지청장은 지명 제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과 지명 제청 또는 추천된 자(이하 "지명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 등을 근거로 제청인원의 적정 여부, 지명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제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지명 제청(추천)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제5조(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하는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④ 간사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심의회가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고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심의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본다.

1. 벌금 2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기소된 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1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경우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게 될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벌금 2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처분을 받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기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검사장의 지명)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서를 제출받은 후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고,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한 경우에는 당해 지청장을 경유하여 지명을 제청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지명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관서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소속 관서별로 지명 및 교부상황을 기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명서 재발급)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명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소속 관서장에게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사유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명서를 재발급 받은 후 분실된 지명서를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지명철회) ① 관서장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때 또는 보직이 변경되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에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관서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 신청이 있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철회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철회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지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폐기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철회 결정에 대하여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한 소속 관서장 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여 지명이 철회된 자는 재차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없다.

제8조의2(지명 관리실태 등의 점검) ① 소속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명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퇴직 전보 등 변동사항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명철회 제청 이행 여부, 지명서 반환 이행 여부, 업무처리 실적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철회 대상자 및 지명서를 반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관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건처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명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 또는 5급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은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 외에 해당관서의 수사업무를 감찰할 때 수시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세무공무원 등에의 준용) ①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의 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지명에 준용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지명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세무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과장 또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로, "소속 관서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②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의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지명에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조사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총장"으로,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과장"으로, "소속 관서장"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85호,2003. 12. 24.>

이 지침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2009. 11.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984호,2011. 9.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09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993호,2012. 5. 3.>

개정된(제10조 제1항 일부 개정) 본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호,2015. 1.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호,2015. 5.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2016. 9. 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호,2018. 9. 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제청(추천)합니다.

200 . . .

(기관명)장 (직인)

지명제청 인원	명											
직급별 지명제청 인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할지역												
직무범위												
지명제청 사유												

※ 붙임 : 지명 제청(추천) 대상자 명단 1부

210㎜×297㎜(일반용지 75g/㎡(재활용품))

【첨부용】

지명 제청(추천)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현재 담당업무	비고

210㎜×297㎜(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 년 월 일	
특사경 지명시 수사와 병행할 행정업무 내용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가입 노조의 명칭		
	가입 시기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기관명)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5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의 견 서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 . . .

○○검찰청 ○○지청장 (서명 또는 날인)

의 견

※ 부적격자, 사법경찰관리 구성비율, 적정인원, 전년도 업무처리실적 등에 대한 의견 기재

210㎜×297㎜(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심 의 서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장의 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함

소 속 관 서		
제청(추천) 인 원		
검 토 사 항	부 적 격 자	
	사법경찰관리 구 성 비 율	
	적 정 인 원	
	전 년 도 업무처리실적	
	직 무 범 위	
	기 타	
종 합 의 견		

200 . . .

○○검찰청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1. 규격 및 제식(색상과 재질 포함)

가. 규격 및 제식

나.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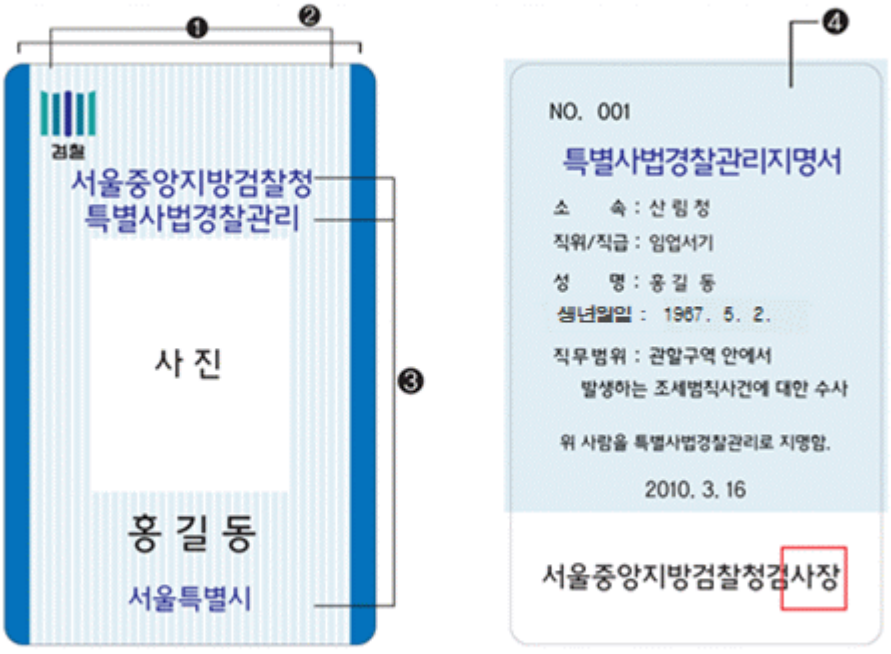

○ 색도

구 분	색 도

❶	C 100% + M 50%
❷	C 8%+ K 4%
❸	C 100% + M 100%
❹	C 8%+ K 4%

※ C(Cyan): 푸른색, M(Magenta): 붉은색, Y(Yellow): 노란색
K(Black): 검은색

다.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2. 기재사항

가. 공무원증의 앞면과 뒷면(글자의 크기·종류 및 기재방식)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기 재 방 식
①관할명	13포인트	윤돋움체 130	가운데 정렬
②사진			30.0㎜×38.0㎜
③한글 성명	17포인트	윤돋움체 130	가운데 정렬
④소속기관	12포인트	윤돋움체 130	가운데 정렬
⑤발급번호	9포인트	윤돋움체 130	· 왼쪽 정렬, No.(일련번호)
⑥▪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8포인트	윤돋움체 130	왼쪽 정렬
⑦ 직무범위	8포인트	윤돋움체 130	왼쪽 정렬
⑧ 발급일	9포인트	윤돋움체 130	가운데 정렬
⑨발급기관장	12포인트	윤돋움체 130	직인크기10㎜×10㎜

【별지 제6호 서식】

지 명 서 관 리 대 장

소속관서명 :

연번	부 서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직무범위		지 명 유 형 (신규,재발급)	해 제 (철 회)		
						근거조문	자격		해제(철회) 일 자	사 유	지 명 서 반납일자

※연번은 지명서 발급번호로 함

210mm×297mm(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재발급 신청서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아래 사람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 . .

(기관명)장 (직인)

대 상 자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재 발 급 신 청 사 유		

210㎜×297㎜(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아래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를 신청합니다.

200 . . .

(기관명)장 (직인)

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지명서 발급일자		
철회 신청사유		

※ 붙임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1부

210㎜×297㎜(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점 검 결 과 보 고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관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명철회 제청 이행 여부, 지명서 반환 이행 여부, 업무처리내역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검찰청 ○○지청장 (서명 또는 날인)

점 검 대 상	
점 검 사 항	"별 첨 과 같 음"
점 검 결 과 및 조 치 의 견	

210㎜×297㎜(일반용지 75g/㎡(재활용품))

검찰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15. 10. 15.] [예규 제811호, 2015. 10. 15., 제정]

대검찰청(정책기획과)02 - 3480 - 24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사실 및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사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의 수사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습수사관의 선발) ① 차장검사("차치지청 이상"에 근무하는 차장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지청장("부치지청 이하"에 근무하는 지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수사 부서(검사실, 수사ㆍ조사과, 검사직무대리실) 근무 경력이 없는 8급 수사관 중에서 실습수사관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7급으로 승진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수사실무실습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수사 부서(검사실, 수사ㆍ조사과, 검사직무대리실) 근무 경력이 없는 7ㆍ9급 수사관도 희망 여부, 필요성, 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습수사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실습수사관을 선발할 때에는 실습 적정 인원이나 시기, 실습수사관의 담당 업무 지장 초래 정도, 수사실무실습 경험 유무, 승진까지의 잔여 기간 등 근무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본 지침 시행 전에 수사실무 중심의 실습을 한 경우는 본 지침에 따라 실습한 것으로 본다.

④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수사실무실습의 총괄 책임자로 실습수사관과 지도담당관 및 소속 부서장 등을 독려하는 등 실효적인 수사실무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조(실습수사관 관리부서) 각 청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하 "총무과장 등"이라 한다)은 실습 대상자 선정ㆍ관리, 수사실무실습 일지ㆍ수사실무실습 지도결과 평가서의 보존ㆍ관리, 수사실무실습 지원, 상시학습 관리 등을 총괄한다.

제4조(수사실무실습 시행 보고) ① 본 지침에 따른 수사실무실습을 실시하는 청은 실습수사관 업무대행자 지정 등 업무 공백 보완 방법을 포함한 구체적 실시계획을 시행 7일 전까지, 실시결과를 실습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지침에 따른 수사실무실습을 실시하지 않는 청은 그 구체적 사유와 차회 실시 시기 등을 상반기에는 5월 30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수사실무실습 지도

제5조(지도담당관 등의 지정·변경) ①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검사 또는 조사과·수사과 사무관, 검사직무대리, 수사 능력과 경험을 갖춘 6·7급 수사관을 실습수사관과 1:1의 비율로 지도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6·7급 수사관인 지도담당관은 자신이 근무 중인 검사실의 검사나 소속 부서의 장 등과 협의하여 실습수사관을 지도하는 등으로 실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정기 인사, 휴직, 파견, 주요 현안 및 기타 사유 발생 시 지도담당관 또는 실습수사관을 변경하거나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수사실무실습 기간과 시간) 수사실무실습은 일반직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에는 가급적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하반기에는 가급적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한다.

1. 5일간 연속하여 총 40시간 이상 지도담당관실에서 근무
2. 2개월간 매주 하루를 선정하여 13:00부터 18:00까지, 1주일에 5시간씩 총 40시간 이상 지도담당관실에서 근무
3. 기타 청별 사정에 맞는 적정한 방법으로 총 40시간 이상 지도담당관실에서 근무

제7조(사건의 배당) ① 각 청의 배당권자는 수사실무실습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을 실습수사관에게 배당하되, 신건뿐만 아니라 지도담당관실에서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도 배당할 수 있다.

② 각 청의 배당권자는 실습 기간 중 총 4건을 실습수사관 지정 사건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 사건 난이도, 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당 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도담당관은 실습수사관에게 실습 기간 동안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및 부검 또는 변사체 검시 참관 기회를 각 1회 이상 부여 하되, 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무관, 검사직무대리나 6·7급 수사관인 지도담당관은 영장 집행 및 부검 또는 변사체 검시 등에 실습수사관을 참여 또는 참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 검사 또는 해당 사건 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각 청의 배당권자는 실습수사관에게 사건을 배당할 때에는 사건기록 하단에 "별지서식1"의 ‘수사실무실습 배당사건’ 부전지를 부착한다.

제8조(수사실무실습 지도 원칙) ① 지도담당관은 실습수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지도한다. 특히 실습수사관이 직접 사건 조사 또는 조사 참관 등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조사(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포함)
2. 참고인 조사(진술조서 작성 포함)
3. 수사보고서 작성
4. 사건기록 검토 및 기록검토보고서(별지서식2 참조) 작성
5. 각종 영장 초안 작성
6. 공소장, 불기소 결정문 등 결정문 초안 작성
7. 기타 수사관의 자세나 조사ㆍ신문기법 등 수사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도담당관은 배당된 사건 부전지에 실습수사관이 해야 할 수사실무실습 내용과 그 기한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지도한다.

제9조(실습수사관 업무대행자 지정) 실습수사관 소속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이 수사실무실습 활동을 하는 경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실습수사관의 담당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실습수사관 집합교육)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실습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예를 들어, 기획 검사가 수사실무실습 시작 전 2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 실시, 1시간은 ‘ 수사와 재판 과정 개요 ’ , 1시간은 ‘ 기록 검토 및 기록검토보고서 작성법,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및 조서 작성법 ’ 등에 관한 강의 실시)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담당관의 재량) 지도담당관은 본 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실무실습 지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실습수사관의 자세) ① 실습수사관은 수사실무실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도담당관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고 자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실습수사관은 수사실무실습 지도를 통해 알게 된 수사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평가

제13조(수사실무실습 일지 작성) ① 실습수사관은 실습기간 동안 자신이 수행한 활동내용을 "별지서식3" 양식에 맞춰 기록한다.

② 실습수사관은 수사실무실습을 마친 후 수사실무실습 일지 원본을 총무과장 등에게 제출한다.

제14조(수사실무실습 지도 평가) ① 지도담당관은 수사실무실습 지도를 종료한 후 "별지서식4" 양식에 맞춰 수사실무실습 지도결과 평가서를 1부 작성하고 소속 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 총무과장 등에게 제출한다.

② 지도담당관은 실습수사관의 태도, 성실성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의 장을 통해 기관장에게 포상 또는 희망보직 부여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5조(수사실무실습을 위한 집기 등 비치) ① 지도담당관은 검사나 총무과장 등의 지원을 받아 실습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 지도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집기를 해당 실습수사관이 배치된 사무실에 실습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 등은 실습수사관의 수사실무실습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제1항의 사무집기 등을 비치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상시학습 인정) 각 청은 수사실무실습의 90% 이상을 이수하고 수사실무실습 지도결과 평가에서 ‘중’ 이상을 받은 실습수사관에게 상시학습 40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제811호,2015. 10. 15.>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수사실무실습 배당사건 부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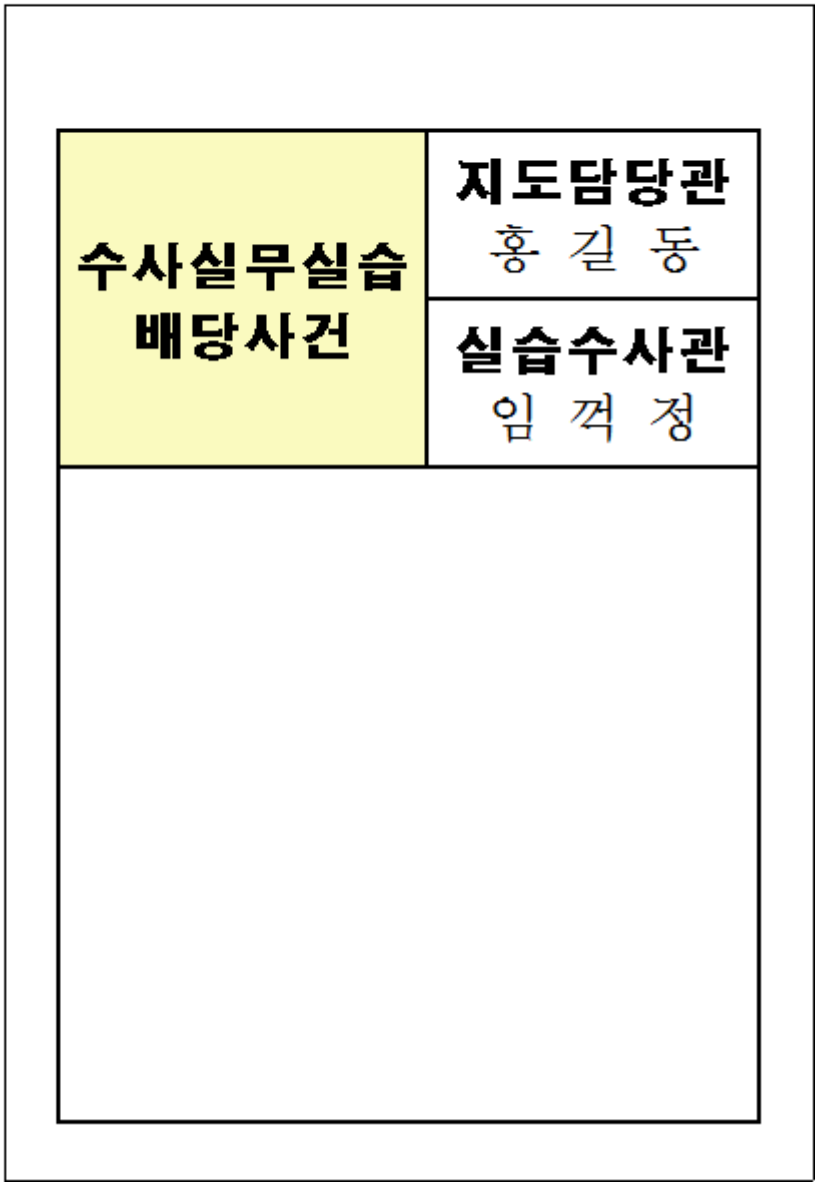

별지서식 2

기 록 검 토 보 고 서(예시)

지도담당관	실습수사관

사 건 표 시	피의사실요지 및 쟁 점	증 거 관 계	보완 수사	비 고 (결론 등)
85형제 5000 사 기, 김갑동	1984. 1. 1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희망다방에서 피해자를 취직시켜 주겠다고 기망하고 금 100만원 편취 **○ 쟁점** 피의자에게 교부된 금원이 차용금 명목인지,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여 교부된 것인지의 여부	**○ 피의사실 부합 증거** ·피해자 이을동의 진술(50p) -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주었다. ·참고인 박병동의 진술(60p) - 피해자가 취직하고자 상당기간 고민하는 것을 보았으며 피의자에게 돈을 주었으니 곧 취직될 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 **○ 피의자 변소 부합 증거** ·참고인 최청동의 진술(70p) - 피의자는 남을 취직시켜 줄 입장도 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 피의자 변소 확인 필요** - 피의자가 실제 취직시켜줄 수 있는 노력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지 등을 주변 참고인 등을 통해 확인 필요	

별지서식 3

수사실무실습 일지

❑ 지도담당관 : _____

1. 실습수사관 인적 사항

소속		성명	

2. 수사실무실습 기간

기간	. . . ~ . . .

3. 수사실무실습 활동 내용(배당사건 위주)

사건번호 사건명	실습내용
15형제12345 횡령 등	피의자 직접 조사 / 구속전 피의자신문시 참여 지도담당관이 조사 도중, 본건 부동산의 신탁 관계, 처분권능 등에 관한 보완 조사를 지시하여, 보완

1. 실습일지는 형식,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기재함(필요하면 별지 활용가능)

2. 실습내용은 실무실습 내용, 특이점 등을 중심으로 기재함

4. 수사실무실습 소감(자유롭게 기재)

별지서식4

수사실무실습 지도결과 평가서

❑ 지도담당관 : _____

1. 실습수사관 인적 사항

소속		성명	

2. 수사실무실습 평가(종합 평가)

평 정 요 소	평 정 결 과		
종 합 평 정	상( )	중( )	하( )
지도 담당관 종합 의견 (업무능력, 업무자세, 발전가능성, 기타)			
실습 시간 (상시학습인정 관련)			

평정결과 란에는,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에 (✓)으로 표시

실습 시간 란에는, 수사실무실습에 직접 참여한 시간을 시간 단위로 기재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지도담당관) (인)

확인자(부 서 장) (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시행 2021. 1. 8.] [훈령 제1001호, 2021. 1. 8., 타법개정]

경찰청(수사심사정책담당관)02 - 3150 - 2726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관의 수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수사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 경찰관서장 ”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이송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이송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수사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을 이송받았을 경우) ①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이송받아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그 밖의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이하 "소속 수사부서장 ”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편 수사에 관한 사항

제1장 통칙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관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제척)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
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②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기피 신청 방법과 대상) ① 제9조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 ”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사부서의 장은 즉시 수사부서장에게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 ①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
2. 동일한 사유로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4. 제9조 후단 또는 제9조제2항에 위배되어 기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수사부서장은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해당

기피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공정수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 2명과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공정수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지정 사실 또는 제6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기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⑨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수용 여부 결정일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중지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방지 등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피) 소속 경찰관서장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회피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회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 ”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사건의 단위)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사가 청구기각 결정을 한 즉결심판 청구 사건
2.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제15조 <삭제>

제2절 수사의 조직

제16조(수사의 조직적 운영)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경찰관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정한 통제를 도모하고, 수사담당부서 이외의 다른 수사부서나 그밖에 관계있는 다른 경찰관서와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락하여, 경찰의 조직적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수사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수사에 대한 지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수사관할이 수 개의 시·도경찰청에 속하는 사건
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 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제18조(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체계적인 수사 인력·장비·시설·예산 운영 및 지도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경찰서장)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 관할 내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수사간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의 수사간부는 소속 경찰관서장을 보좌하고 그 명에 의하여 수사의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사경찰관 등) ① 경찰관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범죄의 수사에 종사한다.

② 경찰관 이외의 수사관계 직원이 경찰관을 도와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사건의 지휘와 수사보고 요구) ① 경찰관서장과 수사간부(이하 "수사지휘권자”라 한다)는 소속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진행에 관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수사에 관한 보고) ① 경찰관은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신속히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별표1의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에 규정된 중요사건이 발생 또는 접수되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별표2의 보고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

도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수사지휘) ① 제23조제2항의 보고를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경찰청 또는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지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제25조(수사지휘의 방식) ①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수사지휘권자가 경찰관서 내에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 수사지휘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으며, 사후에 신속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제1항의 수사지휘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또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이미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3. 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③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휘내용을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자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수사지휘권자는 신속하게 지휘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수사지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한 서면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지휘의 내용) ① 수사지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1. 범죄인지에 관한 사항
2. 체포·구속에 관한 사항
3.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4.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에 관한 사항
5. 「수사준칙」 제51조제1항 각 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사건 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 관한 사항
7. 수사지휘권자와 경찰관 간 수사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지휘를 요청받은 사항

8.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 대해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1. 제36조의 수사본부 설치 및 해산
2. 제24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수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4. 공보책임자 지정 등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③ 경찰관서 내 수사지휘의 위임과 수사서류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경찰서장의 수사지휘 건의) ① 경찰서장은 사건수사를 함에 있어서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가 필요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수사지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사지휘건의를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신속하게 지휘한다.

제28조(지휘계통의 준수) ① 시·도경찰청장이 소속 경찰서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을 준수하여 제20조의 수사간부를 통하거나, 직접 경찰서장에게 지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이 관서 내에서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도 지휘계통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지휘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0조(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① 경찰관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은 신속하게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재지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신속하게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⑥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

고, 시·도경찰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신속하게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⑨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수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속 국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수사지휘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소속 국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신속하게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⑫ 시·도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와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상급경찰관서장에 대한 이의제기) ①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시·도경찰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상급관서용)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상급경찰관서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제32조(긴급한 경우의 지휘) ① 시·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각각 제30조제5항·제8항·제11항, 제31조제2항·제4항에 따라 지휘함에 있어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이의심사위원회와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휘한 시·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각각 신속하게 수사이의심사위원회와 경찰수사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이의제기 내용
2.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또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한 사유 및 지휘내용

제33조(이의제기에 대한 지휘와 수명)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찰관,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은 각각 제30조제5항·제8항·제11항, 제31조제2항·제4항, 제32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제34조(이의제기 목록제출) 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장은 각각 해당 경찰서 및 시·도경찰청 내에서 발생한 이의제기사건 목록을 분기별로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불이익 금지 등) 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찰관,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이의제기를 한 경찰관,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은 그 이의제기를 이유로 인사상, 직무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수사본부) ①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고위직의 내부비리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특별하게 중시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는 그 직무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가 가능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사본부의 설치절차와 운영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수사서류

제37조(수사서류의 작성) ①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40호서식 그리고 본 규칙의 별표 3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74호서식에 따른다.

② 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로 평이한 문구를 사용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적음
3.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임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임
5. 지명, 인명의 경우 읽기 어렵거나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적음

제38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문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제39조(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 다만, 전자문서 출력물의 간인은 면수 및 총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말미에 적어야 한다.
⑥ 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무인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①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통역인을 위촉하여 그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그 사실과 통역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었다는 사실을 적고 통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번역인에게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제출한 서면 그 밖의 수사자료인 서면을 번역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기재한 서면에 번역한 사실을 적고 번역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서류의 대서) 경찰관은 진술자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신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대신 작성한 내용이 본인의 의사와 다름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그 확인한 사실과 대신 작성한 이유를 적고 본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문자의 삽입·삭제) ①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임의로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적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함
2.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적음
3. 1행 중에 두 곳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
4. 여백에 기재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몇자 추가"라고 적음

②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몇자 추가" 또는 "몇자 삭제"라고 적고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서류의 접수)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 접수연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접수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제2장 수사의 개시

제44조(수사의 개시) 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경찰 훈방) ① 경찰관은 죄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위원회의 조정·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훈방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하고 반드시 그 이유와 근거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제46조(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 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신고사건 인계) 경찰관은 접수된 피해신고가 제7조 및 「경찰수사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책임수사가 가능한 경찰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9조(고소·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0조(고소·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인 경우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인 경우
6.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에 따라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사건인 경우. 다만, 고발로 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한다.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인 경우. 이때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한한다.

제51조(자수사건의 수사) 경찰관은 자수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수인이 해당 범죄사실의 범인으로서 이미 발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와 진범인이나 자기의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해당 사건만을 자수하는 것인지 여부를 주의하여야 한다.

제52조(고소 취소에 따른 조치)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그 고소의 취소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3조(고소·고발사건 수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고소권의 유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여부, 친고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소정의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가의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인지 여부, 고발이 소송조건인 범죄에 있어서는 고발권자의 고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무고,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
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

제54조(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향후 증거수집 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

제55조(범칙사건의 통지 등) ① 경찰관은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범칙사건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관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세무공무원 등이 현장조사, 수색, 압수를 위한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변사사건 발생보고)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변사자의 검시) ① 「경찰수사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한 때에는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 인식한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등) ① 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 변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과 성별
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
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

4. 사망의 추정연월일
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7. 발견일시와 발견자
8.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
9. 소지금품 및 유류품
10. 착의 및 휴대품
11. 참여인
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

② 경찰관은 변사자에 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전신의 형상·착의 그 밖의 특징있는 소지품의 촬영, 지문의 채취 등을 하여 향후의 수사 또는 신원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시체의 인도) ① 「경찰수사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시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보) ① 경찰관은 변사체의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망지역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사망지역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61조(출석요구)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및 같은 법 제221조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의 조사) ①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경찰관서 사무실 또는 조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 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이외의 경우 피조사자가 경찰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우편조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3조(임의성의 확보) ①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자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조사 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조사를 상당 시간 중단하거나 회차를 달리하거나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도 다시 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

제66조(대질조사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 및 그 시기와 방법에 주의하여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위압을 받는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공범자의 조사) 경찰관은 공범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분리조사를 통해 범행은폐 등 통모를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대질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제68조(증거의 제시) 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당시의 피의자의 진술이나 정황 등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69조(직접진술의 확보) ① 경찰관은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사망, 정신 또는 신체상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고, 그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피의자, 변호인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하게 하거나 검사에게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1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경찰수사규칙」 제39조제1항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였을 때, 범죄 사실 및 정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질문은 지양하여

야 한다.

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출생지,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설립목적, 기구
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
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
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의한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
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연월일)
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연월일)
7. 현재 다른 경찰관서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해당 수사기관의 명칭)
8.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해당 법원의 명칭)
9. 병역관계
10.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
11.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12.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
13.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14.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
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6.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
17.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
1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각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21.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16조 각 호의 사항

제72조(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경찰수사규칙」 제39조제2항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상황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피해회복의 여부
4. 처벌희망의 여부
5. 피의자와의 관계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제73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며 범의 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미수·기수의 구별,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진술자의 진술 태도 등을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수갑·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4조(진술서 등 접수) ① 경찰관은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기, 자술서, 경위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진술인이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진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대신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5조(수사과정의 기록) 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수갑·포승 등을 사용한 경우, 그 사유와 사용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6조(피의자의 진술에 따른 실황조사)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흉기, 장물 그 밖의 증거자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증명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 그 발견의 상황을 실황조사서에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제77조(실황조사 기재) ①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실황조사서에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244조에 따라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는 미리 피의자에게 제64조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이를 조서에 명백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변호인 접견·참여

제78조(변호인의 선임) ① 경찰관은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 중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거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선임 또는 변호인의 신문과정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9조 <삭제>

제80조(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절차) ① 유치장 입감 피의자(조사 등의 이유로 일시 출감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은 유치장관리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유치장관리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조제2항의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신분증
2. 별지 제23호서식의 접견신청서
③ 경찰관은 변호인 등이 변호사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변호사협회 회원명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접견절차에 따라 접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유치인보호주무자는 변호인 접견신청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접견장소와 담당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접견 장소 및 관찰) ① 변호인 등의 접견은 경찰관서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별도의 지정된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관서 내 조사실 등 적정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등과의 접견에는 경찰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금지물품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며 이러한 물품의 수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피의자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는 경우의 접견) ①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 유치장에 입감되지 않은 상태로 신병이 경찰관서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은 피의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에서 접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견 신청의 접수처리는 제80조와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3조(피의자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의 접견) ① 현행범인 체포 등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 변호인 등의 접견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 신병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현장담당부서"라고 한다)에서 담당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접견신청을 받은 현장담당부서 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 등의 접견이 이루어질 경찰관서와 예상접견시각을 고지하고 접견이 이루어질 경찰관서의 담당수사팀 또는 유치장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견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1항의 접견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현장담당부서의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병 인수와 함께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사실을 통보받은 유치장관리부서 또는 담당수사팀의 경찰관은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에 따라 접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84조(접견 시간 및 횟수) ① 유치장 입감 피의자와 변호인 등 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하여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다.

② 유치장에 입감되지 않은 체포·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시간 외에도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영상녹화

제85조(영상녹화물의 제작·보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때에는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 중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하나는 보관한다.

③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6조(봉인 전 재생·시청)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절 수배

제87조(수사의 협력)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체포·출석요구·조사, 장물 등 증거물의 수배, 압수·수색·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수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협력을 다른 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8조(사건수배 등) 경찰관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용의자와 수사자료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 및 경찰관서에 통보를 요구(이하 "사건수배 ”라 한다)하거나 긴급배치 등 긴급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89조(지명수배·지명통보 관리 및 감독 부서) 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운영지원담당관이 관리·감독한다.
②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수사과에서 관리·감독한다.
③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과장은 수배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한다.

제90조(수배관리자의 임무) 수배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담당자로부터 의뢰가 있는 자에 대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실시
2. 지명수배·지명통보자에 대한 전산 입력 및 지명수배자료 관리

제91조(지명수배)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

제92조(사건담당자의 지명수배·지명통보 의뢰) ① 사건담당자는 「경찰수사규칙」 제45조에 따른 지명수배 또는 같은 규칙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 또는 전산입력 하여 수배관리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명수배·지명통보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과 주소
2. 인상, 신체특징 및 피의자의 사진, 방언, 공범
3. 범죄일자, 죄명, 죄명코드, 공소시효 만료일
4. 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수배일자, 수배종별 구분
5. 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명칭,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기간, 영장번호 또는 긴급체포 대상 유무
6. 범행 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범죄사실 개요
7.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결과
8. 작성자(사건담당자) 계급, 성명, 작성일시

③ 외국인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의뢰할 때에는 영문 성명,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격, 활동지, 언어, 국적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당자는 지명수배·지명통보의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명수배·지명통보 의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사한 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연고지 거주 여부
2. 가족, 형제자매,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
3. 국외 출국 여부
4.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 여부
5. 경찰관서 유치장 수감 여부

⑤ 제4항 제1호의 "연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종 거주지
2. 주소지
3. 등록기준지
4. 사건 관계자 진술 등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배회처

제93조(지명수배·지명통보 실시) ① 수배관리자는 제92조에 따라 의뢰받은 지명수배·지명통보자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

②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4조(지명수배·지명통보의 책임)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여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수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작성, 지명수배·지명통보의 실시 및 해제서 작성과 의뢰에 대한 책임은 담당 수사팀장으로 한다.
2. 지명수배·지명통보의 실시 및 해제 사항 또는 수배사건 담당자 변경, 전산입력 등 관리책임은 수배관리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최종 승인은 수배관리자가 처리한다.

제95조(지명수배·지명통보 통계)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명수배·지명통보의 발생, 검거 현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에 따라 전산 집계한다.

제96조(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① 다음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저장·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
2.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
3. 지명수배·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자장부와 전자 비치서류는 종이 장부와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7조(지명수배·지명통보 변경) ① 수배 또는 통보 경찰관서에서는 지명수배·지명통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작성된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변경사항을 작성하고 지명수배·지명통보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수배관리자는 영장 유효기간이 경과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재발부 될 때까지 지명통보자로 변경한다.

제98조(지명수배된 사람 발견 시 조치)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이하 "수배관서 ”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 등이 발견된 관할 경찰관서(이하 "발견관서”라 한다)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 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 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에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24시간 내에 「형사소송법」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 및 「수사준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이하 "검거관서”라 한다)에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9조(지명수배자의 인수·호송 등) ① 경찰관서장은 검거된 지명수배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호송을 위하여 미리 출장조사 체계 및 자체 호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거관서로부터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배관서와 검거관서 간에 서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수배대상 범죄의 죄종 및 죄질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를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범한 경우
2.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의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
3. 지명수배자가 단일 사건으로 수배되고 불구속 수사대상자로서 검거관서로 출장하여 조사한 후 신속히 석방함이 타당한 경우

③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제100조(재지명수배의 제한)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제101조(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① 시·도경찰청장은 지명수배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사람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2회 선정하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

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강력범(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방화, 폭력, 절도범을 말한다)
2. 다액·다수피해 경제사범, 부정부패 사범
3. 그밖에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적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2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시·관리하여야 한다.

1. 관할 내 다중의 눈에 잘 띄는 장소, 수배자의 은신 또는 이용·출현 예상 장소 등을 선별하여 게시한다.
2. 관할 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읍·면사무소·주민센터 등 관공서, 병무관서, 군 부대 등에 게시한다.
3. 검거 등 사유로 종합 공개수배를 해제한 경우 즉시 검거표시 한다.
4. 신규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게시할 때에는 전회 게시 전단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④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은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제102조(긴급 공개수배)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상습성, 사회적 관심, 공익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자에 대해 긴급 공개수배 할 수 있다.

② 긴급 공개수배는 사진·현상·전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검거 등 긴급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긴급 공개수배 해제의 사유를 고지하고 관련 게시물·방영물을 회수, 삭제하여야 한다.

제103조(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 ①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제104조에 따른 공개수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퍼 나르기, 무단 복제 등 방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안 조치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영물·게시물의 삭제 등 관리 감독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검거, 공소시효 만료 등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공개수배 해제의 사유를 고지하고 관련 게시물·방영물 등을 회수, 삭제하여야 한다.

제104조(공개수배 위원회) ① 국가수사본부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긴급 공개수배 등 공개수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개수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수배 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장은 수사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같은 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⑤ 국가수사본부 공개수배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5월, 11월 연 2회 개최하며 제102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국가수사본부 공개수배 위원회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내 공개수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수사본부 공개수배 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수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5조(공개수배 시 유의사항) ① 공개수배를 할 때에는 그 죄증이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수배를 하는 경우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공개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06조(지명통보된 사람 발견 시 조치) ①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사람(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경찰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등을 고지한 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한 후 「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사건이송서와 함께 통보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통보된 사실 등을 고지받은 지명통보자가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교부받기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여러 건의 지명통보가 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 건마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 경찰관은 즉시 지명통보된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속한 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명수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약속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7조(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 제106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고발사건 중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중지된 자를 발견한 발견관서의 경찰관은 통보관서로부터 수사중지결정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아 피의자를 조사한 후 조사서류만 통보관서로 보낼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상습적인 법규위반자 또는 전과자이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8조(장물수배) ① 장물수배란 수사중인 사건의 장물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를 말한다.

② 경찰관은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조각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범죄수법 공조자료 관리규칙」 제10조의 피해통보표에 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제109조(장물수배서) ① 경찰서장은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2.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3. 보통 장물수배서(그 밖의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②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홍색, 중요 장물수배서는 청색, 보통장물수배서는 백색에 의하여 각각 그 구별을 하여야 한다.

③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10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경찰서장은 장물수배서를 발부하거나 배부하였을 때 별지 제40호서식의 장물수배서 원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장물수배서 배부부에 따라 각각 그 상황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10조(수배 등의 해제) ① 제108조에 규정한 수배 또는 통보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수사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는 제87조에 따라 수사 등의 요청을 한 경우 또는 장물수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1조(지명수배·지명통보 여부 조회) ①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을 수배 조회하여 지명수배·지명통보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접 검거하기 곤란한 때는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 또는 수배관서에 즉시 발견통보를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명수배·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제112조(참고사항 통보) ① 경찰관서장은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제1항의 통보 외에 중요사건, 타에 파급될 염려가 있는 사건 그 밖의 범죄의 수사나 예방에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하여는 관계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3조(유치장의 이용) 경찰관은 피의자의 호송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른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그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구속

제114조(영장에 의한 체포)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및 「경찰수사규칙」 제50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15조(긴급체포)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며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그 밖에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200조의3제3항에 따라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적어야 한다.
③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16조(현행범인의체포) ①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주거, 직업, 체포일시·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적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7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①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18조(체포보고서) 경찰관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구속영장 신청)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제1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같은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검사의 영장청구에 필요한 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20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장을 검사에게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신속히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고, 영장을 반환할 때에는 영장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21조(체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그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인치·구금할 장소 그 밖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를 거쳐 해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는 그 소속법원의 다른 판사에게 서면으로 체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2조(체포·구속영장의 재신청)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4항 및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체포·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1.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
3. 체포·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제123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시 권리고지) 「수사준칙」 제32조는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같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24조(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수사준칙」 제35조와 「경찰수사규칙」 제55조 및 제58조는 「소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경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규정 중 "검사"를 "소년부 판사"로 한다.

제125조(체포·구속 시의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구속할 때에는 각각의 피의자별로 피의사실, 증거 방법, 체포·구속 시의 상황,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검증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조사, 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6조(체포·구속적부심사) ① 경찰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를 거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서에 소정의 사항을 작성하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의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서에 첨부한다.

③ 경찰관은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석방하여야 한다.

제127조(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4조에 따라 체포·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교부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28조(체포·구속장소 감찰)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제2항의 경우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129조(범죄경력 조회 등)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지문 채취, 사진 촬영 등 감식자료를 작성하고, 범죄경력 조회(수사경력자료를 포함한다), 여죄 조회, 지명수배·통보 유무 조회 등 수사와 관련된 경찰전산시스템의 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30조(변호인 선임의뢰의 통지)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31조(피의자와의 접견 등) ① 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의사의 진료(이하 "접견등 ” 이라 한다)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변호인 아닌 사람으로부터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체포·구속된 피의자로부터 타인과의 접견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등의 신청에 응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구속인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구속인교통부,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구속인수진부에 그 상황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⑤ 그 밖에 피의자 접견 등과 관련된 사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다.

제132조(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처우) 경찰관서장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공평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급식, 위생,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3조(피의자의 도주 등) 경찰관은 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경찰관서장은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134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15조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에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상황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제135조(자료의 제출) ①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다는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발송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물건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6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경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7조(제3자의 참여)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제3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경찰관을 참여하게 하고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여야 한다.

제138조(압수·수색 또는 검증 중지 시의 조치) 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착수한 후 이를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관리자를 선정하여 사후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계속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9조(소유권 포기서) 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40조(수색조서) ① 경찰관은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참여인을 참여시킬 수 없었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적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주거주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등 피처분자의 동의를 얻어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경우에도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적어야 한다.

제141조(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은 범죄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건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임의의 제출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물건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동시에 은닉·멸실·산일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2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①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소유자등이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하고, 「경찰수사규칙」 제64조제1항의 압수조서와 같은 조 제2항의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자에게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60호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43조(유류물의 압수) ① 경찰관은 유류물을 압수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얻어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는 등 참여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조서 등에 그 물건이 발견된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4조(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압수를 할 때에는 지문 등 수사자료가 손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그 물건을 되도록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 멸실, 파손, 변질, 변형, 혼합 또는 산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45조(압수물의 보관 등) ① 경찰관은 압수물을 보관할 때에는 「경찰수사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및 압수목록에 적은 순위·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붙여 견고한 상자 또는 보관에 적합한 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과 유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치 금품은 별도로 지정된 보관담당자로 하여금 금고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일 때에는 원형보존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46조(압수물의 폐기) 「경찰수사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른 폐기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폐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47조(폐기, 대가보관 시 주의사항) 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 둘 것
2. 그 물건의 상황을 사진, 도면, 모사도 또는 기록 등의 방법에 따라 명백히 할 것
3.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압수물의 성질과 상태, 가격 등을 감정해둘 것. 이 경우에는 재감정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물건의 일부를 보존해 둘 것
4. 위험발생,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등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

제148조(압수물 처분 시 압수목록에의 기재) 경찰관은 압수물의 폐기, 대가보관,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압수목록의 비고란에 그 요지를 적어야 한다.

제149조(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 ”이라 한다)를 제공받을 때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을 발부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범죄수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150조(시체 검증 등)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1조제4항에 따라 시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을 하는 때에는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체의 착의, 부착물, 분묘 내의 매장물 등은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

제151조(신체검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조력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부상자의 부상부위를 신체검사 할 때에는 그 상황을 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기록하고 되도록 단시간에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통신수사

제152조(통신비밀보호의 원칙) 경찰관은 통신수사를 할 때에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3조(남용방지) ① 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대상범죄, 신청방법, 관할법원, 허가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4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 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55조(긴급통신제한조치 등) ① 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② 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사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③ 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때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때는 별지 제68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른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기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찰관은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제157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

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58조(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른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에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찰관은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61조(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제3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62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07호서식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63조(통신자료 제공요청) ① 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요청서에는 경찰서장 및 시·도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과장 이상 결재권자의 직책, 직급,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64조(집행결과보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에 따른다.

제165조(통신수사 종결 후 조치) 다른 관서에서 통신수사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내사한 후 내사종결한 경우는 내사종결한 관서에서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청구한 검찰청에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증거

제166조(현장조사) 경찰관은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이하 "현장조사 ”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167조(부상자의 구호 등) ① 경찰관은 현장조사 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빈사상태의 중상자가 있을 때에는 응급 구호조치를 하는 동시에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범인의 성명, 범행의 원인, 피해자의 주거, 성명, 연령, 목격자 등을 청취해 두어야 하고, 그 중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168조(현장보존) ① 경찰관은 범죄가 실행된 지점뿐만 아니라 현장보존의 범위를 충분히 정하여 수사자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보존하여야 할 현장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입금지 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함부로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에 출입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들의 성명, 주거 등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현장 또는 그 근처에서 배회하는 등 수상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들의 성명, 주거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도록 노력한다.

③ 경찰관은 현장을 보존할 때에는 되도록 현장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증거물의 변질ㆍ분산ㆍ분실 방지 등을 위해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⑤ 경찰관은 현장에서 발견된 수사자료 중 햇빛, 열, 비, 바람 등에 의하여 변질, 변형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덮개로 가리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수사자료를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 도면, 기록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9조(현장에서의 수사사항) ① 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현장 감식 그 밖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1. 일시 관계
   가. 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
   나. 발견의 일시와 상황
   다. 범행당시의 기상 상황
   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절, 축제일 등)

마. 그 밖의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2. 장소 관계

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

나. 가옥 그 밖의 현장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

다. 현장 방실의 위치와 그 상황

라. 현장에 있는 기구 그 밖의 물품의 상황

마. 지문, 족적, DNA시료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

바.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3. 피해자 관계

가. 범인과의 응대 그 밖의 피해 전의 상황

나. 피해 당시의 저항자세 등의 상황

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금품의 종류, 수량, 가액 등 피해의 정도

라. 시체의 위치, 창상, 유혈 그 밖의 상황

마. 그 밖의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4. 피의자 관계

가. 현장 침입 및 도주 경로

나. 피의자의 수와 성별

다. 범죄의 수단, 방법 그 밖의 범죄 실행의 상황

라. 피의자의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면식 여부, 현장에 대한 지식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

마. 피의자의 인상ㆍ풍채 등 신체적 특징, 말투ㆍ습벽 등 언어적 특징, 그 밖의 특이한 언동

바. 흉기의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그 밖의 가해의 상황

사. 그 밖의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② 제1항의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0조(감식자료 송부) ① 경찰관은 감식을 하기 위하여 수사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변형, 변질, 오손, 침습, 멸실, 산일, 혼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우송을 할 때에는 그 포장, 용기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요하거나 긴급한 증거물 등은 경찰관이 직접 지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감식자료를 인수ㆍ인계할 때에는 그 연월일과 인수ㆍ인계인의 성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171조(재감식을 위한 고려) 경찰관은 혈액, 정액, 타액, 대소변, 장기, 모발, 약품, 음식물, 폭발물 그 밖에 분말, 액체 등을 감식할 때에는 되도록 필요 최소한의 양만을 사용하고 잔량을 보존하여 재감식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72조(증거물의 보존) ① 경찰관은 지문, 족적, 혈흔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형상을 상세히 적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시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파괴 그 밖의 원상의 변경을 요하는 검증을 하거나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유류물 그 밖의 자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원근법으로 사진을 촬영하되 가까이 촬영할 때에는 되도록 증거물 옆에 자를 놓고 촬영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3항의 경우 증명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여인을 함께 촬영하거나 자료 발견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서면에 참여인의 서명을 요구하여 이를 함께 촬영하고, 참여인이 없는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 등으로 현장상황과 자료수집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제173조(감정의 위촉 등)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에 필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따른다.

② 경찰관은 제1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제42조의 감정위촉서에 따르며, 이 경우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의 일시, 장소, 경과와 결과를 관계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재한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감정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의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감정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여 감정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74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신청)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73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 감정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시정조치요구

제175조(징계요구에 대한 처리) 경찰관서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7항 또는 같은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를 통보받은 때에는 징계 요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장 범죄피해자 보호

제176조(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 ” 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1항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진술조서(가명)에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 ” 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피해자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고,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별지 제109호서식의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 법률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피해자 등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불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77조(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 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거지, 직업, 용모 등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8조(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피해자 조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후 지체 없이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등의 사유로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강력범죄 피해자 등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80조(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경찰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다른 경찰관서 관할이거나 피의자 특정 곤란,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건을 반려하는 행위
2.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 사실을 축소 또는 부정하는 행위
3.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
4.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서로 대면하게 하는 행위(다만,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의 위 각 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181조 <삭제>

제182조 <삭제>

제183조(준용규정) 「경찰수사규칙」 제80조, 제81조 및 이 규칙 제176조는 범죄신고자 및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7장 특칙

제1절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제184조(장애인에 대한 특칙) ①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하고, 선정된 보조인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때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화 또는 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③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지체인인 때에는 면담을 통하여 진술능력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5조(증거보전의 특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처벌법」 제41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은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절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제186조(가정폭력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의 심리를 위한 특별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

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87조(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신고현장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하되, 폭력행위 제지 시 가족 구성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한다.② 제1항의 응급조치를 취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의 요지, 가정상황,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상세히 적은 별지 제116호서식의 응급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88조(환경조사서의 작성)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행위자의 성격·행상·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17호서식의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9조(임시조치)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라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해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임시조치 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일시 및 방법을 별지 제122호서식의 임시조치통보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90조(긴급임시조치)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할 때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24호서식의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제2항의 경우 별지 제12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결정서에 따른다.
③ 긴급임시조치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 및 통보서 상단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7호서식 상단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별지 제127호서식 하단의 긴급임시조치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1조(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① 경찰관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임시조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92조(가정폭력사건 송치)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5호서식의 송치 결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가정폭력사건 송치 시 사건송치서 죄명란에는 해당 죄명을 적고 비고란에 ‘가정폭력사건’이라고 표시한다.

③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3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동행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범죄사실과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94조(보호처분결정의 집행)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3절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특칙

제195조(피해아동 조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심리상태에 맞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조사 일시、장소 및 동석자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피해아동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문을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하여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및 아동학대범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피해아동 조사 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2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196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139호서식의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9호서식의 아동학대범죄 현장 동행 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197조(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에 따른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와 별지 제130호서식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98조(긴급임시조치) ①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신청서에 따른다.
② 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이 제2항의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28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통보서 교부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통보일시 및 장소란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제199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 ① 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 결과의 통보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00조(임시조치) ① 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 요청서에 따른다.

③ 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37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신청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와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31호서식의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④ 아동학대사건의 임시조치 신청에는 제189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임시조치통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따른다.

⑤ 「아동학대처벌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임시조치 이행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서에 따른다.

제201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신문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보호처분·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와, 그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 및 처분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2조(아동보호사건 송치) ①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때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5호서식의 송치 결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사건송치서 죄명란에는 해당 죄명을 적고 비고란에 ‘아동보호사건’이라고 표시한다.

③ 경찰관은 아동학대사건 송치 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3조(보호처분결정의 집행) ① 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처벌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시·도지사 등에게 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에 따른다.

제204조(증거보전의 특례) 아동보호사건에서 증거보전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8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아동등"으로 본다.

제205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8호서식의 의무위반사실 통보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절 외국인 등 관련범죄에 관한 특칙

제206조(준거규정) 외국인관련범죄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외범, 대·공사관에 관한 범죄 그 외 외국에 관한 범죄(이하 "외국인 등 관련범죄"라 한다)의 수사에 관하여 조약, 협정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본 절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따른다.

제207조(국제법의 준수)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08조(외국인 등 관련범죄 수사의 착수)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 범죄 중 중요한 범죄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한 후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09조(대·공사 등에 관한 특칙) ①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외교 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2.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을 체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행범인의 체포 그 밖의 긴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10조(대·공사관 등에의 출입) ① 경찰관은 대·공사관과 대·공사나 대·공사관원의 사택 별장 혹은 그 숙박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해당 대·공사나 대·공사관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를 추적 중 그 사람이 위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ㆍ공사, 대ㆍ공사관원 또는 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색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수색을 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11조(외국군함에의 출입) ①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관하여는 해당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도주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해당 군함의 함장에게 범죄자의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2조(외국군함의 승무원에 대한 특칙)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 그 밖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13조(영사 등에 관한 특칙) ① 경찰관은 임명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주재의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구속 또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무소는 해당 영사의 청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택이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혹은 사택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안에 있는 기록문서에 관하여는 이를 열람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4조(외국 선박 내의 범죄)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2.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3.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

제215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① 경찰관은 외국인의 조사와 체포ㆍ구속에 있어서는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91조제2항에 따라 고지한 경우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118호서식의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9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수사규칙」 제91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16조(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71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적, 출생지와 본국에 있어서의 주거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유무
3. 외국에 있어서의 전과의 유무
4.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
5. 국내 입·출국 경력
6.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제217조(통역인의 참여) ① 경찰관은 외국인인 피의자 및 그 밖의 관계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외국어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외국인이 구술로써 고소·고발이나 자수를 하려 하는 경우에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을 때의 고소·고발 또는 자수인 진술조서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18조(번역문의 첨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2.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5절 마약류범죄 관련 특칙

제219조(마약류범죄수사 입국·상륙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상륙절차의 특례, 체류부적당 통보, 반출·반입 특례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41호서식부터 별지 제143호서식까지의 입국·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체류부적당통보신청서, 세관절차특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6절 보전절차에 관한 특칙

제220조(몰수·부대보전 신청) 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4조제1항 또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몰수·부대보전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따른 몰수·부대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21조(추징보전의 신청 등) 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추징보전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절 보석자 등의 관찰

제222조(보석자 등의 관찰) ①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형집행정지사유 존속 여부를 관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98조제3호의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의 주거 제한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받은 때에는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그 밖의 적당한 경찰관을 지정하여 주거지의 현주 여부 등을 관찰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223조(관찰상의 주의) 경찰관은 보석 피고인,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은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피관찰자 또는 그 가족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4조(관찰부) 경찰관은 제222조 및 「경찰수사규칙」 제6조에 따라 관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보석자·형집행정지자 관찰부에 그 관찰상황을 명백하게 적어두어야 한다.

제8절 즉결심판에 관한 특칙

제225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

② 경찰서장이 「즉결심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얻을 때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 승인 요청서에,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53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경찰서장)에 따른다.

③ 경찰서장이 「즉결심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할 때는 별지 제155호서식의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제3편 수사종결 등에 관한 사항

제1장 통칙

제226조(수사자료표의 작성) ① 경찰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를 제외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즉결심판 대상자
2. 고소 또는 고발로 수리한 사건 중 「수사준칙」제51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입원,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입력한다.

③ 그 밖의 수사자료표 작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27조(장기사건 수사종결)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95조에 따라 장기사건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상급 수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8조(수사서류의 사본) 경찰관은 처리한 사건 중 중요도나 특이성 그 밖의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기간 경과 시 즉시 이를 폐기해야 한다.

제2장 수사종결

제229조(송치 서류) ① 「경찰수사규칙」 제103조제2항제5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명의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수사규칙」 제103조제2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 - 1, 1 - 2, 1 - 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 시에는 사건송치서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 ” 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압수물에 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
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3.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
4.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⑥ 사건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영장등 신청 서류 등에 관하여는 「경찰수사규칙」 제103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30조(불송치 서류 등) ① 고소·고발 수리하여 수사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수사중지(참고인중지)

② 「경찰수사규칙」 제109조제2항제5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부명의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③ 「경찰수사규칙」 제109조제2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 - 1, 1 - 2, 1 - 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송부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부 시에는 불송치 기록 송부서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압수물에 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231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경찰관서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범죄사건부
2. 압수부
3. <삭제>
4. 체포영장신청부
5. 체포·구속영장집행부

6. 긴급체포원부
7. 현행범인체포원부
8. 구속영장 신청부
9.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10. 체포·구속인 접견·수진·교통·물품차입부
11. 체포·구속인 명부
1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13. 송치사건철
14. 불송치사건 기록철
15. 수사중지사건 기록철
16. 내사사건 기록철
17. 수사미제사건 기록철
18. 통계철
19. 검시조서철
2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21.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22.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3.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2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2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
2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29.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2.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33. <삭제>
34. 변사사건종결철
3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6. 특례조치등 신청부
37.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38. 임시조치 신청부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저장·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전자장부와 전자비치서류는 종이 장부 및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2조(범죄 사건부) ① 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 수사,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조회상황,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구속내용, 석방연월일 및 사유, 결정일자, 결정종류, 압수번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검사처분, 판결내용, 범죄원표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소유자 및 피압수자의 주거, 성명 등을 기록하고 그 보관자, 취급자, 처분연월일과 요지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233조(송치사건철) 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의 사본과 사건인계서 사본 등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34조(불송치사건 기록철) 불송치 사건 기록철에는 불송치 결정한 사건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35조(수사중지사건 기록철) 수사중지사건 기록철에는 수사중지 결정한 사건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36조(내사사건 기록철) 내사사건 기록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이 필요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37조(수사미제사건 기록철) 수사미제사건 기록철에는 장차 검거의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38조(통계철) 통계철에는 수사경찰 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239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편철 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그 담당 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40조(임의의 장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2조 소정 장부서류 이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241조(장부 등의 갱신) ① 수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 연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간지 등을 삽입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42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범죄사건부 25년
2. 압수부 25년
3. <삭제>
4. 체포영장신청부 2년
5. 체포·구속영장집행부 2년
6. 긴급체포원부 2년
7. 현행범인체포원부 2년
8. 구속영장 신청부 2년
9.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2년
10. 체포·구속인 접견·수진·교통·물품차입부 2년
11. 체포·구속인 명부 25년
1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2년
13. 송치사건철 25년
14. 불송치사건 기록철 25년
15. 수사중지사건 기록철 25년
16. 내사사건 기록철 25년
17. 수사미제사건 기록철 25년
18. 통계철 10년
19. 검시조서철 2년
2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년
21.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3년
22.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3년
23.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3년
2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3년
2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 승인신청부 3년
2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 3년
2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 3년
2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3년
29.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년
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년
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년
32. 영상녹화물관리대장 25년
33. <삭제>
34. 변사사건종결철 25년

3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년
36. 특례조치등 신청부 2년
37. 몰수·부대보전신청부 10년
38. 임시조치 신청부 2년

제243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주서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244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996호,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2.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3.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15조"를 "제30조"로 한다.

②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통지와"를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와"로, "「범죄수사규칙」 제204조"를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13조"로 하고, 제23조제2항 중 "「범죄수사규칙」 제62조제2항"을 "「경찰수사규칙」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으로 하며, 제24조제2항 중 "제206조의2"를 "제176조"로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송치"를 "수사종결"로 한다.

④ 「소년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⑤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송치"를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사지휘건의서"를 삭제한다.

⑦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 범죄수사규칙 제15조제8항 및 제11항, 제15조의2제4항 ”을 “ 「범죄수사규칙」 제30조제8항 및 제11항, 제31조제4항 ”으로 한다.

⑧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이의조사한 사건 ”을 “ 재조사 사건 ”으로 하고, 제8조 중 “ 이의조사팀의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제기된 사고 ”를 “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조사가 신청된 사고 ”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 이의신청자에게 교통사고 이의재조사 결과 ”를 “ 재조사 신청자에게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를 ”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 이의신청자 ”를 “ 재조사 신청자 ”로 하고, 제11조 제목 중 “ 검찰송치 ”를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의 ”로 하며, 제11조제1항 중 “ 송치를 ”를 “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을 ”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 관할 검찰청과 협의하여 사건송치를 연기하는 등 ”을 “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을 연기하는 등 ”으로 하며, 제14조제1항 중 “ 이의사건 해당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이의조사반 ”을 “ 재조사사건 해당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재조사팀 ”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 검찰에 송치 ”를 “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 ”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 사건 송치 즉시 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을 ”를 “ 검찰에 송치 즉시 사건송치서와 송치결정서 사본을, 불송치 기록 송부 즉시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와 불송치 결정서 사본을 ”로 한다.

⑨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 제14조의3을 ”을 “ 제25조 및 제26조를 ”로 하고, 제16조 중 “ 송치 ”를 “ 송치 또는 송부 ”로 하며, 제18조 중 “ 범죄수사규칙 제190조 ”를 “ 「경찰수사규칙」 제96조 ”로 한다.

⑩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제16조 ”를 “ 제36조 ”로 하고, 제13조제4호를 삭제한다.

⑪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범죄수사규칙 제14조의2 ”을 “ 「범죄수사규칙」 제23조 ”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 종결 및 송치 ”를 “ 종결 ”로 한다.

⑫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별지 제69호서식의 체포·구속인접견부,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구속인 교통부, 제71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73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별지 제199호서식의 체포·구속인명부 등 ”을 “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구속인 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구속인 교통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구속인 수진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구속인명부,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 등 ”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 별지 제202호서식에 의한 임치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임치및급식상황표 ”를 “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로 한다.

⑬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범죄수사규칙 제119조제1항 압수증명서”를 “「경찰수사규칙」 제64조제2항의 압수목록교부서”로 하고, 제25조제1항 중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제8조의2에 따른 기피 신청”을 “「범죄수사규칙」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제9조에 따른 기피 신청”으로 하며, 제25조제2항 중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8조의5 사유”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사유”로 한다.

⑭「변사사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조치, 「범죄수사규칙」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의 조치”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조치, 「경찰수사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조치, 「범죄수사규칙」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제157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제168조”로 하며, 제13조제3항 중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사건 발생 보고서”를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발생·검거보고서”로 하고, 제16조제1항 중 “제32조 및 제162조”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27조, 「범죄수사규칙」 제57조 및 제169조”로 하며, 제19조제2항 중 “제9장(수배와 공조)”를 “제2편 제3장 제4절(수배)”로 한다.

⑮「과학수사 기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범죄수사규칙」 제8조 내지 제8조의5”까지를 “「범죄수사규칙」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10조제1항제5호 중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4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로 하며, 제15조 중 “「범죄수사규칙」 제16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범죄수사규칙」 제16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제19조제3항 중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로 한다.

<16>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소의견 송치사건”을 “송치결정 사건”으로 한다.

<17> 「교통사고 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을 삭제하고, 제20조제1항제1호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송치 결정”으로 하며, 제20조제1항제2호 중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불송치 결정”으로 하고, 제20조제1항제3호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송치 결정”으로 하며, 제20조제1항제4호 중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불송치 결정”으로 하고, 제20조제2항제2호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송치 결정”으로 하고, 제20조제3항제1호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송치 결정”으로 하고, 제20조제3항제2호 가목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송치 결정”으로 하고, 제22조제2항 중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및 범죄경력조회서는 제외한다”를 “사건송치서,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기

록목록,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범죄경력조회서는 제외한다”로 하고, 제22조의2 제목 중 “이의 제기된”을 “재조사 신청된”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 중 “이의가 제기된 사고”를 “재조사가 신청된 사고”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제22조의2제2항、제22조의2제3항、제22조의2제4항、제22조의3 제목、제22조의3제3항 중 “이의사고”를 “재조사 사고”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 중 “재조사”를 “다시 조사”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제22조의2제2항、제22조의2제3항、제22조의3제1항제1호、제22조의3제1항제2호、제22조의3제2항、제22조의3제3항 중 “이의조사팀”을 “재조사팀”으로 하고, 제22조의2제2항 중 “이의의 내용이 이의제기의 원인이 된 사고”를 “재조사 신청의 내용이 재조사의 원인이 된 사고”로 하고, 제22조의2제3항 중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제기된 사고”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조사가 신청된 사고 ”로 하고, 제22조의3제1항제1호、제22조의3제1항제2호 중 “이의내용”을 “재조사 신청 내용”으로 하고,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본래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송치”를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하여 본래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로 하며, 제22조의3제1항제2호 중 “재조사하여 송치하거나”를 “재조사 후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하거나”로 하고, 제22조의3제2항 중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본래사고의 송치의견과”를 “검찰청에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되었으나 본래사고의 결정 내용과”로 하고, “검찰과 협의하여 추송”을 “검사와 협의하여 추가 송부”로 하며, 제22조의3제3항 중 “검찰과 협의하여 추송”을 “검사와 협의하여 추가 송부”로 하며, 제40조제3항 중 “송치하거나”를 “검찰청에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송부하거나”로 하고, 제41조의2 제목 중 “전자적 송치”를 “전자적 사건처리”로 하고, 제41조의2제2항 중 “송치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를 “불송치 기록 송부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로 하고, 제41조의3제1항 중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송치하고”를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하고”로 하고, 제41조의3제1항 중 “스캔 후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송치한다”를 “스캔 후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한다”로 하고, 제41조의4제1항 중 “전자적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를 “전자적으로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한 사건에 대하여”로 하고, 별표 2 중 공소권 있는 사고(19종)란에 “3. 의견서”를 “3. 송치 결정서”로 하고, 공소권 없는 사고(17종)란에 “1. 사건송치서”를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로, “3. 의견서”를 “3. 불송치 결정서”로 하며, 참고 2의 “수사지휘건의서, 수사지휘서”를 삭제하며, 별표 4 “18. 의견서(수사결과보고 겸용)”를 “18. 송치 결정서”로 하고, “21. 석방통보서. KICS. 전자문서”를 신설하고, 별지 제5호2서식 “송치일시”를 “송치결정일시(불송치결정일시)”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처리결과 1. 가해차량 운전자 처리 란’에 “( ) ㅇㅇ지방검찰청ㅇㅇ지청 송치(송치의견을 기재)”를 “( ) ㅇㅇ지방검찰청ㅇㅇ지청 송치”로 하고, “( ) 불송치 (결정종류를 기재) - 이유는 별지2와 같음”를 신설하며, “( ) 수사중지(참고인중지)”를 신설하고, “( )이송”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란에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를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로 하고, “수사과정 및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 경찰청 경비교통과(교통과)에 재조사 신청”, “수사

중지 결정 이의제기 제도”,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고 가능”을 신설하며, “별지”를 “별지1”로 하고, 별지2를「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18>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을 “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수사이의”를 “수사심의신청”으로 하며, 제2조제2호 중 “수사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수사이의”를 “수사심의신청”으로 하고, 제2장 제목 중 “수사이의조사팀”을 “수사심의계”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별표 1과 같이 수사이의조사팀(이하 ‘이의조사팀’이라 한다)”을 “수사심의계”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이의조사팀장과 팀원”을 “수사심의계장과 계원”로 하며, 제4조의 각호를 제외한 부분 중 “이의조사팀”을 “수사심의계”로 하고, 제4조제1호 중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하며, 제4조제2호 중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하고, 제5조 중 “이의조사팀”을 “수사심의계”로 하고, “이의조사팀장”을 “수사심의계장”으로 하며, 제3장 제목 중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이의조사팀”을 “수사심의계”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수사이의”를 “수사심의신청”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호를 제외한 부분 중 “이의조사팀”을 “수사심의계”로, “수사이의사건처리지시”를 “수사심의신청사건처리지시”으로 하며,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하며, 제6조제4항 중 “이의조사팀”을 “수사심의계”로,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이의조사팀장”을 “수사심의계장”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이의조사팀”을 “수사심의계”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이의조사팀장”을 “수사심의계장”로 하며, 제8조제3항 중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이의조사팀”을 “수사심의계”로 하고, 제9조 제목 중“수사이의”를 “수사심의신청”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이의조사팀장”을 “수사심의계장”로 하며,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하며, 제4장 제목 중 “수사이의”를 “수사심의신청”으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이의조사팀장”을 “수사심의계장”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 중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이의조사팀장”을 “수사심의계장”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이의조사팀장”을 “수사심의계장”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이의조사팀”을 “수사심의계”로, “수사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하며, 제14조제2항 중 “수사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하고, 제16조 제목 중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하며, 제16조 중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하고, 별표 1 중 “수사이의조사팀”을 “수사심의계”로 하며, 별표 2 중 “수사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하고, 별지 1 중 “수사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하며, 별지 1의2 중 "수사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하고, 별지 3 중 "수사이의사건"을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한다.

부칙 <제1001호,2021.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범죄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중 "수사국 수사기획과"를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제104조제2항 중 "수사기획과장"을 "수사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별표1]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

분류	세부 내용
1.범죄의 주체	장·차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주요기업의 대표 및 임원, 금융기관 대표 및 임원, 유명 연예인·운동선수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의 범죄
	외교사절, 수행원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 저명인사의 범죄 및 외국군대의 군인·군속의 범죄,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경찰관 범죄(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에 정한 교통사고사건 중 경상의 인피사고 또는 물피사고에 관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외)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주요 협회, 주요 포털·이동통신사·온라인게임사 등 사이버 관련 주요 법인의 범죄
2.범죄의 대상	장·차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주요기업의 대표 및 임원, 금융기관 대표 및 임원, 유명 연예인·운동선수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에 대한 범죄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수행원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 저명인사에 대한 범죄 및 외국군대의 군인·군속,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에 대한 범죄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경찰관, 교도관, 법관, 검사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범죄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대규모 국책사업·공익사업을 방해하거나, 공공시설을 파괴 또는 그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주요 협회, 주요 포털·이동통신사·온라인게임사 등 사이버 관련 주요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주요 시스템을 공격한 사건
3.수사의 태양	수사본부 또는 수사전담팀 편성이 필요한 사건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이 필요한 사건 중 보안유지가 필요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다른 경찰관서(시·도경찰청·경찰서) 및 타 기관(검찰·국방부·국세청·국정원 등)과 공조수사 또는 합동수사가 필요한 사건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집중(통합)수사 등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지시(지휘)한 사이버 사건

분류	세부 내용
4.범죄의 종류 및 정도	내란, 외환 또는 국교에 관한 사건
	화재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현주건조물방화(다만,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하였거나 수단·방법이 명확하여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외) ② 연쇄방화(원인불명의 화재를 포함) 및 관공서, 학교, 주요 문화재 기타 중요시설에서의 실화사건(다만, 원인이 명확하고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외)
	통화위조·동행사사건 중 범죄수법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공문서위조·변조·동행사사건 및 유가증권 위조·변조·동행사사건 중 사회의 존립에 위험을 발생시켜 현저하게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
	집단 또는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 사건
	증·수뢰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살인 및 강도사건(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한 경우에는 '5.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사건'에 해당할 시 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잔인한 상해, 상해치사 사건
	과실치사상 사건(교통사고사건은 제외한다) 중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사상자 5인 이상의 사건
	약취·유인, 체포·감금사건 중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인신매매사건
	절도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피해액이 1천만원 상당 이상인 사건 ② 조직적인 절도사건 중 피의자 또는 범죄 건수가 다수인 사건 ③ 신종 또는 특이한 수법으로 분석 및 정보공유가 필요한 사건
	피해액 5억원 이상 또는 범행 수법이 특이한 사기, 공갈, 횡령·배임 사건
	치사를 수반한 결과적 가중범

분류	세부 내용
4.범죄의 종류 및 정도	특별법 위반의 죄 중 중요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선거관계범죄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금융 관련범죄, 증권거래 관련범죄, 기업경영 관련범죄, 기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장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
	폭력단체 관련범죄
	약물에 관한 범죄
	총기를 사용한 살인·강도·절도·폭력사건, 총기 불법 유통사건
	환경 관련 범죄 중 조직적, 계획적 또는 광역적으로 행해졌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위험물 관련범죄 중 위험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공공의 위험성이 높은 사건
	풍속관련 범죄 중 조직적 또는 계획적으로 행해졌고,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 사회저명인사가 연루되었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실종·아동학대·소년범죄 중 범행수법이 특이하고 잔인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교통사고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사망뺑소니사건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② 인피사고 중 사망자 3인 이상 또는 사상자 20인 이상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③ 범행수법이 특이한 사건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공안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국가보안법위반의 죄 ② 군형법중 반란·이적의죄·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③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죄 ④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사건 ⑤ 안보관련 범죄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분류	세부 내용
4.범죄의 종류 및 정도	해킹·디도스·악성프로그램 관련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주요 정부기관·공기업·민간업체에 대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건 ②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여 5천만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③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국내 50대 이상 서버·PC를 감염시킨 피의자 검거 ④ 신종 해킹 사건
	다중피해 사이버사기 범죄 중 피해자 100명 이상 또는 피해액 1억원 이상인 사건
	피해자 50명 이상 또는 피해액 2천만원 이상이거나 범행수법이 특이한 피싱·파밍·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이용·제공한 피의자 검거 ② 부정하게 취득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사이버성폭력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다크웹, 텔레그램 등 SNS·웹하드·불법사이트 등을 이용한 운영자급 주범 검거 ② 성착취물 등 제작·유통하여 3천만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기타 사이버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중요 사건 ① 사이버도박 - 총 매출액(입금액 기준) 1천억원 이상 도박 사이트 운영자 검거 ② 사이버저작권 침해 -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③ 몸캠피싱 - 피해자 10명 이상 또는 피해액 1억원 이상 ④ 사이버선거 - 모든 사이버선거 사건 ⑤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주요 사이버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 ⑥ 사이버범죄 관련 지명수배·통보 10건 이상 수배자 검거 사건
5.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아래의 사건 ① 범인검거, 피해자 보호 등 수사를 위해 타관서와의 공조,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의 투입 등 지원이 필요한 사건 ②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가 필요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별표2]

보고 절차 및 방법

보고 절차	◦ 지구대장·파출소장은 경찰서장에게 보고, 경찰서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 시·도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국가수사본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사본부까지 보고하고, 시·도경찰청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은 시·도경찰청에 보고)** ◦ 단, 필요시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동시보고
보고 시점	◦ 사건 발생 또는 검거시 ◦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첩보입수·수사(내사) 착수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신청, 수사종결 등 중요수사 진행사항 발생시에도 보고
보고 종류	◦ 사건발생시는 발생보고 ◦ 피의자검거시는 검거보고 ◦ 첩보입수, 수사(내사) 착수시, 수사종결시, 중요수사진행사항 발생시는 수사사항보고
보고 방법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 긴급시에는 일단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별표3]

서 식 목 록

서식 번호	서 식 명	범죄수사 규칙조항
1	기피신청서	10①
2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	11②
3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	11⑧
4	수사지휘서	25
5	수사지휘서(관서간)	25
6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	30
7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상급관서용)	31
8	사건발생·검거보고서	23
9	내사착수보고서	44
10	내사지휘서	44
11	범죄신고 접수대장	47
12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46
13	공무원 등 범죄 수사상황 통보서	46
14	피해신고서	47
15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57①
16	검시필증	59①
17	사망통지서	60①
18	우편조서	62③
19	심야조사 요청서	
20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40
21	피의자신문조서(제 회 통역조서)	40
22	진술조서(가명)	176①
23	접견신청서	80②
24	감정의뢰서	173①
25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85④
26	촉탁서	87
27	회답서	87
28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91
29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91
30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91
31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	91
32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92①
33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93①
34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	96①

서식 번호	서 식 명	범죄수사 규칙조항
35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98③
36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	101①
37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서	101②
38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106①
39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106①
40	장물수배서원부	109④
41	장물수배서배부부	109④
42	지명수배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	111②
43	체포영장신청부	114①
44	체포 · 구속영장집행원부	114②
45	긴급체포원부	115②
46	현행범인체포원부	116②117②
47	피의자 체포보고서	118
48	구속영장신청부	119④
49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	127
50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	131
51	체포·구속인접견부	131④
52	체포·구속인교통부	131④
53	물품차입부	131④
54	체포·구속인수진부	131④
55	임치증명서	132
56	임치 및 급식상황표	132
57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134
58	<삭 제>	
59	<삭 제>	
60	소유권포기서	139①142③
61	물건제출요청서	142①
62	임의제출서	142②
63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전)	154①
64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	155②
65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서	151②
66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154②
67	긴급검열·감청서	156②
68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155①
69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	155③
70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155④
71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155⑤

서식 번호	서 식 명	범죄수사 규칙조항
72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73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154③
74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	156①
75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156④
76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164
77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156⑥
78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서	156⑤
7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	157①
80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157①
81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 신청서	157②
82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승인 신청부	157③
8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보고	
84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156③
8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전)	158①
86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후)	159②
87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	158②
88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후허가용)	159③
8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	160①
9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160①
9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160②
9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164
9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	160④
94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	160⑤
9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161②
96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61③
97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 신청	
98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서	160③
9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161①
10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161①
10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보고	
10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내사종결시)	
103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159①
104	<삭 제>	
105	통신자료제공요청	163
106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162
107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162
108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69②

서식 번호	서 식 명	범죄수사 규칙조항
109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176②
110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작성대장	176
111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 사유보고서	176②
112	가명조서등 불작성 사유 확인서	176⑤
113	참고인 권리 안내서	
114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126②
115	임시조치신청서(가정폭력)	189①
116	응급조치보고서(가정폭력)	187②
117	가정환경조사서	188
118	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	215②
119	임시조치신청서(아동학대, 사전)	200①
120	임시조치신청서(아동학대, 사후)	199①
121	임시조치신청부	183③199②
122	임시조치통보서(가정폭력)	189④
123	임시조치통보서(아동학대)	200④
124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90①
125	긴급임시조치결정서(가정폭력)	190②
126	긴급임시조치결정서(아동학대)	198②
127	긴급임시조치 확인 및 통보서(가정폭력)	
128	긴급임시조치 통보서(아동학대)	198③
129	응급조치결과보고서(아동학대)	197③
130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97③
131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통지(아동학대)	200③
132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아동학대)	200⑤
133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아동학대)	203②
134	피해아동보호사실통보(아동학대)	197②
135	긴급임시조치 신청서(아동학대)	198①
136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아동학대)	199③
137	임시조치신청요청처리결과통보(아동학대)	200③
138	의무위반사실 통보(아동학대)	205
139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서	196
140	임시조치 신청 요청서(아동학대)	200②
141	입국·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219①
142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219①
143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219①
144	특례조치 등 신청부	219②
145	물수·부대보전 신청부	200

서식 번호	서 식 명	범죄수사 규칙조항
146	추징보전 신청부	221
147	보석자·형집행정지자 관찰부	224
148	압수부	231
149	체포·구속인명부	231
150	범죄사건부	232
151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	
152	정식재판청구서	225①
153	정식재판청구서(경찰서장)	225②
154	정식재판청구승인요청	225②
155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	225③
156	수사결과보고	
157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	227
158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	
159	불송치 편철서	234
160	수사중지 편철서	
161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한국어)	
162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중국어)	
163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영어)	
164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러시아어)	
165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베트남어)	
166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태국어)	
167	구금장소변경통지	
168	심사의견서(종결시, 검사 요청 등 사건 발송 시)	
169	분석보고서(검사 요청 등 사건 접수 시)	
170	분석보고서(처분 불일치 사건)	
171	분석보고서(무죄사건)	
172	심사의견서(영장신청)	
173	분석보고서(불청구·기각)	
174	수사보고서	
175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76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77	피의자신문조서(간이절도)	
178	피의자신문조서(간이예비군)	
179	피의자신문조서(간이도박)	
180	진술조서(간이교통)	
181	진술조서(간이폭력)	
182	진술조서(간이절도)	

서식 번호	서 식 명	범죄수사 규칙조항
183	진술서(간이공통)	
184	진술서(간이교통)	
185	진술서(간이폭력)	
186	진술서(간이절도)	
187	송치 결정서(간이)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피 신청

신청인	성 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아래 사건의 대상수사관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상수사관	소속		성명	

기피신청이유

◆ **아래의 사유 중 해당사항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관이 다음에 해당됨

△ 사건의 피해자임 △ 피의자·피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음

△ 피의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임

☐ 청탁전화 수신, 피의자·피해자와 공무 외 접촉하여 공정성을 해하였음

☐ 모욕적 언행, 욕설, 가혹행위 등 인권을 침해함

☐ 조사과정 변호인 참여 등 신청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함

☐ 사건접수 후 30일 이상 아무런 수사 진행사항이 없음

☐ 기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음

◆ **위에서 체크한 해당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통지방법	☐ 서면	☐ 전화	☐ 문자메시지	☐ 기타(전자우편, 팩스 등)

. . .

신청인 (서명)

소속관서장 귀하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

담당 수사관	소속	계급 성명	사건번호
			-
기피신청 사유			
수사관 의견			
팀장 검토결과	<기피 신청 수용여부> ☐ 수용 ☐ 불수용 └ 재지정 수사관 ○○팀 경○ ○ ○ ○ <판단근거> ※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자 확인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귀하의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건 번 호				
결 정 내 용	1. 수 용 (선택) : 교체 수사관 00팀 00 000 (☎ : 전화번호) 2. 불 수 용 (선택) :			
결 정 사 유				
참 고 사 항	○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사이의제도」 활용 가능 - 접수방법 등은 00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로 문의 (☎ 02-000-0000)			

소 속 관 서 장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 사 지 휘 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접수번호		사건번호	
피 의 자			
사건담당자	소속 : 계급 : 성명 :		

< 지 휘 내 용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 사 지 휘 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접수번호		사건번호	
피 의 자			
담당경찰관서			

< 지 휘 내 용 >

상급경찰관서장(직인)

직위 계급 ○○○

210㎜ × 297㎜(백상지 80g/㎡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참 조 :

제 목 : 경찰관서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0000-000000	사건번호	0000-000000
피 의 자					
죄 명					
사건개요					
이의제기할 수사지휘내용					
이의제기 내용 및 사유					
첨부사항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참 조 :

제 목 : 상급경찰관서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범죄수사규칙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사건번호	
피 의 자					
죄 명					
사건개요					
이의제기할 수사지휘내용					
이의제기 내용 및 사유					
첨부사항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사건발생 · 검거보고

다음과 같이 발생 · 검거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발생 일시 · 장소

2. 검거 일시 · 장소

3. 관련자 인적사항

:

:

:

:

4. 신고자 인적사항

:

:

:

:

5. 피해 · 회수 금품

6. 사건개요

7. 죄　명

8. 발생·검거 경위

9. 조　치

10. 담당·검거자 :

11. 기타 참고사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내사 착수 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내사하고자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사대상자

:

:

:

2. 내사할 사항

3. 내사가 필요한 이유

보고자 :

< 지 휘 사 항 >

지휘사항

0000.00.00.

지휘자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내사지휘

다음과 같이 내사를 지휘합니다.

1. 내사대상자

:
:
:

2. 내사할 사항

3. 내사가 필요한 이유

4. 내사 방식

5. 기타 주의사항 등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범 죄 신 고 접 수 대 장

연번	접수일자	신고인 성명	신 고 내 용	신고인 연락처	신고 접수자	취급자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의거 통보합니다.

피의자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주거			
	소속(직위)	소속(직위)			
사 건 번 호		사건번호	수사개시일자	0000. 00. 00.	신 병
죄 명		죄명			

< 피의사실요지 >

비 고	이 사건과 관련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처

제 목 : 공무원 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의거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의자	소속(직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처리상황	연 월 일	
	내 용	

< 피의사실요지 >

비 고	이 사건과 관련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피 해 신 고 서

다음과 같이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주거 :

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 ㊞ (전화 : - -)

소속관서장 귀하

피 해 자 인 적 사 항	주 거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직 업 : 연락처 : (휴대폰)
피해연월일시	경부터 경까지 사이
피 해 장 소	
피 해 상 황 (범 행)	

피해 금품	금 품	수 량	시 가	특 징	소 유 자

범인의 주거·성명 또는 인상·착의·특정 등	
참 고 사 항 (유류물품·기타)	

피해자 보호사항 통지			
원함 ( )	원하지않음 ( )	통지 방법	구두, 우편, 전화, FAX, e-mail, 기타 (해당 연락처 :)

※ 원하는 통지방법중 하나를 선택 표시하고, 해당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변 사 자 조 사 결 과 보 고 서

제 0000-0000 호

결재	담 당	팀 장	과 장

접수번호	0000-0000	관할경찰서		사건담당	
변사자	성 명		생년월일	0000.00.00(00세, 남/여)	
	직 업		국적		
	주소지				
발생일시	0000.00.00.00:00 ~ 0000.00.00.00:00				
발생장소					
조사일시	시 작	0000.00.00.00:00	종 료	0000.00.00.00:00	
조사장소					
사건개요					
조사내용					
현장상황					
의 견					

20 . . .

소속관서

검시조사관 ○○○○○ ○ ○ ○ ㊞

210㎜ × 297㎜(백상지 80g/㎡)

변 사 자 손 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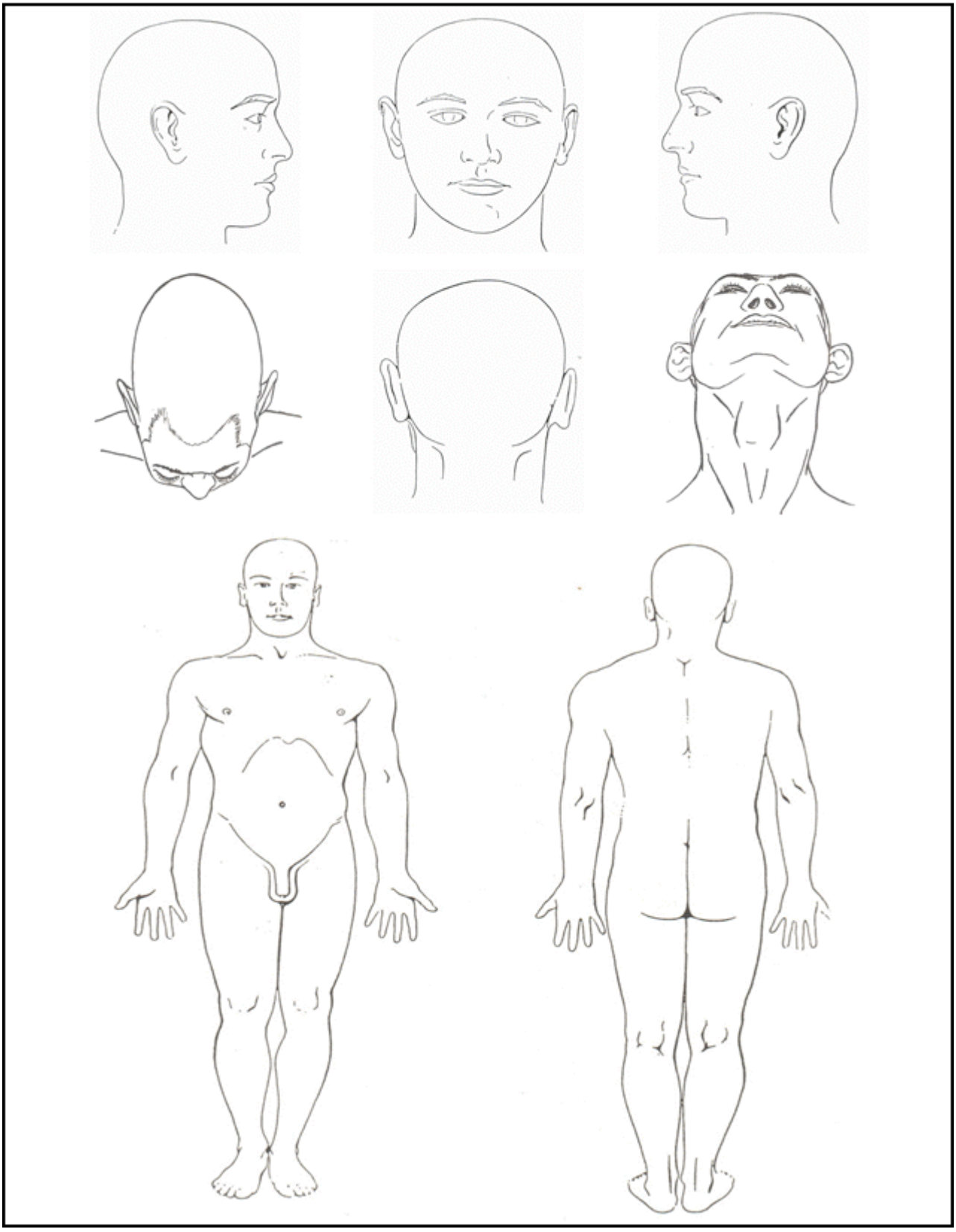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자 귀하

제 목 : 검시필증

아래 사람은 당서 관내에서 변사한 자인 바, 검찰청명 검사 검사명의 지휘로 검시를 마쳤으므로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여도 무방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제 목 : 사망통지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아니한(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시체를 검시하였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검시조서를 첨부 통보합니다.

첨부 : 검시조서 OO통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우 편 조 서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직 장 :

전화번호 : 자택 직장 휴대전화

주 거 :

등록기준지 :

피의자 피의자외 O명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 "문"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답"란에 진실하게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장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또는 무인)하신 다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기에 용지가 부족하면 A4용지(본 진술조서 용지 규격)에 추가로 기재한 후 간인하고 동봉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진술인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심야조사 요청

요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요청일시	년 월 일 :	
요청이유		

요청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요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심야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0000.00.00.

요청인 (서명)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 (통역)

피 의 자 : 피의자성명

위의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조사장소에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은 사법경찰관/리 ○○ ○○○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피의자성명(한자성명)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

직업은 직업

주거는 주거

등록기준지는 등록기준지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자택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 × 297㎜(백상지 80g/㎡)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위의 조서를 통역인을 통하여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통역인과 같이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통 역 인 ㊞

진 술 자 ㊞

0000.00.00.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 ㊞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 ㊞

210㎜ × 297㎜(백상지 80g/㎡)

수사 과정 확인서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0000.00.00. 00:00 □ 종료시각 :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0000.00.00.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은 조사대상자성명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자성명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

사법경찰관/리 :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 (제0회, 통역)

피 의 자 :

위의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00:00 조사장소에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은 사법경찰관/리 ○○ ○○○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 × 297㎜(백상지 80g/㎡)

위의 조서를 통역인을 통하여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통역인과 같이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통 역 인 ㊞

진 술 자 ㊞

0000.00.00.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 ㊞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 ㊞

210㎜ × 297㎜(백상지 80g/㎡)

수사 과정 확인서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0000.00.00. 00:00 □ 종료시각 :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0000.00.00.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은 조사대상자성명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자성명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조사대상자성명 ㊞

사법경찰관/리 : 직위 성명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진 술 조 서

성　　명 : 대상자성명(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직　　업 : 직업(직장명)

주　　거 : 주거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

직 장 주 소 :

연 락 처 : 자택전화 자택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피(혐)의자성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소속관서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혐)의자 피(혐)의자성명과(와) ○○○ 관계에 있습니다.(저는 피(혐)의자 피(혐)의자성명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인적사항의 생략

위 사람은 (00법 제00조의 규정에 따라 /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10㎜ × 297㎜(백상지 80g/㎡)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0000.00.00.

사법경찰관/리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수사 과정 확인서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0000.00.00. 00:00 □ 종료시각 :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0000.00.00.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은 조사대상자성명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자성명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사법경찰관/리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접 견 신 청 서

일시		20 년 월 일 :			
피의자(유치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변호인 이외의 자	성명		주민번호	
		유치인과의 관계		직업	
		연령		전화번호	
		주소			
	변호인	성명		전화번호	
		변호사 등록번호		선임여부	□ 선 임 □ 비선임
		소속 법률사무소			

※ 1. 변호인은 접견신청서와 함께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선임 변호사인 경우에는 선임여부 항목에 비선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견(면회) 시 유의사항]

□ 피의자를 접견(면회)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의 휴대 및 제공이 금지됩니다.

①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②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③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유치인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유치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담배·현금·수표를 허가 없이 유치장에 반입하거나 유치인과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사진기 등을 몰래 반입하여 유치인 또는 유치장 시설을 촬영하거나 접견(면회) 내용을 녹음할 수 없습니다.

□ 접견(면회) 중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치장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접견(면회)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접견(면회)인의 개인정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유치행정 업무를 위해 수집·활용됩니다.

본인은 접견 시 유의사항 열람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접견(면회)가 중지될 수 있음을 근무 경찰관에게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위 확인자 (인)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감정의뢰

다음 사항을 의뢰하오니 조속히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대 상 자	
죄 명	
감정대상(종류. 품명) 및 구 분 번 호	
감 정 의 뢰 사 항	
채 취 년 월 일	
채 취 장 소	
채 취 방 법	
관련사건개요	
관련 피의자 성명 주소	
사건담당자 계급. 성명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영 상 녹 화 물 관 리 대 장

순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죄 명	영상녹화대상자			인수자	인계자	송치일자	비고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촉탁(대상자)

다음 사항을 촉탁하오니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접수번호	
죄 명				
촉 탁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촉 탁 사 항				
촉 탁 내 용				
사 건 담 당 자				
비 고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회답(대상자)

OO경찰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에 의한 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회 답 내 용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진행 번호	피의자	사건 번호	담당 사법 경찰 관리	죄명	영장 발부일	영장 유효 기간	공소 시효 만료 일자	영장 신청부 진행 번호	기소 중지 명부 진행 번호	영장 반환 일자	비고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진행 번호	피의자	사건 번호	담당 사법 경찰 관리	죄명	영장 발부일	영장 유효 기간	공소 시효 만료 일자	영장 신청부 진행 번호	기소 중지 명부 진행 번호	영장 반환 일자	비고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진행 번호	피의자	사건 번호	담당 사법 경찰 관리	죄명	영장 발부일	영장 유효 기간	공소 시효 만료 일자	영장 신청부 진행 번호	기소 중지 명부 진행 번호	영장 반환 일자	비고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

진행 번호	피의자	사건 번호	담당 사법 경찰 관리	죄명	영장 발부일	영장 유효 기간	공소 시효 만료 일자	영장 신청부 진행 번호	기소 중지 명부 진행 번호	영장 반환 일자	비고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내국인 수배
○ 외국인 · 교포 수배

지문 번호						

일련번호 (제 호)

지명수배 · 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수배관서 : 청 서
수배번호 : 년 호
사건번호 : 년 호
즉심구분 :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했음	안했음	했음	안했음	했음	안했음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성별	죄명	수배년월일	범죄일자	공소시효 만료일	수배종별 (해당란 ○표)	인상 · 방언 신체특징	공범 성명	공범 연령
			남					A지명수배자, B지명수배자 C지명통보자			
			여								

영문성명		여권번호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격	활동지	언어	국적
	First									
	Middle									
	Last									

영장구분 (해당란 ○표)	발부일자	유효기간	영장번호	공소시효정지자 무적자	범행장소			
1. 구속 2. 체포 3. 긴급체포 4. 형집행장 5. 구인장	년 월 일	년 월 일			피해자		피해정도	

개요	해제사유 < 해당란 ○ 표 >						
	D1				D2	D3	D4	D5	D6	D7
	검거				자수	공소시효만료	오류입력	죄안됨	공소권무	혐의무
	일자	관서	계급	성명						
					D8	D9	10	11	12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	수배종별변경	기타 (각하 등)	

210㎜ × 297㎜(백상지 80g/㎡)

회 차	영장 발부일자	유 효 기 간	영 장 번 호	영 장 종 류	사 진

※ 영장구분 중
4. 형집행장과
5. 구인장은
B지명수배자만 해당함

※ 참 고

구분 \ 담당		작 성 자 (사건담당자)	수배 담당자	책 임 자
수 배	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			
	계급			
	성명			
해 제	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			
	계급			
	성명			

210㎜ × 297㎜(백상지 80g/㎡)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사건송치			수배번호				피의자				죄명	공소시효 만료일자	연고지 수사상황		수배해제		
청자	일자	번호	일자	번호	공조 일자	공조 번호	성명	연령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회보내용	사유	일자	번호

210㎜ × 297㎜(백상지 80g/㎡)

지명수배 · 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

경찰청
월분

구분 \ 죄종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사기 횡령	기타 형법	부정 수표	향군 법	기타 특별법	마약 사범
발생		월계													
		누계													
해제	계	월계													
		누계													
	검거	월계													
		누계													
	공소시효 만료	월계													
		누계													
현황															

210㎜ × 297㎜(백상지 80g/㎡)

지명수배자 죄종별 현황

경찰청
월분

구분 \ 죄종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사기 횡령	기타 형법	부정 수표	향군 법	기타 특별법	마약 사범
발생		월계													
		누계													
해제	계	월계													
		누계													
	검거	월계													
		누계													
	공소시효 만료	월계													
		누계													
현황															

210㎜ × 297㎜(백상지 80g/㎡)

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

경찰청
월분

구분 \ 죄종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사기 횡령	기타 형법	부정 수표	향군 법	기타 특별법	마약 사범
발생		월계													
		누계													
해제	계	월계													
		누계													
	검거	월계													
		누계													
	공소시효 만료	월계													
		누계													
현황															

210㎜ × 297㎜(백상지 80g/㎡)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참 조 :

제 목 :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

아래와 같이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검거 일시 · 장소

2.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 거 :

3. 수배내용

수배관서	수배일자	수배번호	사건번호	죄 명	종별 (ABC)

4. 검거경위

5. 검 거 자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

<table>
<tr><td rowspan="5">사진</td><td>죄 명</td><td colspan="4"></td></tr>
<tr><td>발생일시</td><td colspan="4"></td></tr>
<tr><td>발생장소</td><td colspan="4"></td></tr>
<tr><td>등록기준지</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
(연령)</td><td colspan="2"></td></tr>
<tr><td>인상특징</td><td colspan="5">신장 : 체격 : 방언 : 기타 :</td></tr>
<tr><td>범죄사실</td><td colspan="5"></td></tr>
<tr><td>종합공개
수배
대상자로
지명하게
된 사 유</td><td colspan="5"></td></tr>
<tr><td>피의자로
판단한
인적
물적증거</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지명수배</td><td>경찰서</td><td></td><td>년월일</td><td></td><td>번호</td><td></td></tr>
<tr><td>영장구분</td><td colspan="2">체포, 구속</td><td>영장유효기간</td><td colspan="2"></td></tr>
</table>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죄 명	죄 명	죄 명
사 진	사 진	사 진
성명 년	성명 년	성명 년
등록지 주 소 인상특징	등록지 주 소 인상특징	등록지 주 소 인상특징

죄 명	죄 명	죄 명
사 진	사 진	사 진
성명 년	성명 년	성명 년
등록지 주소 인상특징	등록지 주소 인상특징	등록지 주소 인상특징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지명통보사실 통지

귀하는 ○○○○경찰서에서 ○○○○ 사건으로 수사 중 소재불명 사유로 지명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지명통보자

성 명 :
주 거 :
연 락 처 :
직 장 :

2. 지명통보 개요

죄 명 :
사건번호 : 수배일자 :
사건담당 :

3. 통지 개요

통지일시 :
통지장소 :

> 통지서를 받은 후 사건담당자에게 연락하여 1개월 안에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정한 후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자와 연락하시려면 경찰콜센터(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여 사건담당자와의 통화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위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사건담당자와 연락을 회피할 경우,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거나 지명수배될 수 있습니다.

4. 통지자

0000. 00. 00. 00:00

확인자 : (서명)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귀청(서)에서 지명통보한 피의자 OOO를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통보)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주 거			
죄 명				
사건번호		0000-000000	수배번호	
수배일자		0000. 00. 00.	수배관서	
발견일시. 장소.경위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장물수배서 원부

일련번호	발부월일	품명	수량	규격및종별	특징및기타표시	도난분실년월일	발부범위및매수	발견신고사항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장물수배서 배부부

업종별	옥호 또는 성명	월일	제호	월일	제호	월일	제호	월일	제호	월일	제호
		수령인		수령인		수령인		수령인		수령인	

210㎜ × 297㎜(백상지 80g/㎡)

지명수배 · 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

동일성명 발견자 명부 일련번호	조회						대조결과				회보			수배·통보관서 통보(수신자)		취급자	확인자	비고
	관서	년월일	번호	죄명	성명	생년월일	수배·통보 관서	년월일	번호	죄명	년월일	번호	발송편	소속	계급 성명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체포영장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신청자 관직 및 성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검사불청구		. . . 시 분	. . . 시 분
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재신청	신청	. . . 시 분	. . . 시 분
	검사불청구	. . . 시 분	. . . 시 분
	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유효기간		. . .	. . .
집행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장소		
	처리결과		
구속영장신청	신청부번호		
	발부연월일	. . .	. . .
석방	연월일	. . .	. . .
	사유		
반환		. . .	. . .
비고			

210㎜ × 297㎜(백상지 80g/㎡)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진행번호	영장번호	구분	피의자	죄명	집행지휘 또는 촉탁		영장유효기간	처리			비고
					연월일	관서		집행	집행불능	반환일자	
					. . .		. . .	. . . 시 분		. . .	

※ 구분란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임을 특정하여 기재함.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긴 급 체 포 원 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제 호	년제 호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긴 급 체 포 서 작 성 년 월 일			. . .	. . .
긴 급 체 포	체 포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자 의 관 직 및 성 명			
	인 치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구 금 한 장 소			
	검 사 지 휘	승 인	. . . 시 분	. . . 시 분
		불 승 인	. . . 시 분	. . . 시 분
석 방	일 시		. . .	. . .
	사 유			
구 속 영 장 신 청	신 청 부 번 호			
	발 부 연 월 일		. . .	. . .
비 고				

210㎜ × 297㎜(백상지 80g/㎡)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현 행 범 인 체 포 원 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 수 서 작 성 일			. . .	. . .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체 포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체 포 한 장 소			
	체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또는 관직		
	인 수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인 수 한 장 소			
	인수한 자	관 직		
		성 명		
	인 치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구 금 한 장 소			
석방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사 유			
구속영장 신 청	신 청 부 번 호			
	발 부 연 월 일		. . .	. . .
비 고				

210㎜ × 297㎜(백상지 80g/㎡)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참 조 :

제 목 : 피의자체포보고

피의자 OOO외 O명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체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체포일시 및 장소

일 시 :

장 소 :

2. 피의자 인적사항

:

:

:

3. 범죄사실

4. 체포경위

5. 증거자료의 유무

6. 조 치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구속영장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신청자 관직 및 성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체포일시 및 유형			. . . 시 분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시 분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영장신청 및 발부	검사불청구		. . . 시 분	. . . 시 분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재신청	신청	. . . 시 분	. . . 시 분
		검사불청구	. . . 시 분	. . . 시 분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피의자 심문	일련번호		
		검사또는판사명		
		접수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접수자관직성명		
		구인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유효기간			. . .	. . .
석방	연월일		. . .	. . .
	사유			
반환			. . .	. . .
비고				

210㎜ × 297㎜(백상지 80g/㎡)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시 분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시 분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체포·구속영장 등본 등 교부대장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자			
죄명			
체포·구속 일자		. . .	. . .
접수연월일		. . .	. . .
교부허가		. . .	. . .
교부불허가		. . .	. . .
수령연월일		. . .	. . .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			
비고			

210㎜ × 297㎜(백상지 80g/㎡)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

진행번호	결정일자	사법경찰관	죄 명	피의자	결정이유	금지내용	취소일자	취소사유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법경찰관란에는 접견 등 금지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관직 및 성명을 기재함.

※ 비고란에는 체포와 구속을 구분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번호를 기재함.

210㎜ × 297㎜(백상지 80g/㎡)

체포·구속인 접견부

유치인성명					
접견 신청자	주거				
	성명				
유치인과의 관계					
접견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담화의 요지					
비고					
입회관					

210mm × 297mm(백상지 80g/㎡)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체포·구속인 교통부

유치인성명					
접견 신청자	주거				
	성명				
유치인과의 관계					
수발의 구별					
교통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서신내용의 요지					
비고					
취급자					

210mm × 297mm(백상지 80g/㎡)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10mm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물 품 차 입 부

유치인성명					
차입자	주 거				
	성 명				
유치인과의 관계					
구 별					
연 월 일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물품 및 수량					
비 고					
취 급 자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체포·구속인 수진부

유치인성명				
진단의사의 성명				
수진의 원인				
수진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진단의 결과				
비고				
입회관				

210㎜ × 297㎜(백상지 80g/㎡)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임치증명

다음과 같이 임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연 번	물 건	수 량	비 고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임치 및 급식 상황표

임 치 물						
임 치 물 품						
임치금품의 처리상황						
급식상황	일 자	1	2	3	4	5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6	7	8	9	10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11	12	13	14	15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16	17	18	19	20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21	22	23	24	25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26	27	28	29	30
	아 침					
	점 심					
	저 녁					
비 고						31

210mm × 297mm(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연월일			
신청자 관직 및 성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검사불청구		. . .	. . .
판사기각		. . .	. . .
발부		. . .	. . .
유효기간		. . .	. . .
집행	일시	. . .	. . .
	장소		
	처리결과		
비고			

210mm × 297mm(백상지 80g/㎡)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 락 처	
주 거			

다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0000.00.00

포 기 인 : ㊞

피 의 자					
죄 명					
압수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소속관서장 귀하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1호서식]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1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물건제출요청

아래 물건은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으니 20 . . .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임 의 제 출

[제 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 락 처	
주 거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 기재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0.00.00

제 출 자 : 제 출 자 ㊞

[제출물건]

연번	품 종	수량	제출자의 처분의견 (반환의사 유무)	비 고

소속관서장 귀하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전)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2. 집행장소 :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청이유				
둘이상을신청하는경우 신청취지및이유				
재신청의취지및이유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후)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허가서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와 집행장소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관직·성명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장소	
둘이상을신청하는경우 신청취지및이유			
재신청의취지및이유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사 건 번 호	
허 가 서 번 호	
통신제한허가기간	부터 까지 일
연 장 할 기 간	부터 까지 일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6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부터 까지 일	
연 장 한 기 간	부터 까지 일	

붙 임 : 통신제한조치연장결정문 사본 1통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긴급검열·감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함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2. 집행장소 :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였으므로 승인을 요청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및집행장소	1. 기간 :			
	2. 집행장소 :			
긴급통신제한조치한 사유	1. 혐의사실의 요지 :			
	2. 소명자료 :			
사전지휘를받지못한 사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려 하니 지휘를 요청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2. 집행장소 :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청이유	1. 혐의사실의 요지 :			
	2. 소명자료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집행번호	사건번호	성명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집행일시	사후신청 또는 통보서 발송여부
			대상	종류·방법	기간·장소	연월일	관서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아래 사람에 대한 제 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성명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				
긴급통신제한조치후 법원 허가서를 신청하지 못한 사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연번	사건번호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작성자		통 보 서 송부일자
		대상자	기 간	직급	성명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3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죄명					
종류·방법					
처분대상·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일자					
허가기간·집행장소					
연장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허가신청및발부	구분	허가신청	연장신청	허가신청	연장신청
	신청				
	발부				
	기각				
	재신청				
	발부				
	기각				
	수령년월일				
	수령자직성명, 날인				
검찰반환연월일					
비고					

210㎜ × 297㎜(백상지 80g/㎡)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허가신청	연장신청	허가신청	연장신청	허가신청	연장신청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4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비 고		

붙 임 : 통신제한조치허가(승인)서 사본 1통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5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3.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4. 집행위탁 여부

5. 집행경위

6.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0000.00.00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리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6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아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그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피의/내사사실				

< 처 리 내 용 >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7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아래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집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제한조치허가법원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허가년월일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번호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별지 허가서를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허가서 종 별		
허가서 발부일		
허가서 번 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첨 부 : 허가서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9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당서 사건번호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통신제한조치 집행기관	
전기통신의가입자 (우편물검열의 대상자)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와 기 간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사건담당자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0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통지일자	비고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집행자의 관직·성명	사건 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 유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 및 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2호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부

연번	신청 일자	신청자 관직·성명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승인 일자	유예사유 해소후 통지일자
			허가서 번 호	통 지 대상자	사건 번호	처리일자 및처리결과	통보받은 일 자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보고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어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을 통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사 건 번 호				
통지유예 승인일자				
통 지 일 자				

붙임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서 사본 1부.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4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집행 번호	허가서 번호	성 명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집행일시	비고
			목 적	대 상	종 류	기 간	연월일	관 서		

210mm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5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기통신사업자				
요 청 사 유				
해당가입자와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 고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6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후)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기통신사업자				
요 청 사 유				
해당가입자와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 리 허 가 를 받지못한 사유				
집행일시 · 장소 집행자의관직 · 성명				
재신청의취지및이유				
비 고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7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신청자 관직, 성명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종류							
죄명							
대상 및 범위							
긴급으로 자료를 제공받은 일시							
연장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신청 및 발부 일시	구분	허가	기간연장 (안보목적)	허가	기간연장 (안보목적)	허가	기간연장 (안보목적)
	신청						
	발부						
	검사불청구						
	관사기각						
	기각						
	재신청						
	발부						
	검사불청구						
	관사기각						
	기각						
수령 및 반환	수령연월일						
	수령자의 관직 성명·날인						
	검찰반환연월일						
통지							
비고							

210mm × 297mm(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대장

집행 번호	사건 번호	성 명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 행 일 시	사후청구 또는 통보서 발송여부
			대 상	종 류	법 위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9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

집행 번호	허가서 번 호	성 명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			집행일시	비고
			대 상	종 류	범위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0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요 청 사 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회신받을 연락처	

붙임 : 허가서 1부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1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허가서 번호

2. 집행기관

3. 전기통신가입자

4.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대상과 종류

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0000.00.00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리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2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하고 그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대상과범위				
피의/내사 사실 요 지				

< 처 리 내 용 >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3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통지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에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법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연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번호		

< 요청중지사유 >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4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연번	요청일자	요청자	대상자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	회신일자	비 고 (자료폐기등)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5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 유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사 건 번 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종류 및 자료의 범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 및 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6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연번	신청일자	신청자의 관직·성명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승인일자	유예사유 해소 후 통지일자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사건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통보받은 일자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 신청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기간연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허가받은 대상 및 범위		
연장할 기간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8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반환

별지 허가서를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허가서 종 별		
허가서 발부일		
허가서 번 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첨 부 : 허가서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9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당서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기관	
전기통신가입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과 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범위	
사 건 담 당 자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통지일자	비고 (반송등)
	허가서 번 호	통 지 대상자	집행자의 관직·성명	사건 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보고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한 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을 통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사 건 번 호				
통지유예 승인일자				
통 지 일 자				

붙임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사본 1부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내사종결시)

연 번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사건					통 보 일 자
	허가서 번 호	통 지 대상자	사건번호	내사종결 일자	집행관서 (통보대상)			
					소 속	직 급	성 명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요 청 사 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 한 사 유	
회신받을 연락처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자료 제공요청

다음과 같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번 호	*접수번호*
대 상 자	*대상자*
요 청 사 유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의 뢰 사 항 (필요한 자료의 범위)	
의 뢰 자	
회 신 정 보	전 화 : *전화번호* FAX : *소속부서의 팩스*
	기타(e-mail) : *기타(e-mail)*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당서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번호	
압수·수색·검증집행기관	
전기통신가입자	
압수·수색·검증 집행의 대상과 종류	
압수·수색·검증 집행대상의 범위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건				통지일	비고 (반송등)
	영장 번호	통지 대상자	집행자의 관직·성명	사건 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		

210mm × 297mm(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제 0000-000000 호

결재	담 당	팀 장	계 장

범죄유형		KICS접수번호		사건담당	
발생일시	~				
발생장소					
감식일시	시작		종료	기상상태	
사건개요					
현장상황					
감식사항					

채증물 처리현황	지문	
	족적	
	DNA	
	미세증거	
	CCTV	
	기타	
참고사항		
감정결과	지문	
	족적	
	DNA	
	미세증거	
	CCTV	
	기타	

현장감식 실시자	소 속	직급	성명

0000.00.00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사법경찰관/리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채증물 현황

연번	채취일시	채증물	수량	기법 · 장비	장소 · 부위	보관장소
1	0000.00.00					
2						
3						
4						
5						
6						
7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9호서식]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사건번호						
법원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성명				주임검사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성명			가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본인서명	본명		신분		
		가명				
작성원인						
최초작성일자		최초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신원관리카드 접수일자		사건종국 결정일자				

보좌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피보좌인과의 관계	직권신청	신청일자 / 신청인	사법경찰관의 허가신청일자 / 검사의 허가일자	지정일자	지정자	비고
1										
2										

변 호 인	선임기간		성 명	
	선임기간		성 명	

신변안전조치	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신청인과의 관계	종류	신청(지시·요청)일자 신청(지시·요청)자	조치기관	조치일자	조치사항
1						
2						
3						

구조금 지급	신청인	성 명(가 명)		범죄신고자등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전 화 번 호	
	결정	결정위원회		결 정 일 자	
		결 정 내 용		결정통지일자	
	지급	청 구 일 자		청 구 금 액	
		지 급 일 자		지 급 금 액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0호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작성대장

(카드별 기재)

연번	사건번호	죄 명	범죄신고자 등 (가 명)	인계일자 (송치일)	인수자 (서명)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1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table>
<tr><td>사 건 번 호</td><td colspan="4"></td></tr>
<tr><td>신원관리카드
관 리 번 호</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대 상 자
인 적 사 항</td><td>성 명(가명)</td><td></td><td>신 분</td><td></td></tr>
<tr><td>신변안전조치
해 당 여 부</td><td></td><td>피의자와의 관계</td><td></td></tr>
<tr><td>미 기 재 원 인</td><td colspan="4">대상자 ○○○(법정대리인 ○○○)의 신청, 직권</td></tr>
<tr><td>서 류 명 및
미 기 재 내 용</td><td colspan="4"></td></tr>
<tr><td>미 기 재 사 유</td><td colspan="4"></td></tr>
</table>

0000.00.00

소 속 관 서

부서 계급 (인)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2호서식]

가명조서 등 불작성사유 확인서

년 월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명조서 등 작성신청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가명조서 등 작성신청자	
불 작 성 사 유	

0000.00.00

소속관서

부서 계급 (인)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참고인 권리 안내서

□ 귀하의 **담당수사관**은 (소속1) (소속2) (계급) (성명) 수사관입니다.
(전화 : (전화번호), 팩스 : (팩스번호))

□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참고인진술 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조력을 위한 기관 및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메모장 제공>
수사관이 제공하는 메모장에 자신의 진술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요청 등> 지구대(파출소), 수사부서로 신청
특정범죄의 신고, 증언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거나 진술조서 등 서류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좌인을 지정받거나 구조금 등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여비 지급> 담당수사관에게 요청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참고인여비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제도> 국번없이 182
수사에 이의 및 불만이 있는 경우, 지방청 민원실 방문·우편접수, 사이버경찰청 '수사심의신청' 코너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www.humanrights.go.kr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epeople.go.kr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임시조치 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피해자	성 명	
	주 거	
	직 업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비 고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으로부터 다음 사람에 대한 동원 제 호 사건의 심문기일 지정통지가 있으므로 동사건 심리에 필요한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피체포·구속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체포·구속 일자		
지정된 심문기일		

첨부 1. 사건기록 1권
2. 증거물(있음/없음)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응급조치보고

행위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피해자와의 관계	
	가정 상황	성명 : 행위자와의 관계 : 주거 :
죄 명		
범죄사실요지		별지와 같음
피 해 자		
신 고 자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피해자가 동의함)
☐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여 긴급치료를 받게 함
☐ 폭력행위의 재발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행위자에게 통보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 위반시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7호서식]

가정환경조사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조 사 자	

1. 인적사항

사건번호		죄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888888-8888888	직 업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학 력		

2. 가족상황

관계	성 명	연령	성별	학 력	직 업	기 타

3. 혼인상황 및 생활환경

혼 인 상 황	
생계비조달방법	
주 거 환 경	

4. 가정폭력상황

최초갈등 발생원인		
본건범행전가정불화 및폭력 횟수		
가정불화해결을 위한노력유무		
본건범죄의 원인및동기		
행위자 심신 상태	음주상황	
	약물복용여부	
	성격문제	
	정신장애유무	
범죄후정황		

5. 재범의 위험성 및 가정유지 의사 유무

가정유지 의사유무	
임시조치 결정시 기거할 장소 유무	
상담소 상담 희망 여부	
기타 참고사항	
재범위험성	

6. 조사자 의견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領事機關 通報要請確認書

0000.00.00

Confirmation of Request for Notification to the Consulate

被逮捕者 姓名 피의자 성명	擔當警察官 所屬, 階級, 姓名 소속관서 ○○과 ○○팀 계급 성명 印

당신은 귀국에서 파견된 영사관원에게 체포된 사실을 통보·요구할 권리 및 대한민국의 법령 내에서 위 영사관원에 편지를 보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the rights to demand us to notify an official in the consulate dispatched by your government that you are arrested and to send a letter to the official pursuant to relevant laws of Republic of Korea.

당신이 원하는 항목의 ( )에 V표를 한 후, 끝으로 공란에 국명을 기입하고 서명해 주십시오.
Choose one between the following alternatives and mark it with V in the parenthesis.
Finally write your nationality(country of origin) and sign underneath.

나는 자국 영사관원에 대한 통보를 요청합니다.
I request you to notify an official in the consulate of my country that I am arrested. ( )

나는 통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I do not request you to notify. ( )

( ) 국 명 Nationality(Country of Origin)	( ) 피체포자 서명 Signature

※ 注意 : 국명확인은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 의할 것

通 報 書

0000.00.00

본직은 다음과 같이 상기의 외국인을 체포한 것을 영사관에 통보하였음

(1) 통보일시 : 0000.00.00. 00:00

(2) 통보대상 영사기관 :

소속관서 ○○과 ○○팀 계급 성명

※ 송치서류에 복사본을 편철할 것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임시조치 신청(사전)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니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변 호 사			
임시조치의 내용 (중복신청가능)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호)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제4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제5호)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제6호)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7호)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0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임시조치 신청(사후)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니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조속히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시조치의 내용 (중복신청가능)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호)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제4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제5호)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제6호)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7호)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일 시			
	내 용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1호서식]

임시조치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일시				
신청자 관직 및 성명				
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임시조치	검사불청구			
	관사기각			
	발부			
	재신청	신청		
		검사불청구		
		관사기각		
		발부		
임시조치				
항고	항고제기일			
	등본송부일			
	결정일			
	결정내용			
재항고	재항고제기일			
	결정일			
	결정내용			
비고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임시조치 통보서 (가정폭력)

0000. 00. 00.

1. 행 위 자

성 명 : 000 (00세, 성별)

주 거 :

2. 피 해 자

성 명 : 000 (세, 성별)

주 거 :

직 장 :

3. 임시조치 통보일시· 장소 및 방법

일시· 장소: 0000. 00. 00.(요일) 00:00, 장소

방 법 : 0000 (예시 : 대상자 대면하여 통보, 전화상 통보 등)

4. 임시조치 결정내용 및 기간 (0000.00.00 ~ 0000.00.00, 00법원)

[ ]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전기통신: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 송수신

[ ] 4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 5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5. 담 당 자

소 속 : 00경찰서 00과 00계

성 명 : 계급 000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가정폭력특례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시조치 5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 또는 제65조 제4호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통보

※ 적의한 방법으로 임시조치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서는 수사기록에 편철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임시조치통보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거			
피해아동등	성명			
	생년월일			
	주거			
조치내용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1호)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4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5호)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6호)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7호)		
통보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통보방법	[□]	대면통보		
	[□]	전화통보(전화번호 :)		

년 월 일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4호서식]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조사 전 유의사항

1. 가해자와 피해자를 **장소적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조사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2. 조사표 작성의 목적은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라는 점을 설명하고, **주취상태·진술거부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확인 가능한 사안만 기록하여 주십시오
3. 조사표는 가·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상황을 토대로 작성해 주시고, 조사 결과가 사건 처리와 긴급임시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십시오.
4. 조사표의 각 문항은 피해자 진술, 육안 관찰, PDA 上 신고이력·재발우려가정 정보 등을 통해 확인 및 기록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문서·사진·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확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활용, 세심하게 점검해 주세요.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폭행(눈에 띄는 상처·멍 등)·유기·방임 등
6. 경청하는 자세로,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주세요.
   "신고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두 진술해주세요.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 관련근거: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 '현장출입조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응급조치'

Ⅰ. 기본정보	신고일시 : □	사건번호 :	쌍방
피해자	성명	성별:	연락처:
	국적: 한국 □ 기타: ( )		생년월일:
가해자	성명	성별:	연락처:
	국적: 한국 □ 기타: ( )		생년월일:
주소지: 신고지 동일 □ *직접입력(상세주소):			관계:
			아동 유무: 있음□ 없음□

Ⅱ. 사건처리 참고기준

범죄 유형	해당함
1. **상해**(타박상, 골절, 혈흔, 응급실 내원 등)	□
2. **특수폭행·협박**(흉기사용)	□
3. **상습폭행·협박**(2회 이상 폭행·협박)	□
4. **손괴**(물건 파손)	□
5.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격리·접근금지)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위반죄 해당	□
6. **일반폭행·협박**(존속폭행·협박 포함)	□
7.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격리·접근금지) **위반**	□
※ 범죄 유형에 따른 조치 기준 **▵1~5번 → 체포·임의동행·발생보고 ▵6번 → 발생보고(형사처벌뿐 아니라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가정보호사건]이 가능함을 안내했음에도 명시적으로 사건접수를 원치 않는 경우에만 현장종결) ▵7번 → 퇴거 조치 후 위반자 동보서 작성하여 여청수사팀 송부**	

Ⅲ. 긴급임시조치 결정문항

※ 1개만 해당할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 적극 실시

조사 방법	조사 내용	해당함
경찰관 확인·판단	1.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뚜렷한 외상(상해)이 확인**되거나 가해자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특수폭행·협박)한 것이 확인**됨	□
	2. 가해자가 **출입문 개방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들 대면한 결과 가정폭력 **범죄 피해가 확인됨**	□
	3. **파편, 집기류의 심각한 파손** 등 주변 잔여물을 볼 때 가정폭력 **범죄가 의심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

Ⅳ. 긴급임시조치 평가 기준 ※ 총점 5점 이상인 경우 긴급임시조치 적극 실시

구분	유형	조사 내용	예	아니오	확인 안됨
경찰관 확인·판단	경찰에 대한 저항	1.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	□
	정당성 주장	2. 가해자가 가정폭력 행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함	□	□	□
피해자 대상 질문	신고전력	3.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나요?	□	□	□
	일반적 폭력성	4. 가해자가 가족구성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나요?	□	□	□
	알코올 등 약물사용	5. 가해자가 일주일에 술을 주 3회 이상 마시거나 기타 약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나요? * 향정신성 의약품(마약, 수면제 등), 불법 약물(본드, 가스 등)	□	□	□
	자살암시	6. 가해자가 선생님 탓을 하며 죽겠다고 말하거나 죽으려고 시도한 적 있나요?	□	□	□
	지배 성향	7. 가해자가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하게 하나요?	□	□	□
	가해자에 대한 공포	8. 가해자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	□	□
	피해자 건강	9. 가해자와의 문제로 몸이나 마음에 불편한 곳이 있나요?	□	□	□
총 점			( ) 점		

※ 가정폭력 현장조사와 응급조치가 마무리되면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거나 직접 전달하고 그 내용을 안내해 주십시오.

※ 조사표상 제시된 사건처리·긴급임시조치 기준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종결 내용에 상세히 기록해 주십시오.(기록된 내용은 사후 골백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자 성명·계급		소속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서식]

긴급임시조치 결정

제 0000-000000 호 0000. 00. 00.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함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	성 명	
	주 거	
	직 장	
긴급임시조치 결정근거	□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사법경찰관 직권	
긴급임시조치 일시 및 장소	일시 :	
	장소 :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6호서식]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

<table>
<tr><td rowspan="4">아동학대행위자</td><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직 업</td><td></td><td>피해아동등과의 관계</td><td></td></tr>
<tr><td>주 거</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피해아동등</td><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긴급임시조치 내 용</td><td>[□]</td><td colspan="3">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호)</td></tr>
<tr><td>[□]</td><td colspan="3">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td></tr>
<tr><td>[□]</td><td colspan="3">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td></tr>
<tr><td rowspan="2">긴급임시조치 일시 및 장소</td><td>일 시</td><td colspan="3"></td></tr>
<tr><td>장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긴급임시조치 고 지</td><td>[□]</td><td colspan="3">본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td></tr>
<tr><td>[□]</td><td colspan="3">긴급임시조치 결정을 고지하였으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거부사유 :</td></tr>
</table>

년 월 일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7호서식]

긴급임시조치 확인서(가정폭력)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본인은 *0000.00.00 00:00*경 *긴급임시조치 결정 장소* 에서 아래 항목의 긴급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전화,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0000. 00. 00.

위 확인인 *성명* (인)

위 대상자에 대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하면서, 위 결정 내용을 고지하였음.
(고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 (인)

※ 아래 긴급임시조치 통보서는 잘라서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르는 선) ----------

긴급임시조치 통보서(가정폭력)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전화,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결정사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 결정시 지체없이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사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0000. 00. 00.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 (인)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8호서식]

긴급임시조치통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임시조치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table>
<tr><td rowspan="4">긴급임시조치 대상자</td><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직 업</td><td></td><td>피해아동등과의 관계</td><td></td></tr>
<tr><td>주 거</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피해아동등</td><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주 거</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긴급임시조치 내 용</td><td>[□]</td><td colspan="3">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호)</td></tr>
<tr><td>[□]</td><td colspan="3">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td></tr>
<tr><td>[□]</td><td colspan="3">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td></tr>
<tr><td rowspan="2">긴급임시조치 통보 일시 및 장소</td><td>일 시</td><td colspan="3"></td></tr>
<tr><td>장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긴급임시조치 고 지</td><td>[□]</td><td colspan="3">본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td></tr>
<tr><td>[□]</td><td colspan="3">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통보하였으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거부사유 :</td></tr>
</table>

년 월 일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응급조치 결과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아래와 같이 응급조치를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table>
<tr><td rowspan="5">아동학대행위자</td><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직 업</td><td></td><td>피해아동과의 관 계</td><td></td></tr>
<tr><td>주 거</td><td colspan="3"></td></tr>
<tr><td>다른가정 구 성 원</td><td colspan="3">성명 : 행위자와의 관계 :
주거 :</td></tr>
<tr><td rowspan="2">피해아동</td><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법정대리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상담원</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응급조치 일시 및 장소</td><td>일 시</td><td colspan="3"></td></tr>
<tr><td>장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응급조치의 내 용</td><td>[□]</td><td colspan="3">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제1호)</td></tr>
<tr><td>[□]</td><td colspan="3">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제2호)</td></tr>
<tr><td>[□]</td><td colspan="3">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제3호)</td></tr>
<tr><td>[□]</td><td colspan="3">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제4호)</td></tr>
<tr><td rowspan="2">응급조치자</td><td>성 명</td><td></td><td>소 속</td><td></td></tr>
<tr><td>전화번호</td><td></td><td>직 급</td><td></td></tr>
<tr><td colspan="2">피해사실의 요지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td><td colspan="3"></td></tr>
</table>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0호서식]

<table>
<tr><td colspan="3">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td><td>팀장</td><td></td><td>대장</td><td></td></tr>
<tr><td rowspan="8">피해아동</td><td>이 름</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성 별</td><td>[ ]남 [ ]여</td><td>연 령</td><td colspan="3">만 세(개월)</td></tr>
<tr><td>거주지</td><td></td><td>교육기관명</td><td colspan="3"></td></tr>
<tr><td>외상유무</td><td colspan="2">[ ]있음 [ ]없음</td><td>외상정도</td><td colspan="2">[ ]중상 [ ]경상</td></tr>
<tr><td>치료경력</td><td colspan="2">[ ]있음 [ ]없음</td><td>치료내용</td><td colspan="2"></td></tr>
<tr><td>표정</td><td colspan="5">[ ]어두움 [ ]밝음 [ ]무표정 [ ]기타</td></tr>
<tr><td>의복</td><td colspan="5">[ ]더러움 [ ]평범함 [ ]깨끗함 [ ]미착용</td></tr>
<tr><td>행동</td><td colspan="5">[ ]자연스러움 [ ]약간 자연스러움 [ ]부자연스러움 [ ]숨거나 회피함</td></tr>
<tr><td>장애여부</td><td colspan="5">[ ]지적장애 [ ]신체장애 [ ]지적+신체장애 [ ]기타</td></tr>
<tr><td rowspan="4">학대의심자</td><td>이 름</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거주지</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td></tr>
<tr><td>직 업</td><td colspan="5">[ ]관리직 [ ]전문직 [ ]기술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노무직 [ ]공무원 [ ]무직</td></tr>
<tr><td>아동과의 관계</td><td colspan="5">[ ]친부 [ ]친모 [ ]계부 [ ]계모 [ ]양부 [ ]양모 [ ]친인척 [ ]대리양육자 [ ]기타</td></tr>
<tr><td rowspan="6">가정환경</td><td>청소상태</td><td colspan="5">[ ]깨끗함 [ ]보통 [ ]더러움</td></tr>
<tr><td>거주상태</td><td>[ ]자택</td><td>[ ]전세</td><td>[ ]보증금+월세</td><td>[ ]월세</td><td>[ ]영구임대</td><td>[ ]기타</td></tr>
<tr><td rowspan="2">가족유형</td><td>[ ]친부모</td><td>[ ]한부모</td><td>[ ]미혼부모</td><td>[ ]재혼가정</td><td>[ ]친인척 보호</td><td>[ ]사실혼 가정</td></tr>
<tr><td>[ ]위탁가정</td><td>[ ]입양가정</td><td>[ ]시설보호</td><td>[ ]소년소녀가장</td><td>[ ]기타</td><td>[ ]파악안됨</td></tr>
<tr><td rowspan="4">가족관계</td><td>이름</td><td>생년월일</td><td>직업(학교)</td><td colspan="2">동거여부</td><td>연락처</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 ]동거 [ ]비동거</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 ]동거 [ ]비동거</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 ]동거 [ ]비동거</td><td></td></tr>
<tr><td rowspan="6">학대의심내용</td><td rowspan="2">[ ]신체학대</td><td>[ ]세게 흔듦</td><td>[ ]묶음</td><td>[ ]아동 던짐</td><td>[ ]조름·비틂</td><td>[ ]꼬집거나 뭄</td></tr>
<tr><td>[ ]벽에 부딪힘</td><td>[ ]물건던짐</td><td>[ ]흉기로 찌름</td><td>[ ]화상</td><td>[ ]기타</td></tr>
<tr><td rowspan="2">[ ]정서학대</td><td>[ ]소리 지름</td><td>[ ]무시나 모욕</td><td>[ ]무관심</td><td>[ ]언어폭력</td><td>[ ]가정폭력 노출</td></tr>
<tr><td>[ ]집밖으로 쫓음</td><td>[ ]비현실 강요</td><td>[ ]수면 금지</td><td>[ ]공포분위기</td><td>[ ]기타</td></tr>
<tr><td rowspan="2">[ ]성학대</td><td>[ ]신체관찰</td><td>[ ]성관계 노출</td><td>[ ]성기노출</td><td>[ ]자위노출</td><td>[ ]신체추행</td><td>[ ]구강추행</td></tr>
<tr><td>[ ]성기추행</td><td>[ ]구강성교</td><td>[ ]성기삽입</td><td>[ ]음란물노출</td><td>[ ]성매매</td><td>[ ]기타</td></tr>
<tr><td>[ ]방임(유기)</td><td>[ ] 물리적방임</td><td>[ ] 의료적방임</td><td>[ ] 교육적방임</td><td>[ ]가출 후 찾지 않음</td><td>[ ]출생 신고안함</td><td>[ ]유기</td><td>[ ]기타</td></tr>
<tr><td>조치결과</td><td colspan="6">현장종결 : [ ] 혐의없음 [ ] 오인신고 [ ] 중복신고 [ ] 재신고 [ ] 허위신고 [ ] 기타
응급조치 : [ ] 범죄행위 제지 [ ] 학대행위자 격리 [ ] 보호시설 인도 [ ] 의료기관인도
긴급임시조치 : [ ] 퇴거 등 격리 [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여부 : [ ] 통보 [ ] 미통보
참고사항 :</td></tr>
<tr><td colspan="7">신고접수번호 : 작 성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계급 성명 (인)
계급 성명 (인)</td></tr>
</table>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1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table>
<tr><td rowspan="2">요 청 인</td><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자 격</td><td colspan="3">[ ]피해아동등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td></tr>
<tr><td rowspan="2">아동학대
행위자</td><td>성 명</td><td></td><td>피해아동과의
관 계</td><td></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피해아동등</td><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td><td colspan="3"></td></tr>
<tr><td>신청 요청
내 용</td><td colspan="4"></td></tr>
<tr><td>임시조치
미신청 사유</td><td colspan="4"></td></tr>
</table>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서

(00-0000-0000)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상황을 통보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피해아동 등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세)		
피해아동등	성 명			
임시조치 사건번호 및 결정일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임시조치 결정 내용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이행상황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인도하여 아래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음을 통보합니다.

피해아동 1	성 명		생년월일(나이)	(세)
	전 화 번 호			
보호시설 또는 의료시설	명 칭			
	주 소			
	담당직원(직급)		전 화 번 호	
피해아동 2	성 명		생년월일(나이)	
	전 화 번 호			
보호시설 또는 의료시설	명 칭			
	주 소			
	담당직원(직급)		전 화 번 호	
피해아동 3	성 명		생년월일(나이)	
	전 화 번 호			
보호시설 또는 의료시설	명 칭			
	주 소			
	담당직원(직급)		전 화 번 호	
통보인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전 화 번 호		직 급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자 격 [ ]피해아동등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 거	
피해아동등	성 명	성 별
	생년월일(나이)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중복신청 가능)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합니다.

아동학대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피해아동등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긴급임시조치 내 용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호)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긴급임시조치 취 소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긴급임시조치 고 지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긴급임시조치 취소 고지	[□]	본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취소 결정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긴급임시조치 취소 결정을 고지하였으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거부사유 :		

년 월 일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7호서식]

소속관서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 요청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table>
<tr><td rowspan="2">요 청 인</td><td>성 명</td><td colspan="4"></td></tr>
<tr><td>자 격</td><td colspan="4">[ ]피해아동등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td></tr>
<tr><td rowspan="2">아동학대행위자</td><td>성 명</td><td></td><td>피해아동등과의 관계</td><td></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피해아동등</td><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td><td colspan="3"></td></tr>
<tr><td>요 청 내 용</td><td colspan="4"></td></tr>
<tr><td>처 리 결 과</td><td>[□]</td><td>임시조치 신청</td><td>[□]</td><td>신청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8">임시조치의 내 용
(중복신청가능)</td><td>[□]</td><td colspan="3">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호)</td></tr>
<tr><td>[□]</td><td colspan="3">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td></tr>
<tr><td>[□]</td><td colspan="3">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td></tr>
<tr><td>[□]</td><td colspan="3">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제4호)</td></tr>
<tr><td>[□]</td><td colspan="3">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제5호)</td></tr>
<tr><td>[□]</td><td colspan="3">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제6호)</td></tr>
<tr><td>[□]</td><td colspan="3">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7호)</td></tr>
<tr><td>신 청 하 지 않은 이 유</td><td colspan="4"></td></tr>
</table>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의무위반사실 통보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통보하니,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위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의무위반사실	일 시			
	장 소			
	내 용			
적용법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제63조제1항제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제63조제1항제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법 제63조제1항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제63조제1항제5호) [ ]사회봉사·수강명령(제36조제1항제4호) [ ]보호관찰(제36조제1항제5호) [ ]감호위탁(제36조제1항제6호) [ ]치료위탁(제36조제1항제7호) [ ]상담위탁(제36조제1항제8호)		
통보인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직 급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table>
<tr><td rowspan="3">아동학대범죄
신고사항</td><td>신고시각</td><td colspan="3"></td></tr>
<tr><td>신고요지</td><td colspan="3"></td></tr>
<tr><td>범죄발생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동행요청인</td><td>성 명</td><td></td><td>소 속</td><td></td></tr>
<tr><td>전화번호</td><td></td><td>직 급</td><td></td></tr>
<tr><td>특이사항</td><td colspan="4"></td></tr>
</table>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0호서식]

임시조치 신청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 명	
	자 격	[ ]피해아동등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 거	

피해아동등	성 명(성별)	생년월일(나이)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화번호

임시조치의 내용 (중복요청 가능)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 ]임시조치의 신청(사법경찰관)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1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입국·상륙절차 특례신청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입국·상륙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입국·상륙 절차 특례의 요청을 신청합니다.

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국 적			
마약류의 분산 방지 및 도주 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2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체류 부적당통보신청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게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5항 규정에 따른 통보를 신청합니다.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국 적			
입국(상륙) 허가일자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3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세관 절차 특례 신청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될 / 우리나라로 반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세관절차의 특례조치의 요청을 신청합니다.

마약류의 특정	
마약류의 분산 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4호서식]

특례조치 등 신청부(0000-000000)

입국·상륙 등 요청·통보 관련					세 관 요 청 관 련		
대상자	성 명				마 약 류		
	생년월일	. . . (세)	성 별	남·여			
	국 적						
요청관련	사법경찰관 신 청	신 청 일	. . .		사법경찰관 신 청	신 청 일	. . .
		기 각 일	. . .			기 각 일	. . .
	사법경찰관 재 신 청	신 청 일	. . .		사법경찰관 재 신 청	신 청 일	. . .
		기 각 일	. . .			기 각 일	. . .
통보관련	사법경찰관 신 청	신 청 일	. . .		비 고		
		기 각 일	. . .				
	검사통보	통 보 일	. . .				
		처리결과	. . .				
비 고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5호서식]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성명			
죄명			
사건번호		년 형 제 호	년 형 제 호
사건명			
검사			
신청관서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권리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사법경찰관 신청	신청일	. . .	. . .
	불청구일	. . .	. . .
검사청구	청구일	. . .	. . .
	결정일	. . .	. . .
	요지		
사법경찰관 재신청	신청일	. . .	. . .
	불청구일	. . .	. . .
검사재청구	청구일	. . .	. . .
	결정일	. . .	. . .
	요지		
결정문수령일		. . .	. . .
수령자의 직급·성명·날인			
항고	제기일		
	결정일		
	요지		
재항고	제기일		
	결정일		
	요지		
종국연월일		. . .	. . .
몰수·부대 보전부 번호		몰수 년 제 호 부대	몰수 년 제 호 부대
비고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6호서식]

추징보전 신청부

사건번호			
송치번호			
성명			
죄명			
신청관서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추징보전액			
취소된 추징보전액			
잔여 추징보전액			
추징보전사건의표시			
사법경찰관 신청	신청일	. . .	. . .
	검사 불청구일	. . .	. . .
검사청구	청구일	. . .	. . .
	법원 결정일	. . .	. . .
	요지		
사법경찰관 재신청	신청일	. . .	. . .
	검사 불청구일	. . .	. . .
검사재청구	청구일	. . .	. . .
	법원 결정일	. . .	. . .
	요지		
사법경찰관 (전부·일부) 취소신청	신청일	. . .	. . .
	검사 불청구일	. . .	. . .
검사 (전부·일부) 취소청구	청구일	. . .	. . .
	법원 결정일	. . .	. . .
	요지		
결정문수령일		. . .	. . .
수령자의직급·성명·날인			
항고	제기일		
	결정일		
	요지		
재항고	제기일		
	결정일		
	요지		
종국연월일		. . .	. . .
비고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7호서식]

보석자 형집행정지자 관찰부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성명·연령	
주민등록번호	
죄명 및 소속법원	
출소한 교도소 또는 대용감방	
관찰이유 및 통지받은 일자	보석, 형집행정지, 20 년 월 일
법원에서 부가한 제한 및 조건	

210㎜ × 297㎜(백상지 80g/㎡)

관 찰 상 황

년 월 일	관 찰 상 황	관 찰 자	확 인 자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8호서식]

압 수 부

번 호		범죄사건부 번 호	압 수 연월일	압수물건		소유자의 주거 성명	피압수자의 주거 성명	보관자 확 인	취급자 확 인	처 분		비고
압수부	압수물			품종	수량					연월일	요지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9호서식]

체포·구속인명부

제 호								
체포·구속	취급자	팀장	과장	서장				
	연월일 및 유형	년 월 일 : 체포영장 년 월 일 : 긴급체포 년 월 일 : 현행범인체포(인수) 년 월 일 : 구속영장 년 월 일 : 즉결심판선고에 의함						
석방	취급자	팀장	과장	서장				
	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 유							
죄명 및 형명, 형기								
인상	키		몸 집		머리털		눈 썹	
	수 염		이 마		귀		눈	
	입		이		코		용 모	
	얼 굴		얼굴색					
	기타특징							
착 의								
체포·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등록기준지							
범죄경력, 죄명, 범수								
공범관계자성명								
가족관계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0호서식]

범 죄 사 건 부

사 건 번 호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수 리		. . . :	. . . :
구 분		고소·고발·자수·신고· 현행범·기타	고소·고발·자수·신고· 현행범·기타
수 사 담 당 자			
피의자	성명 및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생년월일) 직 업 주 거	(남·여)	(남·여)
조 회		컴퓨터·지문·사진·수법· 지명 기타	컴퓨터·지문·사진·수법· 지명 기타
죄명	수 리		
	결 정		
범죄	일 시	. . . :	. . . :
	장 소		
피 해 정 도			
피 해 자			
체포·구속	체 포 영 장		
	긴 급 체 포		
	현행범인체포		
	구 속 영 장		
	인 치 구 금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석방일시 및 사유			
결정	년 월 일	. . .	. . .
	종 류		
압 수 번 호		압 제 호	압 제 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제 호	제 호
검사처분	년 월 일	. . .	. . .
	요 지		
판결	년 월 일	. . .	. . .
	요 지		
비 고			
범죄원표	발생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검거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피 의 자 표	. . . 제 호	. . . 제 호

210㎜ × 297㎜(백상지 80g/㎡)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 . . :	. . . :	. . . :
고소·고발·자수·신고· 현행범·기타	고소·고발·자수·신고· 현행범·기타	고소·고발·자수·신고· 현행범·기타
(남·여)	(남·여)	(남·여)
컴퓨터지문·사진·수법 지명 기타	컴퓨터지문·사진·수법 지명 기타	컴퓨터지문·사진·수법· 지명 기타
. . . :	. . . :	. . . :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 . .	. . .	. . .
제 호	제 호	제 호
압 제 호	압 제 호	압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1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

다음 사람의 에 필요한 검토의견 회신을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인적사항	성 명				
	주 거				
	등록기준지				
	직 업			성 별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죄 명					
범 죄 사 실					
사 유					
기 간					
비 고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2호서식]

정식재판청구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거			
죄명				
선고년월일				
즉결심판주문				
비고				

위 피고사건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0000.00.00

위 청구인 ㊞

소속관서장 귀하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3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정식재판청구(경찰서장)

다음 피고사건의 즉결심판에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사 건 번 호				
피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선 고 연 월 일				
즉결심판주문				
비 고				

소 속 관 서 장

210mm × 297mm(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소속관서

검사승인		
가	부	비고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정식재판청구승인요청

다음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려 하니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피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선고연월일		
즉결심판주문		
정식재판청구사유	범죄사실	
	증거자료	
	불복이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5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

다음 즉결심판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피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문원지 작성번호
죄 명			
송 부 사 유			
기 록 권 수	권		
증 거 물			
비 고			수리전산입력

소 속 관 서 장

210mm × 297mm(백상지 80g/㎡)

기 록 목 록

서 류 명	진 술 자	작성년월일	면수

210mm × 297mm(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6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참 조 :

제 목 : 수사결과보고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하였기에 결과 보고합니다.

Ⅰ. 피의자 인적사항

:

:

:

Ⅱ.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Ⅲ. 범죄사실

Ⅳ. 적용법조

Ⅴ. 증거관계

Ⅵ. 수사결과 및 의견

Ⅶ. 수사참여경찰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7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참 조 :

제 목 : 수사기일연장건의서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기일 연장을 건의**합니다.

Ⅰ. 피의자 인적사항

:

:

:

Ⅱ.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Ⅲ. 범죄사실

Ⅳ. 적용법조

Ⅴ. 수사기일 연장건의 사유

Ⅵ. 향후수사계획

경 로	지휘 및 의견	구분	결 재	일시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8호서식]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

□ 사건정보

접수번호		사건번호	
피(혐)의자		피 해 자	
죄 명			

□ 통지대상 :

◎ 기본사항	
대상자와의 관계	
통지희망여부	원 함 ☑ 원하지 않음 □
통지 방법	구두☑ 우편□ 전화□ FAX□ E-mail□ SMS□ 기타□
수신처 또는 연락처	

◎ 통지현황

연번	일시	대상자	방법	주 요 내 용

□ 통지대상 :

◎ 기본사항	
대상자와의 관계	
통지희망여부	원 함 ☑ 원하지 않음 □
통지 방법	구두☑ 우편□ 전화□ FAX□ E-mail□ SMS□ 기타□
수신처 또는 연락처	

◎ 통지현황

연번	일시	구분	대상자	방법	주 요 내 용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9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제 목 : 불송치 편철

<table>
<tr><td>사건번호</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6">피 의 자</td><td colspan="3">성 명</td><td>성별</td><td>연령</td><td>지문원지
작성번호</td><td>피의자
원표번호</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죄 명</td><td colspan="6"></td></tr>
<tr><td>결정주문</td><td colspan="6"></td></tr>
<tr><td>결정일시</td><td colspan="6">0000. 00. 00.</td></tr>
<tr><td>결 정 자</td><td colspan="6"></td></tr>
<tr><td>팀 장</td><td colspan="6"></td></tr>
<tr><td>정수사관</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공소시효</td><td>장기</td><td colspan="2">0000. 00. 00.</td><td rowspan="2">기 록 보 존 기 한</td><td colspan="2" rowspan="2">0000. 00. 00.</td></tr>
<tr><td>단기</td><td colspan="2">0000. 00. 00.</td></tr>
<tr><td>비 고</td><td colspan="6"></td></tr>
</table>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0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제 목 : 수사중지 편철

<table>
<tr><td>사건번호</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6">피 의 자</td><td colspan="3">성 명</td><td>성별</td><td>연령</td><td>지문원지
작성번호</td><td>피의자
원표번호</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죄 명</td><td colspan="6"></td></tr>
<tr><td>결정주문</td><td colspan="6"></td></tr>
<tr><td>결정일시</td><td colspan="6">0000. 00. 00.</td></tr>
<tr><td>결 정 자</td><td colspan="6"></td></tr>
<tr><td>팀 장</td><td colspan="6"></td></tr>
<tr><td>정수사관</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공소시효</td><td>장기</td><td colspan="2">0000. 00. 00.</td><td rowspan="2">기 록 보 존 기 한</td><td colspan="2" rowspan="2">0000. 00. 00.</td></tr>
<tr><td>단기</td><td colspan="2">0000. 00. 00.</td></tr>
<tr><td>비 고</td><td colspan="6"></td></tr>
</table>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1호서식]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KICS 점수번호			
성 명		생년월일	

〈경찰은 조사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귀하가 동의하신 경우에만 진술녹음이 진행됩니다.〉

※ 다만, 진술녹음에 동의하더라도 진술녹음실 부족·장비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술녹음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 후 진술녹음을 하던 중 녹음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아 진술녹음 없이 조사하던 중 진술녹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진술녹음은 조서작성 시작부터 사건관계인이 조서에 간인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쳐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진행합니다.

○ 진술녹음파일은 조사과정 중 인권침해 여부 확인,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검찰에 송치되지 않습니다.

※ 다만, 법원·수사기관에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진술녹음파일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음

○ 진술녹음파일의 청취는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또는 조서에 간인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쳐 조서를 완성한 직후에 가능하며, 이후에는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따라 녹음파일을 청취하시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녹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진술녹음파일(복제본·사본 포함)은 제공하지 않음

※ 진술녹음파일의 청취·녹취와 별개로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조서 사본 제공도 가능

○ 진술녹음파일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녹음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 후 일괄 폐기합니다.

※ 다만, 3년 경과 이전에 진술녹음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열람·복사·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청구절차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이후 폐기합니다.

○ 모든 사건관계인은 진술녹음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녹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부동의 ( )

20 . . . 성명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2호서식]

陈述录音告知及同意确认书

KICS受理编号			
姓名		出生日期	

<为使调查过程更具客观性和透明性，为保护被调查者的人权，警察实施陈述录音制度。请仔细阅读以下内容，陈述录音仅在您同意的情况下实施。>

※ 不过，即使同意陈述录音也可能因陈述录音室不足或设备故障等的原因无法进行陈述录音。

○ 即使已同意，也可以在进行陈述录音的过程中请求中断录音。即使不同意，在无陈述录音的情况下进行调查时，也可以提出进行陈述录音的请求。

○ 陈述录音从拟写调查记录时开始，直到被调查者在调查记录上盖骑缝章、签字盖章或签名，完成调查记录拟写时为止。

○ 陈述录音文件仅用于确认调查过程中是否侵害人权、调查记录中所记载的内容是否和本人陈述的内容一致，以及唤起陈述者的记忆，不会移交至检察厅。

※ 但是，法院或侦查机关以其他法律为依据，请求提供陈述录音文件时将予以提供

○ 听取陈述录音文件可在阅览调查记录的过程中或在调查记录上盖骑缝章、签字盖章或签名，完成调查记录拟写后进行。之后，可根据信息公开请求步骤，通过听取录音文件或制作录音记录*确认陈述内容。

* 制作录音记录费用由本人承担(只能雇佣速记师制作)，不予以提供陈述录音文件(包括复制本和副本)

※ 除听取陈述录音文件、录音外，通过信息公开请求步骤，也可提供调查记录副本

○ 为保护被调查者的个人信息，陈述录音文件之日起保管三年，之后将全部销毁。

※ 但是，在三年到期前，若收到关于陈述录音文件的信息公开请求、阅览、复制、法院或侦查机关的请求时，可根据相应请求步骤采取措施，待执行完成后予以销毁。

○ 所有被调查者都有权不同意进行陈述录音。

■ 根据本人的自由意愿，同意进行陈述录音吗？

同意 (　　)　　不同意 (　　)

20　.　.　.　　姓名　　(印)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3호서식]

Statement Recording Notice and Consent Form

KICS Receipt No.			
Name		Date of Birth	

<The statement recording process is enacted by the polic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subjects of investigation through objective and transparent investigation procedures. Carefully read the following information, and your statements will be recorded only if you agree to the contents of the form.>

※ However, the statement recording may not be conducted due to inevitable reasons such as the lack of room used for statement recording or the failure in equipment, even though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has agreed to record one's statements.

○ Even though the recording has started by the consent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the subject may request the inspector to stop recording one's statements. Similarly, the subject may request to be recorded during an investigation, even though the subject has refused to do so in the beginning.

○ The recording of statement shall begin when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starts filling out the report, and shall end when the report is completed by the subject's stamp or sign on the report with the date.

○ The recorded file shall solely be used for confirmation on matters related to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matters related to the verification of the report in accordance with one's statement, and for recollection of the subject's memory on the topic of the investigation. The file will not be sent to the prosecution.

※ However, if the recorded file is requested by the court or investigation agency, the file may be transmitted.

○ The recorded file is accessible during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report or immediately after completing the report by stamping or signing the report with the date. From that time on,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is accessible through transcribing or listening to the recorded files in compliance with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Procedure.

* The costs for transcription will be paid for by the subject(s), and the file of statement recording (including duplicates and copies) will not be provided.

※ A copy of the report can be provided through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Procedure apart from listening and/or recording the file of statement recording.

○ The recorded file will be discarded after three years since it was created,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ubjects of the investigation.

※ However, in case the file of the statement recording is requested by the court or investigation agency, or is requested for viewing or copying by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before the three-year expiration, the file will be discarded after all the measures has been taken according to the request procedure.

○ All subjects of the investigation may refuse statement recording.

■ **Do you agree to the statement recording out of your own volition?**

I agree ( ) I disagree ( )

20 . . . Name (Signature)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4호서식]

Уведомление и подтверждение согласия на звукозапись показаний

Номер приема по системе KICS			
ФИО		Дата рождения	

〈Полиция пользуется системой звукозаписи показаний для защиты прав человека у допрашиваемых, что делает процесс расследования объективным и прозрачным. Пожалуйста, внимательно прочитайте следующее. Звукозапись показаний будет производиться только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Вашего огласия.〉

※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наличие разрешения на ведение звукозаписи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ведении звукозаписи), звукозапись может не производится в случае нехватки подходящих для этого помещений или неисправностей звукозаписывающе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Соглашившись на запись допроса, Вы в любой момент можете инициировать её прекращение. В случае, если вы отказались от звукозаписи и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дет без звукозаписи показаний, вы также можете попросить сделать звукозапись.

○ Звукозапись показаний продолжается с начала подготовки протокола допроса и до его завершения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печатью или подписью допрашиваемого.

○ Файл звукозаписи показаний используется тольк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верить, были ли допущены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ходе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ерно ли все указано в протоколе, как было сказано допрашиваемым, и чтобы указать допрашиваемому на сказанное им ранее. При этом файл не отправляется в прокуратуру.

※ Однако файл может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 в случае прямого запроса след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или сюда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юридическом основании.

○ Прослушивание файла звукозаписи показаний возможно во время чтения готового протокола или после заверенного печатью или подписью допрашиваемого. Позже вы можете прослушать записанный файл согласно порядку раскрытия информации или можете проверить содержание показаний, сделав письменную расшифровку звукозаписи*.

* Письменная расшифровка звукозаписи производится на средства обратившейся стороны, а сам файл(как и его копии и дубликаты) н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 Отдельно от прослушивания файла звукозаписи показаний и его расшифровки, копия протокола допроса может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рядком раскрытия информации.

○ Записанные файлы будут удалены через 3 года, начиная с даты записи, в целях защиты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и допрашиваемых.

※ Однако, если в отношении записанного файла до истечения трехлетнего срока будет принят к рассмотрению запрос о раскрытии информации, прослушивании, копировании, или другой запрос из суда или след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то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действи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просом файл будет подлежать уничтожению.

○ Любой допрашиваемый может выразить свое несогласие со звукозаписью своих показаний.

Даете ли вы добровольное согласие на звукозапись ваших показаний?

Согласен ( ) Не согласен ( )

20 . . . ФИО (Подпись)

210mm × 297mm(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5호서식]

THÔNG BÁO GHI ÂM VÀ XÁC NHẬN ĐỒNG Ý GHI ÂM LỜI KHAI			
Số tiếp nhận của KICS			
Họ tên		Ngày tháng năm sinh	

<Cơ quan cảnh sát đang thực hiện chế độ ghi âm lời khai để giúp quá trình điều tra trở nên khách quan và minh bạch, đồng thời giúp bảo vệ nhân quyền của đối tượng điều tra. Việc ghi âm lời khai chỉ được được thực hiện khi bạn đã đọc kỹ và đồng ý với những nội dung dưới đây.>

※ Tuy nhiên, ngay cả khi bạn đồng ý ghi âm lời khai nhưng có lý do bất khả kháng như thiếu phòng ghi âm lời khai, thiết bị ghi âm bị hỏng thì việc ghi âm lời khai có thể không tiến hành được.

○ Sau khi đồng ý, bạn vẫn có thể yêu cầu dừng việc ghi âm trong khi đang ghi âm lời khai hoặc sau khi không đồng ý, bạn vẫn có thể yêu cầu ghi âm lời khai trong khi đang điều tra mà không ghi âm.

○ Việc ghi âm lời khai được thực hiện kể từ khi bắt đầu viết biên bản điều tra cho đến khi đối tượng điều tra hoàn thành xong biên bản điều tra bằng cách đóng dấu giáp lai và ghi tên đóng dấu hoặc ký tên vào biên bản điều tra.

○ File ghi âm lời khai chỉ được sử dụng với mục đích kiểm tra xem có sự vi phạm nhân quyền trong quá trình điều tra hay không, kiểm tra xem lời khai của bản thân có được ghi đúng trong biên bản điều tra hay không, đồng thời để khơi gợi lại trí nhớ của người khai và file ghi âm lời khai sẽ không được gửi đến cơ quan kiểm sát.

※ Tuy nhiên, file ghi âm lời khai có thể được cung cấp trong trường hợp tòa án hoặc cơ quan điều tra yêu cầu dựa trên các quy định pháp luật khác.

○ Có thể nghe lại File ghi âm lời khai trong quá trình đọc biên bản điều tra, ngay sau khi đóng dấu giáp lai và ghi tên đóng dấu hoặc ký tên vào biên bản điều tra để hoàn thành biên bản điều tra, sau đó, bạn có thể nghe file ghi âm theo thủ tục yêu cầu công khai thông tin hoặc có thể kiểm tra lại nội dung đã khai thông qua việc lập* bản ghi chép nội dung ghi âm.

* Chi phí ghi âm sẽ do bản thân chi trả và không được cung cấp file ghi âm lời khai (bao gồm cả bản sao và bản phục chế)

※ Có thể cung cấp một bản sao của biên bản điều tra thông qua quy trình yêu cầu công khai thông tin, điều này tách biệt với việc nghe và ghi lại file ghi âm lời khai.

○ File ghi âm lời khai sẽ được lưu giữ trong 3 năm kể từ ngày ghi âm với mục đích bảo vệ quyền riêng tư của đối tượng điều tra, sau đó sẽ được hủy bỏ đồng loạt.

※ Tuy nhiên, trước khi hết thời hạn 3 năm, nếu có yêu cầu công khai thông tin, đọc, sao chép, yêu cầu của tòa án hoặc cơ quan điều tra về file ghi âm lời khai, thì sau khi hoàn thành các biện pháp xử lý theo thủ tục yêu cầu liên quan, file ghi âm lời khai mới được hủy bỏ.

○ Tất cả các đối tượng điều tra đều có quyền không đồng ý với việc ghi âm lời khai.

■ **Bạn có đồng ý ghi âm lại lời khai theo quyết định của bản thân hay không?**

Đồng ý ( ) **Không đồng ý ( )**

Ngày tháng năm Họ tên: (Ký tên)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6호서식]

ประกาศการ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 หนังสือยินยอม

KICS เลขที่ใบเสร็จ			
ชื่อ		วันเกิด	

<ตามนาทีตำรวจได้นำกระบวนการการ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มาใช้เพื่อปกป้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ผู้ถูกสอบสวนโดยผ่านกระบวนการการสอบสวนที่เป็นกลางและโปร่งใส โปรดอ่านข้อมูลต่อไปนี้อย่างรอบคอบ การ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จะเริ่มดำเนินการต่อเมื่อคุณได้ยอมรับกับเนื้อหาในหนังสือยินยอมนี้แล้วเท่านั้น>

※ ส่วนแต่ ในกรณีที่ห้อง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ไม่เพียงพอ อุปกรณ์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ต่างๆพังเสียหาย อื่นๆ อาจจะทำให้ไม่สามารถ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ได้ ถึงแม้ว่าผู้ถูกสอบสวนจะยินยอมให้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แล้วก็ตาม

○ หลังจากที่ผู้ถูกสอบสวนยินยอมแล้ว ในระหว่างที่กำลัง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อยู่ผู้ถูกสอบสวนสามารถขอร้องให้หยุดชนทึก คำให้การได้ และถ้าไม่ยินยอมตั้งแต่แรกในระหว่างที่กำลังถูกสอบสวนอยู่โดนไม่มีการชนทึกผู้ถูกสอบสวนสามารถขอร้องให้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ได้เช่นกัน

○ การ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คว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อในขณะเริ่มต้นเมื่อผู้ถูกสอบสวนกรอกรายงานจนถึงเวลาที่รายงานเสร็จตามด้วยการประทับตราหรือลงนามโดยผู้ถูกสอบสวนในรายงานพร้อมวันที่

○ ไฟล์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จะนำมาใช้เพื่อการยืนยันใน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ปกป้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ละ ใช้เพื่อยืนยันหรือพิสูจน์รายงานตามคำให้การของบุคคลและเพื่อการระลึกความจำของผู้ถูกสอบสวน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เรื่องที่ได้รับการสอบสวนเท่านั้น ไฟล์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นี้จะไม่ถูกส่งไปเพื่อฟ้องร้อง

※ ส่วนแต่ ในกรณีที่ศาลหรือหน่วยงานสอบสวนได้มีการร้องขอไฟล์ชนทึกนั้น อาจได้รับการส่งต่อไปยังผู้ร้องขอได้

○ ไฟล์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ต้องเปิดใช้การได้ในช่วงขั้นตอนของการเปิดรายงานหรือทันทีหลังจากได้มีการกรอกรายงานเสร็จสิ้นสมบูรณ์โดยการลงตราประทับหรือลงนามพร้อมกับวันที่ และตั้งแต่เวลานั้นเป็นต้นไป ไฟล์ชนทึกนี้อาจจะได้รับการรับฟังตามกระบวนการร้องขอการเปิดเผยข้อมูล และเนื้อหาของคำให้การอาจ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ผ่านการร่างรายงานการชนทึก*

* 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ชนทึกจะได้รับการชำระโดยผู้ถูกสอบสวน ส่วนไฟล์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นั้น (รวมถึงที่ทำซ้ำและสำเนา) 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มอบให้ได้

※ สำเนาของรายงานอาจจะได้รับการส่งมอบผ่านกระบวนการร้องขอการเปิดเผยข้อมูลโดยแยกเป็นอีกหนึ่งกระบวน
การเพื่อการฟังและ/หรือการชนทึกของไฟล์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

○ ไฟล์คำให้การจะถูกแก้ไขเป็นเวลา3ปและหลังจากนั้นจะโดนทำลายทิ้งใน3ปเพื่อเป็นการปกป้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ของผู้ถูกสอบสวน

※ หากในกรณีที่คำร้องขอไฟล์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ได้รับการอนุมัติโดยคำร้องขอการเปิดเผยข้อมูลทั้งเพื่อการอ่านหรือเพื่อ
การทำสำเนาก็ดี หรือได้รับการอนุมัติโดยศาลหรือหน่วยงานสอบสวนในช่วงเวลา3ปนก่อนจนหมดอายุ ไฟล์นั้นจะถูกทำลายทิ้งไปหลังเสร็จสิ้นการดำเนินมาตรการตามกระบวนการร้องขอ

○ ผู้ถูกสอบสวนทุกคนอาจจะปฏิเสธที่จะทำการ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ได้

■ **คุณยอมรับในการชนทึกคำให้การตามความสมัครใจของคุณหรือไม่?**

คนยอมรับ ( ) **คนไม่ยอมรับ ( )**

20 . . . ชื่อ (เซ็นชื่อ/ตรา)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7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구금 장소 변경 통지

1. 피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2. 위 사람은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구속*되어 에 하였습니다.

3. 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피의자에 대한 구금 장소를 변경하여 알려 드립니다.

▹ 구금 장소 변경 일시 :

▹ 변경 후 구금 장소 :

담 당 자		소속 및 연락처	

소 속 관 서

사법경찰관 계급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8호서식]

심사 의견서 (사건 종결 시, 검사 요청 등 사건 발송 시)

<table>
<tr><td rowspan="4">사건정보</td><td>사건번호</td><td colspan="4">사 건 담 당</td></tr>
<tr><td></td><td>담당부서</td><td></td><td>담당자</td><td></td></tr>
<tr><td>죄명</td><td colspan="4"></td></tr>
<tr><td>의견</td><td colspan="4"></td></tr>
<tr><td>사건 개요</td><td colspan="5">○
—
※</td></tr>
<tr><td rowspan="4">점검·분석 결과</td><td colspan="5">○
—
※</td></tr>
<tr><td colspan="5"></td></tr>
<tr><td>의견</td><td colspan="2">☐ 의견대로 처리</td><td>☐ 보완 후 처리</td><td>☐ 보완 후 재심사</td></tr>
<tr><td colspan="2"></td><td>수사심사관</td><td colspan="2">경감 (인)</td></tr>
<tr><td>참고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9호서식]

분석 보고서 (검사 요청 등 사건 접수 시)

사건정보	사건번호	죄 명	사건담당	
			팀 장	
			담당자	
사건개요	○ – ※			
경찰의견	○			
	○			
검사 요구·요청 사항	○ – ※			
점검·분석 결과	○ – ※			
		수사심사관	경감 (인)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0호서식]

분석 보고서 (처분 불일치 사건)

사건정보	사건번호	죄 명	사건담당	
			팀 장	
			담당자	
사건개요				
경찰의견	○			
	○			
검찰처분	○			
	○			
수사팀 의견	○ 경찰 판단: ○ 검찰 판단: ○ 수사팀 의견:			
점검·분석 결과	○ – ※			
		수사팀장	경감 (인)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1호서식]

분석 보고서 (무죄 사건)

사건정보	사건번호	죄 명	사건담당	
			팀 장	
			담당자	
사건개요				
경찰의견	○			
	○			
법원판단	○			
	○			
판시사항	○ 경찰 판단: ○ 법원 판단: ○ 수사팀 의견:			
점검·분석 결과	○ – ※			
		수사팀장	경감 (인)	

210㎜ × 297㎜(백상지 80g/㎡)

<별지>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2호서식]

심사 의견서 (영장 신청)

<table>
<tr><td rowspan="4">사건정보</td><td colspan="2">사건번호</td><td colspan="4">사 건 담 당</td></tr>
<tr><td colspan="2"></td><td>담당부서</td><td></td><td>담당자</td><td></td></tr>
<tr><td>죄명</td><td colspan="5"></td></tr>
<tr><td>영장 종류</td><td colspan="5">☐ 구속영장(사전·사후) ☐ 체포영장 ☐ 압수수색영장</td></tr>
<tr><td>사건 개요
및 신청사유</td><td colspan="6">○
–
※</td></tr>
<tr><td rowspan="4">검토 의견</td><td colspan="6">○
–
※

<별지 사용시 간인 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2">의견</td><td colspan="2">☐ 의견대로 신청</td><td colspan="3">☐ 보완 후 신청</td></tr>
<tr><td colspan="2">☐ 보완 후 재심사</td><td colspan="3">☐ 불신청</td></tr>
<tr><td colspan="3"></td><td>영장심사관</td><td colspan="2">경감 (인)</td></tr>
<tr><td>참고사항</td><td colspan="6"></td></tr>
</table>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3호서식]

분석 보고서 (불청구 · 기각)

사건정보	사건번호	영장종류	영장심사관 검토의견	신청결과
	죄 명		피의자	피혜자
사건개요 및 신청사유	○ – ※			
불청구 또는 기각 사유 (요지)	○ – ※			
분석 결과	○ – ※			
			수사심사관	경감 (인)

210㎜ × 297㎜(백상지 80g/㎡)

<별지>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4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참 조 :

제 목 : 수사보고 ( )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아 래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6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 (간이폭력)

피 의 자 : 피의자성명

위의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00:00 조사장소(소속관서+부서)에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은 사법경찰관/리 ○○ ○○○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 × 297㎜(백상지 80g/㎡)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 × 297㎜(백상지 80g/㎡)

범 행 일 시	
범 행 장 소	
공범및모의경위	
피 해 자	
범행동기, 경위 및 수단·방법	

210㎜ × 297㎜(백상지 80g/㎡)

피해부위 및 정도	
진단서 등 증거에 대한 의견	
범행 후의 조치 (합의 여부 등)	
기타 유리한 자료	

문 :

답 :

문 :

답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7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 (간이절도)

피 의 자 : 피의자성명

위의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00:00 조사장소(소속관서+부서)에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은 사법경찰관/리 ○○ ○○○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 × 297㎜(백상지 80g/㎡)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 × 297㎜(백상지 80g/㎡)

범 행 일 시	
범 행 장 소	
공 범	
절 취 품	
피 해 자	
범행동기, 경위 및 수단·방법	

210㎜ × 297㎜(백상지 80g/㎡)

장물소지보관여부	(압수절차)
장물처분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검거된 경위	
기타 유리한 자료	

문 :

답 :

문 :

답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8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 (간이예비군)

피 의 자 : 피의자성명

위의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00:00 조사장소(소속관서+부서)에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은 사법경찰관/리 ○○ ○○○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 × 297㎜(백상지 80g/㎡)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mm × 297mm(백상지 80g/㎡)

소속예비군부대		
역종·계급·직책		
훈련 불참	일 시	
	장 소	
	훈련종류	
소집 통지서	피의자에게 전달된 과정	
	발행부대장	
불참이유		
증거(통지서수령증)에 대한 의견		
정당한 사유 유무 (보류, 연기원서 제출 등)		
기타 유리한 자료		

문 :

답 :

문 :

답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9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 (간이도박)

피 의 자 : 피의자성명

위의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00:00 조사장소(소속관서+부서)에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은 사법경찰관/리 ○○ ○○○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 × 297㎜(백상지 80g/㎡)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 × 297㎜(백상지 80g/㎡)

범 행 일 시	
범 행 장 소	
공 범	
범행동기, 경위 및 수단·방법	

210㎜ × 297㎜(백상지 80g/㎡)

장소제공자 및 그에 대한 대가	
승 패 역 수	
도박용으로 소지했던 금품 및 물건	(압수절차)
기타유리한자료	

문 :

답 :

문 :

답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0호서식]

진 술 조 서 (간이교통)

성 명	대상자(한자성명) 이명 :	성 별	남·여
연 령	연령세(0000.00.00.생)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주 거	주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000외 0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0000.00.00. 조사장소(소속관서+부서)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피해일시	
피해장소	
가해차량	(소유자) (차량번호) (차종)
피(혐)의자	
피해경위	

210㎜ × 297㎜(백상지 80g/㎡)

피 해 내 용	
제 출 할 증 거	
피(혐)의자의 과실에 대 한 의 견	
진 술 인 의 과 실	
사 고 후 피(혐)의자의 조치	
피(혐)의자와 합의 여부 (교 섭 상 황)	
피(혐)의자의 처벌에 대 한 의 견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문 :

답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1호서식]

진 술 조 서 (간이폭력)

성 명	( ) 이명 :	성 별	
연 령	세(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000외 0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0000.00.00. 조사장소(소속관서+부서)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혐)의자			
피해경위			

210㎜ × 297㎜(백상지 80g/㎡)

피해내용 및 정도	
피해후의조치	
제출할증거	
압수증거물확인	
피(험)의자와의 관계	
합의여부 또는 교섭 상황	
피(험)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문 :

답 :

문 :

답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2호서식]

진 술 조 서 (간이절도)

성 명	( ) 이명 :	성 별	
연 령	세(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000외 0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0000.00.00. 조사장소(소속관서+부서)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도난일시			
도난장소			
피(혐)의자			
도난품의 소유자, 점유자, 종류, 수량, 시가			
도난경위			

210㎜ × 297㎜(백상지 80g/㎡)

도난후의 조치	
제출할 증거	
압수증거물 확인	
도난품의 회수, 가격변상 여부	
피(함)의자와의 관계	
피(함)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3호서식]

진 술 서 (간이공통)

성 명	( ) 이 명 :	성 별	
연 령	만 세(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죄명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20 . . .

작성자 (인)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4호서식]

진 술 서 (간이교통)

성 명	( ) 이명 :	성 별	
연 령	만 세(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피해일시			
피해장소			
가해차량			
피 의 자	(소유자) (차량번호) (차종)		
피해경위			

210㎜ × 297㎜(백상지 80g/㎡)

피 해 내 용	
제 출 할 증 거	
피의자의 과실에 대한 의견	
진술인의 과실	
사고 후 피의자의 조치	
합의 여부 또는 교섭 상황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기타 참고될 진술	
20 . . . 작성자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5호서식]

진 술 서 (간이폭력)

성 명	( ) 이 명 :	성 별	
연 령	만 세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휴 대 전 화		전자우편 (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상해(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피 해 일 시	
피 해 장 소	
피 의 자	
피 해 경 위	

210㎜ × 297㎜(백상지 80g/㎡)

피 해 내 용	
피해후의 조치	
제출할 증거물 또는 증인	
압수증거물 확인	
피의자와의 관계	
합 의 여 부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기타 참고될 진술	
20 . . . 작성자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6호서식]

진 술 서 (간이절도)

성 명	( ) 이 명 :	성 별	
연 령	만 세(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휴 대 전 화		전자우편 (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도난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도 난 일 시			
도 난 장 소			
피 의 자			
도난품의 소유자, 점유자, 종류, 수 량 , 시 가			
피 해 경 위			

210㎜ × 297㎜(백상지 80g/㎡)

도난후의 조치	
제출할 증거	
압수증거물 확인	
도난품의 회수, 가격변상 여부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기타 참고될 진술	
20 . . . 작성자 ㊞	

210㎜ × 297㎜(백상지 80g/㎡)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7호서식]

소 속 관 서

0000.00.00.

수 신 : *검찰청의 장* 발 신 : 소속관서

제 목 : 송치 결정서(간이) 사법경찰관 계급

사 건 번 호	0000-00000호, 0000-00000호
피 의 자	: : : :
죄 명	
범 죄 사 실	
적 용 법 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송치 결정 이유	

210㎜ × 297㎜(백상지 80g/㎡)

[별지1]

[불송치 결정종류]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 불송치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7. 27.] [훈령 제878호, 2018. 7. 27., 제정]

경찰청(범죄분석담당관)02 - 3150 - 357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사자료표의 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문"이라 함은 손가락 끝마디의 안쪽에 피부가 융기(隆起)한 선 또는 점(이하 "융선"이라 한다)으로 형성된 무늬를 말한다.
2. "지문자동검색시스템(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 AFIS)" 이라 함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외국인지문원지 및 수사자료표에 첨부된 지문을 이미지 형태로 전산입력하여 필요시 지문을 열람·대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 ; E - CRIS)" 이라 함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전산입력하는 등 수사자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범죄경력관리시스템(Criminal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CRIMS)"은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조회· 회보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6.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된 지문을 말한다.

제2장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

제3조(수사자료표의 관리) ①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정확한 수사자료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 중 발견되는 오류자료를 신속하게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수사자료표의 작성시 신원확인) 수사자료표 작성자는 피의자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

권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제반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수사자료표의 작성방법) ①수사자료표는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입원,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입력한다.

②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지문자료가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으로 동일인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3. 주민조회시 별표1에 의한 지문분류번호가 없는 경우(00000 - 00000 포함)
4. 손가락의 손상ㆍ절단 등으로 지문분류번호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제4조의 단서에 의한 신원확인 후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수 있다.

1.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2. 강제출국된 외국인
3.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지문채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피의자의 수사자료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력한다.

1. 내국인 19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 - 1000000’, 여자는 ‘생년월일 - 2000000’
2. 내국인 20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 - 3000000’, 여자는 ‘생년월일 - 4000000’
3. 외국인 19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 - 5000000’, 여자는 ‘생년월일 - 6000000’
4. 외국인 20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 - 7000000’, 여자는 ‘생년월일 - 8000000’

⑤수사자료표 작성자는 작성 후 신속히 소속 팀(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사자료표의 확인 및 조치)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된 수사자료표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작성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정할 사항의 조치) 제6조의 통보를 받은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된 이후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된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을 검찰청에 추송하여야 한다.

1.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 재확인
2.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입력된 피의자 원표, 수사기록, 각종 대장 등 관련 서류의 정정
3.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된 행정조치 또는 기관통보에 대한 정정 및 보완

제8조(처분결과 등 정리)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의 입건현황과 처분 또는 선고현황 등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한다.

1.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자동입력되지 않은 처분 결과 등이 있는 경우
2. 다른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처분결과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3. 본인이 수사자료표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제기를 한 경우
4. 기타 수사자료표 처분사항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제3장 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등

제9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범죄경력관리시스템 및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이 설치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수사자료표 내용이 불법 유출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에 대한 승인) 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건 담당자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소속 계(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종합조회처리실 등에 범죄·수사경력 자료의 조회를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뢰자는 소속 부서의 장(일과 후 상황실장)의 승인을 받아 조회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을 요하여 조회 의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조회의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의뢰하고, 사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회 의뢰를 받은 종합조회처리실 등의 근무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회·회보하여야 한다.

제11조(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의 의뢰 및 회보방법)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수사경력 자료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조회 신청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

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수사경력 조회 요청서로 요청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단말기에서 출력한 범죄경력조회서로 회보한다.

2.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로 신청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한다.

3.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에 따라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수사경력 조회 요청서로 요청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수사경력 회보

서로 회보한다.

4.「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 및 제60조의2제8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정당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로 신청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로 회보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 외에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말한다) 등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범죄·수사경력 조회의 의뢰 및 그 회보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을 조회할 때 처분결과가 확인되지 않는(수사중, 재판중 포함) 경우에는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에게 처분결과의 확인을 요청하고, 범죄분석담당관은 이를 확인하여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수정된 사항을 출력하여 회보한다.

제12조(특이사항 작성 및 활용) ①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찰관은 체포·구속중인 피의자가 도주 시도, 자해 기도, 흉기 사용 등의 특이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사자료표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②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수사·관리하는 경찰관은 제1항의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피의자 신병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수사자료표의 보관 등) ①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수사자료표를 접수된 날짜순으로 보관한다.

②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수사자료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복 작성된 경우
2.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결과와 함께 삭제하도록 통보받은 경우

③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지문의 채취·분류 등

제14조(지문 채취방법) ① 수사자료표, 별지 제9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문채취는 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②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지문란에는 오른손 첫째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되 손가락의 절단·손상 등의 사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한다.

1. 왼손 첫째 손가락
2. 오른손 둘째·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
3. 왼손 둘째·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

제15조(자료전산화)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수사자료표의 지문자료는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의 지문자료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입력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관리한다.

제16조(지문의 분류) 지문분류에 사용되는 용어, 융선, 문형 및 분류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5장 지문의 감정 의뢰 및 회보

제17조(현장지문 등의 감정 의뢰 및 회보) ① 경찰관서의 장은 채취한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물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에 입력된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라 회보한다.

제18조(신원확인 조회 의뢰 및 회보)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신원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신원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수사자료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신원확인을 의뢰받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의 지문자료와 의뢰받은 대상자의 지문을 대조하여 그 결과를 회보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878호,2018. 7. 27.>

제1조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중 "제20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조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중 “제24조”를 “제18조”로 한다.

【별표1】 지문의 분류

1. 지문의 종류

지문의 종류	설 명	형 태
(1) 궁상문 (弓狀紋)	가. 궁상문의 정의 활(弓)모양의 궁상선으로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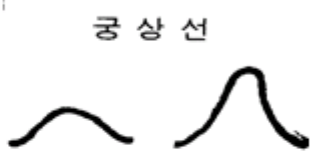
	나. 궁상문의 종류	
	① 보통궁상문 평탄하게 흐른 활모양의 궁상선으로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	
	② 돌기궁상문 돌기한 활모양의 궁상선으로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	
(2) 제상문 (蹄狀紋)	가. 제상문의 정의 말(馬) 발굽(蹄) 모양의 제상선으로 형성되고 융선이 흐르는 반대측에 삼각도가 1개 있는 지문을 말한다.	
	나. 제상문의 종류	
	① 갑종제상문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어 있거나 우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우측에 형성되어 있는 지문을 말한다.	
	② 을종제상문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우측에 형성되어 있거나 우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어 있는 지문을 말한다.	

지문의 종류	설 명	형 태
⑶ 와상문 (渦狀紋)	가. 와상문의 정의 와상선, 환상선, 이중제상선, 제상선 기타 융선이 독립 또는 혼재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삼각도가 있는 지문을 말한다. 단, 유태제형(有胎蹄形) 와상문은 삼각도가 1개이다.	
	나. 와상문의 종류	
	① 순와상문 와상문의 중심부 융선이 와상선으로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	
	② 환상문 와상문의 중심 부융선이 환상선으로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	
	③ 이중제형 와상문 와상문의 중심부를 형성한 1개 또는 2개의 융선이 이중으로 제상선을 형성한 지문을 말한다.	
	④ 유태제형(有胎蹄形) 와상문 제상문 중심부에 거꾸로 형성된 제상선이 있거나 거꾸로 형성된 호상선이 2개이상 있는 지문을 말한다.	
	⑤ 혼합문 2개이상의 문형이 혼합하여 1개의 문형을 형성한 지문을 말한다.	

지문의 종류	설 명	형 태
(4) 변태문 (變態紋)	변태문이란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에 속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지문을 말한다.	변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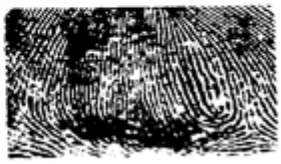

2. 지문융선의 종류

융선의 종류	설 명	형 태
(1)궁상선 (弓狀線)	활(弓)모양의 곡선으로 이뤄진 지문을 말하며 삼각도는 형성되지 않는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흐르는 선을 보통궁상선이라 하고 급격한 경사를 이루며 흐르는 선을 돌기궁상선이라 한다.	
(2)제상선 (蹄狀線)	좌측 또는 우측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하여 말발굽형태를 이루면서 시작한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융선을 말한다.	
(3)중핵 제상선 (中核 蹄狀線)	여러 개의 제상선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제상선을 말하며 제상선의 가상반원에 다른 융선이 교차하거나 외측으로부터 접촉되어 있을 때는 그 다음 제상선이 중핵제상선이 된다.	
	중핵제상선의 가상 반원내에 2개 이상의 융선이 동일한 모양으로 같이 있을 때에는 내단 지정의 예에 따른다.	

융선의 종류	설 명	형 태
⑷가상반원(假想半圓)과 가상반원선(假想半圓線)	제상선의 상부에 가상원을 그린 후 그 원을 2등분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상부를 가상반원이라 하고 그 선을 가상반원선이라 한다. 단 가상반원선에 이르지 못한 제상선은 제상선으로 볼 수 없다.	
⑸가상정점(假想頂點)	삼각도 또는 기준각을 형성한 2개의 융선이 접합할 때는 접합점, 병행할 때는 가상의 삼각도 꼭지점을 말한다.	
⑹ 가상직선과 가상수직선	제상문의 내단과 외단간의 융선수 또는 와상문의 추적선 종점과 우측표준점간의 융선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임시로 그은 선을 말한다.	
⑺ 와상선(渦狀線)	와상문의 중심부 융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흐르기 시작하여 1회이상 회전, 원 또는 타원형을 이루는 선을 말한다.	
⑻ 환상선(環狀線)	와상문의 중심부 융선이 원 또는 타원형을 이룬 선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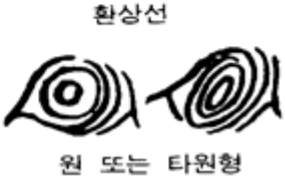

융선의 종류	설 명	형 태
⑼이중제상선(二重蹄狀線)	와상문 중심부의 융선 1개 또는 2개가 이중으로 제상선을 형성하고 융선이 흐르기 시작한 원기점 방향으로 되돌아가거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융선을 말한다.	
⑽삼각도(三角島)	2개의 융선이 외측에서 접합하거나 병행하면서 형성된 삼각형 모양을 말한다. ○제상문은 융선이 흐르는 반대측(좌측 또는 우측)에 1개 형성된다. ○와상문은 중심부 좌우측에 2개이상 형성되어 있다. 단, 유태제형와상문은 1개이다.	
⑾ 접합선(接合線)	2개 이상의 융선이 어느 1점에서 만나 1개의 선으로 된 것을 말한다.	
⑿ 병행선(竝行線)과 개재선(介在線)	다른 2개의 융선이 삼각형 모양을 형성하면서 접합하지 않고 병행되는 선을 병행선이라 하고 가상정점 부근의 병행선 사이에 있는 융선을 개재선이라 한다.	

융선의 종류	설 명	형 태
⑬분기선 (分岐線)	1개의 융선이 2개이상의 융선으로 분기된 선을 말한다.	
⑭간선 (幹線)과 지선(支線)	분기선중 굵은 선을 간선이라 하고 가는 선을 지선이라 하며 와상문을 분류할 때 추적선의 종점을 지정하게 되는 선이다.	
⑮추적선 (追跡線)	좌측기준각 하변을 형성한 융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 또는 외측에 이르기까지 추적되는 선을 말한다. ○추적선이 중단되었을 때는 아래 융선을 추적한다. ○추적선이 분기되었을 때는 간선을 추적하고 간선과 지선이 불분명할 때는 아래 융선을 추적한다. ○추적선의 융선 굵기만큼 단절된 것은 그대로 추적한다.	
⑯기준각 (基準角)	2개 이상의 삼각도를 가진 와상문에서 중앙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좌우측의 삼각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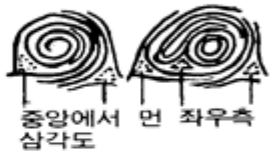
⑰봉상선 (棒狀線)	봉(棒)의 모양으로 형성된 융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중핵제상선의 가상 반원선내에 형성된 경우를 지칭한다.	
⑱도형선 (島形線)	1개의 융선이 분기되었다가 다시 접합되어 원 또는 타원형의 섬 모양을 이룬 융선을 말한다.	

⑲점(點)과 단선(短線)	폭과 길이가 동일한 융선을 점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길이가 2㎜정도의 짧은 융선을 단선이라 한다.	
⑳호상선(弧狀線)과 조상선(釣狀線)	반원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곡선을 이룬 융선을 호상선이라 하고 봉상선의 끝이 낚시 모양의 융선을 조상선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중핵제상선의 가상 반원선내에 형성된 경우를 말한다.	

3. 제상문 분류법상의 기준점

제상문을 분류할 때, 융선수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내단과 외단을 정한다.

(1) 내단(內端)

<table>
<tr><th>종 류</th><th>설 명</th><th>형 태</th></tr>
<tr><td rowspan="5">정 의</td><td>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내에 있는 융선을 말하며 을종제상문 분류상 필요한 기준점을 말한다.</td><td></td></tr>
<tr><td>○내단 지정의 "예"
- 내단이 되는 점, 단선, 호상선, 조상선, 봉상선등의 융선이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에 도달하거나 가상반원선 안에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가장 높은 것으로 하고</td><td>

가장높은것</td></tr>
<tr><td>- 높이가 같은 융선이 2개일 때에는 외단에서 먼 것으로 하며</td><td>

외단에서 먼것</td></tr>
<tr><td>- 3개 이상일 때에는 홀수인 경우는 중앙의 것으로, 짝수인 경우는 중앙의 2개중 외단에서 먼 것을 내단으로 정한다.</td><td>
</td></tr>
<tr><td>○내단이 되는 융선의 모양이 각기 다르거나 같은 모양의 융선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의 예에 준한다.</td><td></td></tr>
<tr><td>가.제상 내단</td><td>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내에 내단이 되는 다른 융선이 없을 때에는 외단에서 먼 가상반원선의 교차점을 내단으로 정한다.</td><td>
</td></tr>
</table>

종 류	설 명	형 태
나.봉상내단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 내에 도달한 봉상선이 있는 경우, 그 봉상선의 끝부분을 내단으로 정한다.	봉상내단
다. 점내단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내에 점이 있는 경우, 그 점을 내단으로 정한다.	점내단
라. 단선내단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내에 단선이 있는 경우, 그 단선의 외단에서 먼 쪽이나 높은 쪽의 끝부분을 내단으로 정한다.	단선내단
마. 호상내단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 내에 호상선이 있는 경우, 외단에서 먼 쪽의 끝부분을 내단으로 정한다.	호상내단
바. 조상내단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 내에 조상선이 있는 경우, 그 조상선의 끝부분을 내단으로 정한다.	조상내단
사. 교차내단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내에서 2개 이상의 제상선이 교차하였을 때 교차점을 내단으로 하고 수개의 교차점이 존재할 경우에는 봉상내단의 예에 따른다.	교차내단

종 류	설 명	형 태
아.복합내단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내에 모양이 같거나 다른 2개이상의 내단이 될 수 있는 융선이 있을 경우에는 내단 지정의 "예"에 따른다.	

(2) 외단(外端)

종 류	설 명	형 태
정 의	제상선이 흐르는 반대측에 형성된 삼각도의 모양에 따라 을종제상문의 분류상 필요한 기준점을 말한다.	
가.접합외단	삼각도의 외측을 흐르는 2개의 융선이 접합하였을 때 그 접합점을 외단으로 한다.	
나.병행외단	삼각도의 외측을 흐르는 2개의 융선이 병행선을 이룬 경우 가상정점으로부터 내단을 향하여 가상직선을 그어 처음 만나는 교차점을 외단으로 한다.	
다.개재외단	병행외단의 병행선사이에 개재선이 있을 때에는 가상 정점으로부터 병행선과 가상직선을 그었을 경우 개재선과의 교차점을 외단으로 한다.	

4. 와상문 분류법상의 기준점

(1) 추적선의 종점(終點)

종 류	설 명	형 태
정 의	ㅇ추적선의 기점 좌측기준각(삼각도)에서 추적선이 시작되는 점을 기점이라 한다. 좌측기준각이 접합시는 접합점을 기점으로 하고 병행할 때는 병행되기 시작한 하변의 1점을 추적선의 기점으로 한다. ㅇ추적선의 종점 우측기준각(삼각도)에서 추적선을 향하여 가상의 직선 또는 수직선을 그었을 때 그 선과 추적선이 교차되는 점을 추적선의 종점이라고 한다.	 추적선의 기점
가.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에 닿았을 경우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삼각도)에 닿았을 때는 그 기준점을 종점으로 정한다.	 추적선의 종점
나.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흐른 경우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흐를 때에는 우측기준각을 2등분하는 가상의 직선을 그어 추적선과 교차되는 점을 종점으로 정한다.	 추적선의 종점(내측)
다.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외측으로 흐른 경우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외측으로 흐를 때에는 우측 기준각의 접합점 또는 가상의 정점으로부터 추적선을 향하여 수직선을 그어 추적선과 교차되는 점을 종점으로 정한다.	 추적선의 종점(외측)

(2) 기준점

종 류	설 명	형 태
정 의	와상문의 분류상 필요한 기준이 되는 점을 말하며 우측기준각(삼각도)에서 기준점을 정한다.	
가.접합기준점	우측삼각도를 형성하는 2개의 융선이 접합하였을 때는 그 접합점을 접합기준점으로 한다.	 접합기준점
나.병행기준점	우측삼각도를 형성하는 2개의 융선이 병행할 때에는 가상정점에서 추적선을 향하여 우측기준각을 2등분한 가상의 직선 또는 수직선을 그어 최초로 교차되는 점을 병행기준점으로 한다.	 병행기준점
다.개재기준점	병행선사이에 개재선이 있을 때에는 가상정점에서 추적선을 향하여 가상의 직선 또는 수직선을 그어 개재선과 교차되는 점을 기준점으로 정한다. ○홀수일 때에는 중앙의 개재선으로, 짝수일 때는 중앙 2개의 개재선 사이에 가상의 직선 또는 수직선을 그어 최초로 교차되는 점을 기준점으로 한다.	 개재기준점

5. 지문의 분류번호 및 융선수 계산방법

지문의 종류	설 명	분류방법
(1)궁상문	보통궁상문과 돌기궁상분의 분류번호는 "1"로 부여한다.	"1" (문형의 모양만으로 분류)
(2)제상문	**가. 갑종제상문의 분류** 갑종제상문은 삼각도가 좌수는 좌측에, 우수는 우측에 형성되어 있는 지문을 말하며 분류번호는 "2"로 부여한다.	"2" 좌수 우수 (좌 · 우수의 삼각도 위치만으로 분류)
	나. 을종제상문의 분류 을종제상문은 갑종제상문의 반대측에 삼각도가 형성된 지문을 말하며 내단과 외단 사이의 가상직선에 닿는 융선수를 계산하여 분류한다. ○내단과 외단은 융선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내단과 외단사이의 융선수가 - 7개이하 …… "3" - 8~11개 …… "4" - 12~14개…… "5" - 15개이상 …… "6" 으로 분류번호를 부여한다.	"3" 내단 외단 "4" 내단 외단 "5" 내단 외단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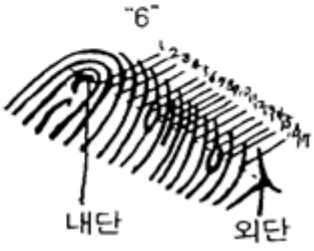 내단 외단

지문의 종류	설 명	분류방법
(3) 와상문	와상문은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간의 가상의 직선 또는 수직선에 닿는 융선수를 계산하여 분류하되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은 융선수에서 제외한다. ○추적선의 종점과 기준점사이의 융선수가 -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흐르고 4개이상 …… "7" -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 또는 외측으로 흐르고 3개이하 … "8" -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외측으로 흐르고 4개이상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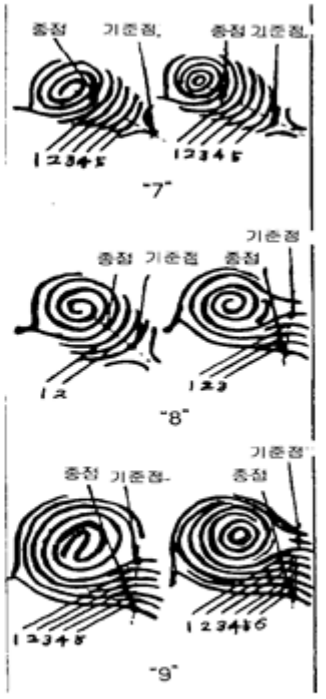
(4) 변태문	어느 문형에도 속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지문으로서 분류번호는 9에다 ·을 찍어 "9"로 부여한다. 단, 전산상에는 9로 표기할 수 있다	
(5) 기 타	가. 손가락 끝마디 절단시 분류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어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분류번호는 "0"으로 부여한다.	
	나. 손상지문의 분류 지문이 손상되어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으로 분류를 할 수 없을 때는 0에다 ·을 찍어 "Θ"로 부여한다. 단, 전산상에는 0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육손가락인 경우의 분류 간지(幹指)로 분류하고 간지로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지(支指)로 분류하되 지지도 분류할 수 없을 때는 변태문으로 분류한다.	

지문의 종류	설 명	분류방법
	라. 제상문의 외단 또는 와상문의 기준각이 불분명할 때는 추정하여 분류번호를 부여한다. 마. 분류가 어려운 평면날인된 외국인 지문자료는 0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번호 추정

6. 지문의 문형 및 기준점, 내·외단 지정예시

(1) 궁상문 지정의 예

(2) 제상문 지정의 예

(3) 와상문 지정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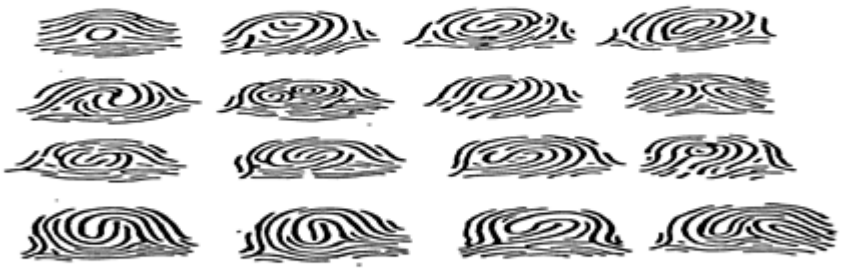

(4) 변태문 지정의 예

⑸ 내단(제상문 분류기준점)

가. 제상(蹄狀) 내단

나. 점 내단

다. 단선(短線) 내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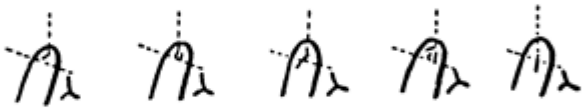

라. 호상(弧狀) 내단

마. 조상(釣狀) 내단

바. 봉상(棒狀) 내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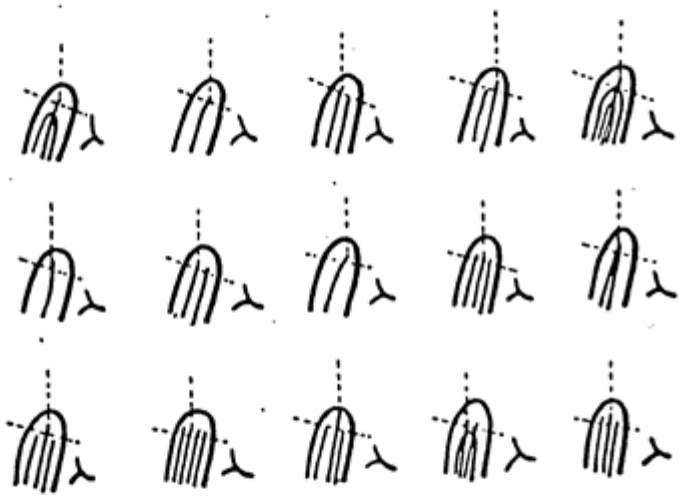

사. 교차(交叉) 내단

(6) 외단 (제상문 분류기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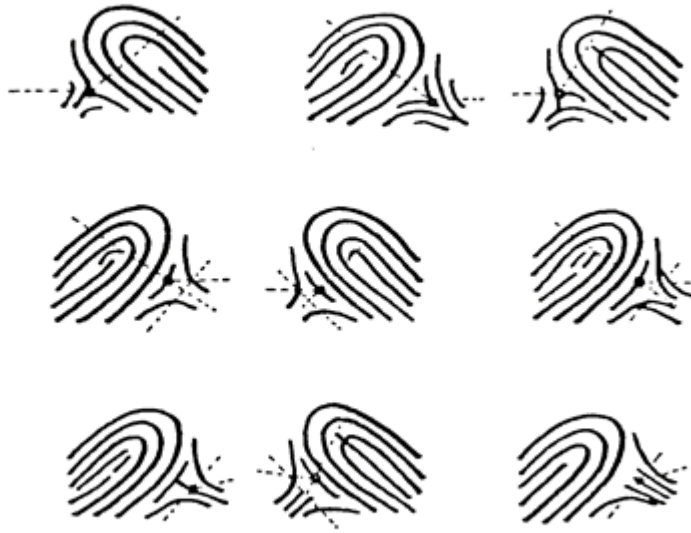

(7) 종점 (와상문 분류기준점)

(8) 우측기준점(와상문 분류기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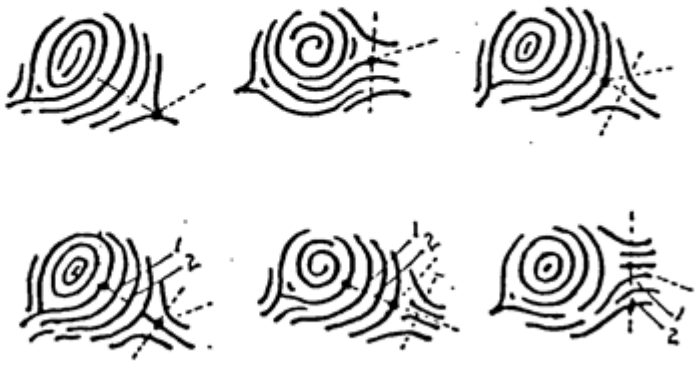

【별지 제1호서식】 수사자료표

(앞면)

<table>
<tr><td>① 국적</td><td colspan="2"></td><td colspan="5">수 사 자 료 표</td></tr>
<tr><td>② 성명</td><td colspan="2"></td><td>③성별</td><td>남, 여</td><td>④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 </td></tr>
<tr><td>⑤ 주 소</td><td colspan="6"></td></tr>
<tr><td>⑥ 등록기준지</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⑦ 작성사항</td><td>관 서 명</td><td>년 월 일</td><td>번 호</td><td colspan="2">죄 명</td><td>⑬ 오른손 첫째 손가락</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 rowspan="4"></td></tr>
<tr><td>⑧ 사건번호</td><td>년 -</td><td rowspan="2">⑪작성자</td><td colspan="2">소속: 과 계</td></tr>
<tr><td>⑨범죄 · 수사 경력</td><td>건</td><td colspan="2">계급(직급): 성명: (인)</td></tr>
<tr><td>⑩ 비 고</td><td></td><td>⑫확인관</td><td colspan="2">계급(직급): 성명: (인)</td></tr>
</table>

187mm × 83mm(보존용지 120g/㎡)

(뒷면)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시

⑦ 작성관서 : 서울중부서, 부산해운대서 등으로 기재
작성번호 : 년도별 일련번호 기재
⑧ 사건번호 : 년도별 범죄접수번호를 기재
⑩ 비 고 :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전면 비고란에 "자해", "도주", "흉기저항" 등으로 기재한 후, 아래 특이사항란에 개요를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기재할 것
⑫ 확인관 : 수사자료표 작성자 직속상관(팀장 또는 과장)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미소지자, 외국인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주민조회시 지문가치번호가 없는 경우(000000-0000000 포함)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할 것

특이사항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작성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수사자료표

(앞면)

① 국적			수 사 자 료 표			
② 성명	한글		③ 성 별	남, 여	④주민등록번호	-
	영문					
⑤ 주소						
⑥ 등록기준지						
⑦외국인신분			⑧여권번호		⑨외국인 등록번호	
⑩ 작성사항	관서명	년 월 일	번 호	죄 명		⑯ 오른손 첫째 손가락
⑪ 사건번호	년 -	⑭작성자	소속: 과 계 계급(직급): 성명: (인)			
⑫범죄·수사경력	건					
⑬ 비 고		⑮확인관	계급(직급): 성명: (인)			

왼 손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 손가락

오 른 손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 손가락

왼손가락 평면지문	오른손가락 평면지문

187mm×265mm(보존용지 120g/㎡)

(뒷면)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시

㉡ 외국인의 경우 : 영문 성명, 국적,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외국인 신분 : 외교관, SOFA(미국인, 미국인 가족, 미 군속, 초청계약자), 일반외국인, 불법체류, 기타 등 신분확인 기재
㉩ 관 서 명 : 서울중부서, 부산해운대서 등으로 기재
작성번호 : 년도별 일련번호 기재
㉪ 사건번호 : 년도별 범죄접수번호를 기재
㉬ 비 고 :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전면 비고란에 "자해", "도주", "흉기저항" 등으로 기재한 후, 아래 특이사항란에 개요를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기재할 것
㉭ 확 인 관 : 수사자료표 작성자 직속상관(팀장 또는 과장)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미소지자, 외국인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주민조회시 지문가치번호가 없는 경우(OOOOO-OOOOO 포함)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할 것

특이사항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별지 제3호서식】 범죄·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범죄·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법률 제 ○○조에 의거에 따라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경찰청(서)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1.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 1부 (각종 인·허가증 등) 2. 조회의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 조회의뢰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확인 (해당 범죄경력)	→	통보
요청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외국인인 경우만 작성)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별지 제4호서식】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범죄 ·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Application For Criminal Records

접수번호 Application Number	접수일 Date of Acceptance	처리기간 Processing Wait times	즉시 Instant Processing

신청인 Applicant	성 명(한글) Name(English) ※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	주민등록번호 Date of Birth (**Foreigners**)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 Passport Number (**Foreigners**)	
	주 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

조회목적 Scope of Reference	[ ]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For permission of foreign country immigration and stay	
	[ ]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For confirmation of investigation card materials	[ ] 실효된 형 등 포함 Including lapsed of criminal sentences
회보방법 Method	[ ] 열람 Read Only	[ ] 한글 회보서 Korean Check Reply [ ] 영문 회보서 English Check Reply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apply for a criminal record information check as above in accordance with the No. 4 of the first clause of Article 6 in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Attached Documents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The Applicant must present his/her own ID to prevent unlawful disclosure of information.	수수료 없 음 No Fees

【별지 제5호서식】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발급번호 Issue No : 2015-00000000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Criminal(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ly

대상자 The Subject

성명 Name	성별 Sex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주소 Address		
조회목적 Purpose of Reference		

조회결과 The Result

연번 No	작성일자 Filing Date* (MM/DD/YYYY) / 작성관서 Filing Office	죄명 Criminal Charges	처분일자 Disposition Date (MM/DD/YYYY) / 처분관서 Disposition Office	처분결과 Disposition**
	- 해당자료없음 - No Record -			

* Filing date is the date when the relevant authority filed the personal data such as a fingerprint into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 Disposition includes sentence, acquittal, non-indictment, etc.

이 회보서는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This reply can be used for purpose only. Person who use the reply for the other purposes wi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2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and the third clause of Article 10 in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20 년(year) 월(month) 일(day)

경 찰 청 장
Commissioner General,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1

출력일시(Print Date) : 확인(Issue) : 출력자(Print Name) :

【별지 제6호서식】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정당의 명칭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조회 대상자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 제60조의2 제8항 규정에 따라 형의 실효에 불구하고 조회대상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을 포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 당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당이 여러 명의 범죄경력을 함께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대상자 "성명"란에 "별지참조"라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7호서식】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번호 : 2015-00000000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및 제60조의 2제 8항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실효된 형, 사면복권 된 형 포함)을 아래와 같이 회보합니다.
※ 이 회신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조회 대상자

성 명(한자)	( )	성 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조회 사항

유형별 / 전산망별	범죄경력 유무 (벌금 100만원 이상)	처분결과 일치여부	불일치시 조치사항	실효·사면·복권된 형 포함여부 검토
경찰전산망	□있음, □없음	□ 일치 □ 불일치		□ 검토 □ 미검토
검찰사건처분결과	□있음, □없음			

범죄경력자료

연번	작성일자 작성관서	죄명	처분일자 처분관서	처분결과

20 년 월 일

경 찰 청 장

/

출력일시 : 확인 : 출력자 :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 임 사 유		

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에 관한 조회를 위 사람에게 위암합니다.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9호서식】 지문 신원확인조회서

지문 신원확인조회서

20

성 명		성 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생 년 월 일		직 업	
주 소				의 뢰 사 유			

왼손회전지문	둘째 손가락(시지)		셋째 손가락(중지)		넷째 손가락(환지)		다섯째 손가락(소지)		첫째

오른손회전지문	둘째 손가락(시지)		셋째 손가락(중지)		넷째 손가락(환지)		다섯째 손가락(소지)		첫째

평면압날	왼손가락 평면지문	왼손 첫째손가락	오른손 첫째손가락	오른손가락 평

297㎜×210㎜(보

【별지 제10호서식】 감정의뢰서

감 정 의 뢰 서

수신자 :

제 목 :

<table>
<tr><td colspan="2">사 건 명</td><td colspan="3"></td><td>KICS
접수(사건)번호</td><td></td></tr>
<tr><td colspan="2">법적근거</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사건발생
(발견)</td><td>일 시</td><td colspan="5"></td></tr>
<tr><td>장 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피해자</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관계자</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용의자</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 rowspan="3">감정물
내 역</td><td>감정물 종류 및 수량</td><td>채취일시</td><td>채취방법</td><td>채취장소 및 위치</td><td colspan="2">채취자</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사 건 개 요</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참고사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담 당 자</td><td colspan="2"></td><td>휴대전화</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첨부파일</td><td colspan="5"></td></tr>
</table>

oo 경 찰 청(서) 장

210㎜×297㎜[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11호서식】 감정서

감 정 서

ㅇㅇ 경 찰 청(서)	감정서번호 :	

ㅇ 제 목 :

ㅇ 의뢰관서(부서) : 의뢰 문서번호(또는 사건번호)

1. 감 정 물 :

2. 대조 대상자 :

3. 감정대상지문 :

4. 감정방법 :

5. 감정(검색)결과

구분	문형	채취장소(위치)	감정결과	이름	주민번호	손가락

발 급 일 자 (감정기간)

감 정 인(관) :

ㅇㅇ 경 찰 청(서) 장

※ 감정물 처리방법, 비고, 감정인 의견 등 관련항목 추가 및 KOLAS 감정서 양식을 적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재활용품) 60g/㎡]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1. 1. 1.] [법무부령 제00992호, 2021. 1. 1., 전부개정]

법무부 (검찰과) 02 - 2110 - 4210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수사·결정, 기록의 접수·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결정, 기록의 접수·처리 및 공판수행 등을 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2편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제1장 사건의 수리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224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4.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수사준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이 사건을 송치(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송(공수처법 제24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5.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6.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경우
   가.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2항에 따라 사건 송치의 경우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사건 송치의 경우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사건 송치의 경우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호와 같은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건 송치의 경우

7.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경우

8. 불기소사건·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9. 검사가 법 제197조의2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시 반환받은 경우(수사준칙 제60조제4항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면서 다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10.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법 제329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11.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2.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3.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법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14. 상급법원에서의 병합·이송·환송 판결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5.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16.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의 형사사법 공조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이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이행절차를 개시한 경우

17. 공수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수사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건과 기록 전부를 인계받은 경우

제4조(불송치기록·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접수한다.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같은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른 사건기록을 같은 영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수사중지기록의 단위)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른 수리 대상 사건과 제4조에 따른 접수 대상 기록을 제3조 각 호 및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거나 접수하고,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수리하거나 접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원본과 등본 또는 각 등본은 동일한 관계 서류로 보지 않는다.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③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1명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추가로 수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수리 대상 사건과 제4조에 따른 접수 대상 기록이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이 혼재되어 있고,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각 결정별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 및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르지 않고 수리하거나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수리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원본에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수사중지결정서 및 각 결정서별 압수물총목록과 기록목록이 각 결정서별 별책으로 편철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⑤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접수 단위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은 "기록"으로, "수리"는 "접수"로 본다.

제6조(영장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

1. 체포·구속영장
2. 압수·수색·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4.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의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에만 표시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록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영장신청서등 기록 표지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록한다.

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약식전자문서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적 처리사건"이라 한다)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수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적 처리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기록번호로 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라 접수하는 기록은 전자적 처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제9호,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되었는지 여부
2.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 또는 기록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고소인·고발인·자수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제3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부관서, 송부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고발·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불기소사건재기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④ 사건번호는 제3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전자적 처리사건은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 등의 신청서별로 연도와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수사준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위해 접수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년 불제 ○호"
2. 제4조제2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 "○년 중제 ○호"

⑥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입력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보관한다.

제11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감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접수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수

리 또는 접수를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검사는 수사하거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② 검사의 전보 등으로 수리한 사건 및 접수한 기록, 영장신청서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제13조(피의자색인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매년 초에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의자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제2장 사건의 수사

제1절 총칙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②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 및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와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6조(수사기밀의 유지)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려면 열람이 필요한 사건기록을 특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의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인지서
2. 영장청구서
3. 고소장, 고발장
4. 그 밖에 검사가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기록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그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사건기록 등본을 첨부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열람허가서와 사건기록 등본을 인계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을 기록한다.

제19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작성하고, 그 중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 중인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송치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송치요구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때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0조(수사중복의 방지)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려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수사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송치요구 여부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수사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송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21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① 검사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이나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작성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⑦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⑧ 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⑨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검사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⑪ 검사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변호인의 변론) 검사는 피의자、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밖의 중요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의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사건처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법경찰관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상단중앙부에 목록과 요지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② 검사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토한 후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에 검토필 고무인을 찍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제출지시 고무인을 각각 찍는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인계받으면 해당 기관별로 편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①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이의제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이의제기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입건 여부를 지휘할 수 있다.

제27조(수사지휘 등)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③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거나 같은 규칙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기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다만, 수사지휘 전에 피의자의 신병에 대해서 미리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완수사요구(결정):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 보완수사요구(추완):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3.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4. 보완수사요구(영장):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 또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우 검사는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도록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1. 피의자나 피해자인 경우
2.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
3.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
4. 그 밖에 수사 또는 공소유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① 검사는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참고인중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를 수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재수사요청서에 따른다.

제2절 수사의 단서

제32조(고소·고발·자수) ① 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소인·고발인·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② 검사가 법 제22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소인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아닌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3조(검시와 부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

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2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검시 또는 검증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 또는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검사는 관련 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른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처리 의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⑥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한 후 변사사건 발생통보 기록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조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검시조서 또는 그 사본을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34조(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각각 지휘한다.

④ 검사는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⑤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5조(필요적 입건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제3절 임의수사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①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2. 피의자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3. 피의자가 자수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출석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출석요구서 발송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피의자의 소재나 주소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37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검사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이 수사준칙 제24조제1항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으로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

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이러한 취지를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③ 검사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참고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참고인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조서와 진술서) 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2.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3. 그 밖에 서면 진술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했을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① 검사는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진술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면수(面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간인(間印)을 한다.

⑤ 검사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검찰서기(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진술인에게 제38조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즉시 그 진술서를 약식전자문서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화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한다.

⑥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하여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즉시 약식전자문서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화문서로 작성한다.

⑦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폐기 등) ①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즉시 전자화대상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보조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전자적 처리사건 송치 후 전자화대상문서를 추가로 보내 온 경우에는 추가송부서 등 관련 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재산형(財産刑) 등 형의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경우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보존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는 합철(合綴)하여 보관한다.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이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를 검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고,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1조(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일반사건 전환 표지와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종이로 된 사건기록을 만든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번호를 "○년 형제 ○호"로 된 새로운 사건번호로 표시한다.

②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수사보고서에는 그 때까지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첨부한다.

제42조(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25조에 따라 조사과정 또는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조서나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1. 법 제2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의견 또는 설명을 포함한다)을 들은 경우
2.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법 제245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3. 검사의 수사 또는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검찰청 내·외부의 자문이 필요하여 의견·자문·권고 등을 청취(서면으로 제출받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 제38조제2항에 따라 피혐의자인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같은 항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44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수사과정을 기록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과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45조(영상녹화) ① 검사는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⑤ 검사는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해야 한다.

제46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검사는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47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2.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② 검사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 시 피혐의자 등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하는 기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8조(감정의 위촉) 검사가 법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① 검사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수사사항 조회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고,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한다.

1. 사건을 인지한 경우
2.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1.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기수사명령·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받은 고소·고발사건이나 사법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제기 또는 결정을 하는 때
   가. 공소의 제기
   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소년법」 제2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소년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이하 "가정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 성매매처벌법 제3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성매매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이하 "아동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의 결정

2. 제3조제5호에 따른 송치를 받은 사건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라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이 항 제1호 각 목의 제기 또는 결정을 하는 때

제50조(임의 제출 등) ① 검사가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④ 검사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⑦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유가증권 폐기처분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⑧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⑨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제51조(실황조사) 검사가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

제52조(수사의 촉탁) ①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사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팩스·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공조사건회답서에 따라 회답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수사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조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53조(증거보전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증거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한 결과 증거보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 기각서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거보전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제4절 체포

제54조(체포 등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및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사준칙 제32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청구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경우: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
2.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경우: 기한을 정하여 수사를 보완한 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지휘
   가. 체포 여부의 재지휘 건의
   나. 체포영장 재신청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4항의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⑦ 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까지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후 체포 여부에 대한 재지휘를 건의하도록 지휘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수사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지휘받은 기한까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거나 체포 여부에 대한 재지휘를 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56조(체포영장의 재청구) 검사는 법 제200조의2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체포의 사유를 기록한다.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구속영장 집행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제58조(체포영장의 집행촉탁)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체포·구속영장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 사법경찰관등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 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한 검사에게 이를 반환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을 촉탁하거나 체포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59조(체포영장의 반환) ①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따른다.

제60조(체포의 통지) ①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체포·구속 등 통지서에 따라 사건명, 체포의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제61조(체포·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제62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제1항의 접견 등 금지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3조(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5항 및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피의자의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상단에 체포취소사유와 일시를 적어야 한다.

제64조(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지휘·승인서로 지휘한다.

②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체포취소 신청에 따라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5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66조(피의자 석방 통지) 검사가 법 제204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제67조(긴급체포)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81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승인건의를 검토하여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의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
2.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건의의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건의에 대한 지휘서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 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요청서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서를 제출하며,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 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68조(긴급체포 시 의 유의사항)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연령·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態樣),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6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법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고,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4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석방서 및 석방통지서 부본 2부를 각각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다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 후단에 따라 석방서 및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법 제200조의4제6항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70조(현행범인체포) ① 검사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검사가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또는 보고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71조(준용규정)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체포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석방 및 체포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60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또는 현행범인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로, 제54조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60조 중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0조의6 또는 같은 법 제213조의2"로 각각 본다.

제72조(체포·구속장소 감찰) ① 검사가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시정을 명하고, 체포·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따라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제1항의 체포·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첨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피의자 석방명령·사건송치명령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73조(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관계 서류 등을 제출 받아 송부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관계 서류등 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214조의2제11항에 따른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금(이하 "적부심보증금"이라 한다)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및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의 구속적부 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의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적부심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

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1. 석방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원이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허가결정을 한 경우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검사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2. 제7항에 따라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받은 경우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75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① 법 제214조의4에 따른 검사의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는 별지 제93호서식의 몰수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수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부심 보증보험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보증보험회사"라 한다) 에 송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적부심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의 몰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76조(적부심보증금의 환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환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한다.

제5절 구속

제77조(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체포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피의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의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전)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0조제2항에서 규정한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기록한다.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 또는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제78조제5항을 적용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현행범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⑥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80조(구속영장의 재청구) 검사가 법 제201조제5항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법 제208조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구속의 사유를 기록한다.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1조의2에 따른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전화 또는 팩스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의견서에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속이 필요한 사유
2. 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조치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검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⑥ 검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본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검사가 법 제205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1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

제83조(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① 검사가 피고인과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해 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대해 내린 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청구서를 법원에 송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감정유치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유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유치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유치장 신청을 기각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감정유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감정유치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에 송부한다.
1.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또는 불구속 피고인을 유치하려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2.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를 유치하려는 경우: 검찰청 직원(감정유치를 지휘하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⑦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병원이나 그 밖의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휘한다.
1.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치료감호소(이하 "치료감호소"라 한다)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출감지휘서에 따라 검찰청 직원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는 검찰청 직원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2.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한정한다)를 치료감호소가 아닌 장소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출감지휘서에 따라 검찰청 직원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는 검찰청 직원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에 따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호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감호할 것을 지휘한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는 제외한다) 또는 피고인을 치료감호소가 아닌 장소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출감지휘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인도받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에 따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호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감호할 것을 지휘한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청구서에 따른다.

⑨ 검사는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휘한다.

1.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치료감호소에 유치했던 경우 또는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한정한다)를 치료감호소가 아닌 장소에 유치했던 경우: 검찰청 직원에게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로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
2.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는 제외한다) 또는 피고인을 치료감호소가 아닌 장소에 유치했던 경우: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로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

⑩ 검사는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수감통지서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지한다.

⑪ 검사는 제6항·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의뢰서 및 별지 제125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및 퇴원을 의뢰한다.

제85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피의자·피고인 호송지휘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제86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검사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구속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서 및 별지 제126호서식의 호송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시찰조회를 요구하거나 시찰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서면을 송부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의 장: 별지 제128호서식의 시찰조회서
2.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

⑤ 검사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87조(피의자의 석방) ① 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일시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 피의자 석방 건의서 또는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방지휘(승인)서에 따라 지휘 또는 승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피의자 석방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8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집행촉탁·반환,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접견 등 금지, 석방, 구속의 취소 및 석방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4조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5"로,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중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제6절 압수·수색·검증

제89조(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0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사전)
2.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1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2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몰수·추징 집행)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몰수·추징 집행(금융계좌추적용)]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사법경찰관등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5호서식
2.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5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6호서식

③ 검사가 법 제21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검토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사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8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등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기각서(금융계좌추적용)
3. 사법경찰관등이 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기각서(사후)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압수·수색 및 검증 영장의 경우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집행촉탁·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법 제215조·제216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압수에 대해서는 제50조를 준용한

다.

제91조(압수·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사가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제92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검사가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수색) 검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4조(검증조서의 작성) 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제7절 그 밖의 강제수사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처분허가장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사람에게 이를 교부한다.

⑥ 감정처분 허가의 경우 감정처분 허가 청구의 기각 및 감정처분 허가장의 집행지휘·집행촉탁·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5항(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인신문 신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9호서식의 증인신문신청 기각서로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증인신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1.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0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가정폭력)
2.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1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아동학대)
3.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2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가정폭력)
4.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3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아동학대)
5.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4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가정폭력)
6.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5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아동학대)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56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가정폭력) 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아동학대)로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는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한다.
⑤ 임시조치의 경우 임시조치 청구의 기각 및 임시조치 결정의 청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임시조치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경우에는 위 등본을 사법경찰관리로

부터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절 총칙

제98조(사건의 결정)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검사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이첩하는 경우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제100조(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① 검사는 사건 단위로 결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 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99조에 따른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단위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1조(승인 등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처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또는 중요한 기록에 관한 처리
2.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3.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① 검사가 법 제258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58호서식의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또는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결정 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지한 경우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

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결과와 함께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중 비고란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2.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제3조제5호에 따른 송치를 받은 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수사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결정결과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한다.

1. 검사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2.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찰청장 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결정이나 재판확정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⑨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68호서식 또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⑩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기록에 편철한다.

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복권이 실시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복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사건의 수사·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공소제기

제105조(공소장)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압수물건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한다.

1.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
2.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속기간연장결정서
3.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
4.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된 경우: 긴급체포서·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
5.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선임서

제106조(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모든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7조(기소통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3호서식의 재감인 기소통지부로 해당 사실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08조(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109조(약식명령의 청구) 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1건의 사건에 관하여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의 기재 및 압수물건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후단 및 제106조를 준용한다.

③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로 피의자를 석방한다.

제110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전송한다.

제111조(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검사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에 대한 법원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제112조(정식재판의 청구) 검사가 법 제453조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

제113조(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1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된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공소장(피고인의 수만큼의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다) 등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공소취소) 검사가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제3절 불기소

제115조(불기소결정)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

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한다.

1. 피의자: 1, 2, 3의 순
2. 죄명: 가, 나, 다의 순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가정폭력처벌법·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와 피고소인·피고발인·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116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를 각각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다.

제118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①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감호자·연고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검사는 피의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처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서에 따른다.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4절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1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①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다만, 여러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 적는다.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고,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 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로 매 분기 1회 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포함한다)를 기소중지자명부에 기록한다.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124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지휘부 등) ①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지휘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 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검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송부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포함한다)를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지휘부에 기록한다.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제5절 공소보류

제125조(공소보류의 결정) 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다.

제126조(공소보류자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보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127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 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요청서에 따른다.

제6절 타관송치, 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및 사법경찰관 등 이송·이첩

제128조(송치결정) 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1.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2. 「소년법」 제49조제1항, 가정폭력처벌법 제11조,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1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② 검사가 제1항제1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1개월이 지나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④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지 않은 검찰청 검사에게 추가 수사가 완료되면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할 것을 조건(이하 "반송 조건"이라 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검찰청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에 반송 조건으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이첩 결정)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18조 또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이첩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제130조(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①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검사 또는 관할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한다.

② 검사는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90호서식의 이송지휘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한다.

제131조(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①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외국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부본과 사건기록 사본을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부서를 첨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제7절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및 별지 제19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결정)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보완수사요구 결정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결정)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송부받은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완)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완)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추완)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8절 불송치기록의 처리

제134조(기록반환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접수한 기록의 경우에는 별책으로 편철된 불송치결정서 및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 반환을 갈음한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과 같은 항 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만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을 반환할 때에 관계서류 및 증거물 원본을 반환한다.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불송치기록을 검토 중인 사건의 일부에 대한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로만 송치를 한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불송치결정서를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반환을 갈음한다. 다만, 송치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때에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부분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 반환을 갈음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을 반환한 경우에는 불송치 반환기록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35조(재수사요청) ①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재수사요청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청서 부본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재수사요청 기록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불송치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수사준칙 제63조제1항 각 호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④ 재수사요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6조(송치요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관련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서, 재수사요청서 및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재수사결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 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기록 원본 또는 등본(재수사

결과 추가된 서류 및 증거물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송치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치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검사는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송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를 재수사요청서 사본 및 재수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제137조(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① 불송치기록과 동시에 관련 압수물에 대한 처분지휘요청이 접수된 경우(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통보서와 압수물처분지휘요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재수사요청과 함께 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압수물처분지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함께 접수된 압수물처분지휘요청에 대하여 재수사결과와 함께 재지휘요청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제9절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제138조(기록반환 등)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항 을 준용한다.
④ 수사중지기록의 관계 서류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39조(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제232조에 따라 시정사건으로 수리하고, 제234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제235조 및 제236조에 따른다. 다만,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지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40조(구제신청의 처리) ① 검사는 제138조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사건기록 등본은 같은 영 제51조 제4항에 따라 이미 검사에게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으로 갈음하고, 같은 영 제45조제3항의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르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제1항의 구제신청에 따른 시정사건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편제11장에 따른다.

제10절 구속취소 시 등의 절차

제141조(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7조, 제109조제3항 및 제130조에 따른 검사의 석방지휘·이감지휘 또는 이송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석방지휘서·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받아 지휘서송부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및 사건송치결정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4장 재정신청절차

제142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0조 및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143조(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항고가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이하 이 장 및 제2편제5장에서 "수사관계 서류등"이라 한다)이 고등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관계 서류등을 송부받아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97호서식의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정신청 대상 사건은 제9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고,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각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준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한다.

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145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및 수사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143조제2항제2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更正)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고,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

록을 송부하며,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송치한다.

3.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9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4.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불기소결정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③ 고등검찰청의 장이 재정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항고·재항고

제146조(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47조(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결정(기소중지·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따라 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0호서식의 항고·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기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01호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가.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수사에 의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가. 재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2. 재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제148조(항고·재항고 사건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가.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수사를 통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송치결정을 한다.
4. 제2호에 따라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5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서류 및 사건기록을 불기소결정청에 송부한다.
5.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지 않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항고사건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6.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항고사건 결정서에 따라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
7.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정신청의 대상인 경우: 그 기각결정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8.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항고의 대상인 경우: 재항고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 및 상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가. 재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2. 재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항고(재항고) 각하결정서로 각하한다. 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제8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1. 항고권자가 아닌 사람이 항고하거나 재항고권자 아닌 사람이 재항고한 경우
2. 고소·고발, 항고 또는 재항고가 취소된 경우. 다만, 제149조제1항 본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재기수사명령 후 불기소승인건의를 받아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한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항고 또는 재항고한 경우
4. 항고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재기수사한 후 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불기소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한 경우
5. 제115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고·재항고사건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항고·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149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① 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기록의 송부 및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 및 제148조를 준용한다. 다만, 항고사건을 수리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재항고사건을 수리한 고등검찰청이 기록을 상급청으로 송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중에 항고·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항고·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항고·재항고 기록을 상급청에 송부하는 대신 항고·재항고 사건을 항고·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

② 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이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을 무고죄로 인정한 경우 피항고인 또는 피재항고인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할 수 있다.

1. 재기수사 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 미리 별지 제205호서식의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결정·이송 승인요청서에 따라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고사건의 경우 이를 이송받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하려는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이송을 승인한 고등검찰청의 장은 이송받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206호서식의 재기수사 등 명령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소중지·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을 재기한 경우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148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한다.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⑥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07호서식의 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수사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⑦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 중 극히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관계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⑧ 고등검찰창의 장은 제6항의 경우 해당 항고사건을 수사관계 서류의 등본을 작성한 후 제14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수사관계 서류의 송부는 그 등본의 송부로 갈음한다.

제6장 공판절차

제1절 총칙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1.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
2.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록한다.

제151조(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는다.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제152조(구속기간 갱신결정)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153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그 집행을 지휘한다. 이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의 집행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154조(구속취소) 검사가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제155조(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97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의견요청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청구사건 인원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한다.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등본, 보석조건변경통지, 보석조건이행유예통지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며, 보석자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 중 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관할 검찰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98조제1호에 따른 출석서약서
2. 법 제98조제2호에 따른 납입약정서
3. 법 제98조제5호에 따른 출석보증서
4. 법 제98조제7호에 따른 공탁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5. 법 제98조제8호에 따른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6. 그 밖에 보석조건 이행 관련 증명서류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석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제157조(피고인의 석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원의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09호서식의 피고인 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제158조(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128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법원에서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제160조(보석 등의 취소청구) 검사가 법 제102조제1항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보석·구속집행정지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제161조(보석의 취소결정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 후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2조(보석보증금의 몰취)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검사의 보석보증금 몰취청구는 별지 제211호서식의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12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송부받은 보석보증보험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163조(보석보증금의 환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04조에 따라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한다.

제3절 관할지정의 신청 등

제164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①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병합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한다.

제165조(관할경합 시의 조치) ① 검사는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한다.

제166조(관할지정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관할지정·이전 신청서에 따라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관할지정·이전신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관할지정·이전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관할지정·이전신청 사실을 통지한다.

제167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한다. 이 경우 제16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68조(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이송결정 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이송결정의 등본이나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담당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 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병합·이송사건 관련 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이 사건이 계속하게 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구속 중인 피고인의 이감 또는 이송의 지휘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검찰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접수된 일자를 확인하여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일자를 수리일자로 하며, 검사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송부"라고 전산입력한다.

제169조(기피 등의 신청) 검사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기피 등 신청서에 따른다.

제170조(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검사가 법 제28조제1항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에 따른다.

제4절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제171조(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절 및 제2편제6장제5절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서식의 열람·등사·서면교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21호서식의 열람·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1. 신청 대상 서류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이나 내용 등
2.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증거의 증명력 및 관련성
3. 법 제266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관련성

③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고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172조(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① 검사는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서식의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정보·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인 경우
4. 열람·등사 대상 서류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5.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 등의 증명력과의 관련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피고인 등의 주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검사가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 관련 사건을 표시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등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며,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제173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법 제266조의3제6항에 따른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사건관계인 및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제174조(의견서 제출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요청이 있거나 의견요청서류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 제한 결정을 한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시하고, 그 의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게 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한다.
③ 검사는 법원이 법 제266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을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한다.

제175조(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등사 신청)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구두로 법 제266조의3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을 한 경우 검사는 해당 기일 중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 종료 후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제171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종료한 때에 열람·등사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제한 및 특수매체기록 등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72조 및 제173조를 준용한다.

제176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제출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재판장의 서면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공

판카드에 첨부한다.

③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제2항의 서면을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과 수사검사가 작성한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만, 둘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부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7조(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7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가 법 제266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3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178조(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8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직원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 또는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9조(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①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신청을 하거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제180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의 요구 등)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법 제266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청 대상 서류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이나 내용 등
2. 법 제266조의11제1항제3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증거의 증명력 및 관련성
3. 법 제266조의11제1항제4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관련성

② 검사는 법원에 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224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등사·서면교부허용 신청서에 따른다.

제181조(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66조의16제1항에 따른 등사한 서류등의 남용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266조의16제2항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제5절 공판기일

제182조(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을 통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배심원선정·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제183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이를 편철한다.

제184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검사가 법 제27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제185조(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6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제6절 증거조사 등

제186조(증거신청) ① 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서류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거나 법 제164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8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신청·청구 철회서에 따른다.

제187조(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294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9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88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제189조(증인신문 준비)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190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①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공판)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192조(증인신변안전조치) ① 검사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요청서를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이 있거나 경찰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193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검사가 법 제272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제194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95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30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96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97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검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제198조(압수·수색영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2조, 제58조,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제199조(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 검사가 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제200조(변론분리 등의 신청) ① 검사가 법 제300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면서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0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2.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1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3.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2호서식의 변론의 분리신청서

② 검사가 법 제305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른다.

제201조(가납판결의 청구) 검사가 법 제334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벌금등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가납판결청구서에 따른다.

제7절 재판

제202조(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① 검사는 법 제331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실효된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 없이 피고인을 석방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결과통지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에 구속감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203조(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소년법」 제50조, 가정폭력처벌법 제12조,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9조에 따라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피고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구속 중인 소년 등의 이송 또는 이감의 지휘에 관하여는 제130조를 준용한다.

제204조(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검사가 법 제56조의2에 따라 법원에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통지·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명부·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의 송부
2.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기일의 통지
3.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의 송부
4.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의 통지
5. 배심원후보자 배제결정
6. 통상절차 회부결정
7. 배심원·예비배심원 해임·사임의 통지
8. 평결이나 선고 등

② 공판사무담당직원은 배심원후보자 명부와 질문표를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 철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제206조(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의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의견을 받아 회송한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배제결정
2.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
3.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배심원 해임
4. 국민참여재판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사임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에 따른다.

제208조(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해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배심원 등 해임신청서에 따른다.

제209조(속기록·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속기록·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속기록·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서에 따른다.

제210조(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배심원 설명에 포함할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배심원 설명요청서에 따른다.

제211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제7장 상소

제212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검사가 법 제349조에 따라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상소권포기·취하서에 따른다.

제213조(상소권회복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의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가 아닌 사람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4조(상소절차) ① 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3호서식의 항소·상고장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 또는 상고사건부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 경우
2. 법 제356조에 따라 상소장제출통지를 받은 경우
3. 법 제361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상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제215조(항소·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 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54호서식에 따른 항소사건 접수보고서 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

다.

② 검사가 법 제36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속 중인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이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른다.

제216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①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판카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제1항의 공판카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제217조(상소이유서) 검사가 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6호서식의 항소·상고이유서에 따른다.

제218조(비약적 상고) 검사가 법 제372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비약적 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 비약적 상고의 절차, 비약적 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공판카드의 기재, 비약적 상고이유서 등에 관하여는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소법원"은 "대법원"으로, "상소이유서"는 "비약적 상고이유서"로 각각 본다.

제219조(항고 등) ① 검사가 항고·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의 항고·재항고장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항고·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신청·항고·재항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20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형사 항고·재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형사 항고·재항고사건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제221조(준항고) 검사가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재판의 취소·변경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취소변경청구의 기재, 사건기록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19조제2항 및 제220조를 준용한다.

제8장 재심

제222조(재심의 청구) 검사가 법 제420조 또는 제42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른다.

제223조(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하거나 법 제4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

우에는 재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재심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제9장 진정·탄원·투서

제224조(진정 등 수리) ①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② 검사는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2.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6.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 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제225조(내사·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

1. 내사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내사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2. 진정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표시한다.

④ 내사 및 진정사건의 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26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이 경우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이송: 동일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내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조사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를 적는다.
7. 시정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시정사건번호를 적는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1. 공람종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진정인이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진정한 경우
   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전과 정정: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편철: 검사가 조사·검토 중인 사건(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조사·검토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송·이첩: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6.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7.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 종결의 경우

③ 검사는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경우에는 형사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내사·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내사·진정사건 이송·이첩서에 따른다.

제227조(내사·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5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6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명예 등에 위해(위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조사사건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를 접수한 경우
2. 내사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3. 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등록한 경우
4. 상급 검찰청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
5.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2.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체포·구속영장 및 제1호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제외한다)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3.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경우

제22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조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조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조사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조제 ○호"로 표시한다.

④ 조사사건의 사건의 단위, 수리절차 및 지휘·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조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이송: 동일한 내용의 조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22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수리된 조사사건이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송에 관하여는 제226조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제231조(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2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67호서식의 사건처분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제11장 시정사건

제232조(시정사건의 수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2. 검사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시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3.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4. 내사·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등록서를 출력한 후 제235조제2항의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한다.

③ 시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시정제○호"로 표시한다.

④ 시정사건의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기록등본 송부요구(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검사가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또는 제236조 본문에 따른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서 부본을 송부받거나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이행결과통보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⑧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항 후단에 따라 송치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⑪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건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듣거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1. 시정이행: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2. 시정불요: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시정종결(송치):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송: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인 경우
6. 그 밖의 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정사건 종결의 경우

② 검사는 시정사건기록에 시정사건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④ 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제236조(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검사가 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

제237조(수리 사유) ① 고등검찰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1. 항소법원으로부터 법 제361조의2제1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2. 대법원에서의 병합·이송·환송 또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3. 「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4. 「범죄인 인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은 경우(서울고등검찰청에 한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항소사건번호 및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의 사건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항소사건번호: "○년 항 제○호"
2.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번호: "○년 인도 제○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를 포함한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보관한다.

제239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지시를 받는다.

제240조(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송부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41조(피고인색인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9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색인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8조제3항 전문에 따라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고인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비치한다. 이 경우 매년 초에 피고인색인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제242조(준용규정) 고등검찰청에서의 공판·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6장부터 제8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3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거나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73호서식의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한다.

제4편 대검찰청에서의 절차

제244조(준용규정) 대검찰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 ○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

제245조(비상상고) ① 검찰총장이 법 제441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4호서식의 비상상고신청서에 따른다.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상고사건부와 비상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비상상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5호서식의 비상상고기록 및 증거물송부서에 따른다.

제246조(판결정정의 신청) 검사가 법 제400조에 따라 판결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6호서식의 판결정정신청서에 따른다.

제5편 헌법소원 등의 처리절차

제247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48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를 각각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의견서 제출서 또는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한다.

제249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의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공소취소 또는 공소장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절차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결정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불기소결정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기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결정취소결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기수사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그 처리결과는 제148조제5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별지 제2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경우 별지 제2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9호서식의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90호서식의 통신

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 또는 승인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을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ㆍ승인요청 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⑧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93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294호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위탁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집행위탁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② 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검찰청이 정보수사기관으로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9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⑥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3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③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5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9호

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로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판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2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고등검찰청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5호서식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 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1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사유 통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신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통지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7항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사유 통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61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62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63조(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3호서식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4호서식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5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검토하여 전기통신 보관 등이 필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

지 제32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서로 승인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 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가 발부되거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 또는 기각된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⑥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8호서식의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부본 폐기결과보고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6항에 따라 폐기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65조(준용규정)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 및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의 청구 절차,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의 집행지휘·집행촉탁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중 "법 제200조의6"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13조"로, "체포"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체포영장"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로 각각 본다.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제1장 마약류 관련 입국 및 상륙 등 특례절차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① 검사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편에서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국·상륙절차의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9호서식의 입국·상륙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체류부적당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0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출·반입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1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2호서식의 입국·상륙절차 특례요청서, 별지 제333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 또는 별지 제334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⑤ 검사는 제4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입국·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35호서식의 입국·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별지 제336호서석의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서 또는 제337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및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조치 등 요청·통보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몰수·부대보전절차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8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9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340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몰수보전신청 또는 부대보전신청을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몰수·추징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몰수·추징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제268조(몰수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67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몰수보전부를 작성한다.

제269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동산 및 등기·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1호서식의 등기·등록촉탁서에 따른다.

제270조(공시의 조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9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시 조치를 하기 위한 공시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몰수보전 공시서에 따른다.

1. 동산의 표시
2. 몰수보전명령별 재판 연월일, 법원 및 사건번호
3. 공시 연월일
4. 공시검사

제271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몰수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제272조(공소제기의 통지)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본문(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2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단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3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서에 따른다.

제273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4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②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2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제274조(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등기나 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5호서식의 등기·등록 말소촉탁서에 따른다.

제275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몰수보전부 각 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3장 추징보전절차

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6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7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8호서식의 추징보전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추징보전신청을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재지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징보전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77조(추징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7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67조제5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하다)에는 추징보전부를 작성한다.

제278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9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50호서식의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서에 따라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제279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추징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제280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1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2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보완·수정·취소 등 요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53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④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제281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9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4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와 관련하여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5호서식의 가압류 집행정지·취소절차 신청서에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제282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추징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추징보전부 각 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4장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절차

제283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1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6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3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7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③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4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제28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 검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이나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규칙 제18조·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몰수·부대보전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국제공조절차

제285조(심사청구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8호서식의 몰수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르고,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9호서식의 추징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7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심사청구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1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0호서식의 공조몰수·부대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④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1호서식의 공조추징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보전명령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를 작성하고,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이 공조허가결정 또는 공조몰수·공조추징보전명령을 하거나 그 청구를 각하, 거절 또는 기각한 경우에는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심사청구가 각하 또는 거절된 경우 및 공조몰수·공조추징보전청구가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제286조(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2호서식의 청구취소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0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조허가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3호서식의 집행공조허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3호서식의 공조몰수·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제287조(몰수·부대보전절차 등의 준용)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78조 및 제282조를 준용한다.

제288조(「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결정에 대한 및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같은 편 제5장부터 제13장까지,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제3장·제4장, 제5편 및 제6편으로 한정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및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제12조·제14조·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8편 징계요구·직무배제·교체임용요구

제289조(징계요구 절차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 및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5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 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6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직무배제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직무배제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291조(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찰청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7호서식의 공무원 교체임용 요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교체임용 요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9편 고위공직자범죄 등 관련 절차

제292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① 검사가 공수처법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이하 이 편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이라 한다)을 인지하여 수리한 후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8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실 통보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수사개시 여부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 이첩한다.

제294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92조 및 제293조에 따른 해당 사항을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기록한다.

제10편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①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수사, 공소유지 및 형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03조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도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이하 "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을 보호·지원하거나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 촬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에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0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사본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본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검사는 공익신고자등이나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검사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을 통지할 때에 범죄신고자등 또는 친족 등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편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등

제297조(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따른다.

제298조(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및 제37조에 따른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에 따른다.

제299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①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2호서식의 인도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3호서식의 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4호서식의 긴급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의 경우: 별지 제375호서식의 확인서
2.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별지 제376호서식의 확인서

제12편 보칙

제301조(검찰청 직원의 준수사항) 이 규칙 중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규정된 각종 준수사항은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02조(별표와 서식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1. 제7조제4항의 불송치 - 수사중지기록 접수서
2. 제10조제1항의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
3. 제10조제3항의 범죄인지서
4. 제10조제3항의 불기소사건재기서
5. 제10조제3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6. 제12조제2항의 검사기록인계인수서
7. 제13조제1항의 피의자색인부
8. 제18조제4항의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

9. 제19조제1항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10. 제19조제2항의 송치요구대장
11. 제24조제3항의 중요사건 협력대장
12. 제26조제1항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
13. 제33조제1항의 검시사건부
14. 제36조제2항의 출석요구통지부
15. 제40조제4항의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
16. 제41조제1항의 일반사건 전환 표지
17. 제52조제3항의 공조사건부
18. 제53조제3항의 증거보전청구부
19. 제55조제4항의 체포영장청구부
20.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결정)
21.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영장)
22. 제52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공판)
23.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추완)
24. 제55조제7항의 재수사지휘부
25. 제58조제3항의 체포영장집행원부
26. 제62조제2항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
27.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원부
28.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29.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
30. 제67조제3항의 현행범인체포원부
31. 제72조제1항의 체포·구속장소 감찰보고서
32. 제72조제3항의 피의자 석방명령·사건송치명령부
33. 제73조의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34. 제74조제1항의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
35. 제74조제6항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36. 제74조제6항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
37. 제74조제7항의 보관표(적부심보증금)
38. 제74조제7항의 보관표(보석보증금)
39. 제81제1항의 구속영장청구부
40. 제82조제2항의 구속기간연장처리부
41. 제84조제3항의 감정유치장청구부
42. 제86조제1항의 구속집행정지결정서
43. 제86조제2항의 구속집행정지자명부

44. 제86조제2항의 구속집행정지자기록
45. 제86조제2항 전단의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
46. 제89조제6항의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부
47. 제95조제4항의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
48. 제96조제4항의 증인신문청구부
49. 제97조제3항의 임시조치청구부
50. 제103조제1항의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51. 제103조제1항의 수사처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
52. 제103조제3항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53. 제103조제9항의 부재기결정서
54. 제105조제1항의 압수물건처분서
55. 제106조 본문의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56. 제113조제2항의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
57. 제115조제1항 본문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58. 제115조제1항 본문의 불기소 결정서
59. 제122조제4항의 기소중지자명부
60. 제124조제1항 전단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지휘부
61. 제126조의 공소보류자명부
62. 제128조제1항의 송치결정서
63. 제129조제1항의 사건이송·이첩결정서
64. 제131조제1항 전단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65. 제131조제2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66. 제132조제1항 전단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67. 제134조제2항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68. 제134조제5항의 불송치 반환기록송부(목록)부
69. 제135조제2항의 재수사요청 기록송부(목록)부
70. 제136조제2항 전단의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71. 제136조제4항의 송치요구사건부
72. 제138조제2항 전단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73. 제138조제2항 후단의 수사중지기록 관리부
74. 제141조의 지휘서송부부
75. 제142조의 재정신청사건부
76. 제146조제2항 전단의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사건부
77. 제148조제1항제5호의 항고사건 결정서
78. 제148조제3항의 (재항고) 각하결정서

79. 제150조제1항의 공판카드
80. 제151조제1항의 공판사건기록관리부
81. 제154조제4항의 구속영장집행원부
82. 제155조제2항의 보석청구사건인원표
83. 제156조제1항 후단의 보석자기록표
84. 제156조제1항 후단의 보석자명부
85. 제192조제2항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부
86. 제205조제1항의 국민참여재판사건부
87. 제213조제2항의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
88. 제214조제2항 본문의 항소사건부
89. 제214조제2항 본문의 상고사건부
90. 제219조제2항의 형사 신청·항고·재항고사건부
91. 제223조의 재심청구사건부
92. 제225조제1항제1호의 내사사건 수리서
93. 제225조제1항제1호의 내사사건부
94. 제225조제1항제2호의 진정사건 수리서
95. 제225조제1항제2호의 진정사건부
96. 제226조제3항의 내사사건기록
97. 제226조제3항의 진정사건기록
98.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 수리서
99.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부
100.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기록
101. 제233조제1항의 시정사건 수리서
102. 제233조제1항의 시정사건부
103. 제233조제2항의 시정사건 등록서
104. 제234조제2항의 시정조치기록 등본 송부요구(목록)부
105. 제234조제6항의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
106. 제235조제2항의 시정사건기록
107. 제239조제1항 전단의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
108. 제245조제2항의 비상상고사건부
109. 제247조의 위헌제청사건접수부
110. 제247조의 헌법소원사건접수부
111. 제250조제4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
112. 제251조제3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113. 제253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114. 제254조제1항의 긴급검열(감청)서
115. 제254조제6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요청 결정부
116. 제254조제7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117. 제254조제9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118. 제255조제3항의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119. 제256조제1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120. 제256조제2항 후단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21. 제256조제5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22. 제257조제1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
123. 제257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124. 제258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
125. 제259조제5항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126. 제259조제6항의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 발송부
127. 제260조제1항 후단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128. 제260조제2항 후단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29. 제260조제3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
130. 제260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31. 제260조제8항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처리부
132. 제262제2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
133. 제263조제1항 후단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134. 제263조제2항 후단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35. 제264조제4항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
136. 제266조제6항의 특례조치 등 요청·통보부
137. 제267조제4항의 몰수·추징보전청구부
138. 제268조의 몰수보전부
139. 제277조의 추징보전부
140. 제285조제5항의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
141. 제292조제2항의 교체임용 요구부
142. 제294조제2항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1. 제7조제1항 본문의 사건접수인
2. 제7조제4항의 기록접수인
3. 제10조제1항 본문의 수리입력항목

4. 제10조제2항 본문의 접수입력항목
5. 제25조제1항의 목록과 요지 접수인
6. 제25조제2항의 검토필 고무인
7. 제25조제3항의 제출지시 고무인
8. 제40조제1항의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
9. 제102조제1항의 결정입력항목
10. 제102조제1항의 처리입력항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검찰청예규는 공개한다.

부칙 <제992호,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구제신청의 처리를 위한 수사중지 기록 반환에 관한 특례)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2021년 7월 1일 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제4조(조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26조제1항제6호, 제2편제10장(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및 제302조제1항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 전에 조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26조제1항제6호, 제2편제10장(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및 제302조제1항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조사사건"을 각각 "수사사건"으로, "조사사건 수리서"를 각각 "수사사건 수리서"로, "조사사건부"를 각각 "수사사건부"로, "조사사건기록"을 각각 "수사사건기록"으로 한다.

제5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84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6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5조제6항·제7항 및 제97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제4항, 제60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5조"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제4항, 제103조제6항·제7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로 한다.

②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검찰청검사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

제 목 사건수리통지

아래 사건을 수리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①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세		
② 죄 명			
③ 송 치 연 월 일	. . .	④ 수 리 연 월 일	. . .
⑤ 송 치 사 건 번 호		⑥ 수 리 사 건 번 호	
⑦ 기 록 권 수	권	⑧ 기 록 권 수	권
⑨ 비 고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서식 사건송치서]

공소시효	장 기	. . .
	단 기	. . .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사 건
형

수신자 발신자 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 (인)

제 목 사건송치

아래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의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연 령	
③ 죄 명				
④ 송 치 사 유				
⑤ 기 록 권 수				
⑥ 압 수 물 건				
⑦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2021. . .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지방검찰청장

검 사 ㊞

제 목 **사건기록 열람요청**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귀 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열람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사 건	경찰번호		검찰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범죄사실	붙임의 범죄사실과 같음		
신청사유	동일 범죄사실 여부 확인 [ ] 영장청구 · 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 판단 [ ]			
영장청구	영장 청구일		영장 발부일	
	영장 종류			
기록열람범위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호서식]

열람허가서

검 사 ㊞

사건기록 열람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을 허가(불허)합니다.

- 아 래 -

사 건	경찰번호		검찰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신청사유	동일 범죄사실 여부 확인 [ ] 영장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 판단 [ ]			
열람 범위	※ 별지서식 활용 가능			
비 고				

210㎜×297㎜[백상지(80g/㎡)]

(별지)

열람 허가 범위

순번	요 청 목 록	허가여부		비고
		허 가	거 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년 (형,불,시정)제 호		0000. 00. 00.
수신자 ○○○경찰서장		검사 ㊞
제 목 **송치요구**		
아래 사건에 대해 송치를 요구합니다.		
송치요구 대상	경찰 사건번호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죄명	
송치요구 사유		
기록권수		
압수물	[ ] 있음 [ ] 없음	
송치기한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른 송치요구 시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기한을 지정	
비고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정의 철회

대표변호인 지 정 서

지정의 변경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 대표변호인의 지정을 철회함
□ 대표변호인을 지정함
□ 대표변호인의 지정을 변경함

. . .

검찰청

검사 ㊞

대표변호인	1	성 명	
		송달주소	
	2	성 명	
		송달주소	
	3	성 명	
		송달주소	
기타변호인	1	성 명	
		송달주소	
	2	성 명	
		송달주소	
	3	성 명	
		송달주소	
	4	성 명	
		송달주소	
	5	성 명	
		송달주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검찰청

(00-0000-0000)

검 제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지 정 의 철 회

제 목 **대표변호인 지 정 통보** 검 사 인

지 정 의 변 경

우리청 형제 호 피의사건의 피의자 에 대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을 / 대표변호인을 / 대표변호인의 지정을] 아래와 같이 [철 회 / 지 정 / 변 경] 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대표변호인	1	성 명	
		송달주소	
	2	성 명	
		송달주소	
	3	성 명	
		송달주소	
그 밖의 변호인	1	성 명	
		송달주소	
	2	성 명	
		송달주소	
	3	성 명	
		송달주소	
	4	성 명	
		송달주소	
	5	성 명	
		송달주소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사건처리 의견**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접수일자			사건번호	2021-000000
죄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의 견 내 용

○○○검찰청

검사 (인)

297㎜×210㎜[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9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의견요청**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경찰 사건번호				
죄 명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요 청 사 항				
이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의견제시·교환이 필요하므로, 0000. 00. 00.까지 해당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합니다. 1. 사건 유형 □ 공소시효 임박사건 □ 내란·외환 사건 □ 선거 사건 □ 테러 사건 □ 대형참사 □ SOFA 사건 □ 연쇄살인 사건 □ 기타 ( ) 2. 의견 요청사항 -				
○○○ 검찰청				
검 사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 호 2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사법경찰관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0000-000000
죄 명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의 견 내 용				
○○○검찰청 검사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다음 사건에 대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지시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혐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검 사 지 시

이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년 월 일 까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지시합니다.

제출 지시 사유

1)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 [ ]

2)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 ]

첨부서류 1. . 끝.

○○○ 검찰청

검 사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수사지휘**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접 수 일 자		사건번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사건에 대한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연 장 기 간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출국정지·입국시통보요청 지휘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사 건 번 호		
인 적 사 항	성명	
	주거	
	등록기준지	
	직업	성 별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죄 명		
요 청 항 목	[ ] 출국금지 [ ] 긴급출국금지 [ ] 출국금지기간 연장 [ ] 입국시 통보요청 [ ] 출국정지 [ ] 긴급출국정지 [ ] 출국정지기간 연장	
기 간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재기수사지휘**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기수사지휘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검 사 지 휘		
1. 신병지휘 ( )구속 ( )불구속 ( )재지휘 2. 이 사람에 대한 별지 기록을 송부하니 수사하여 년 월 일 까지 ( ) 사건 송치할 것을 지휘합니다. ( ) 재지휘 받을 것을 지휘합니다. ( ) 간이공소장 양식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합니다. 3.		
첨부서류 1. 형제 호 수사기록 1권. 끝.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지휘**

다음 사람에 대한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구속	불구속	재지휘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송치일시	
송치번호	
사건번호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다음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출국정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가	부	비 고

사 건 번 호		
인 적 사 항	성명	
	주거	
	등록기준지	
	직업	성 별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죄 명		
요 청 항 목	[ ] 출국금지 [ ] 긴급출국금지 [ ] 출국금지기간 연장 [ ] 출국정지 [ ] 긴급출국정지 [ ] 출국정지기간 연장	
기 간		
검 사 의 견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소재발견 통보(참고인중지)**

귀 서 0000년000000호로 참고인중지된 피의자 ○○○외 ○명에 대한 사건 관련 참고인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참고인(고소인, 고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전 화	(자택)		(직장)	
대상사건	피의자				
	죄 명				
	사건번호				
발견경위					
비 고					
첨 부					

○○○○검찰청

검사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소재발견 통보(수사중지)**

귀 서 0000년 000000호로 수사중지된 피의자 ○○○외 ○명에 대한 사건의 피의자를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죄 명		
사건번호		
발견경위		
비 고		

○○○○검찰청

검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검찰청

(00-000-0000)

. . .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소재수사요청** 검 사 (인)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을 속히 수사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소재수사 할 곳		위 주거지
대상 사건	송치관서 / 송치일자 / 송치번호	
	유형	[ ] 2021. 1. 1. 이전 송치 /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른 송치 /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송치(이의신청)

수사사항

1. 현재 거주 여부, 주민등록등재 여부, 전화번호
2. 외출한 경우에는 외출 사유 및 행선지 또는 귀가 예정일자
3. 소재불명 시는 가족, 친지, 등 연고자의 유무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고 소

고 발 인 진술조서

자 수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거			
④ 등 록 기 준 지			
⑤ 직 업		⑥ 연 령	세 . . . 생

검찰청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고 소 인 지 정 서

사 건 명	피의사건
신 청 인	
피해자와의 관계	
피 신 청 인 (피 의 자)	

위 사건에 관하여 . . . 신청인으로부터 고소인 지정신청이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28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를 검토한 결과 그 이유가 인정되므로, 제6조제3항 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3항

신청인(또는 신청 외) 를(을) 고소권자로 지정합니다.

. . .

○○○ 검찰청

검사 (인)

고소권자 귀하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 경찰서장

제 목 :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

다음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발견일시		
발견장소		
신고일시		
변사종별	원인	
	방법	
변사자 인적사항		주 거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성 명 :
사인 및 의사소견		직 접 사 인 : 중간선행사인 : 선 행 사 인 :
사망추정시각		
경찰조치 및 의견		
검사 지휘 및 의견		
검시지휘		
사건의견		
○○○ 검찰청 검 사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

다음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 망 일 시	
사 망 장 소	
사 고 일 시	
발 생 장 소	
변 사 자 인 적 사 항	주 거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성 명 :
의 사 소 견	
경 찰 조 치 및 의 견	
검 사 지 휘 및 의 견	
검 시 지 휘	
사 건 의 견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

다음 변사사건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변사자 인적사항	주 거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성 명 :
사 인	직접사인 : 간접사인 :
경찰 의견	
검사 의견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앞 면)

검 시 조 서

. . . 검찰청 검사 는(은) 검찰주사(보)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의 변사체를 검시하다.

변사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성별 및 연령	남 · 여	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변 사 장 소					
검 시 장 소					
사체의 모양 및 상황					
변 사 연 월 일					
발견일시 및 발견자					
의 사 의 검 사					
관계인의 진술					
휴대품 및 유류품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사 인	
사체의 처리	
참 여 인	
검사의 의견	

위 검시는 . . . : 에 시작하여 . . . : 에 끝나다.

년 월 일

검찰청 검 사 ㊞

검찰주사(보)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발견일시		
발견장소		
신고일시		
변사종별	원인	
	방법	
변사자인적사항	성명	(수감번호)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사인 및 의사소견		직 접 사 인 : 중간선행사인 : 선 행 사 인 :
사망추정시각		
교도관 조치 및 의견		
검 사 지 휘		
사체지휘		
사건지휘		

○○○ 검찰청

검 사 (인)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사 망 일 시		
사 망 장 소		
사 고 일 시		
발 생 장 소		
변사자 인적사항	성 명	(수감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의 사 소 견		
교 도 관 조 치 및 의 견		
검 사 지 휘		
사 체 지 휘		
사 건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변사자 인적사항	주 거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성 명 :
사 인	직접사인 : 간접사인 :
교도관 의견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형제 호

출 석 요 구 서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아래 피의사실 요지 참조)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우리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사 실 요지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2.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담당자)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검찰청 검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1호서식]

형제 호
Criminal Case No. in 20XX

출 석 요 구 서
Request for Attendance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아래 피의사실 요지 참조)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우리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사실 요지

You are requested to come to our Prosecutors' Office, room No.( ) at( )a.m.(p.m.) on (Year)(Month)(Day) to deal with the case suspected of ( )(complainant, accuser and petitioner).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When attending, you must carry this request for attendance, ID card(or driver's license or any materials that can prove your identity), seal, evidence documents below, and any materi-als that need to be brought upon your judgment.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If you think that you did not have enough opportunity to make statements on the case previo-usly or that some new arguments need to be made and investigation is needed, you may prep-are for a written statement that includes those arguments, and bring it to the Office.

1.
2.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담당자)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 case that you cannot afford to attend on a designated date due to inevitable situations or have a question regarding this request, please contact our Office, room No.( )(Tel. , Person in charge) to make adjustments on the date or ask a question.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조의2에 따라 체포 될 수 있습니다.

If you do not accede to the request for attendance without justifiable reasons, you can be subject to arrest in accordance with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2).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 are entitled to receiving support from defense attorney and may state your views when the attorney is available. If you want to make statements with the attorney in presence, please contact us in advance.

20XX. . .
(Year) (Month) (Day)

직인
Seal

OO검찰 검사
Prosecutor from OOO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형제 호
刑第 号

출 석 요 구 서
出 席 通 知 書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아래 피의사실 요지 참조)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우리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사실 요지

关于您有犯罪嫌疑的案件(控告人、举报人、诉求人)，我厅有事项需询问，请您于 _____年_____月_____日上午(下午)_____时_____分到我厅_____号检察官办公室出席。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出席时须携带此出席通知书、住民登录证(或驾驶执照等其他可证明身份的资料)、印章、证据资料及其他您认为需要的资料，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关于此案件，如您认为之前的陈述不够充分或有新的事项需要陈述和调查，请将其内容书写在陈述书上，并携带该陈述书出席。

1.

2.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담당자)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如有不得已原因，无法在指定日期出席，或有其他与本出席通知书有关的疑问，请联系我厅检察官办公室(电话: 、负责人:)调整出席日期和时间或进行咨询。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조의2에 따라 체포 될 수 있습니다.
如无正当理由未出席者，依据《刑事诉讼法第20条之2》之规定，会被依法逮捕。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您有权利获得辩护人助力，可在辩护人陪同下进行陈述。如您陈述时需要辩护人陪同，请事先告知我厅。

년 월 일
年 月 日

0000검찰청 검사 인
0000检察厅 检察官 (签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형제 호

참고인 출석요구서

피의자(피내사자, 피진정인) OOO에 대한 피의(내사, 진정) 사건(아래 사건의 요지 참조)의 참고인으로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우리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사건의 요지

▶ 준비사항

1.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도장
2.
3.
4.
5.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담당자)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검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4호서식]

20 형제 호
Criminal Case No. in 20XX

참고인 출석요구서
Request for Witness Attendance

피의자(피내사자, 피진정인) OOO에 대한 피의(내사, 진정) 사건(아래 사건의 요지 참조)의 참고인으로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사건의 요지

As a witness of ( ) criminal case[internal probe case, petition case]on suspect[any person under internal probe, petitionee]( ),

. . . 오전(후) 시에 우리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you are requested to come to our Prosecutors' Office, room No. ( ) at ( )a.m.(p.m.) on 20XX(Year). (Month). (Day). to deal with the case. It is expected to take about ( )hour(s) for the investigation so the witness will be provided with expenses allowed in the regulation for attendance.

▶ 준비사항
Preparation items

1.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도장
Request for attendance, ID card(or driver's license or any materials that can prove your identity) and seal

2.

3.

4.

5.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Any materials that need to be brought upon your judgment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담당자)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 case that you cannot afford to attend on a designated date due to inevitable situations or have a question regarding this request, please contact our Office, room No.( ) (Tel. - - , Person in charge) to make adjustments on the date or ask a question.

검찰청
Prosecutors' Office

검사 (인)
Prosecutor (Seal)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호서식]

20 형제 호
20 刑第 号

참고인 출석요구서
參考人出席通知書

피의자(피내사자, 피진정인) OOO에 대한 피의(내사, 진정) 사건(아래 사건의 요지 참조)의 참고인으로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사건의 요지

关于犯罪嫌疑人 的犯罪嫌疑
关于嫌疑人 的嫌疑, 我厅有事项要以参考人身份传唤您询问。
关于被诉求人 的诉求

. . . 오전(후) 시에 우리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请您于 年 月 日上午(下午) 时 分到我厅 号检察官办公室出席。调查所需时间大约有 小时, 对于出席参考人, 我们会给予一定金额的旅费。

▶ 준비사항
准备事项

1.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본임임을 확일 할 수 있는 자료) 및 도장
出席通知书、住民登录证(或驾驶执照等其他能证明本人的资料)及印章。

2.

3.

4.

5.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其他您认为需要的资料。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담당자)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如有不得已原因, 无法在指定日期出席, 或有其他与本出席通知书有关的疑问, 请联系我厅检察官办公室(电话: 、负责人:)调整出席日期和时间或进行咨询。

검찰청
检察厅

검사 (인)
检察官 (签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동 석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 신 : 검찰청 검사 ○○○

귀청 형제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를(을) 신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신뢰관계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피의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 소명자료 별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동 석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 신 : 검찰청 검사 ○○○

귀청 형제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또는 참고인) 를(을)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해자(또는 참고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피해자 (또는 참고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전화번호
신뢰관계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피해자(또는 참고인)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 소명자료 별도 붙임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제1쪽)

피 의 자 신 문 조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호 검사실에서 검사 는(은) 검찰주사(보) 를(을)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

답 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 휴대 전화 :
직장 전화 : 전자우편(e-mail) :
입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제2쪽)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답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자필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9호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제　　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호 검사실에서 검사는(은) 검찰주사(보)　　를(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답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자필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진 술 조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등록기준지 :

직 장 주 소 :

연 락 처 :　　(자택 전화)　　(휴대 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검찰청　　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

/ 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검사는 진술자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조사하다.

문

답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자필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진 술 조 서 (제 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검찰청 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였는바, 검사는 진술자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조사하다.

문

답

문

답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자필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제1쪽)

진 술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자택전화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				전자우편 (e-mail)	

본인은 20 . . . 검찰청 호 검사실에 피의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으로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서면 진술하다.

경찰에서 진술한 경우	□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며, 진술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진술하기 위하여 합니다. □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진술하기 위하여 합니다.

210㎜×297㎜

(신문용지54g/㎡(재활용품))

(제2목)

. . .

진술인 (서명 또는 날인)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 .

진술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및 도착 시각	
2. 조사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시작 시각 : □ 종료 시각 :
3. 조서 열람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시작 시각 : □ 종료 시각 :
4.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5.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 중단 시각 : □ 재개 시각 : □ 이유:
6.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년 월 일

검사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확인자 : (인)

검 사 :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구 분		내 용
관 련 사 건	피 의 자	
	사 건 번 호	
	죄 명	
피조사자 · 면담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 건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수 사 경 과	조 사 장 소 도 착 시 각	
	조 사 장 소 떠 난 시 각	
	조 서 미 작 성 이 유	
	조 사 외 실 시 활 동	
	변 호 인 참 여 여 부	

검사는 위 피조사(면담)자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피조사(면담)자로부터 확인받음.

년 월 일

확인자 : (인)

검 사 : (인)

210mm×297mm[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지방검찰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함에 있어 진술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감 정 위 촉 서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년 형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감정위촉 검 사 ㊞

피의자(피내사자, 피진정인) 에 대한

피의(피내사, 피진정)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①위촉사항	
② 비 고	감정처분허가장은 감정서와 함께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발 신 검찰청

검사 ㊞

제 목 **수사사항 조회**

수사상 필요하여 아래사항을 조회하오니 . .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번 호		② 피 의 사 건 명	※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③ 피 의 자 명			
④조회사항	1 2 3 4 5 6 7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수 사 –

수신자 경찰청장 . . .

참 조 과학수사과장 발신자 검찰청검사장

제 목 수사자료표 송부

① 작성 번호	② 작성 연월일	③ 성 명	④ 주민등록 번호	⑤ 죄 명	⑥ 입건전력 발견 여부	⑦ 원(原)지문 작성 여부		⑧ 조회일 및 처리일	⑨ 조 회 사 유
						모든 손가락	엄지 손가락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압 수 조 서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시 분 경 에서 검사 은(는) 검찰주사(보) 을(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물건을 압수하다.

①증제 번호	② 물건명	③특기사항					④비고
		수량 등					
		압수이유	몰수대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장 물				
			□ 기타 압수가 필요한 이유( )				
		발견·압수 경위					
		소지자 (제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수량 등					
		압수이유	몰수대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장물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발견·압수 경위					
		소지자 (제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210㎜×297㎜(신문용지 54g/㎡)

		수량 등					
		압수이유	몰수대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장물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발견·압수 경위					
		소지자 (제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수량 등					
		압수이유	몰수대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장물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발견·압수 경위					
		소지자 (제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table>
<tr><td rowspan="2">참여인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124조)</td><td>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사유</td><td colspan="5">☐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2항(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7조제1항(긴급체포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8조(유류물·임의제출물의 압수)
☐ 기타(　　)</td></tr>
<tr><td colspan="6">년　월　일
검찰청
검　　사　　㊞
검찰주사(보)　　㊞
참　여　인　　㊞</td></tr>
</table>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압수목록교부서 검 사 ㊞

에 대한 우리청 형제 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로부터 다음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에 압수목록을 교부합니다.

압 수 목 록

①증제번호	②압수물건명	③ 수 량	①증제번호	②압수물건명	③ 수 량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압 수 물 총 목 록				
압제 호 피의자				
①증제번호	② 물 건	③ 수 량	④ 압 수 목 록 정 수	⑤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유가증권은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증거품인바, 원형보존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요	부	비 고

연 번	유가증권 종류	유가증권 번호	비 고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4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물건은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증거품인바, 위탁보관 지휘요청·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연 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6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물건은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증거품인바, 대가보관 지휘요청·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연 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6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유가증권 폐기처분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물건은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증거품인바, 폐기처분 지휘요청·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연 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7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압수물 환부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물건은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증거품인바, 환부 지휘요청·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연 번	품 종	수량	피압수자	환부받을 사람	비 고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8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압수물 가환부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물건은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증거품인바, 환부 지휘요청·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연 번	품 종	수량	피압수자	가환부 받을 사람	비 고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실 황 조 사 서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

시 구 동 번지에서 검사 는 검찰주사(보)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실황을 조사하다.

1. 실황조사대상

2. 실황조사의 목적

다음의 각 사항을 명백하게 하는데 있다.

1.

2.

3.

3. 현장의 부근 상황 및 현장의 모양(도면 별첨)

4. 실황조사 참여인

본 실황조사는 . . . 시 분에 시작하여 같은 날 시 분에 끝나다.

검 사 ㊞

검찰주사(보)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년 호

수 신 검찰청 검사장 발 신 검찰청 검사장대리

제 목 수사촉탁 검 사 ㊞

우리청 년형 제 호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상 필요하오니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술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거			
	④등록기준지			
피의사실의 요지 및 필요 수 사 사 항	⑤ 피의사실의 요지			
	⑥ 수사 사항	1 2 3 4 5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1호서식]

<table>
<tr><td colspan="5">○○○○검찰청

(전화번호)

년 호

수 신 검찰청 검사장 발 신 검찰청 검사장대리

제 목 공조사건회답 검 사 ㉮

(. . .)로 수사촉탁한 (참고인)에 대한 수사사항을 회답합니다.</td></tr>
<tr><td rowspan="3">진 술 인</td><td>① 성 명</td><td></td><td>②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③ 주 거</td><td colspan="3"></td></tr>
<tr><td>④ 등록기준지</td><td colspan="3"></td></tr>
<tr><td>⑤ 수 사 사 항</td><td colspan="4"></td></tr>
<tr><td>⑥ 비 고</td><td colspan="4"></td></tr>
</table>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2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증거보전청구** 검 사 (인)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다음 사건에 대한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 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 유		
기 각 하 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증거보전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거보전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건의 개요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명할 사실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거 및 보전의 방법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 각 하 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4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증거보전신청 기각**

다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증거보전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건의 개요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명할 사실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거 및 보전의 방법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권 리 고 지 확 인 서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세)

주 거 :

본인은 . . . : 경 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 . .

위 확인자 (인)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 . .

○○○ 검찰청

(직급)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체 호

형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체포영장청구** 검 사 ㊞

피의자	①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 직 업	
	④ 주 거	
⑤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위 피의자를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기 위하여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⑥ 범죄사실 및 체포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⑦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⑧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⑨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⑩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 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⑪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사 ㊞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7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체포영장청구**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위 피의자를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 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8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체포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체포영장신청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포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 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보완수사요구(영장)**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접수일자				
진행번호			영장구분 및 영장신청번호	
죄 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보 완 수 사 요 구 사 항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영 . . .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체포·구속영장 집행지휘	검 사 ㊞

아래 사람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함

피고인 피의자 증 인	①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 주 거	
④ 죄 명		
⑤체포·구속영장 발부 연월일		
⑥ 체 포 · 구 속 영 장 번 호		
첨 부 : 1. 체포영장 1통 1. 구속영장 1통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검찰 (전화번호) 영 . . . 수 신 검찰청검사 지청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 제 목 체포·구속영장 집행촉탁 아래와 같이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함
피고인 피의자 증 인	①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 주 거	
④ 죄 명		
⑤ 촉 탁 사 유		
⑥ 비 고		
첨 부 : 1. 체포영장 1통 1. 구속영장 1통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영장반환** 검 사 인

아래와 같은 사유로 영장을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영 장 번 호	
대 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 명	
집 행 불 능 의 사 유	
첨 부 :	1. 체포 · 구속, 압수·수색·검증 영장 1부. 2. 체포 · 구속,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지휘서 1부. 3. 집행불능보고서 1부. 끝.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영장반환**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사법경찰관 등의 영장집행이 불능되어 이에 영장을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영 장 번 호	
대 상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 명	
집 행 불 능 의 사 유	별지 기재내용과 같음
첨 부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형제 호

수 신 자

제 목 **체포·구속 등 통지**

1. 피의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거 :

2. 위 사람을 . . . : 피의사건으로 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여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위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가 00지방법원(00 지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 . .

○○○검찰청

검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결 정

사 건 번 호 :

결 정 명 :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

피 의 자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죄 명 :

체포·구속일자 :

접견 등 금지기간 : . . .~ . . .(일)

주 문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을 금지한다.

이 유 :

. . .

○○○○검찰청

검사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6호서식]

<table>
<tr><td colspan="3">○○○○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접견 등 금지 지휘 검 사 ㊞
아래 피의자(피고인)의 접견을 금지함</td></tr>
<tr><td rowspan="4">피의자
또는 피
고인</td><td>① 성 명</td><td>( )</td></tr>
<tr><td>②주민등록번호</td><td>(세)</td></tr>
<tr><td>③ 직 업</td><td></td></tr>
<tr><td>④ 주 거</td><td></td></tr>
<tr><td colspan="2">⑤ 죄 명</td><td></td></tr>
<tr><td colspan="2">⑥ 체 포 · 구 속 일 자</td><td></td></tr>
<tr><td colspan="2">⑦ 비 고</td><td></td></tr>
<tr><td colspan="3">첨 부 : 접견 등 금지 결정서 등본 1부</td></tr>
</table>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결 정

사 건 번 호 :

결 정 명 :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

피의자·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죄 명 :

접견 등 금지 일자 :

주 문 :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접견 등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검찰청

검사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8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목 : **피의자 석방** 검 사 (인)

아래 피의자를 즉시 석방한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분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체 포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사 유	
석 방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사 유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의 성명		
비 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피의자 석방지휘·승인서**

다음 사람에 대한 석방 건의·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승인합니다.

가	부	비 고

피 의 자	
죄 명	
체포·구속 유형	
체포·구속 일시	
검 사 지 휘(의 견)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신 : ○○○검찰청

제 목 : **피의자 석방 통지** 검사 (인)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영장발부 연월일	체포·구속 영장번호	피의자	죄명	석방 연월일	석방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긴 급 체 포 서

제 0000-0000 호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0000. 00. 00.

○○○검찰청

검 사 성 명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별지와 같음
체포자의 직급 및 성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구금을 집행한 자의 직급 및 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

다음 사람에 대한 긴급체포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가	부	비 고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 급 체 포 한 일 시		
긴 급 체 포 한 장 소		
긴 급 체 포 한 자 의 직급 및 성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검 사 의 견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긴급체포 승인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사람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 급 체 포 한 일 시		
긴 급 체 포 한 장 소		
긴 급 체 포 한 자 의 직 급 및 성 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84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피긴급체포자를 석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피 긴 급 체 포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긴 급 체 포 일 시	
긴 급 체 포 장 소	
죄 명	
긴급체포 하게 된 구 체 적 이 유	별첨 긴급체포서의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와 같음
석 방 지 휘 검 사	
석 방 한 일 시	
석 방 한 장 소	
석 방 사 유	□ 구속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 필요 □ 기타
석방한 자의 직급 및 성 명	
첨 부 : 긴급체포서 사본 1부. 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86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가 있는바, 피긴급체포자를 석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피 긴 급 체 포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긴 급 체 포 일 시		
죄 명		
석 방 지 휘 검 사		
석 방 한 일 시		
석 방 한 장 소		
석 방 사 유	□ 구속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 필요 □ 기타	
	별지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기재내용과 같음	
석 방 한 자 의 직 급 및 성 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86호서식]

현 행 범 인 체 포 서

피의자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세)
	③ 직 업	
	④ 주 거	
⑤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년 월 일

○○○○검찰청

검사 ㊞

⑥ 체 포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⑦ 체 포 한 장 소	
⑧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⑨ 체 포 자 의 직 급 및 성 명	
⑩ 인 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⑪ 인 치 한 장 소	
⑫ 구 금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⑬ 구 금 한 장 소	
⑭ 구금을 집행한 자의 직급 및 성명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87호서식]

<table>
<tr><td colspan="3">현행범인인수서</td></tr>
<tr><td rowspan="4">피의자</td><td>① 성 명</td><td>( )</td></tr>
<tr><td>② 주 민 등 록 번 호</td><td>(세)</td></tr>
<tr><td>③ 직 업</td><td></td></tr>
<tr><td>④ 주 거</td><td></td></tr>
<tr><td colspan="2">⑤ 변 호 인</td><td></td></tr>
<tr><td colspan="3">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따라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 . .

○○○○검찰청

검사 ㊞</td></tr>
<tr><td colspan="2">⑥ 체 포 한 일 시</td><td>년 월 일 시 분</td></tr>
<tr><td colspan="2">⑦ 체 포 한 장 소</td><td></td></tr>
<tr><td rowspan="3">체포자</td><td>⑧ 성 명</td><td></td></tr>
<tr><td>⑨ 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⑩ 주 거</td><td></td></tr>
<tr><td colspan="2">⑪ 범죄사실 및 체포의사 유</td><td></td></tr>
<tr><td colspan="2">⑫ 인 수 한 일 시</td><td>년 월 일 시 분</td></tr>
<tr><td colspan="2">⑬ 인 수 한 장 소</td><td></td></tr>
<tr><td colspan="2">⑭ 인수한 자의 직급 및 성명</td><td></td></tr>
<tr><td colspan="2">⑮ 인 치 한 일 시</td><td>년 월 일 시 분</td></tr>
<tr><td colspan="2">⑯ 인 치 한 장 소</td><td></td></tr>
<tr><td colspan="2">⑰ 구 금 한 일 시</td><td>년 월 일 시 분</td></tr>
<tr><td colspan="2">⑱ 구 금 한 장 소</td><td></td></tr>
<tr><td colspan="2">⑲ 구금한 자의 직급 및 성명</td><td></td></tr>
</table>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수 신 : ○○○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 피의자 석방명령　　검 사 ㊞

아래 피의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명함.

피의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직 업	
	④ 주 거	
⑤ 죄 명		
⑥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장소		
⑧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사유		
⑨ 석 방 사 유		
⑩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89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 사건송치명령 검 사 ㊞

아래 사건을 즉시 송치할 것을 명함

① 사 건 번 호		년 제 호
② 수 리 연 월 일		년 월 일
③ 수 리 사 유		
④ 수 사 담 당 자		
피의자	⑤ 성 명	
	⑥ 주 민 등 록 번 호	
	⑦ 직 업	
	⑧ 주 거	
⑨ 죄 명		
⑩ 송 치 명 령 사 유		
⑪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90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한 귀원 호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관계 서류 등 제출이 있는바, 이를 송부하니 심사 후 반송바랍니다.

피 체 포 · 구 속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체 포 · 구 속 일 자	
지 정 된 심 문 기 일	
비 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91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21 적제 호

21 구제 호

21 보제 호 . . .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시찰조회요청** 검 사 (인)

아래 사람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피고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죄 명		
결 정 법 원 검 찰 청		법 원 검찰청
석 방 연 월 일		년 월 일
석 방 경 찰 서, 구 치 소, 교 도 소		
석 방 사 유		
제 한 주 거 지		
신병인수인 또는 보호자		
비 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92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 . .

수 신 ○○○구치소장·교도소장·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석방지휘** 검 사 ㊞

아래와 같이 석방을 지휘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체포·구속 연월일		
선고/결정 연월일		
석방사유		
비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93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서 검 사 ㊞

아래 피의자에 대한 적부심보증금 전부에 대하여 몰수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①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 주 거	
④ 죄 명		
⑤ 석 방 결 정		. . . 법원
⑥ 적 부 심 보 증 금		원
판결	⑦ 선 고	. . . 법원
	⑧ 형 명 · 형기	
	⑨ 확 정	. . . 법원
⑩ 청 구 사 유		
⑪ 첨 부 기 록		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94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발 신 검찰청

제 목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 검 사 ㊞

아래 적부심보증보험금에 대하여 . . . 법원으로부터 몰수결정이 있었으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증 권 번 호		제 호		
보 험 계 약 자		피 보 험 자		
석 방 허 가 내 용	사 건 번 호		사 건 명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적부심보증보험금	원		

붙 임 : 1. 적부심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2. 적부심보증보험금 몰수결정서 사본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96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구 호

형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사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위 피의자를 에 구속하기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이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취지와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96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구 호

제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사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위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는바, 위 피의자를 에 구속하기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이 필 요 한 사 유	별지와 같음	
필 요 적 고 려 사 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 락 처		
재청구의 취지 및 이 유	(별지와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 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97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제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속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의자를 에 구속하기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이 필 요 한 사 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 요 적 고 려 사 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취지와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 지 와 사 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 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98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고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의자를 에 구속하기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인치한 일시 · 장소		
구금한 일시 · 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이 필 요 한 사 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 요 적 고 려 사 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른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 락 처		
재청구의 취지 및 이 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99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체포가 필요한 사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취지 및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고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이 필요한 사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른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구 호

제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사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위 피의자를 **긴급체포** 하였는바, 위 피의자를 에 구속하기 위하여 0000. 00. 00.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이 필 요 한 사 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증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 락 처		
재청구의 취지 및 이 유	(별지와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구 호

제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사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위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위 피의자를 에 구속하기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이 필 요 한 사 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 락 처	
재청구의 취지 및 이 유	(별지와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의자를 에 구속하기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 락 처		
재청구의 취지 및 이 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의자를 에 구속하기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이 필 요 한 사 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 락 처	
재청구의 취지 및 이 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이 필요한 사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 · 장소	
인치한 일시 · 장소	
구금한 일시 · 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이 필 요 한 사 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 요 적 고 려 사 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 락 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의견서

검 사 ㊞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피의자심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① 피 의 자		
② 죄 명		
③ 의견 요청 요지		
⑤ 의 견		법원접수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형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 검 사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속기·녹음·영상녹화를 신청합니다.

① 대상 사건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구속영장 청구일		
② 속기·녹음·영상녹화 범위	☐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 전부 ☐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 일부 – (일부의 경우) 구체적 범위 :		
③ 신청 대상	☐ 속기 ☐ 녹음 ☐ 영상녹화		
④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사본 청구	☐ 청구 ☐ 불청구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09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형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사본 교부 청구** 검 사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사본 교부를 청구합니다.

① 대상 사건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구속영장 청구일		
② 청구 대상	☐ 속기록 사본 ☐ 녹음물 사본 ☐ 영상녹화물 사본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10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구연 형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 제 목 구속기간 연장신청 검 사 ㊞ 아래와 같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① 성 명	
② 주 거	
③ 주민등록번호	(세)
④ 직 업	
⑤ 피 의 사 건	
⑥ 구속 연월일	. . .
⑦ 송치 연월일	. . .
⑧ 인치 연월일	. . .
⑨ 연장요구기한	. . . 까지
이 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11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검 . . .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구속기간 연장 통지 검 사 ㊞

아래와 같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죄 명		
④ 구 속 연 월 일		. . .
⑤ 송 치 연 월 일		. . .
⑥ 연 장 연 월 일		. . .
첨 부 : 구속기간 연장결정 등본 1통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12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형제 호 . . .

수 신 법원 재판부명 발 신 검찰청

제 목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 검 사 ㉮

아래 피고인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타인과의 접견(또는 서류, 기타물건의 수수)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번 호				
② 피 고 사 건 명				
피 고 인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 거			
⑥ 구 속 장 소				
⑦ 접 견 금 지 기 간	. . . 부터 . . . 까지			
⑧ 비 고	1. 공소제기일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청구 검 사 ㉮

다음 피고인에 대한 접견 등 금지결정은 그 사유가 해제되었으므로, 취소를 청구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② 죄 명		
피 고 인	③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세)
	⑤ 직 업	
	⑥ 주 거	
⑦ 접견 등 금지결정일		
⑧ 결 정 취 소 사 유		
⑨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감정유치장 청구** 검 사 (인)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하기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범죄사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취지와 사유		
유치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00 일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감정인	성 명	
	직 업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감정유치장 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범죄사실	별지 감정유치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취지와 사유		
유치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00 일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별지 감정유치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감정인	성 명	
	직 업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감정유치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감정유치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정유치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별지 감정유치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 일 을 넘 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취 지 와 사 유		
유치장을 여러 통 청 구 하 는 취 지 와 사 유		
유 치 할 장 소		
유 치 기 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00 일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별지 감정유치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감 정 인	성 명	
	직 업	
기각하지 취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17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감정유치장 집행지휘** 검 사 (인)

아래 사람에 대한 감정유치장의 집행을 지휘합니다.

죄 명		
피고인 피의자	성 명	
	주 거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 생
감정유치장 발부일		. . .
감 정 유 치 장 소		
감 정 유 치 기 간		. . . ~ . . .(일간)
피고인 · 피의자에 대한 간수명령		유 무
비 고		

첨 부 : 감정유치장 등본 1통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감정유치 해제청구 검 사 ㊞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감정유치의 해제를 청구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② 죄 명				
인 적 사 항	③ 성 명		④ 직 업	
	⑤ 생 년 월 일		⑥ 연 령	
	⑦ 주 거			
⑧감정유치처분연월일				
⑨ 감 정 유 치 목 적				
⑩ 감 정 유 치 기 간				
⑪ 감 정 유 치 장 소				
⑫ 취소가 필요한 사유				
⑬ 비 고				
첨 부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 . .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출감지휘** 검 사 인

귀소에 수용중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감정을 하기 위하여 . . .부터 . . . 까지 에 유치한다는 감정유치장이 발부되었으므로 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합니다.

피고인 피의자	성 명	
	주 거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 생
죄 명		
구 속 연 월 일		. . .
감 정 유 치 처 분		. . . 법원
신 병 인 수 기 관		~~검찰서~~
첨 부		감정유치장 등본 1통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0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 검 사 (인)

아래 사람을 교도소(병원)에서 인수받아 병원(교도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합니다.

피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건번호		형공 형집행정지명부
죄명		
결정	법원 및 검찰청	법원 검찰청
	일자 및 구분	. . .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호송병원		

첨 부 : 1. 정지자 인도지휘서 1통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1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 . .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감호지휘** 검 사 (인)

아래 피의자(피고인)의 감정유치 기간 중 감호할 것을 지휘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건 번 호		
죄 명		
유 치 기 간		
유 치 장 소		
유 치 사 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 . .

수 신 ○○○구치소장(교도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수감지휘** 검 사 ㊞

아래 사람에 대하여 별첨 결정서등본과 같이 보석 취소 / 구속집행정지 / 감정유치 / 결정이 해제

있었으므로 아래 사람을 귀소에 수감할 것을 지휘합니다.

피고인	성 명	
	주 거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 생
죄 명		
결 정 구 분		보석취소결정 구속집행정지취소결정 감정유치해제결정
결 정 연 월 일		. . .
결 정 법 원		법원
비 고		
첨 부		1.결정서 등본 1통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수감통지 검 사 ㊞

아래와 같이 수감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피 고 인 피 의 자	②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거			
⑤ 수 감 사 유		. . .	감정유치기간만료 감정유치처분취소결정 보석취소결정 구속집행정지취소결정	
⑥수감일시및장소		. . .		
⑦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4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집 행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참 조 검 사 ㊞

제 목 감정피의자 입원의뢰

아래 피의자의 감정을 위한 입원을 의뢰합니다.

사 건 번 호	형제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거)			
감정유치장발부일				
감 정 유 치 기 간				
감 정 목 적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집 행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참 조 검 사 ㊞

제 목 감정피의자 퇴원의뢰

. . . 귀소(원)에 입원의뢰한 아래 피의자의 퇴원을 의뢰합니다.

사 건 번 호	형제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거)			
입 원 일 자				
퇴 원 사 유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6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 . .

수신 ○○○구치소장(교도소장) 발신 ○○○검찰청

제목 **피의자 피고인 호송지휘** 검사 (인)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중인 아래 피의자 피고인 을 인수받아 다음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사건번호				
죄명				
호송	연월일	. . .	□ 오전 □ 오후	시 분
	장소			
	사유			
재수용 예정일				

첨부 1. 피의자 피고인 인도지휘서 1통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7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 . .

수 신 ○○○구치소장(교도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 검 사 (인)

아래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를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합니다.

피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 생 당 년
사 건 번 호		형공 형집행정지명부
죄 명		
결정	법원 또는 검찰청	법원 검찰청
	일 자 및 구 분	. . .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신 병 인 수 경 찰 서		경찰서

첨 부 1. 결정서등본 1통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8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21 적제 호

21 구제 호

21 보제 호 . . .

수 신 ○○○구치소(교도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집행정지자 시찰조회 보석자** 검 사 (인)

아래 사람에 대한 이면 기재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피고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죄 명		
결정법원검찰청		법 원 검찰청
석방연월일		년 월 일
석방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석방사유		
제한주거지		
신병인수인 또는 보호자		
비 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 . .

수신 교도소장 / 구치소장 발신 검찰청

제목 **구속집행정지자 재수용 지휘 보석자** 검사 (인)

. . . 경찰서장에게 인도한 아래 피의자 / 피고인 을

귀소에 재수용할 것을 지휘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사건번호		형		
죄명				
재수용 사유				
비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0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수　　호

형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기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이 필요한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건강상태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1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수 호

형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검 사 ㊞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기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대 상 계 좌	계 좌 명 의 인	□ 피의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개설은행·계좌번호	
	거 래 기 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	
압 수 할 물 건		
수색·검증할 장소 또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 기간이 필요한 취지와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 지 와 사 유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이 필요한 취지와 사유		
발 부 하 지 않 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 ○ ○ ○ 검 찰 청

(전화번호)

수 호
징 호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몰수·추징 집행)**

피 의 자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의 대상자에 대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기 위하여 0000. 00. 00.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압 수 할 물 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몰수·추징 대상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 요 한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3호서식]

○ ○ ○ ○ 검 찰 청

(전화번호)

수 호 . . .
징 호

수 신: ○○○법원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몰수·추징 집행(금융계좌추적용)]

피 의 자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의 대상자에 대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기 위하여 0000. 00. 00.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대 상 계 좌	계좌명의인 [ ]대상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개설은행·계좌번호
	거래기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
압 수 할 물 건	
수색·검증할 장소 또는 물 건	
몰수·추징 대상사실 및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압 수 할 물 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 체 또 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 유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 요 한 사 유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 지 와 사 유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이 필요한 취지 및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 별 · 건 강 상 태		
발 부 하 지 않 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대 상 계 좌	계 좌 명 의 인: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개설은행·계좌번호: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거 래 기 간: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거래정보 등의 내용: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압 수 할 물 건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수색·검증할 장소, 신 체 또는 물건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 유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취지와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이 필요한 취지 및 사유		
발 부 하 지 않 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수 호

형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압수 · 수색 · 검증 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긴급 압수·수색·검증한 자의 직급, 성명	
긴급 압수·수색·검증한 일시	
긴급 수색·검증한 장소, 신체 또는 물건	
긴급 압수한 물건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사유	별지와 같음
체포한 일시 및 장소 (「형사소송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경우)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이 필요한 사유	
신체검사를 한 자의 성별·건강상태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사유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7조제1항(긴급체포시의 압수) □ 기타( )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7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긴급 압수·수색·검증한 자의 직급·성명		
긴급 압수·수색·검증한 일시		
긴급 수색·검증한 장소·신체 또는 물건		
긴급 압수한 물건		
범죄사실 및 긴급 압수·수색·검증한 사유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체포한 일시 및 장소 (「형사소송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경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한 사유		
신체검사를 한 자의 성별·건강상태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사유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7조제1항(긴급체포시의 압수) □ 기타( )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압 수 할 물 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유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이 필요한 취지 및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건강상태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기각(금융계좌추적용)**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대 상 계 좌	계 좌 명 의 인: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개설은행·계좌번호: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거 래 기 간 :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거래정보 등의 내용: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압 수 할 물 건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수색·검증할 장소, 신 체 또 는 물 건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유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 지 와 사 유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이 필요한 취 지 및 사 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0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기각(사후)**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긴급압수·수색·검증 한 자의 직급·성명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일시	
긴급 수색·검증한 장소·신체 또는 물건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긴급 압수한 물건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사유	
체포한 일시 및 장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한 사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1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검

수검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증명서 검사 ㊞

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에서 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2호서식]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검찰 형제 호 사건의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 중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하였음을 확인함

. . .

○○○검찰 검사 (인)

■ 대상 전자정보

사건번호	형제 호	지원번호	지원 호
주임검사		압수일시	. . .
압수장소			
압수된 전자정보			

■ 삭제·폐기 또는 반환 대상 확인

(삭제·폐기) □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
□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남겨진 전자정보

(매체 반환) □ 반출된 정보저장매체 원본 내 전자정보
□ 피압수자의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

■ 삭제·폐기 확인

전자정보	
일시	. . . 00:00경
장소	
삭제·폐기 방법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은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삭제·폐기 대상 전자정보를 위와 같이 삭제·폐기하였음

. . .

확인자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

■ 반환 확인

전자정보(매체)		
일시	0000. 0. 0. 00:00경	
장소		
수령자	(성명)	(연락처)

검찰주사(보) ○○○은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반환 대상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복제본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반환하였음

. . .

확인자 : 검찰주사(보)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3호서식]

검 증 조 서

피의자 에 대한 형제 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검사 는 검찰주사(보) 를 참여하게 한 후 . . . 검증을 한다.

① 검 증 일 시				
② 검 증 장 소				
③ 검 증 목 적				
검 증 참여인	④ 성 명		⑤ 직 업	
	⑥생년월일		⑦ 연 령	
	⑧ 주 거			
⑨ 검 증 내 용				

. . .

검찰청 검사

검찰주사(보)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4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 검 사 (인)

피의자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감정인이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감정처분 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감 정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감정위촉 연월일		
감정위촉사항		
감정장소		
감정처분 허가장 유효기간		
범죄사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취지와 사유		
허가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변 호 인		
비 고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6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자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감 정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감정위촉연월일		
감정위촉사항		
감 정 장 소		
감정처분허가장 유효기간		
범 죄 사 실	별지 감정허가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취지와 사유		
허가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 유	별지 감정허가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변 호 인		
비 고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6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감 정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감정위촉연월일		
감정위촉사항		
감 정 장 소		
감정처분허가장 유효기간		
범 죄 사 실	별지 감정허가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취지와 사유		
허가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별지 감정허가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변 호 인		
비 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7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증인신문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피고)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청구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증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거	
	연락처	
증 명 할 사 실		
신 문 사 항		
증인신문청구(신청)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변 호 인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8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증인신문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증인신문을 청구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증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거	
	연락처	
증 명 할 사 실	별지 증인신문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 문 사 항	별지 증인신문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인신문청구(신청)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별지 증인신문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변 호 인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9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증인신문신청 기각**

다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증인신문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인신문신청을 기각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증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거	
	연락처	
증 명 할 사 실	별지 증인신문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 문 사 항	별지 증인신문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인신문신청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별지 증인신문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변 호 인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0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임 호

형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임시조치 청구(가정폭력)** 검 사 인

행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호인		

위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5.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피해자	성명	주거		
	직장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1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임 호

형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임시조치청구(아동학대)** 검 사 인

행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거			
	보조인(변호인 등)			

위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1. 피해아동 도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1호)

☐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3호)

☐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4호)

☐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5호)

☐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6호)

☐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7호)

피해아동등	성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변호사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2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임시조치 청구(사전 가정폭력)**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임시조치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5.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table>
<tr><td rowspan="4">행 위 자</td><td>성명</td><td colspan="3">( )</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세)</td></tr>
<tr><td colspan="4">직업</td></tr>
<tr><td colspan="4">주거</td></tr>
<tr><td>변 호 인</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피 해 자</td><td>성명</td><td colspan="3">주거</td></tr>
<tr><td colspan="4">직장</td></tr>
<tr><td>범죄사실 및 임시조치가 필 요 한 사 유</td><td colspan="4">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r>
<tr><td>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td><td colspan="2"></td><td>판 사</td><td></td><td>인</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3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임시조치청구(사전 아동학대)**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1. 피해아동 도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1호)

☐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3호)

☐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4호)

☐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5호)

☐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6호)

☐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7호)

<table>
<tr><td rowspan="5">행 위 자</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3">( )</td></tr>
<tr><td colspan="2">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세)</td></tr>
<tr><td>직업</td><td>피해아동등과의 관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주거</td></tr>
<tr><td colspan="4">보조인</td></tr>
<tr><td rowspan="3">피 해 아 동 등</td><td>성명</td><td colspan="4"></td></tr>
<tr><td>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td><td colspan="4"></td></tr>
<tr><td>변 호 사</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범죄사실 및 임시조치가 필 요 한 사 유</td><td colspan="4">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r>
<tr><td colspan="2">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td><td colspan="2"></td><td>판 사</td><td></td><td>인</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4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임시조치 청구(사후 가정폭력)**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후의 임시조치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5.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table>
<tr><td rowspan="4">행 위 자</td><td>성명</td><td colspan="2">( )</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세)</td></tr>
<tr><td colspan="3">직업</td></tr>
<tr><td colspan="3">주거</td></tr>
<tr><td>변 호 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피 해 자</td><td>성명</td><td colspan="2">주거</td></tr>
<tr><td colspan="3">직장</td></tr>
<tr><td>긴급임시조치를 한 일시, 내용, 사유</td><td colspan="3"></td></tr>
<tr><td>범죄사실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td><td colspan="3">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r>
<tr><td>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td><td colspan="3">판사 (인)</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6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임시조치청구(사후 아동학대)**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후의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1. 피해아동 도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1호)

□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3호)

□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4호)

□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5호)

□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6호)

□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7호)

<table>
<tr><td rowspan="4">행 위 자</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3">( )</td></tr>
<tr><td colspan="2">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세)</td></tr>
<tr><td colspan="2">직업</td><td>피해아동등과의 관계</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주거</td></tr>
<tr><td colspan="5">보조인</td></tr>
<tr><td rowspan="3">피 해 아 동 등</td><td>성명</td><td colspan="4"></td></tr>
<tr><td>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td><td colspan="4"></td></tr>
<tr><td>변 호 사</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범죄사실 및 임시조치가 필 요 한 사 유</td><td colspan="4">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r>
<tr><td colspan="2">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td><td colspan="2"></td><td>판 사</td><td></td><td>(인)</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6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임시조치신청 기각(가정폭력)**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신청을 기각합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5.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table>
<tr><td rowspan="4">행 위 자</td><td>성명</td><td>( )</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세)</td></tr>
<tr><td colspan="2">직업</td></tr>
<tr><td colspan="2">주거</td></tr>
<tr><td>변 호 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피 해 자</td><td>성명</td><td>주거</td></tr>
<tr><td colspan="2">직장</td></tr>
<tr><td>범죄사실 및 임시조치가 필 요 한 사 유</td><td colspan="2">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r>
<tr><td>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 검찰청

검 사 인</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7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임시조치신청 기각(아동학대)**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신청을 기각합니다.

☐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table>
<tr><td rowspan="4">행 위 자</td><td>성명</td><td colspan="2">( )</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세)</td></tr>
<tr><td colspan="3">직업</td></tr>
<tr><td colspan="3">주거</td></tr>
<tr><td>변 호 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피 해 자</td><td>성명</td><td>주거</td></tr>
<tr><td>연령</td><td>직장</td></tr>
<tr><td>범죄사실 및 임시조치가 필 요 한 사 유</td><td colspan="3">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r>
<tr><td>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 검찰청
검 사 ㊞</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8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수 신: 발 신: 검사 ㊞

제 목: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귀하가 고소·고발하신 우리 청 년 형제 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명			
수리죄명		처분일자	
결정죄명 및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 . . .	장기 . . .	

-결정결과에 대한 안내-

1.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
가. 30일 이내에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고 기각 시 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및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그 밖의 고발인은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각각 제기 가능)
나. 다만, 고소인 및 가목에 규정된 일부 고발인은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결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① 및 ②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③의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신청서 제출 필요)
다.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 내에 우리 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 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고는,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하고,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항고기각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라. 불기소이유를 알고 싶을 때에는 우리 청 혹은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
가.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고발)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 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공판, 구약식' 결정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으로, 법원에 문의하여 법원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safind.scout.go.kr/sf/mysafind.jsp)에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송치사건의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기록을 송부하는 결정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경찰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공소보류'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에 따라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6. '이송' 결정은 타 검찰청 또는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입니다.

7.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폭력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 수리죄명은 고소(고발)접수 시 죄명이며, 결정죄명은 검사가 고소(고발)사실을 수사하여 결정한 죄명으로 수리죄명과 결정죄명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9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팩스

등록번호

수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

귀 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송 치 년 월 일	. . .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결 정 일 자	죄 명	결 정 내 용
. . .		
. . .		
. . .		
. . .		
. . .		
피 의 사 실 요 지		
비 고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에 대한 통보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0호서식]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검찰청

검사 (인)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결 정 일 자	. . .

결 정 죄 명	결 정 결 과

-결정결과에 대한 안내-

1. **'구공판, 구약식'** 결정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으로, 법원에 문의하여 법원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safind.scout.go.kr/sf/mysafind.jsp)에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결정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3.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4.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5.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6. **'각하'** 결정은 위 2~5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7. **'참고인중지'** 결정은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 소재발명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입니다.
8. **'보완수사요구(결정)'** 결정은 송치사건의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기록을 송부하는 결정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경찰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 **'공소보류'**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에 따라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10. **'이송'** 결정은 타 검찰청 또는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입니다.
11.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1호서식]

○○○○검찰청

(00-000-0000)

수 신 : ○○○ 귀하

제 목 :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

1. 0000. 00. 00. 우리청 (0000불제 호)로 접수한 피의자 에 대한 (죄명)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부관서인 ○○○경찰서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경찰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 . .

검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2호서식]

○ ○ ○ ○ 검 찰 청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소속 및 직급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수사개시일자	. . .
죄 명		신 병	
피의사실요지			
비 고	이 건 사실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3호서식]

○ ○ ○ ○ 검 찰 청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고소(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소속 및 직급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수사개시일자	. . .
죄 명		신 병	
피고소(발)사실요지			
비 고	이 건 사실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4호서식]

○ ○ ○ 검 찰 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등록번호

수 신: ○○○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

귀(부)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결 정 일 자	죄 명	결 정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 의 사 실 요 지		
비 고	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6호서식]

○ ○ ○ 검 찰 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등록번호

수 신: ○○○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

귀(부)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피 고 소 (발)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결 정 일 자	죄 명	결 정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 고 소 (발) 사 실 요 지		
비 고	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6호서식]

송치사건결정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검찰 → 송치 관서 외 명	. 제 호 . . . 작성	. 서(국) 호 . . . 정리	. 제 호 . . . 정리
송치 관서 → 경찰청 외 명	수신 경찰서(청) 발신 검찰청 사건과장 ㊞	수신 경찰청 발신 경찰서(청) 수사과장 ㊞	수신 대검찰청(정보통신과) 발신 경찰청 수사1과 ㊞

송달(인편) . . .	송치 연월일	송치 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성명 (한자)	죄명	결정결과			송치관서 지문원지작성		경찰청 지문원지정리	비고
					연월일	내용	관서	연월일	작성 번호	지문번호	
계급·성명											
㊞											
송달(우편) . . .											
등기 호											

297㎜×210㎜[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7호서식]

○○ 지방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수신자 : 발신자 : 검찰청

제 목 : 부재기결정 통지 검 사 : (인)

귀하가 재기 신청하신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피 의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결 정 일 자		
⑤ 결 정 이 유	□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 상피의자 ( ) 소재불명 □ 참고인 ( ) 소재불명 □ 고소인 ( ) 소재불명 □ 기타	
비 고		

안 내

재기를 하지 않는 결정이유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불명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8호서식]

○○ 지방검찰청
○○ District Prosecutors' Office

우편번호/ Zip code　　주소/ Address
전화/ Tel.　　팩스/ Transmission(Fax)

수신자 : Recipient　　발신자 : Sender　검찰청 Prosecutors' Office

제 목 : 부재기결정 통지 Title Decision Notice on No Re-initiation of Investigation　　검 사 : Prosecutor　　(인) (seal)

귀하가 재기 신청하신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Regarding the case over suspect ○○○ that you have filed for re-initiation of investigation, you are informed that the case would be determined not to re-initiate investigation due to the reasons hereinunder.

① 사 건 번 호 Case No.		
피 의 자 Suspect	② 성 명 Name	
	③ 주민등록번호 ID No.	
④ 결 정 일 자 Decision date		
⑤ 결 정 이 유 Decision grounds	☐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Suspect's continued missing ☐ 상피의자 ( ) 소재불명 Co-suspect ( ) missing ☐ 참고인 ( ) 소재불명 Witness ( ) missing ☐ 고소인 ( ) 소재불명 Complainant ( ) missing ☐ 기타 Others	
비 고 Remarks		

안 내 Note

재기를 하지 않는 결정이유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불명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재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In case that the grounds on the decision are subject to unknown whereabouts, the case can be re-initiated if the whereabouts of the unknown are identified.

210㎜×297㎜(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9호서식]

○○ 지방검찰청
○○ 地方检察厅

우편번호/邮编号码/ 주소/住址/

전화/电话/ 팩스/传真/

수신자 : / 收件人 :

발신자 : 검찰청 / 发件人 : 检察厅

제 목 : 부재기결정 통지 / 标题 : 不再起诉决定通知

검 사 : (인) / 检察官 : (签章)

귀하가 재기 신청하신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关于您申请再起诉的嫌疑人○○○案件，我厅决定不再起诉，理由如下:

① 사건번호 / 案件号码		
피의자 / 嫌疑人	② 성명 / 姓名	
	③ 주민등록번호 / 住民登录号码	
④ 결정일자 / 决定日期		
⑤ 결정이유 / 决定理由	□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 嫌疑人所在地持续不明 □ 상피의자 ( ) 소재불명 / 共同犯罪嫌疑人 ( ) 所在不明 □ 참고인 ( ) 소재불명 / 参考人 ( ) 所在不明 □ 고소인 ( ) 소재불명 / 起诉人 ( ) 所在不明 □ 기타 / 其他	
비고 / 备注		

안내 / 提示

재기를 하지 않는 결정이유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불명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재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若我厅不再起诉理由为所在地不明，等所在地不明问题解决后，可申请再次起诉。

210㎜×297㎜(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0호서식]

○○○검찰청

제 호 . . .

수 신 : ○○○(기관명) 검 사 : ㊞

제 목 :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귀 기관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 . .자로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하였는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송치연월일	. . .	경찰서사건번호	
소재발견보고연월일		. . .	보고서번호	제 호
처리내용(재기결정, 부재기결정)				
재기결정	사건번호	형제 호		
	재기사건번호	형제 호 재기일자 . . .		
부재기결정	결정일자	. . .		
	이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1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담당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수신 자 : ○○○(기관명) 발신자: 검사 ㊞

제목 :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

귀 서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 . .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송치연월일	. . .	경찰서사건번호	
참고인(고소인, 고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발견보고연월일		. . .	보고서번호	제 호
처리내용(재기결정, 부재기결정)				
재기결정	사건번호		형제 호	
	재기사건번호		형제 호 재기일자 . . .	
부재기결정	결정일자		. . .	
	이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2호서식]

○○○검 찰 청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수 신 자 법원
제 목 **공소장**

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거 (통 반),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죄 명
적용법조
구속여부 . . . 구속 (. . . 체포)
변 호 인 변호사 ○○○

Ⅱ. 공소사실

Ⅲ. 첨부서류

검사 ○ ○ ○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3호서식]

재감인 기소통지부

①통지월일		②형제번호	③수감번호	④피고인	⑤죄 명	⑥교도관 수리인	⑦비 고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4호서식]

○○○검 찰 청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수 신 자 법원

제 목 **공소장**

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피 고 인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거 (통 반),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죄 명

적용법조

변 호 인 변호사 ○○○

의 견 벌 금 ( ) 원

(미결구금일수 일, 1일 환산금액 원)

가납명령청구

Ⅱ. 공소사실

검사 ○ ○ ○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제 목 즉결사건기록송부 검 사 ㊞

다음 즉결사건 기록을 송부합니다.

피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송 부 사 유		으로부터 정식재판청구가 있음으로 인함
기 록 권 수		권
증 거 물		
비 고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정식재판청구 검 사 ㊞

다음 피고사건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피고인	①사건번호	고약 호(형 호)
	② 성 명	
③ 죄 명		
④ 선 고 연 월 일		
⑤ 약 식 명 령 주 문		벌금 원
⑥ 비 고		구형 원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7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소취소장 검사 ㊞

다음 사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합니다.

사 건 번 호			공소제기일자	
피고인	성 명			( )
	생 년 월 일		직 업	
	주 거			
취 소 부 분	공 소 사 실			
	죄 명			
	적 용 법 조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8호서식]

○○○ 검 찰 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분류기호 및

사건 61100 - . . .

문서번호

수 신 자 발신자 ○○지방검찰청검사장 (인)

제 목 **불기소 이유 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지검 00지청 20 형제 호
② 고 소 (발) 인 성 명		
피 의 자 [피고소(발)인]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죄 명		
⑥ 처 분 검 사		
⑦ 처 분 년 월 일		. . .
⑧ 처 분 요 지		불기소( )
⑨ 불 기 소 이 유		별첨과 같음
⑩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9호서식]

○○○ 검 찰 청
○○○ District Prosecutors' Office

우편번호/ Zip code　　주소/ Address

전화/ Tel.　　팩스/ Transmission(Fax)

분류기호 및 사건 Classification code & Case　61100 - . . .

문서번호 Document No.

수 신 자 Recipient

발 신 자 Sender　　○○지방검찰청검사장 (인) Chief Prosecutor of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eal)

제 목 **불기소 이유 통지**
Title **Notice on grounds for non-prosecution**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Regarding the case you have filed, you are informed on the grounds for non-prosecution.

① 사 건 번 호 Case No.		지검 00지청 20 형제 호 Criminal Case No. in 20XX at 00 Branch of 00 District Prosecutors' Office
② 고 소(발) 인 성 명 Name of complainant		
피 의 자 [피고소(발)인] Suspect (The accused)	③ 성 명 Name	
	④ 주민등록번호 ID No.	
⑤ 죄 명 Name of the crime		
⑥ 처 분 검 사 Prosecutor who made the disposition		
⑦ 처 분 년 월 일 Disposition date		. . . Year. Month. Day.
⑧ 처 분 요 지 Disposition summary		불기소( ) Non-prosecution( )
⑨ 불 기 소 이 유 Grounds for non-prosecution		별첨과 같음 The same as attached
⑩ 비 고 Remarks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0호서식]

○○○ 검 찰 청
○○○ 检 察 厅

우편번호/ 邮编号码/ 주소/ 住址/

전화/ 电话/ 팩스/ /传真

분류기호 및 分类符号 及 사건 案件 61100 - . . .

문서번호 文件号码

수 신 자 收 件 人

발신자 ○○지방검찰청검사장(인) 发件人 ○○地方检察厅检察长(签章)

제 목 : **불기소 이유 통지**
标 题 : 不起诉理由通知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现将您申请的不起诉理由通知如下 :

① 사건번호 案件号码		지검 00지청 20 형제 호 地检 00支厅 20 刑第 号
② 고소(발)인 성명 控告人/(举报人) 姓名		
피의자 [피고(발)소인] 嫌疑人 [被控告人/(被举报人)]	③ 성명 姓名	
	④ 주민등록번호 住民登录号码	
⑤ 죄명 罪名		
⑥ 처분검사 决定检察官		
⑦ 처분년월일 决定日期		年 月 日
⑧ 처분요지 决定要点		불기소( ) 不起诉( )
⑨ 불기소이유 不起诉理由		별첨과 같음 如附件
⑩ 비고 备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1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분류기호 및 사건 61100 -

. . .

문서번호

수 신 자 발신자 ○○○검찰청검사장 (인)

제 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

귀 기관이 요청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지검(○○지청) 20 형제 호
송 치 년 월 일		. . .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결 정 검 사		
결 정 연 월 일		. . .
결 정 요 지		불기소( )
불 기 소 이 유		별첨과 같음
비 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2호서식]

발행번호 제 호

사 건 결 정 결 과 증 명 서

사 건 번 호		지검 00지청 형제 호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죄 명			
결정	년 월 일	. . .	
	결 과		
송치관서 및 수사단서		(고소·고발·인지)	
용 도		신 청 인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3호서식]

발행번호 제 호
Issuing No.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Certificate of Results of Disposition on Case

사 건 번 호 Case No.		지검 OO지청 형제 호 Criminal case No. in 20XX at ○ ○ Branch of District Prosecutors Office
피의자 Suspect	성 명 Name	
	주민등록번호 ID No.	
	주 소 Address	
죄 명 Name of the crime		
결정 Disposition	년 월 일 Date	. . .
	결 과 Result	
송치관서 및 수사단서 Agency that sent the case & clue to the investigation		(고소·고발·인지) (Complaint·accusation·recognition)
용 도 Purpose		신 청 인 Applicant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certified that the disposition is made hereinabove.

(Year) (Month) (Day)

○○ ○ 검 찰 청 검 사 장
Chief Prosecutor of ○ ○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4호서식]

발행번호 제 호
签发号码 第 号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案件處分結果证明

사건번호 案件号码		지검 00지청 형제 호 地检 00支厅 刑第 号
피의자 疑人	성명 姓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录号码	
	주소 住址	
죄명 罪名		
결정처분 处分	년월일 日期	年 月 日
	결과 结果	
송치관서 및 수사단서 移送机关及侦查线索		(고소·고발·인지) (控告·举报·主动侦查)
용도 用途		신청인 申请人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兹证明本案件处分结果。

. . .

○○지방검찰청검사장
○○地方检察厅检察长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6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팩스 : 담당 :

문서번호 : 시행일 : . . .

수 신: ○○○(기관명) 발 신 : 검사 인

제 목 :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

귀 기관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 . .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송치연월일		사건번호	
참 고 인 (고소인 고발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결 정 결 과	연 월 일		결 정 내 용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6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명 부 . . .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요청** 검 사 (인)

아래 사람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등록기준지			
연 령		직 업	
죄 명			
송치관서			
결정검찰청	검찰청		
결정연월일			
비 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7호서식]

○○지방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사건 . . .

수신자 발신자 ○○검찰청

제 목 소년보호사건 검 사 (인)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아래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의자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세)
	③ 직 업	
	④ 주 거	
	⑤ 피해자와의 관계	
	⑥ 가정상황	성 명 : 주 거 : 피의자와의 관계 : 피의자의 ( )
⑦ 죄명		
⑧ 적용법조		
⑨ 범죄사실		
⑩ 송치사유		요 보호처분 (호)
⑪ 기록권수		
⑫ 압 수 물		
⑬ 비 고		

210㎜× 297㎜(일반용지 6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8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사 건 . . .

수신자 ○○○경찰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신자 ○○○검찰청

제 목 **사건이송·이첩서**

아래 사건을 이송·이첩합니다.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적 용 법 조		
범 죄 사 실		
이 송 · 이 첩 사 유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 ]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 ] 공수처법 제25조제2항
기 록 권 수		
압 수 물		
비 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9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집제

교도소장 . . .

수 신 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경찰서장 검 사 ㊞

제 목 이감지휘

아래 사람을 교도소·구치소·경찰서에 이감할 것을 지휘함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주 거	
④죄 명	
⑤이 감 사 유	사건이송 항소 파기환송
첨 부 : 1. 구속영장등본 1통 2. 구속기간 갱신결정 1통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0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집제 . . .

수 신 교도소장

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경찰서장

제 목 **이송지휘** 검 사 ㊞

가 정 법 원

아래 사람을 지방법원 지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합니다.

지방법원소년부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주 거	
죄 명	
이 송 사 유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송치 검사 결정 법원 성매매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첨 부 : 1. 구속영장 등본 1통

2. 구속기간갱신결정 등본 1통 끝.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1호서식]

공소시효	장기	. . .
	단기	. . .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사 건 0000. 00. 00.

형

수신자 법무부장관 발신자 ○○○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송부**

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송부합니다.

피의자	
죄명	
이행결과는 첨부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와 같음	
공조 요청국 및 요청기관	
공조 요청 사항	
공조이행 자료 송부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 예시 :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1부-1191(2020. 9. 11.)호
문서 제목	※ 예시 : 「사우디아라비아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대한 회신」
비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2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년 형제 호 . . .

수신자 ○○○경찰서 검사 ㊞

제 목 **보완수사요구(결정)**

아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 찰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보 완 수 사 요 구 사 유			
기 록 권 수			
압수물	유 무		[ ] 있음 [ ] 없음
	처분	가환부대로 본환부 제출인환부 피해자환부 보관 폐기 국고귀속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반환	
비 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3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년 형제 호 . . .

수신자 검사 인

제 목 **보완수사요구(추완)**

아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 찰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보 완 수 사 요 구 사 유	
이 행 기 한	
비 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4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년 불제 호 . . .

수신자 검사 인

제 목 **재수사요청**

아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경 찰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재 수 사 요 청 사 유			※ 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요청 [ ]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기 록 권 수			
압수물	유 무		[ ] 있음 [ ] 없음
	처분	가환부대로본환부 제출인환부 피해자환부 보관 폐기 국고귀속 처분지휘보류에 따른 반환	
비 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6호서식]

○ ○ ○ 검 찰 청 (tel .)	검 사 장
	차장검사
검 0000. 00. 00.	
2000 재정 000 호	주임검사
수 신 : ○○○검찰청검사장 발 신 : ○○○검찰청검사장	
	사무국장
제 목 : **재정신청사건 송부**	
	과 장
아래 재정신청사건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의견을 첨부하여 송부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불기소결정연월일	
재정신청연월일	
기 록 권 수	권
압 수 물 건	
비 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6호서식]

○○○검찰청

(tel.)

검 0000. 00. 00.

재 정

수 신 : ○○○고등법원장, 수사처장, 재정신청인 발 신 : ○○○검찰청검사장

제 목 : **재정신청 통지**

아래 재정신청사건은 . . . 지방법원·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연월일		
죄명		
원결정	검찰청	(사건번호)
	연월일	. . .
	요지	
비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7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 ○○○검찰청검사장

제 목 :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

귀 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정신청서가 제출되어 이를 통보하오니 즉시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연월일	
죄 명	
비 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8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00)	검 사 장
	차장검사
검 0000. 00. 00.	
	주임검사
2000재정000호 (2000형제000호)	
수 신 : ○○○고등법원장 발 신 : ○○○검찰청검사장	사무국장
제 목 : **재정신청사건기록 송부**	
아래 불기소사건에 관한 재정신청은 면밀히 검토한 바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록을 송부합니다.	과 장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기 록 권 수	권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9호서식] (발신청)

검 사 장	○○○○검찰청	검 사 장
	(전화번호)	
차장검사	검 . . .	차장검사
	재 정	
사무국장	수 신 검찰청검사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	주임검사
	제 목 재정신청사건 송치	
과 장	아래 재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공소제기명령서와 같이 공소제기하시기 바람	사무국장

피의자	①성 명		과 장
	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죄 명			
종 결	⑥연 월 일	. . .	
	⑦결 정 요 지	공소제기명령	
⑧기 록 권 수		권	
⑨압 수 물 건			
⑩비 고		첨 부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0호서식]

선 결				결		지시
접 수 일 시		번 호		제		
처 리 과				공		
				람		

○○○○검찰청

(전화번호)

사 건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참 조 검 사 ㊞

제 목 항고·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죄 명	
원 결 정	결정일자 및 내용				
	결 정 검 사				
항고·재항고 결 과	결정일자 및 내용				
	결 정 검 사				
재 기 결 과	재기일자 및 사건번호				
	처리일자 및 내용				
	처 리 검 사				
원 결 정 과 동 일 하 게 처 리 한 이 유					
승 인 근 거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1호서식]

선 결				결제 공람		지시
접수일시		번 호				
처 리 과						

○○○검찰청

(전화번호)

사 건 61100-

수 신 발 신 ○○○검찰청

참 조 검 사 인

제 목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원 결 정	결정일자 및 내용				
	결 정 검 사				
재기수사결과	재 기 일 자				
	재 기 검 사				
	사 건 번 호				
	수 사 결 과				
	처 리 검 사				
재기수사 결과와 같이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이유					
승인여부	[ ] 승 인 [ ] 불 승 인 ※ 불승인 이유 :				
비 고					

210mm×297mm [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2호서식]

○○○○ 검찰청	사건과장	. . . 수리	주임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불항 제 호			

○ ○ ○ 검 찰 청

(00-0000-0000)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과장

불항 제 호

수 신 발신 ○○○○검찰청

검사 (인)

제 목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송부**

아래 기록을 송부합니다.

피항고인 또는 피재항고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죄 명		
불기소결정 연월일		. . .
항고·재항고 연월일		. . .
기록권수		권
압수물		
비 고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3호서식]

검 사 장	○ ○ ○ 검 찰 청 (tel .)	검 사 장
차장검사	. . .	차장검사
주임검사	2021 불항 호 수 신 : ○○○검찰청검사장 발 신 : ○○○검찰청검사장대리	주임검사
사무국장	경 유 : 검 사 (인)	사무국장
과장	제 목 :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반환** 아래 기록을 반환함.	과장

피 항 고 인 · 피 재 항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항 고 (재 항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검 사 장
죄 명		
결 정 연 월 일	. . .	차장검사
결 정 요 지		주임검사
반 환 기 록 권 수	권	
압 수 물 건		사무국장
비 고		과장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4호서식]

○○○검찰청

우 / 주소 / 전화 / 팩스

. . .

수신자 : 발신자 :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 **항고·재항고사건 결정통지**

에 대한 항고·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결 정	사 건 번 호	항(재항) 제 호 <○○○지검(지청) 형제 호>
	연 월 일	
	결 과	
이 유		

비 고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① 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② 그 밖의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검찰청법」 제10조제3항)를 각각 할 수 있으며,

위 기간 안에 재정신청서는 불기소결정청(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재항고장은 우리청에 각각 제출하면 됩니다.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6호서식]

○○○검찰청

우 / 주소 / 전화 / 팩스

등록번호

수신자 :

발신자 :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결정·이송 승인 요청**

귀청 불(재)항 제 호로 재기수사명령한 우리 청 형제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을 아래 결정 의견과 같이 결정하기 위하여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재)항고인		(재)항 고 인	
결 정 의 견		원 결 정	
붙 임			

○○○검찰청 주임검사 ○ ○ ○	가		불승인 사유	
	부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6호서식]

○○고등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등록번호

수신자 ○○고등검찰청 검사장 ( ) 발신자 ○○고등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 ㊞

제 목 재기수사 등 명령사건 이송 통보

우리청에서는 (사건번호)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찰청 ○○지청에서 귀청 관할인 ○○검찰청 ○○지청으로 이송토록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아 래

항 고 번 호	년 불항 제 호		
항 고 인			
피 항 고 인			
죄 명			
재기수사명령일		이송승인일	
승 인 검 사			
이 송 한 청 명	○○검찰청 ○○지청		
이 송 할 청 명	○○검찰청 ○○지청		

붙임 재기수사명령 결정서 등(사)본 1부. 끝.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7호서식]

수신	사건과장	수리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 ○ ○ **검 찰 청**

(tel.)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주임검사

2000. 0

0. 00.

수 신 : ○○○검찰청검사장 발 신 :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 **항고사건기록 송부**

아래와 같이 항고사건기록 및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과 장

피항고인·피재항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항고인·재항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재정신청일	
기록권수	권수 권
압수물건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8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검사 ㊞

제 목 구속취소 청구

아래 사람에 대한 구속취소를 청구합니다.

①사 건 번 호				
피 고 인	②성 명		③직 업	
	④생년월일			
	⑤주 거			
⑥죄 명				
⑦구 속 일 시				
⑧구속취소사유				
⑨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9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집제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피고인 석방통지 검 사 ㊞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석 방 연 월 일		
④석 방 사 유	보 석 . . .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함 구 속 취 소	
⑤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10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보석·구속집행정지 취소청구 검 사 ㊞

아래 사람에 대한 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 생(세)	직 업	
	주 거			
보석(구속집행정지) 결 정 일				
결 정 취 소 사 유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11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 검 사 ㊞

아래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 전부를 몰취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주 거			
④죄 명				
⑤보 석 결 정		. . . 법원		
⑥몰 취 대 상				
판 결	⑦선 고	. . . 법원		
	⑧형명·형기			
	⑨확 정	. . . 법원		
⑩첨 부 기 록		권		

⑪(청 구 사 유)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12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발 신 검찰청

제 목 보석보증보험금 지급청구 검 사 ㊞

아래 보석보증보험금에 대하여 . . . 법원으로부터 몰수 결정이 있었으므로 보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증 권 번 호		제 호		
보 험 계 약 자			피 보 험 자	
석 방 허 가 내 용	사 건 번 호		사 건 명	
	피 고 인	(주민등록번호)		
	보석보증보험금	원		

붙 임 : 1. 보석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2. 보석보증보험금몰수결정서 사본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13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 검 사 ㉑

다음 사건은 관련사건으로서 병합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병합심리 (심판신청 / 심판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법원		① 법원	② 법원
③사 건 번 호			
④죄 명			
피고인	⑤성 명		
	⑥직 업		
	⑦생 년 월 일		
	⑧주 거		
⑨관 련 요 지			
⑩병합심리할 법원 (검 사 의 견)			
⑪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14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심판신청·요청 검 사 ㉑

다음 사건은 동일사건임에도 각기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심판신청요청을 합니다.

구분 \ 법원		① 법원	② 법원
③공소제기일자			
④사건번호			
⑤죄명			
피고인	⑥성명		
	⑦직업		
	⑧생년월일		
	⑨주거		
⑩심판할 법원 (검사의견)			
⑪비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1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관할 □ 지정 / □ 이전 신청 검 사 (인)

「형사소송법」 제14조 / 제15조 호에 의거 다음 사건의 관할 □ 지정 / □ 이전 신청을 요청합니다.

①사 건 번 호				
②죄 명				
피고인	③성 명		④직 업	
	⑤생 년 월 일		⑥연 령	
	⑦주 거			
⑧이 유				
⑨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1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법 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관할지정·이전신청 통지 검 사 ㊞

「형사소송법」 제 14 / 15 조 호에 따라 다음 사건의 관할지정(이전) 신청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사 건 번 호				
②죄 명				
피고인	③성 명		④직 업	
	⑤생 년 월 일		⑥연 령	
	⑦주 거			
⑧이 유				
⑨신 청 일 자				
⑩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17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형 . . . 수 신 검찰청검사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병합·이송사건 관련 서류 등 송부 검 사 ㊞ 아래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병합·이송결정이 있으므로 관련 서류 등을 송부합니다.			검사장 차장검사 주임검사 사무국장 과장
피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속 표 시		
죄 명			
결 정 연 월 일		. . . 법원	
송부서류 및 증거물		1. 2. 3. 4.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18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기피 등 신청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를 기피신청합니다.

다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19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다 음

①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사유				
특별대리인이 될 사람	②성 명		직 업	
	③생년월일		연 령	
	④주 거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0호서식]

열람·등사·서면교부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8시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고인과의 관계	[ ] 피고인 본인 [ ] 변호인 [ ] 피고인의 (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사 건	사건번호 년 형제 호	피고인 외 명
	죄 명	

신청사유	[ ] 해당 사건 소송 준비
신청내용	[ ] 위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의 열람·등사 [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제1호) [ ]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제2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검 사 결 정	서류 등 목록	제1호 서류 등			제2호 서면 및 서류 등	
	허 가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교부(허가)	불교부(거부)
	㊞	㊞	㊞	㊞	㊞	㊞

210mm × 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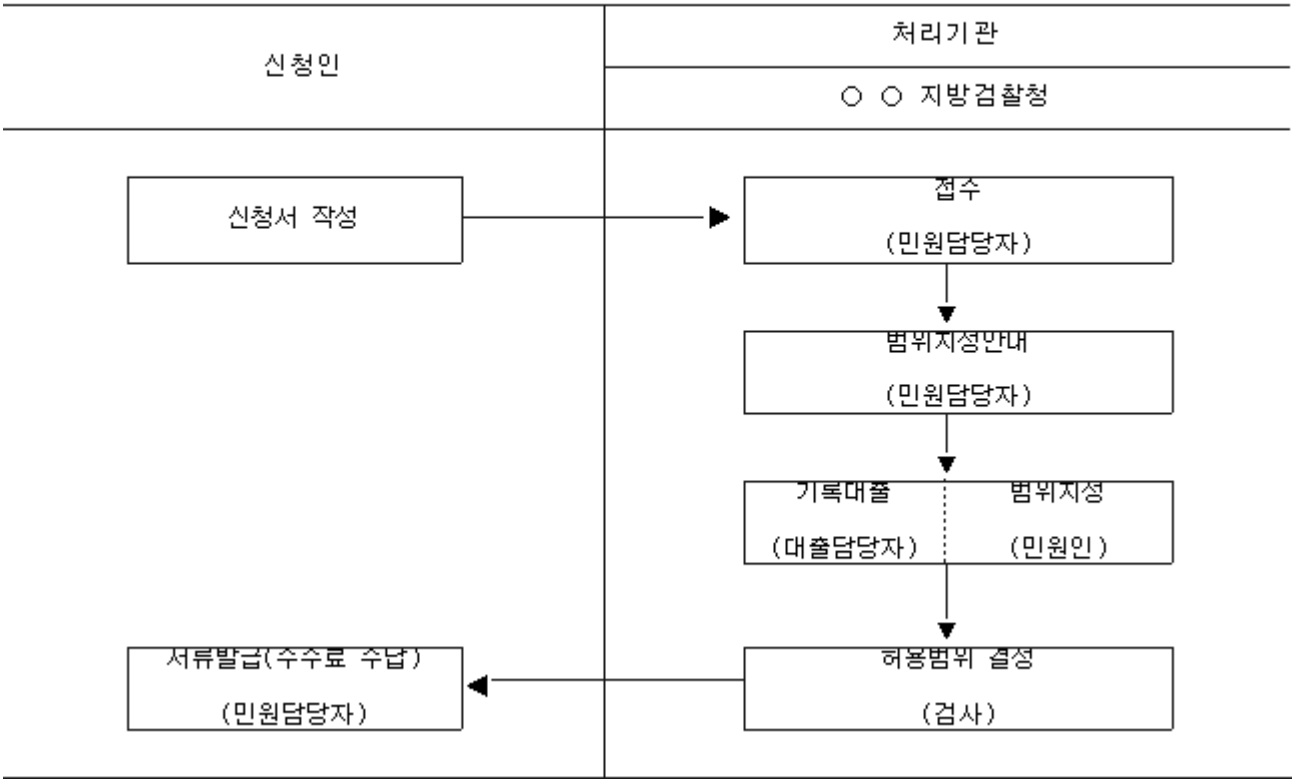
신청인
처리기관
○ ○ 지방검찰청
신청서 작성
접수
(민원담당자)
범위지정안내
(민원담당자)
기록대출
(대출담당자)
범위지정
(민원인)
허용범위 결정
(검사)
서류발급(수수료 수납)
(민원담당자)

범위제한 내용

순번	서류 등의 표목	허가여부			비고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범위제한의 구체적 내용(예 : 열람 가, 등사 불가 또는 등사허가 범위) 등을 비고란에 기재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1호서식]

열람·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8시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고인과의 관계	[ ] 피고인 본인 [ ] 변호인 [ ] 피고인의 (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사 건	사건번호 년 형제 호	피고인 외 명
	죄 명	

신청사유	[ ] 해당 사건 소송 준비
신청내용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등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제3호) ※ 별지에 기재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제4호) ※ 별지에 기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검사 결정	제3호 서류 등			제4호 서류 등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인)	(인)	(인)	(인)	(인)	(인)

210mm × 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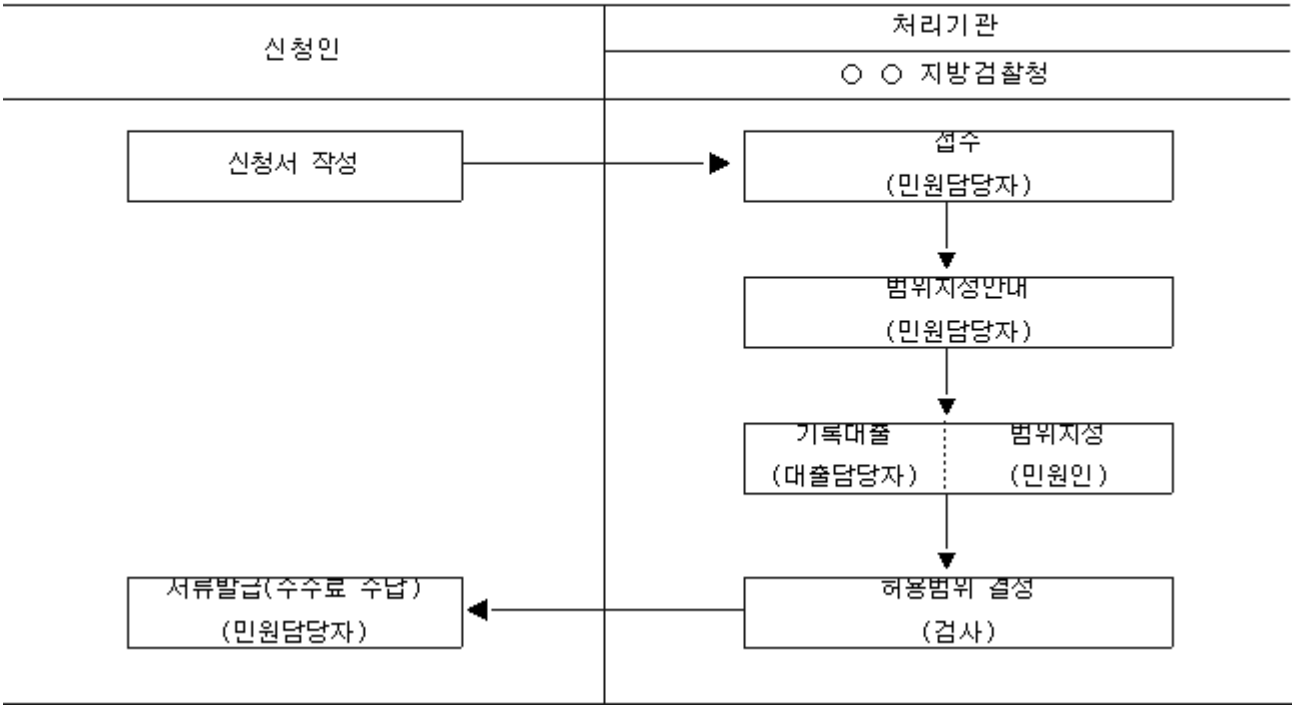
신청인
처리기관
○ ○ 지방검찰청
신청서 작성
접수
(민원담당자)
범위지정안내
(민원담당자)
기록대출
(대출담당자)
범위지정
(민원인)
허용범위 결정
(검사)
서류발급(수수료 수납)
(민원담당자)

(부표)

열람·등사 신청 내용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 등

1. 열람·등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표목(내용)

   -

2. 위 1항 서류 등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서류 등의 증명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 등

1. 열람·등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표목(내용)

   -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

3. 위 제1항 서류 등이 제2항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2호서식]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3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등사, 서면 교부 신청에 대해 다음 이유로 거부·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열람·등사 신청 부분

서류 등의 표목 (별지순번 또는 면수)	열람·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제한 이유
	국가안보(「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
	증인보호의 필요성(「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증거 인멸의 염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구체적 사유 :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1호)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등이 금지된 정보·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2호)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3호)
	열람·등사 대상이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함(「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4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 등의 증명력과의 관련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피고인 등의 주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제1항제5호)

2. 서면 교부 신청 부분

□ 해당사항 없음(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열람 후 증거 부동의 할 경우에 따른 증인 신청은 제외)

□ 증거조사 전 교부 불가(이유 : 증인보호의 필요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210㎜×297㎜

(신문용지54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3호서식]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200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제2항에 따라 귀원에 계속 중인 다음 사건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사건의 표시

- 재 판 부 :
- 사건번호 :
- 피 고 인 :
- 죄 명 :

○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요하는 사유

- 증거신청 및 쟁점정리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4호서식]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200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피고인 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등사·서면교부허용 신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 중인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신청합니다.

○ 사건의 표시

- 재 판 부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죄 명

○ 피고인 측의 법률상·사실상 주장요지

○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대상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판기일 변경신청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 다음 공판기일 . . . 시는 한 사유가 있으므로 공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 검 사 ㊞

귀원 호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을 신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다 음

동석하게 하려는 사람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직 업	
	④주 거	
	⑤전 화 번 호	
	⑥피고인과의 관계	
⑦동석이 필요한 사유		

※ 소명자료 별첨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7호서식]

ㅇㅇㅇㅇ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증거신청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거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다 음

1.

2.

첨 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8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증인 등 신문신청·청구 철회** 검 사 ㊞

다음 피의(피고)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인등신문신청·청구를 철회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증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거	
	연락처	
증 인 신 청 일		
신 청 철 회 사 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9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변호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다 음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30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의 피해자 에 대한 증인신문 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다 음

피 해 자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직 업	
	④주 거	
	⑤전 화 번 호	
동석하기 위하여 하는 자	⑥성 명	( )
	⑦주민등록번호	(세)
	⑧직 업	
	⑨주 거	
	⑩전 화 번 호	
	⑪피해자와의 관계	
⑪동석이 필요한 사유		

※ 소명자료 별첨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31호서식]

○ ○ ○ 검 찰 청

(tel.)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 검 사 인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를 신청합니다.

순번	진술자	영상녹화 시간과 장소	조사 필요한 부분 및 시각	조사신청 취지와 사유

첨부 : 진술자 000에 대한 영상녹화물 1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32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년 형제 호 . . .

수신자 검사 (인)

제 목 **보완수사요구(공판)**

아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 찰 사 건 번 호	
법 원 사 건 번 호	
피 고 인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보 완 수 사 요 구 사 유	
이 행 기 한	※ 기일 진행 현황 관련 특이사항 부기
비 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33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 검 사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아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직 업	
	주 거		전 화 번 호	
관련사건	사건번호			
	죄 명			
	피 고 인			
필 요 한 조 치				
사 유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34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조회신청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에 조회 신청합니다.

다 음

1.

2.

3.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3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 ○ ○ 법 원 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귀 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 증거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다 음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3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재판장의 처분이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①재판장의 처분	
②이의신청사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37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검 사 ㊞

「형사소송법」 제48조제5항에 의거 공판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다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38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이의제기** 검 사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판심리한 주요사항 요지의 고지가 있었는바, 「형사소송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변경을 청구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 음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39호서식]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 추가

피고사건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 철회 하기 위하여 합니다.

□ 변경

다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40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

제 목 변론의 병합신청 검 사 ㊞

이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라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아래 사건과 병합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고 인 성 명	
신 청 사 유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41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변론의 병합신청 검 사 ㊞

이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라 귀원에 재판계속중인 아래 각 사건의 변론병합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고 인 성 명		
신 청 사 유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42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변론의 분리신청 검 사 ㊞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라 귀원에 재판계속중인 아래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고 인 성 명	
분 리 사 유	
분 리 방 법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43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변론재개신청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다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44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가납판결청구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 판결선고와 관련하여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라 가납판결을 청구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4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형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 검 사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속기 □녹음 □영상녹화를 신청합니다.

속기·녹음·영상 녹화대상자 (피고인, 증인, 기타)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직 업		
	④주 거		
⑤속기·녹음·영상 녹화 범위	□ 전 부	□ 일 부	
⑥사본청구 여부	□ 청구함	□ 청구하지 않음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4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 사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2.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47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배심원 등 해임신청** 검 사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배심원(예비배심원) 해임을 신청합니다.

다 음

배심원 (예비배심원) 번호		
해임사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않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계속하여 직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음.	
	질문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음.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쟁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함.	

첨 부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48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신 법원 발신 검찰청

제목 **속기록·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 검사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속기록·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를 청구합니다.

다 음

청구대상	□ 속기록 사본 □ 녹음테이프 사본 □ 비디오테이프 사본
청구부분	□ 전부 □ 일부( )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49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배심원 설명요청** 검 사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심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다 음

1.

2.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0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 검 사 (인)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의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필요한 조치의 내용

☐ 보호
☐ 격리
☐ 숙박
☐ 기타 ( )

2. 요청사유

210㎜×297㎜

(일반용지75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1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검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상소권포기·취하서 검 사 ㊞

아래 피고사건에 대한 상소권을 포기·취하함

피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죄 명		
④선 고 연 월 일		. . .
⑤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2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상소권회복청구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유죄( ) 판결선고가 있었던 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함이 없이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되어 해당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을 청구합니다.

다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3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검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항소·상고장 검 사 ㊞ 아래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소·상고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죄 명		
④선 고 연 월 일		
⑤판 결 주 문		
⑥항 소 · 상 고 의 범 위		
⑦항 소 · 상 고 의 이 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4호서식]

수 신 처	○○○○검찰청	발 신 처
주임검사	항소 제 호 . . .	주임검사
사건과장	수 신 검찰청검사장 발 신 지방검찰청	사건과장
	제 목 항소사건 접수보고 검 사 ㊞	

피고인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구 속 여 부	
④죄 명		
⑤1 심 판 결 선 고		. . . 지방법원 ○○지원
항 소 제 기	⑥검 사	. . . ( )
	⑦피 고 인	. . . ( )
⑧구 속 일 자		. . .
⑨구속기간갱신결정		. . . (1차) . . . (2차) . . . (대행갱신)
⑩구 속 기 간 만 료		. . .
⑪이 감 지 휘		. . .
⑫압 수 물 건		
⑬첨 부		1. 공판카드 2. 판결문등본 부 3. 검사항소이유서 부본 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6호서식]

○ ○ ○ 검 찰 청	발신처
	주임검사
형제 호	
상고 호 . . .	사건과장

수 신 검찰총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상고사건 접수보고** 검 사 ㊞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속여부
죄 명		
구 속 일 자		. . .
제1심 판결선고		. . . 지방법원○○지원
항소제기	검 사	. . . ( )
	피 고 인	. . . ( )
제2심 판결선고		. . . 지방법원(노 호)
상고제기	검 사	. . . ( )
	피 고 인	. . . ( )
첨 부		○ 집행지휘 대상사건(실형선고된 경우,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명령, 부착명령, 치료감호)의 심급별 판결문등본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검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항소·상고이유서 검 사 ㊞ 아래와 같이 항소·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죄 명		
④선 고 법 원		법원
⑤선 고 일 자		. . .
⑥항 소 (상 고)일 자		. . .
⑦항 소 (상 고)이 유		별지와 같음
⑧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7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검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비약적 상고장 검 사 ㊞

아래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죄 명		
④선 고 연 월 일		
⑤판 결 주 문		
⑥상 고 의 범 위		
⑦상 고 의 이 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8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집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항고·재항고장 검 사 ㊞

아래 피고사건에 관한 결정은 전부 불복하므로, 항고·재항고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죄 명		
④결 정		
⑤결 정 요 지		
⑥항고·재항고의 이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9호서식]

(발신청)

○○○○검찰청 (전화번호) 형항 . . . 수 신 검찰청검사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제 목 형사 항고·재항고사건기록 송부 검 사 ㊞ 아래와 같이 기록을 송부합니다.			검 사 장 차장검사 주임검사 사무국장 과 장
피의자 또는 피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항고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죄 명			
⑥결 정		. . . 법원	
⑦결 정 요 지			
⑧항 고		. . .	
⑨기 록 권 수		권	
⑩압 수 물 건			
⑪비 고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0호서식]

(발신청)

검 사 장	○○○○검찰청		
	(전화번호)		
차장검사			
	827.1 . . .		전 결
주임검사	항 호		
	경 유 지방(고등)검찰청검사장 발 신 검찰청		
사무국장	수 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제 목 형사 항고·재항고사건기록 반환		
과 장	아래와 같이 기록을 반환함		
	피의자 또는 피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또는 재항고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사 건 명		
	⑥결 정	. . . 법원	
	⑦경 정 요 지		
	⑧기 록 권 수	권	
	⑨압 수 물 건		
	⑩비 고		

(수신청)

검 사 장
차장검사
주임검사
사무국장
과 장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1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재판의 취소 변경 청구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재판의 고지가 있어 이에 불복하므로, 해당 재판의 취소 변경 을 청구합니다.

①재판의 고지 내용	
②취소 변경 을 청구하는 사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2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재심청구 검 사 ㊞

다음 사람에 대하여 . . . (지방)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선고가 있어 해당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인적사항	①성 명		②직 업	
	③생년월일		④연 령	
	⑤주 거			
⑥재심사유				
첨 부	1. 판결등본 1통 2. 증거서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3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사 건 ○○ 내사·진정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검사 ㊞

제 목 내사·진정사건 송치

아래 사건을 송치합니다.

진 정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내사자 피진정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송 치 사 유		
기 록 권 수		
압 수 물		
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6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4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사 건 ○○ 내사·진정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내사·진정사건 이송·이첩**

아래 사건을 이송·이첩합니다.

진 정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내사자 피진정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이 송 · 이 첩 사 유		
기 록 권 수		
압 수 물		
비 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6호서식]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진정인 등)

시 구 로

○○○ 귀 하

1. 귀하가 진정(신고)한 우리 청 년 **진정·내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진정·내사 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검 찰 청

검 사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6호서식]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피진정인 · 피내사자)

시 구 로

○○○ 귀 하

1. 에 대한 우리청 년 **진정 · 내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진정 · 내사 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검 찰 청

검 사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7호서식]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조사)

시 구 로

○○○ 귀 하

1. 에 대한 우리청 년 **조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조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검 찰 청

검 사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8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년 시정 제 호 . . .

수신자 검사 (인)

제 목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

아래 사건에 대해 사건기록등본의 송부를 요구합니다.

등본송부 요구대상	경찰사건번호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죄명	
등본송부 요구사유		
비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69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년 시정 제 호 . . .

수신자 검사 인

제 목 **시정조치 요구**

아래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경찰 관련 사건	경찰사건번호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죄명	
시정조치 요구사유		
이행기한		
검찰관련사건		
비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70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00)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 ㊞

제 목 : **시정조치 불요 통보**

아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통보합니다.

통보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검찰사건번호	년 시정 제 호	경찰사건번호	-
비 고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71호서식]

시 정 사 건 처 리 결 과 통 지 서

시 구 로

○○○ 귀 하

1. 귀하가 신고한 **시정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시정 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검 찰 청

검 사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72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사 건 ○○ 시정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시정사건 송치**

아래 사건을 송치합니다.

경 찰 관 련 사 건	경 찰 관 서 및 경 찰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죄 명	
송 치 사 유		
기 록 권 수		
압 수 물		
비 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73호서식]

(수신청) (발신청)

검 사 장	○○○○검찰청	검 사 장
	(전화번호)	
차장검사	검 . . .	부장검사
	경 유 검찰청검사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주임검사	수 신 검찰청 검 사 ㊞	주임검사
	제 목 항소기록 및 증거물 반환서	
사무국장	아래와 같이 항소기록 및 증거물을 반환함.	사무국장
	형제 호	
과 장	①사 건 번 호 항(상)제 호	과 장

피고인	②성 명		(경유청)
	③주민등록 번 호		검 사 장
④죄 명			차장검사
⑤처 분 촉 탁			
⑥기 록 권 수	권	⑦압수물건	주임검사
⑧비 고	1. 형집행지휘 . . .형집행지휘필 2. 석 방 지 휘 . . .석방지휘필 3. 징수금조정 . . .징제 호조정필 4. 압 수 물 건		사무국장 과 장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74호서식]

대 검 찰 청

비상 제 호 . . .

수 신 대법원 발 신 검찰총장대리

제 목 비상상고신청 검 사 ㊞

다음 판 결 / 약식명령 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상상고를 신청합니다.

피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주 거			
	④직 업			
⑤죄 명				
⑥원 판 결		. . . 법원		
⑦판 결 요 지				
⑧재 판 확 정		. . . 법원		
⑨판 결 요 지				
⑩비 성 상 고 이 유		별 첨		
⑪비 고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76호서식]

<table>
<tr><td colspan="5">대 검 찰 청

비상 제 호 . . .

수 신 대법원 발 신 검찰총장대리

제 목 비상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 검 사 ㊞

아래 비상상고 기록을 송부합니다.</td></tr>
<tr><td rowspan="2">피고인</td><td>①성 명</td><td></td><td>②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③구속표시</td><td colspan="3">□ 구속 □ 불구속</td></tr>
<tr><td colspan="2">④죄 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⑤원 판 결</td><td colspan="3">. . . 법원</td></tr>
<tr><td colspan="2">⑥재 판 확 정</td><td colspan="3">. . . 법원</td></tr>
<tr><td colspan="2">⑦비 상 상 고 신 청</td><td colspan="3">. . .</td></tr>
<tr><td colspan="2">⑧구 속</td><td colspan="3">. . .</td></tr>
<tr><td colspan="2">⑨기 록 권 수</td><td colspan="3">권</td></tr>
<tr><td colspan="2">⑩압 수 물 건</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⑪비 고</td><td colspan="3"></td></tr>
</table>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76호서식]

대 검 찰 청

제 호 . . .

수 신 대법원판사 발 신 대검찰청

제 목 판결정정신청 검 사 ㊞

아래와 같이 내용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따라 판결의 정정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①사 건 번 호	
②사 건 명	
③피 고 인	
④형 선 고 일	
⑤오 류 내 용	
⑥신 청 이 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77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등록번호 수신자 헌법재판소장 ( )	발신자 ○○검찰청검사장대리
경 유 검찰총장	검사 ㊞
제 목 의견서 제출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청 구 인	
붙 임	의견서 15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78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등록번호 수신자 헌법재판소장 ( ) 발신자 ○○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 ㊞ 경 유 검찰총장 제 목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	
아래와 같이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을 제출합니다.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청 구 인	
붙 임	1. 답변서 15부 2. 우리청 ○○형제 ○○호 불기소사건기록 ○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79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검 사 ㊞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위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 간 :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2. 집행장소 :
혐의사실의 요지 및 청구 이유	1. 혐의사실의 요지 :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
허가서를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80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 간 :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2. 집행장소 :	
혐의사실의 요지 및 청구이유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허가서를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81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 간 :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2. 집행장소 :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청 이유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허가서를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82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 건 번 호		
허 가 서 번 호		
통신제한 허가기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연 장 할 기 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83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 건 번 호		
허 가 서 번 호		
통신제한허가기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연 장 할 기 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별지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84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건번호	
허가서번호	
통신제한허가기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연장할 기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별지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86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정보수사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고등검찰청 발 신 ㊞

제 목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td></tr>
<tr><td colspan="5">「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2">인적사항</td><td>①성 명</td><td></td><td>②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③주 거</td><td></td><td>④직 업</td><td></td></tr>
<tr><td colspan="2">⑤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⑥통신제한조치의 대상 과 범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td><td colspan="3">1. 기간 : . . .부터 . . .까지
2. 집행장소 :</td></tr>
<tr><td colspan="2">⑧통신제한조치 신청 이유</td><td colspan="3">1. 혐의사실의 요지 :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td></tr>
<tr><td colspan="2">⑨허가서를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⑩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고등검찰청

수 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 목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

○○고등검찰청

검사 ㊞</td></tr>
<tr><td colspan="2">⑪기각취지 및 이유</td><td colspan="3"></td></tr>
</table>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86호서식]

(정보수사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고등검찰청 발 신 ㊞ 제 목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거	
④직 업	
⑤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	. . .부터 . . .까지
⑥연 장 할 기 간	. . .부터 . . .까지
⑦기 간 연 장 이 필 요 한 이 유 및 소 명 자 료	
○○고등검찰청 수 신 고등법원 제 목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청구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합니다. . . . ○○고등검찰청 검사 ㊞	
⑧기 각 취 지 및 이 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87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위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별지와 같음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와 집행장소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직급·성명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장소	
허가서를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88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후)**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table>
<tr><td rowspan="3">피 의 자</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2">주민등록번호</td></tr>
<tr><td colspan="4">직업</td></tr>
<tr><td colspan="4">주거</td></tr>
<tr><td colspan="2">긴급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td><td colspan="2">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td></tr>
<tr><td>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td><td>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d>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td><td>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r>
<tr><td>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td><td>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d>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td><td>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r>
<tr><td>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td><td>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d>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td><td>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r>
<tr><td>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와 집행장소</td><td></td><td>통신제한조치의 기간</td><td></td></tr>
<tr><td>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직급·성명</td><td></td><td>통신제한조치의 집행장소</td><td></td></tr>
<tr><td>허가서를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td><td colspan="3"></td></tr>
<tr><td>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td><td colspan="3">(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r>
<tr><td>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td><td colspan="3">판 사 (인)</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89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정보수사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고등검찰청 발 신 ㊞
제 목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td></tr>
<tr><td colspan="5">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2">인적사항</td><td>①성 명</td><td></td><td>②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③주 거</td><td></td><td>④직 업</td><td></td></tr>
<tr><td colspan="3">⑤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td><td colspan="2">⑥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td></tr>
<tr><td>통신제한조치가 필요한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td><td colspan="2">별지와 같음</td><td>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td><td>별지와 같음</td></tr>
<tr><td>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td><td colspan="2"></td><td>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td><td></td></tr>
<tr><td>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td><td colspan="2"></td><td>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td><td></td></tr>
<tr><td>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와 장소</td><td colspan="2"></td><td>통신제한조치의 기간</td><td></td></tr>
<tr><td>긴급통신제한조치집행자의 직급·성명</td><td colspan="2"></td><td>통신제한조치의 장소</td><td></td></tr>
<tr><td>⑦허가서를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td><td colspan="4"></td></tr>
<tr><td>⑧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고등검찰청
수 신 고등법원
제 목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
○○고등검찰청
검사 인</td></tr>
<tr><td>⑨기각취지 및 이유</td><td colspan="4"></td></tr>
</table>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90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합니다.

<table>
<tr><td rowspan="3">피 의 자</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2">주민등록번호</td></tr>
<tr><td colspan="4">직업</td></tr>
<tr><td colspan="4">주거</td></tr>
<tr><td colspan="2">긴급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td><td colspan="2">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td></tr>
<tr><td>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td><td>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d>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td><td>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r>
<tr><td>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td><td>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d>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td><td>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r>
<tr><td>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td><td>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d>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td><td>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r>
<tr><td>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와 집행장소</td><td></td><td>통신제한조치의 기간</td><td></td></tr>
<tr><td>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직급·성명</td><td></td><td>통신제한조치의 집행장소</td><td></td></tr>
<tr><td>허가서를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td><td colspan="3"></td></tr>
<tr><td>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td><td colspan="3">(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td></tr>
<tr><td>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 검찰청
검 사 (인)</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91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결정**

다음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가	부	비 고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검 사 결 정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92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건의에 대한 결정**

다음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가	부	비 고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검 사 결 정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93호서식]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검찰청 검사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 검 사 (인)

아래 사람에 대한 제 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직급·성명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		
긴급통신제한조치 후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94호서식]

<table>
<tr><td colspan="3">○○지방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합니다.</td></tr>
<tr><td rowspan="4">인적
사항</td><td>①성 명</td><td></td></tr>
<tr><td>②주민등록번호</td><td>(세)</td></tr>
<tr><td>③주 거</td><td></td></tr>
<tr><td>④직 업</td><td></td></tr>
<tr><td colspan="2">⑤통신제한조치의 종류</td><td></td></tr>
<tr><td colspan="2">⑥통신제한조치의
대상 과 범위</td><td></td></tr>
<tr><td colspan="2">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td><td>. . . 부터 . . . 까지</td></tr>
<tr><td colspan="2">⑧비 고</td><td></td></tr>
<tr><td colspan="3">붙임 : 통신제한조치장허가(승인)서 사본 1통</td></tr>
</table>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96호서식]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인적 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 . 부터 . . . 까지
④연장한 기간		. . . 부터 . . . 까지
⑤붙임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결정문 사본 1통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96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3.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4. 집행위탁여부
5. 집행경위
6.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 별첨

. . .

○○지방검찰청

검사 ㊞

검찰주사(보)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97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 검 사 (인)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합니다.

허가서 종별		
허가서 발부일		
허가서 번호		
대 상 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첨 부 : 1.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부. 2.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집행지휘서 1부. 3. 집행불능보고서 1부. 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98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사법경찰관 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집행이 불능되어, 이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합니다.

허가서 종별	
허가서 발부일	
허가서 번호	
대 상 지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별지 기재내용과 같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99호서식]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아래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집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통신제한조치 허가법원		
④통신제한조치의 종류		
⑤통신제한조치 허가연월일		
⑥통신제한조치 허가서번호		
⑦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00호서식]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귀 하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우리청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① 허 가 서 번 호	
② 통신제한조치집행기관	
③ 감청대상 전기통신가입자 (우편물검열의 대상자)	
④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⑤ 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 간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01호서식]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

제 목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귀서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송치한 우리청 제 호 피의 사건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①허 가 서 번 호	
②전 기 통 신 의 가 입 자 (우편물검열의 대상자)	
③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④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 간	
⑤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⑥통신제한조치집행자의 직 급 · 성 명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02호서식]

			검사장승인	
○○지방검찰청			. . .	
(전화번호)			가	부

제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

제 목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거		④직 업	
⑤사 건 번 호				
⑥통신제한조치의 종 류 및 방 법				
⑦통신제한조치의 대 상 과 범 위				
⑧통신제한조치의 기 간 및 집 행 장 소				
⑨통신제한조치의 목적				
⑩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 및 결과				
⑪통지를 유예하려는 사 유	별지와 같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03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다음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사 건 번 호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04호서식]

○○○검찰청

문서번호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붙임 : 허가서 1통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06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허가서 번호

2. 집행기관

3. 전기통신가입자

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상과 종류

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 별첨

년 월 일

○○지방검찰청

검사 (인)

검찰주사(보)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06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

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 검 사 인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합니다.

허 가 서 종 별		
허 가 서 발 부 일		
허 가 서 번 호		
대 상 지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 명		
집 행 불 능 의 사 유		
첨 부 :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1부. 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집행지휘서 1부. 3. 집행불능보고서 1부. 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07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사법경찰관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집행이 불능되어, 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합니다.

허 가 서 종 별	
허 가 서 발 부 일	
허 가 서 번 호	
대 상 지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별지 기재내용과 같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08호서식]

○○지방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수신자 발신자 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요 없게 되어 통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법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연월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번호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09호서식]

○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가입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기통신사업자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사 인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10호서식]

○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

다음과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가입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기통신사업자		
요청사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사 (인)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11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

다음과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기각합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전기통신사업자		
요 청 사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해당가입자와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 위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재청구의 취지 및 이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 각 하 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12호서식]

○ ○ ○ 검 찰 청

문서번호 0000. 00. 00.

수 신 :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요 청 사 유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미 리 허 가 를 받 지 못 한 사 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13호서식]

○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사후)**

가입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위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집행 일시·장소 집행자의 직급·성명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사 (인)

210mm × 297mm(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14호서식]

○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사후)**

다음과 같이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가입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기통신사업자		
요청사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집행 일시·장소 집행자의 직급·성명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사 인

210mm × 297mm(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16호서식]

(정보수사기관명칭)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제 0000-0000 호

수신자 고등검찰청 발신자 지방검찰청 인

제 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전기통신사업자		
요 청 사 유		
해당가입자와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 한 사 유		
재 청 구 의 취 지 및 이 유		

○○고등검찰청

수신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고등검찰청 검사 인

기각 취지 및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16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사후)**

다음과 같이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기각합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전기통신사업자		
요 청 사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해당가입자와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 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 한 사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재청구의 취지 및 이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집행 일시·장소 집 행 자 의 직 급 · 성 명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17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제 0000-0000 호

수신자 ○○○귀하 발신자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우리청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 집 행 기 관	
전 기 통 신 가 입 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대상과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 의 범 위	

※ 전기통신가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18호서식]

○○지방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제 0000-0000 호

수신자 경찰서장 발신자 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

귀서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후 송치한 우리청 제 호 피의사건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허가서 번호		청구부 진행번호	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관		처리자 소속·계급·성명	
전기통신가입자 (통지대상자)			
전기통신사업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상과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기간			
사건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19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다음 사람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사 건 번 호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20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제 0000-0000 호

수신자 귀하 발신자 ○○○지방검찰청

검 사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우리청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를 통지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전 기 통 신 가 입 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 통지여부	□ 통지대상
	□ 통지제외 대상 [ ]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 사 유	(통지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없음' 기재)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21호서식]

(정보수사기관명칭)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제 0000-0000 호

수신자 고등검찰청 발신자 인

제 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전기통신사업자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고등검찰청

수신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 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고등검찰청 검사 인

기각 취지 및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22호서식]

(정보수사기관명칭)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제 0000-0000 호

수신자 고등검찰청 발신자 ㊞

제 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청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허가받은 대상 및 범위	
연 장 할 기 간	. . .부터 . . .까지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고등검찰청

수신자 고등법원

제 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기간연장을 청구합니다.

○○고등검찰청 검사 ㊞

기각 취지 및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23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귀하 발 신 :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우리청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영 장 번 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 기 관	
전 기 통 신 가 입 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대상과 범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 대 상 기 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24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귀서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한 후 송치한 우리청 제 호 피의사건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영 장 번 호	
전기통신 가입자 (통지대상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대상과 범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대상 기간	
사건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의 직급·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26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보관 등 승인을 청구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사건번호			
	허가서번호			
	집행종료일			
통신제한조치 집행경위				
취득한 결과의 요지				
혐의사실의 요지 및 승인 청구 이유	1.혐의사실의요지 : 별지와 같음 2.소명자료 : 별지와 같음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대상 및 범위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목록	별지와 같음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				
전기통신 선별자의 직급·성명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백상지(80g/㎡)]

(별 지)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목록

연번	전기통신 (파일명)	전기통신 기간	전기통신 내용의 요지	비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26호서식]

○ ○ ○ 검 찰 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사법경찰관 신청)**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 등 승인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아래와 같이 보관 등 승인을 청구합니다.

<table>
<tr><td rowspan="3">피 의 자</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3">주민등록번호</td></tr>
<tr><td colspan="5">직업</td></tr>
<tr><td colspan="5">주거</td></tr>
<tr><td rowspan="3">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td><td>사 건 번 호</td><td colspan="4"></td></tr>
<tr><td>허 가 서 번 호</td><td colspan="4"></td></tr>
<tr><td>집 행 종 료 일</td><td colspan="4"></td></tr>
<tr><td>통신제한조치 집행경위</td><td colspan="5"></td></tr>
<tr><td>취득한 결과의 요지</td><td colspan="5"></td></tr>
<tr><td>혐의사실의 요지 및 승인 청구 이유</td><td colspan="5">1. 혐의사실의요지 :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 별지와 같음</td></tr>
<tr><td>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대상 및 범위</td><td colspan="5"></td></tr>
<tr><td>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목록</td><td colspan="5"></td></tr>
<tr><td>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 분석자료</td><td colspan="5"></td></tr>
<tr><td>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td><td colspan="5"></td></tr>
<tr><td>전기통신 선별자의 직급·성명</td><td colspan="5"></td></tr>
<tr><td>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td><td colspan="5"></td></tr>
<tr><td>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td><td colspan="2"></td><td>판 사</td><td></td><td>인</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별 지)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목록

연번	전기통신 (파일명)	전기통신 기간	전기통신 내용의 요지	비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27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 등 승인 신청이 있는 바, 이래와 같은 사유로 보관 등 승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사건번호	
	허가서번호	
	집행종료일	
통신제한조치 집행경위		
취득한 결과의 요지		
혐의사실의 요지 및 승인 청구 이유	1.혐의사실의요지 : 별지와 같음 2.소명자료 : 별지와 같음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대상 및 범위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목록	별지와 같음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 분석자료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		
전기통신 선별자의 직급·성명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 ○ **검 찰 청**

검사 인

210㎜×297㎜[백상지(80g/㎡)]

(별 지)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목록

연번	전기통신 (파일명)	전기통신 기간	전기통신 내용의 요지	비고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28호서식]

폐 기 결 과 보 고 서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사 건 번 호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번호		
	통신제한조치 집행종료일		
	전기통신보관 등 승인서번호		
	전기통신보관 등 승인(기각) 통지일	20 . . .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였습니다.

폐 기 의 이 유	
폐 기 의 범 위	
폐 기 의 일 시	20 . . . :
전기통신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행 경과 및 요지, 그 주체 및 방법	
폐 기 한 전기통신의 목록	

20 . . .

○○○검찰청

검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29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입국 · 상륙절차 특례요청** 검 사 인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입국 · 상륙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입국 · 상륙절차의 특례조치를 요청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		
	생년월일 (세)	성 별	남 · 여
	국적		
마약류의 분산방지 및 도주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30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체류부적당 통보** 검 사 (인)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		
	생년월일 (세)	성별	남 · 여
	국적		
입국(상륙) 허가일자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31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세관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세관절차 특례요청** 검 사 인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될(우리나라로 반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세관절차의 특례조치를 요청합니다.

마 약 류 의 특 정	
마약류의 분산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32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입국·상륙절차 특례요청** 검 사 (인)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에 대한 입국 · 상륙절차 특례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입국 · 상륙절차의 특례조치를 요청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		
	생년월일 (세)	성별	남 · 여
	국적		
마약류의 분산방지 및 도주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별지 입국·상륙절차 특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33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체류부적당 통보** 검 사 인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에 대한 체류부적당 통보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		
	생년월일 (세)	성별	남 · 여
	국적		
입국(상륙)허가 일자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34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세관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세관절차 특례요청** 검 사 인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마약류에 대한 세관절차 특례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세관절차의 특례조치를 요청합니다.

마 약 류 의 특 정	별지 세관절차 특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의 분산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별지 세관절차 특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36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입국·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에 대한 입국·상륙절차 특례신청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입국·상륙절차 특례신청을 기각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		
	생년월일 (세)	성별	남 · 여
	국적		
마약류의 분산방지 및 도주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별지 입국·상륙절차 특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비 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36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에 대한 체류부적당 통보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류부적당 통보신청을 기각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		
	생년월일 (세)	성별	남 · 여
	국적		
입국(상륙)허가일자			
비 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37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마약류에 대한 세관절차 특례신청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세관절차 특례신청을 기각합니다.

마 약 류 의 특 정	별지 세관절차 특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의 분산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 황	별지 세관절차 특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비 고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38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몰수·부대보전청구** 검 사 (인)

아래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죄명*** 피의(피고)사건에 관하여, 몰수·부대보전 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를 청구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죄명		
피의사실(공소사실)의 요지		
몰수·부대보전의 근거법령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몰수보전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주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부대보전관계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39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몰수·부대보전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부대보전명령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몰수·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금지를 청구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죄명		
피의사실(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몰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몰수·부대보전의 근거법령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몰수보전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주소	별지 몰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별지 몰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부대보전관계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별지 몰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별지 몰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40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몰수·부대보전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부대보전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몰수·부대보전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죄명			
피의사실(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몰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몰수·부대보전의 근거법령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몰수보전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주소	별지 몰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별지 몰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부대보전관계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별지 몰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별지 몰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41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등기소장·등록소장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등기·등록 촉탁 검 사 ㊞ 아래 재산에 대한 등기·등록을 촉탁합니다.	
물 건 의 표 시	
권 리 의 표 시	
등 기 목 적	몰 수 보 전
등 기 원 인	년 월 일 지방법원의 몰수보전결정(년 제 호)
등 기 권 리 자	국
등 기 의 무 자	
비 고	
첨 부 : 몰수보전명령등본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42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 검 사 ㊞

아래 몰수·부대보전사건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몰수·부대보전사건의 표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몰수보전결정(년 제 호)	
공소제기 관련사항	피 고 인	
	죄 명	
	공소제기 일 자	
비 고		

210mm×297mm

(일반용지 54g/㎡)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43호서식]

몰수·부대보전에 관한 공소제기 공고

제 호 . . .

제 목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

아래 몰수·부대보전사건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몰수·부대보전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몰수·부대보전 사건의 표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몰수보전결정(년 제 호)			
공소제기 관련 사항	피 고 인			
	공소제기 일 자			
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사유				
비 고				

○○지방검찰청

검 사 ㊞

210mm×297mm

(일반용지 54g/㎡)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44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몰수·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몰수·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몰수·부대보전사건의 표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몰수·부대보전명령(년 제 호)		
피고인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세
	주 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				

첨 부 :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4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등기소장·등록소장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등기·등록 말소촉탁 검 사 ㊞

아래 등기·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합니다.

말소되는 등기·등록	년 월 일 접수 제 호 몰수보전(부대보전)
원인	취소결정(년 월 일 실효)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국
물건의 표시	
권리의 표시	
비고	
첨부 :	

210mm×297mm

(일반용지 54g/㎡)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46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추징보전 청구** 검 사 ㊞

아래 피고의 사건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금지를 청구합니다.

피고인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세
	주 거			
죄 명				
공소사실(피의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법령 조항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범죄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				

첨 부 : 1. 공소사실(피의사실)의 요지서 1통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47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 . .

수신 ○○○ 법원

발신 ○○ ○ 지방검찰청
검사 ㊞

제목 **추징보전 청구**

아래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금지를 청구합니다.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세
	주 거			
죄 명				
피의사실의 요지		별지 추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추징의 근거 법령 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추징보전액		별지 추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별지 추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		별지 추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붙임 피의사실의 요지서 1부. 끝.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48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 . .

수신 ○○○ 경찰서장

제목 **추징보전신청 기각**

아래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한 추징보전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합니다.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세
	주 거			
죄 명				
피의사실의 요지		별지 추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추징의 근거 법령 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추징보전액		별지 추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별지 추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		별지 추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49호서식]

<table>
<tr><td colspan="5">○○○○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제 목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td></tr>
<tr><td colspan="2">추 징 보 전 명 령</td><td colspan="3">년 월 일

지방법원(년 제 호)</td></tr>
<tr><td rowspan="3">피 고 인

(피의자)</td><td>성 명</td><td></td><td>직 업</td><td></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td><td>연 령</td><td>세</td></tr>
<tr><td>주 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추 징 보 전 액</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추 징 보 전 재 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첨 부</td></tr>
<tr><td colspan="5">위 추징보전명령에 대하여 그 집행을 명령함

○○지방검찰청

검사 ㊞</td></tr>
</table>

210mm×297mm

(일반용지 54g/㎡)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0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가압류집행절차 신청 검 사 ㊞

아래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가압류집행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징 보 전 명 령		년 월 일 지방법원 (년 제 호)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 거			
추 징 보 전 액				
추 징 보 전 재 산				
비 고				
첨 부 :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서 1통				

210mm×297mm

(일반용지 54g/㎡)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51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 검 사 ㊞

아래와 같이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추징보전사건의 표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년 제 호)			
피고인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세
	주 거			
취소 대상	[ ] 전부취소 [ ] 일부취소			
일부취소 시 범위	(기존 추징보전액: 원) 취소청구 추징보전액: 원 잔여 추징보전액: 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				
첨 부 :				

210㎜×297㎜(일반용지 54g/㎡)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2호서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 . .

수신 ○○○경찰서장

제목 **추징보전 신청·보완·수정·취소 등 요구서**

다음 추징보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보완·수정·취소 등을 요구합니다.

접수일자			사건번호	
죄 명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요 구 내 용				
○○○ 검찰청 검 사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3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 . .

수신 ○○○ 법원

발신 ○○○ 지방검찰청
검사 ㊞

제목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

다음 피의자에 대한 ○○○ 피의 사건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추징보전명령의 (전부·일부)취소를 청구합니다.

추징보전사건의 표시		별지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세
	주 거			
취소 대상		별지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일부취소 시 범위		별지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		별지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붙임 ○○관련 서류 ○부. 끝.				

210㎜×297㎜[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4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제 목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

추 징 보 전 명 령		년 월 일 지방법원(년 제 호)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 거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		년 월 일 지방검찰청 검사		
비 고				

위 추징보전명령 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집행명령에 대하여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되었으므로,

을 취소함

○○지방검찰청

검 사 ㊞

210mm×297mm

(일반용지 54g/㎡)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6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가압류 집행정지·취소절차 신청 검 사 ㊞

아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가압류 집행의 정지·취소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징 보 전 명 령		년 월 일 지방법원 (년 제 호)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 거			
비 고				
첨 부 : 추징보전집행명령취소서 1통				

210mm×297mm

(일반용지 54g/㎡)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6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강제집행정지 청구** 검 사 ㊞

아래 강제집행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합니다.

몰수·부대보전사건의 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피고인(피의자)성명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채권자	
	채무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		
첨부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7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 검 사 (인)

아래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련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피고인(피의자)성명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	
첨 부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8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몰수집행 공조심사청구** 검 사 (인)

아래와 같은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이 있으므로, 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합니다.

공조요청을 한 국가명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및 그 재판의 확정일자		
공조 범죄 관련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 및 법령의 조항	
첨 부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9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추징집행 공조심사청구** 검 사 (인)

아래와 같은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이 있으므로, 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합니다.

공조요청을 한 국가명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및 그 재판의 확정일자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추징의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추징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해당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공조 범죄 관련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요지, 적용법조,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첨 부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0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몰수 / 공조 / 부대 보전명령 청구 검 사 ㊞ 아래와 같이 몰수보전에 대하여 공조요청이 있으므로, 몰수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금지를 청구합니다.	
공조요청 한 국가명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및 채권의 몰수를 위한 보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공조 범죄 관련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몰수·부대보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 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	
첨 부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1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조추징보전명령 청구** 검 사 ㊞

아래와 같이 추징보전에 관한 공조요청이 있으므로,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금지를 청구합니다.

공조요청을 한 국가명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공조범죄 관련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공조요청과 관련된 추징보전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해당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 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		
첨 부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2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심 사

제 목 공조몰수보전 청구취소 검 사 (인)

공조추징보전

확정재판을 받은 자

피 의 자 의 성명

피 고 인

위 사람에 관련된 공조범죄에 대하여, 공조요청을 철회한다는 통지가 있으므로,

심 사

년 월 일자 공조몰수보전 청구를 취소합니다.

공조추징보전

210mm×297mm

(일반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3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집행공조허가결정 취소청구 검 사 ㊞ 아래 집행공조허가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합니다.	
취소를 구하는 공조허가결정의 표시	년 월 일 지방법원(년 제 호)
취소를 구하는 사유	
첨 부	

210mm×297mm

(일반용지 54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4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공조몰수·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 검 사 (인)

피 고 인
의 성명
(피의자)

위 사람에 관계된 공조범죄에 대하여, 공조요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통지가 있으므로, 지방법원 년 제 호 공조 몰수 / 추징 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54g/㎡)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5호서식]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요구사유			
3.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권자(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인

귀중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6호서식]

경찰공무원 직무배제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요구사유			
3. 직무배제 요구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직무배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권자(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인

귀중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7호서식]

공무원 교체임용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요구사유			
3. 교체임용 요구권자의 의 견			

위와 같이 교체임용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권자(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인

귀중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8호서식]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등록번호

수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실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하여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소속 및 직급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인 지 일 자	. . .
죄 명		신 병	
피 의 사 실 요 지			
비 고			

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9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영상물 촬영 신청서** 검 사 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물 촬영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증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거	연락처	
영 상 물 촬 영 신 청 사 유			
증 명 할 사 실			
신 문 사 항			
증인신문청구(신청)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변 호 인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70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수신 ○○○법원 발신 ○○○검찰청

제목 **영상녹화물 사본청구** 검사 (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귀원 호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녹화물 사본을 청구합니다.

청 구 대 상	영상녹화물 사본
청 구 부 분	□ 전부 □ 일부( )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71호서식] (앞 면)

○○○국 중앙기관 귀중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

대한민국 중앙기관은 ○○국 중앙기관에 대하여 피의자 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합니다.

1. 공조요청기관

2. 피의자 인적사항

3. 사건개요

4. 수사경과

5. 죄명 및 적용법조

6. 공조요청 내용

210㎜×297㎜[백상지(80g/㎡)]

(뒷 면)

7. 공조요청 필요성

8. 요청시한

9. 비밀의 유지

10. 보증사항

* 각 국가별 및 공조유형별로 서식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조요청서 작성에 앞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최신 서식을 문의하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72호서식]

서 울 고 등 검 찰 청

. . .

인도 호

수 신 : 서울고등법원 발 신 : 서울고등검찰청

제 목 : **인도심사청구** 검 사 (인)

아래 범죄인에 대한 . . . ○○○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가 있으므로, 인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합니다.

범죄인	국적	
	주소	
	(국내주소)	
	등록기준지	
	직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인도범죄명		예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청구국 죄명 : 일리노이주 법령 제720장 제5조(과실치사) 및 제625장 제5조(음주운전) 위반]
인도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대한민국	
	청구국	
인도청구의 근거(조약 또는 보증)		예시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2조 및 제15조
신병		예시 : 0000. 00. 00. 구속(0000. 00. 00. 인도구속영장 발부)
범죄인에 대하여 행해진 청구국의 형사절차		예시 : 범죄인에 대하여 체포영장 발부

210㎜×297㎜[백상지(80g/㎡)]

【별지】

인 도 범 죄 사 실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73호서식]

서 울 고 등 검 찰 청

. . .

인도 호

수 신 : 서울고등법원 발 신 : 서울고등검찰청

제 목 : **인도구속영장 청구** 검 사 (인)

아래 범죄인에 대한 . . . ○○○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와 관련하여 아래 범죄인을 ○○○구치소에 구속하기 위하여 . . .까지 유효한 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범죄인	국적	
	주소	
	(국내주소)	
	등록기준지	
	직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인도범죄명		
인도범죄사실 및 소명자료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대한민국	
	청구국	
인도청구의 근거(조약 또는 보증)		예시 :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인도구속영장이 여러 통 필요한 사유 및 그 개수		
범죄인에 대하여 행해진 청구국의 형사절차		예시 : 범죄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210㎜×297㎜[백상지(80g/㎡)]

【별지】

인도범죄사실 및 소명자료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74호서식]

서 울 고 등 검 찰 청

. . .

인도 호

수 신 : 서울고등법원 발 신 : 서울고등검찰청

제 목 : **긴급인도구속영장 청구** 검 사 인

아래 범죄인에 대한 . . . ○○○국으로부터 긴급인도구속 청구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아래 범죄인을 ○○○구치소에 구속하기 위하여 . . .까지 유효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범죄인	국적	
	주소	
	(국내주소)	
	등록기준지	
	직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인도범죄명		
인도범죄사실 및 소명자료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대한민국	
	청구국	
인도청구의 근거 (조약 또는 보증)		예시 :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수통의 긴급인도구속영장이 필요한 사유 및 그 수		
범죄인에 대하여 행해진 청구국의 형사절차		예시 : 범죄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210㎜×297㎜[백상지(80g/㎡)]

【별지】

인도범죄사실 및 소명자료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76호서식] (앞 면)

확 인 서

대한민국 ○○지방검찰청 검사인 본인 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 를 ○○○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확인자 자격

1.1.

2. 범죄인 ○○○에 관한 사항

2.1.

3. 범죄인 인도청구 범죄사실(사건 개요)

3.1.

4. 수사 착수

4.1.

5. 수사 경과

5.1.

6.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6.1.

7.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령

7.1.

210㎜×297㎜[백상지(80g/㎡)]

(뒷 면)

8. 공소시효

8.1.

9. 공소시효에 관한 법령

9.1.

10. 대한민국의 기소중지제도

10.1.

11. 대한민국의 체포영장제도

11.1.

본인은 위 기재한 사실이 모두 진실임을 확인하며,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

○○○검찰청 검사 (서명)

※ 각 국가별 및 사건 유형별로 서식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건의서 작성에 앞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최신 서식을 문의하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76호서식] (앞 면)

확 인 서

대한민국 ○○지방검찰청 검사인 본인 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 를 ○○○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확인자 자격

1.1.

2. 범죄인 ○○○에 관한 사항

2.1.

3. 범죄인 인도청구 범죄사실(사건 개요)

3.1.

4. 수사 착수

4.1.

5. 수사 경과

5.1.

6. 재판 경과

6.1.

7.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7.1.

210㎜×297㎜[백상지(80g/㎡)]

(뒷 면)

8.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령

8.1.

9. 형의 시효

9.1.

10. 형의 시효에 관한 법령

10.1.

11. 궐석재판으로 판결 확정

11.1.

12. 궐석재판에 관한 법령

12.1.

13. 궐석재판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13.1.

14. 궐석재판으로 확정된 판결의 재심에 대한 명령

14.1.

15. 항소기간도과로 판결 확정

15.1.

16. 항소기간도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16.1.

210㎜×297㎜[백상지(80g/㎡)]

(뒷 면)

17. 상소권회복에 관한 법령

17.1.

18. 확정된 유죄판결에 집행

18.1.

19. 형 집행 절차에 관한 법령

19.1.

20. 공소시효

20.1.

21. 공소시효에 관한 법령

21.1.

22. 대한민국의 기소중지제도

22.1.

23. 대한민국의 체포영장제도

23.1.

본인은 위 기재한 사실이 모두 진실임을 확인하며,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

○○○검찰청 검사 (서명)

※ 각 국가별 및 사건 유형별로 서식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건의서 작성에 앞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최신 서식을 문의하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특별사법경찰

제 작 자 : 이오용

제작일자 : 2021.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